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4.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

목 차

< 기획조정관실 소관 > ····· 1

1. 중기사업계획 및 '15예산 편성 ····· 3
2. 재정사업 성과관리 ····· 5
3.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산림행정 구현 ····· 9
4. 산림행정의 효율성 향상 ····· 11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 13
6. 산림행정 조직관리 ····· 16
7.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 18
8.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 ····· 20
9. 민원만족도 제고 ····· 22
10. 산림행정의 투명성 및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 ····· 25
11.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 ····· 28
12. 수요자 맞춤형 '창조적 산림행정' 구현 ····· 31
13. 산림공간정보기반의 의사지원서비스 마련 ····· 40
14. 산림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성 증진 ····· 44
15. 정책홍보 ····· 49

<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 ····· 55

1. 해외 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57
2. 양자 산림협력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 ····· 60
3. 한・중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 63
4. 임산물 수출확대 ····· 67
5. REDD+ 탄소배출권 확보 및 추진기반 확충 ····· 71
6. AFoCO 확대 설립 및 협력사업 성과 가시화 ····· 74
7. UNCCD 논의 대응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 79
8. 녹색 ODA 사업 확대로 해외산림협력 강화 ····· 83
9.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 86

＜산림자원국 소관＞ ····· 91
1. 산림기본계획 이행 제고 및 제도 개선 ····· 93
2.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기반 마련 ····· 95
3.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추진 ····· 100
4. 수요자 중심의 R&D 추진 및 실용화 강화 ····· 103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 107
6.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직 역량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 ····· 109
7. 녹색사업단 조직체계 정비 및 사업성과 제고 ····· 112
8. 조 림 ····· 115
9. 숲가꾸기 ····· 142
10. 공공산림가꾸기 ····· 157
11. 종묘생산관리 ····· 164
12. 선도 산림경영 ····· 172
13. 산림생명자원 관리 및 신품종 개발지원 ····· 174
14. 한반도 녹화기반 구축 ····· 178
15. 국산 목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 ····· 180
16. 목재이용 활성화 ····· 183
17.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 186
18.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 190
19. 임업기계화 촉진 ····· 194
20.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 199
2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 204
22.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 209
23. 도시녹화운동 전개 ····· 216
24. 도시숲 조성·관리 ····· 220
25. 학교숲 조성·관리 ····· 227
26. 전통마을숲 복원 ····· 232
27.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 236
28. 가로수 조성·관리 ····· 239
29.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 ····· 243

＜산림이용국 소관＞ ····· 247
1. 산림복지 정착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 249
2. 합리적 산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51
3. 정부3.0 등 정책수요를 반영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 253
4.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 ····· 257
5.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리 강화 ····· 259
6. 국유림의 역할 및 국유림경영 정책 강화 ····· 261
7.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 269
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등 사후관리 강화 ····· 278
9.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283
10.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 286
11.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 288
12.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290
13. 산림복지공간 타당성조사 및 인증제 도입 ····· 293
14.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 295
15.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시범조성 ····· 299
16.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 301
17.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 활성화 ····· 304
18. 전국산촌기초조사 및 산촌역량강화 ····· 306
19.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308
20. 산림복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311
21.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 314
22.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317
23.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및 경영기반 구축 ····· 320
24.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 324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 327
26. 단기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 332
27. 임가 소득 안전망 구축 ····· 337
28.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340

29.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346
30.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사업 ····· 354
31.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 358

<산림보호국 소관> ····· 361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 363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 368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기반 구축 ····· 371
4. 불법 산림피해방지 대책 추진 ····· 376
5. 산불예방대책 추진 ····· 380
6. 산불상황관리 및 지상진화 ····· 385
7. 헬기진화 및 산림항공안전대책 추진 ····· 391
8. 산불방지 기반구축 ····· 395
9. 산사태방지 기반 구축 ····· 398
10.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의 현장 확산 ····· 402
11.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 409
12. 산사태의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실현 ····· 416
1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419
14.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 424
15.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 427
16.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 429
17.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 431
18.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 433
19. 훼손・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 436
20.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 439
21.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442
2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 445

기획조정관실 소관

1. 중기사업계획 및 ’15예산 편성

목 표

◇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을 뒷받침
◇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위주 투자로 사업성과를 창출

가. ’15예산안 편성여건

o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

- 형식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아닌, 부처별 구조조정 목표제시 및 재정개혁 과제 발굴, 실적점검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전망
- 세출구조조정은 공약가계부 및 ’12~’16 중기사업계획을 기본 토대로 하여 추진될 예정

  * 공약가계부상 농림분야의 경우 ’17년까지 5.2조원을 구조조정 할 예정

o 국회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국가재정법」개정에 따라 국회 예산제출시기가 ’15년 예산편성부터 순차적으로 앞당겨 짐(회계연도 개시 90일전 → 120일 전)

  * 국회제출 : (당초) 10.2→ (’15예산) 9.22 → (’16예산) 9.12→ (’17예산) 9.2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서비스, 내실 있는 산림자원 육성,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R&D투자, 산림재해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분야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14~’18 중기사업계획 수립

o 법령 개정, 현 정부 중점추진과제 이행 등으로 ’13~’17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이 발생한 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재원 배분 방향을 검토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2) 2015년도 예산편성 추진

o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재정소요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o 대규모 시설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의 내실화 및 현장 중심의 신규재정사업을 적극 지원

3) 2014년도 예산집행 및 배정 관리

o 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및 배정 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라. 추진일정

o '14~'18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출 : 2014. 1. 31.

o '15예산안 편성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 확정 통보 : 2014. 4월말

o 산림청 '15년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 2014. 6월말

o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4. 7~9월

o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2014. 9. 22.

o '14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안) 통지 : 2014. 10. 15.

o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4. 12월까지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목 표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세출구조조정 추진

가. 정책여건

o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

- '09년도부터 성과계획서·보고서를 국회, 감사원에 제출 및 점검 강화
- '14년부터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도 예산 편성 환류 강화

o '09.1.1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정부회계에 도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기본방향

o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성과지표 개발, 직원역량 강화로 성과제고

o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집행목표 설정 및 대안지표를 개발하고, 집행 사전준비를 '13년 연말까지 이행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2014년도 재정사업(2013년도 사업추진)평가 부처 상위권 유지

o 미흡등급 최소화로 평균 75점 이상을 획득하여 평가대상부처(42개) 중 5위권 이내의 목표달성

- 평가대상 8개 사업 : 탄소배출권기반조성,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 탄소흡수원 확충, 임업생산 및 목재활용 증진,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등

o 전문가 자문,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활용도 증진

2) 재정성과 목표관리 강화

o 2013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율적 검증절차 강화

- 성과측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도록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에 제출

o 주요국의 산림부문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위목표와의 연계 강화 추진

- 사업별 맞춤형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강화되도록 관리

o 만족도 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재정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추진하여 객관성·신뢰성 제고

o 재정사업 성과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실시

o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를 일치화하여 2015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 2015회계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사업비 등이 일치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의 연계 및 환류 강화
- 성과목표와 프로그램(항),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세항)이 각각 1대 1 대응되도록 하여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 확립

3) 2015년도 재정사업(2014년도 사업추진)평가 사전대비 강화

o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제시

- 2015년도 평가 대상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 선정('14년초)

o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외부 위탁으로 추진

- 제안서 기술평가시 단위사업 담당자를 참여토록 하여 상호 정보교류

o 재정사업 모니터링은 사업부서 자체적 실시 및 외부전문기관(위탁)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피드백

- 사업목적 달성,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해 성과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민원,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 또는 개선방안 마련

※ 자율평가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엄격히 하고 성과관리 제고 노력, 성과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기여자에게 포상 계획

o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광특회계 사업 추진방향 제시

- 지역발전위원회 2014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5년 추진체계 보완('14.5월)

4)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o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예방 강화

- 산림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o 예산낭비 사례가 신고되면 담당 사업과에서 현지조사 후 10일 이내 회신

- 조사결과가 미온적이거나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재점검, 필요시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현지조사 추진

o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3천만원 한도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5) 실집행 점검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o 실집행 기준으로 '14년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점검 강화

- 본청 각 부서·지자체·소속기관별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13년 연말까지 집행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연례적 이월·불용액 최소화

o 월별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집행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현장점검, 일자리창출 사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집중 점검

o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예산증액 및 포상금 지급) 또는 패널티 적용

라. 추진일정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 '14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시달 : 2014. 1월
- '14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2014. 1~12월
- '1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4. 2월
- '14년도 재정사업 만족도 조사 추진 : 2014. 2~12월
- '14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기여자 포상 : 2014. 12월

o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광특회계사업 성과관리

- ’14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서 제출(지역발전위원회) : 2013. 12월
- ’15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서 제출(지역발전위원회) : 2014. 12월

o ’13년도 성과보고서 및 ’15년도 성과계획서 제출

- ’13년도 성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4. 2. 24.
- ’15년도 성과계획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4. 6. 30.

3.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산림행정 구현

목 표

◇ 정부3.0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통해 산림행정 패러다임 전환
◇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가. 정책여건

o 정부3.0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착단계

o 산림행정에 있어서도 정부3.0 가치를 내재화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

나. 기본방향

o 모든 산림행정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여 산림사업의 추진역량 제고

o 산림행정3.0의 조기 정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의 노력 강화

o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액션플랜 중심으로 산림행정3.0 고도화

o 그 동안의 성과 및 반성을 토대로 산림행정3.0 추진체계 및 중점과제 보완

- 「산림분야 정부3.0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계획 수정·보완

o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중심의 산림행정3.0 추진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로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 과제 선정·추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선도과제 발굴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림공간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o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13) 18종 데이터 개방 → ('14) 16종 데이터 추가 개방

2) 산림행정3.0의 정착 및 확산

o 소속기관의 산림행정3.0 추진역량 강화

- 정부업무평가의 지표를 활용하여 기관별 정부3.0 추진 수준 진단
- 추진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산림행정3.0 민간자문단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추진역량 제고

o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성과 점검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개방, 정보공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평가지표 마련

o 우수사례 창출을 통해 산림행정3.0 성과 확산

- 우리 청 개방데이터의 산업화 적극 지원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상・하반기 산림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개최
-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기고, 기획보도 등을 통해 산림행정3.0 성과 적극 홍보

3)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 강화

o 산림청장 특강, 산림행정 3.0 책임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순회교육 실시

o 정부3.0의 핵심가치 내재화, 창의적인 사고 배양 및 정부3.0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을 통한 직원교육 강화

o 소속기관 산림행정3.0 책임관과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라. 추진일정

o 산림행정3.0 추진계획 수정・보완 : 2014. 1월

o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선도과제 선정 : 2014. 2월

o 산림행정3.0 자체평가 실시 : 2014. 10월

o 소속기관 자체 점검 : 2014. 6월, 10월

o 공공기관 산림행정3.0 평가 : 2014. 12월

o 산림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2014. 6월, 10월

o 산림청장 특강 : 2014. 1월, 순회교육 : 2014. 1~2월, 워크숍 : 2014. 5월

o 산림교육원의 산림행정3.0 교육 실시 : 연중

4. 산림행정의 효율성 향상

목 표

◇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
◇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등 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

가. 정책여건

o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정착 등 산림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문화 개선 등 변화관리 역량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행정3.0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창조적인 조직문화 형성
o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
o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산림정책의 현장 대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 및 조직 역량 제고

o 직원간 소통·교류·화합 및 산림정책 공유를 위한 다양한 '공감의 장' 마련
- 과장급, 사무관급, 주무관급 및 여직원 등 계층별·분야별 토론회 개최
- 창조적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개최

o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내실화
- 우수 연구모임 포상 및 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성과 전파 및 공유

o 창조역량과 아이디어 발상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부3.0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 창조교육(Shake Forest Up) 실시
- 3개월('13.12월~'14.2월) 시범 실시후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발전방안 마련

2)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 증진

o 「아이디어 공모」활성화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연중 상시 아이디어 접수·채택제 운영

o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공무원 제안 참여 확대 유도

- 국민·공무원 제안 발굴 및 자체심사위원회 운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o 비정상적인 관행의 철폐 등으로 산림행정 선진화

- 산림행정 전반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관행 발굴 및 신속한 개선 추진
- 비공식적인 절차,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산림ICT 등을 활용하여 산림현장의 낡은 업무처리방식을 디지털화
- 관례적인 대면회의 축소 및 영상회의 적극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o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추진

- 시기별로 국민이 관심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신문고 및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 산림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별로 적합한 정책토론(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 유형을 선택하여 실시

3)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산림행정 정책네트워크 강화

o ‘산림청정책자문위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행정연구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워크숍, 토론회, 현장 탐방 등 활성화

o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정례화(분기 1회)를 통해 지자체와 소통 및 연대 강화

4) 선제적 이슈 발굴·대응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o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현안점검회의」운영

- 현안점검회의 상정 안건을 월별 수요조사를 통해 내실화 도모

o 임업인,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현장특임관」운영 내실화

-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현장특임관」활동 우수사례 전파 등

라. 추진일정

o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 2014. 2월

o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o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o 자체 제안 심사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o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반기별 1회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목 표

◇ 국정·협업과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 강화 및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가. 정책여건

o 국정·협업과제의 목표 달성에 정부의 핵심역량이 결집되고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이에 맞춰 전면 개편

o 산림분야 평가체계도 국정기조에 맞게 국정·협업과제 및 정부3.0 과제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국정기조를 반영한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분야 국정·협업과제 목표 달성

o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제도 등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여 성과관리 수준향상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 구축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역할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정기조와 정책여건을 반영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이행

o 국정·협업과제 및 정부3.0과제의 주요 지표 및 내용 반영

o 과제별로 대표성이 크고 수준 높은 지표개발을 위해 산림정책평가위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확대

o 성과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점검결과(반기)를 주요정책 자체평가에 반영

2) 내실 있는 평가제도 운용 및 체계적 성과 관리 추진

<특정평가>

o ’13년 우수부처 성과관리 사례 및 평가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평가추진 방향 설정

o 과제선정 후 매월 차장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추진일정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관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에 철저히 대비

o 평가결과 과제별 ‘우수’ 이상 달성 시 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본청·소속기관 평가 시 가점 부여 및 포상금 지급 등

<주요정책 자체평가>

o「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사업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해 산림정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추진에 반영

o 자체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산림청 자체평가체계 개선방안」용역 (’13.12)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 개선·보완

o 평가결과는 연말 본청 사업부서 평가에 반영

<본청 · 소속기관 평가>

o「산림청 자체평가체계 개선방안」용역 결과 및 ’13년 평가 시 개선·보완 사항, 평가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보완

o 본청·소속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마련

- 우수 부서·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여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

  * 소속기관과 지자체의 포상규모를 균형에 맞게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인사가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안전행정부 주관)>

o 지자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의 성과제고 위주로 지표 개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o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수기관 차등 선발

- 우수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로 구분·평정하여 선정(시 4, 도 5)

- 우수 기초지자체는 안전행정부 실적자료를 근거로 전체 평가대상 시·군·구 (평가지표 3개미만 제외) 중 성적 우수기관 선정(시단위 5, 도단위 10)

o 시·도별 우수공무원을 선발(16명)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3)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제985호)」 개정 추진

- 위원 구성 및 연임 관련 규정 보완,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항 추가 등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정기회의(4월, 12월) 및 현장토론회(8~9월) 개최

o 평가위원의 산림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소위별 현장설명회 개최(8~10월 사업부서별 연 1회) 및 산림정책 자료 제공(사업부서별 연 2회 이상)

라. 추진일정

o 성과관리계획 수립 : 2014. 2~4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 : 2014. 4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2014. 4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규정 개정 등) : 2014. 4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현장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2014. 8~10월

o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2014. 7월, 10월

o 특정평가 추진실적 제출(국무조정실) : 2014. 7월, 12월

o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공개 및 포상 : 2014. 11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주요정책 자체평가) : 2014. 12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결과 포상 : 2015. 1월

6. 산림행정 조직관리

목 표

◇ 국정·협업과제의 수행 등 산림행정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
◇ 총액인건비제·유동정원제 등의 활용을 통해 조직운영의 유연성 제고

가. 정책여건

o 국정·협업과제의 원활한 수행이 국정운영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필요성 증대

o 산림복지, 산림재해 안전 등 우리 청 현안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 확보와 함께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나. 기본방향

o 국정·협업과제 수행 기구·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강

o 공통인력 감축, 유동정원제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을 통해 인력의 효율화 및 조직의 유연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구 조기 발족

o 산림교육문화과(신설), 산림휴양치유과(개편), 산림복지시설사업단(개편) 1월 중 출범

- 정원 9명 순증(4급 3, 5급 4, 6급 2, 7급 △1, 연구관 2, 연구사 △1)

o 울진산림항공관리소(신설), 자연휴양림 운영 인력 등은 2/4분기 중 직제 개편

- 정원 13명 순증(5급 1, 6급 1, 7급 4, 8급 5, 연구사 2)

2) 국정·협업과제 수행 기구·인력 지속 확보

o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설치 및 인력 보강

o 지방산림청 재해안전 기구 및 인력 확충

o 정원 등 신규업무 및 중장기 정책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소요인력 적극 확보

3) 유동정원 지정·운영 및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

o 신규 행정수요 등에 탄력적 대처를 위하여 유동정원제 지속 운영

* '13년 유동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 : 지정 31명, 배정 29명

o 의도적 절감재원 마련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각각 별도 수립 시행

4) 공통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정보화 등 행정여건 변화, 조직 운영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 조직의 권역별 관리체계 등 마련

o 감축인력은 국정·협업과제 등 수행인력으로 재배치

5) 정부위원회 운영방침에 맞게 우리 청 소속 위원회 운영 관리

o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13년 27.0%에서 '14년에는 29.3%로 확대

o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라. 추진일정

o 2014년 소요정원 반영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2014. 1월, 4월

o 2015년 소요정원 요구 및 중기('14~'18년) 인력운영 계획 마련

- 2014년「정부조직관리지침」통보(본청 및 소속기관) : 2014. 2월
- 2015년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 계획 제출(안행부) : 2014. 4월말

o 2014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 : 2014. 4월말

o 2014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통보 : 2014. 3월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획 제출(안행부) : 2014. 4월말

o 2014년 유동정원제 운영계획 수립·시행 : 2014. 5월

o 소속 정부위원회 운영 관리 : 연중

7.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목 표

◇ 차질 없는 입법 추진 및 법령안 협의에 효율적 대응
◇ 법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가. 정책여건

o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및 국민행복을 위하여 법령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o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로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관련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입법계획에 반영하고 적기 추진

o 의원입법 및 타 부처 법령 협의에 적극적인 대처

다. 세부추진계획

1)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적기 추진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o 정책여건 변화 및 규제개혁 등의 입법수요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

- 정부입법(3건)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o 법률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법률안 제·개정시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

2) 의원발의 법률안 및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내실화

o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산림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률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o 의견조회 요청된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주요내용을 요약·통보하는 등 타 부처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

* 법령의견조회/공문생산 : ('12) 2,962/441건 ⇒ ('13.12.22 현재) 4,724/557건

o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제시 및 제·개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

3) 산림관계 법률의 내용분석을 통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법령정비협의회 내실화 추진

o 산림관계 법률의 제·개정 및 분법에 따른 운영상 상충 및 미비사항 분석

o 정부·의원입법의 경우 법령정비협의회를 거처 정부의견을 확정하고, 특히 의원입법은 의원실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부이견을 최소화

- 의원실 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법률안 검토 요청시 법무감사담당관실에도 통보

4) 법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o 입안부터 법령안 공포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 및 작성절차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

o 법률용어, 법령안 작성요령, 행정법 및 민사법 관련 사항 등

5) 행정규칙(훈령·예규 등) 부패영향 평가 실시 및 기한 재검토

o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내부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o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 **재검토 기한 준수**

6)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특채(변호사) 및 전문적인 국가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법무관 추가배치(지방산림청) 노력

라. 추진일정

o 2014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 작성제출 : 2013. 11월

o 산림관계 법령집 및 훈령·예규집 제작 : 2014. 9월

o 타 부처 법령협의 및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 연중

o 행정규칙 부패영향 평가 실시 : 연중

8.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

목 표

◇ 산림행정 3.0 및 국민 중심의 규제정비 추진

가. 정책여건

o 정부 3.0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적합한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경제 활성화 필요

o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화

o 최근 산림분야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규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된 규제 수 : ('11) 78개 → ('12) 105개 → ('13. 11월) 132개

나. 기본방향

o 산림행정 3.0 추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규제개선의 연속성 유지

* Negative 규제방식 확대, 재검토형 일몰규제 법제화, 자치단체 조례정비, 인증제도 중복해소 등

o 규제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홍보 실시

o 자체 규제심사를 내실화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는 억제하고 질 좋은 규제를 생산·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행정 3.0 추진과 국민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o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소통·협업 활성화, 임산업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강화 등에 필요한 개선과제 발굴로 산림행정 3.0 추진 지원

o 국정과제 이행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민원·간담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 적극 발굴

- 산림분야 규제개선 민·관 협업체, 민원보호담당관, 현장특임관, 규제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 수렴(규제개선과제은행 운영)

o 사회적으로 이슈(갑·을 관계 개선, 수도권 규제완화 등)가 되는 분야를 산림 분야에 접목하여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민간분야에 확산 유도

* 규제개선과제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호등제(빨·노·초) 운영

2)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 차질 없이 추진

o 규제개선 과제로 기선정한 '손톱 밑 가시뽑기 과제' 등은 상반기 추진 완료

- (네거티브규제방식 확대) 기업경영림 규제완화, 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등
- (손톱 밑 가시뽑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대나무집성재 규격기준 마련
- (인증제도 중복해소) 중복시험 상호인정, 인증마크 통합 추진

o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3.8.17)에 따른 재검토형 일몰규제 법제화 추진

o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8개 지자체)

3)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 홍보 강화

o 규제개선 사례별 홍보 콘텐츠, 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고 본청·소속기관·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홍보 체계 구축

o 일반국민, 임업인, 임산업계 등으로 구분하여 (언론)타킷형 홍보 실시

o 현장밀착형 입소문 홍보, 쌍방향 미디어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실시간 홍보, 유관기관·단체 등과 매체협업 홍보 실시

4) 규제심사 강화로 질 좋은 규제 생산·관리

o 내실 있는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

* 신설·강화규제는 일몰제 및 Negative규제방식 적용 원칙, 철회·개선권고율 20%이상 유지

o 고시·공고·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o 신설·강화 규제의 배경·원인, 비용·편익분석, 이해관계자 협의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실하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라. 추진일정

o '14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 시달 : 2014. 1월

o 규제개선 홍보(본청, 지방청) : 규제개선과제 발굴, 법령 입법예고 및 제·개정시

o 규제개선 현장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 분기별 1회

o 산림교육원 규제개선과정 교육 추진 : 2014. 5월, 9월

o '14년도 규제개선 만족도 및 성과 조사 용역 : 2014. 10~11월

9. 민원만족도 제고

목 표

◇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 민원행정 제도 개선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가. 정책여건

o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

o 민원처리 환경변화에 대한 각종 법과 제도들이 즉시 대응하지 못함

o 공장, 주택 등의 산지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수용이 어려운 국민 요구 증대

나. 기본방향

o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o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중점 개선으로 국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o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

다. 세부추진계획

1) 민원보호담당관 확대·운영으로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o 산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 및 불만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충분한 상담을 위해 민원보호담당관을 2명으로 확대

- 운영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1명), 산지관리과(1명)

o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내용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및 민원상담 강화

- 민원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 고충민원 현황 파악 및 심층상담

2) 민원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o 분기별 고충 및 빈발민원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o 고질민원 등 민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 기획조정관이 주재, 각 실·국장,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산림청 민원응대 매뉴얼(방문·전화민원)을 제작하여 고품격의 친절서비스 제공

o 민원대표번호(1588-3249) 문자상담시스템 운영으로 통화대기 민원인의 불편 해소

o 2개 부서(기관)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o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비한 전화녹음시스템 시범 운영

3)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강화, 민원처리실태 분석 및 환류

o 매월 접수・처리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성실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실시

o 매주 처리된 민원에 대한 불만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만족도 부진한 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담당자 영상회의 실시

o 매월 민원만족도에 응답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민원인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

o 개인별 민원처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일일 처리기간 만료예고 등 미흡 부분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시정조치

4)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

o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친절 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산림행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성 제고
  - 조사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5) 직원 및 신규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강화

o 고객만족 서비스 기관별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2~3월)

o 산림교육원 신임실무자과정에 '민원만족도 제고방안' 교과 편성(2시간)

6) 갈등관리 업무강화로 갈등예방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o 갈등관리과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추진 단계별 대응

o 갈등과제(핵심·일반)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 활성화

라. 추진일정

o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실태 분석 : 매월

o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주간 분석 : 매주

o 고객만족(CS) 서비스 교육 : 2014. 2~3월

o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4. 3월

o 전화친절도 조사 : 2014. 6월・10월

10. 산림행정의 투명성 및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

목 표

◇ 산림정책 ·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및 투명성 확보
◇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로 도와주는 소통감사 실시

가. 정책여건

o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o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o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신뢰받는 성장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o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문제점 발굴 · 개선으로 도와주는 "소통감사"
o 예산집행의 낭비 및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의 "생산적 감사"
o 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우수기관 · 공무원 발굴 · 포상 등의 "사기진작 감사"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체감사 내실화 및 상시 감사활동 실시

o 감사주기 변경(3년→2년) 및 상시 감사활동 강화
- 적정한 긴장감 유지를 위해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 무사안일을 불식시키기 위해 취약분야 · 기관에 대한 상시 · 특정감사 추진

o 자체감사의 효율적 수행(17회, 47기관)
- 종합감사(6회) : 남부지방산림청(6), 서부지방산림청(6), 산림항공본부(9), 국립산림과학원(4), 국립산림품종센터(1), 녹색사업단(1)
- 특정감사(2회) : 산림조합중앙회(1), 임산물유통센터 등(8) 지역조합(4)
- 재무감사(1회) : 민간단체(협회)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4)
- 복무감사(5회) : 설명절, 선거철, 하계휴가, 추석명절, 연말연시
- 합동감사(3회) : 안행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충남, 경북, 경남 예정)

o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문제점 발굴·개선으로 도와주는 소통감사 실시

- 수감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현장 업무리스크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o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활동 강화

- 재정적·행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 취약분야 및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o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공직윤리 위반사례, 관행적 부조리, 잘못된 답습 사례 및 반복 지적사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실시로 재발 방지

o 정부합동감사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적정 이행 여부 확보

- 공·사유림의 산림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 발굴 개선
- 산지전용, 조림, 숲가꾸기 및 산지전용 등의 보조사업 이행실태 점검

2) 전문성 강화 및 감사기법 습득

o 감사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기법 습득 및 분야별 전문가 감사 참여

- 감사담당자의 감사관련 직무교육 의무 이수(40시간/년)
- 국립산림과학원 등 연구 분야 감사에 전문가 교차 참여로 효율성 제고

o 우리청과 소속 단체와의 민·관 감사협의회 확대 운영

- 기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업무 담당자에서 한국임업진흥원과 녹색사업단 감사담당자까지 확대 운영
- 구성 : 산림청 감사업무담당,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조합감사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감사담당, 녹색사업단 감사역

o 산림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사관(2명) 운영 및 활용 강화

- 산림분야 비리·불만사항 제보 및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
- 수감기관 대상 청렴 및 공직윤리 특강 등

3)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공무원 및 기관 발굴·포상

o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및 기관(부서)

o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운영

라. 추진일정

o 2014년 자체감사 계획 등 수립 : 2014. 1분기

o 산림청 감사규정 개정 : 2014. 상반기

o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2014. 상반기

o 민·관 감사협의회 운영 : 2014. 상·하반기

o 자체감사 결과 우수·모범공무원 발굴·포상 : 연중

11.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

목 표

◇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청렴도 제고
◇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가. 정책여건

o 국정 기조에 따른 반부패·기강해이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o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

나. 기본방향

o 청렴교육 및 청렴도 평가로 청렴문화 정착
o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감찰팀 운영
o 취약분야 부패요인 및 불합리한 관행·제도 발굴·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청렴도 제고

o 반부패 청렴평가 실시 및 환류 기능 강화
-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하반기)
- 소속기관에 대한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실시(하반기)
-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자율적 관행·제도 개선 추진
- 민원분야 청렴도 조사를 위한 Clean-call 설문지 발송 및 모니터링(연중)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온라인 자가 측정 및 분석(전직원, 2회)

o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청렴생활 정착을 위한 '신고/고충상담'방 운영
-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청탁등록센터' 운영
- 금품 향응제공,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 음성적 비리에 대한 제보 및 고충 상담을 위한 무기명 '고충·비리 상담·신고방'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력 향상 등을 위한 '행동강령 상담센터' 운영

o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신규임용자 등 청렴교육 이수제도 지속적 실시(7시간 의무적 이수)
- 산림교육원의 청렴교육 강화(10일이상 교육과정 청렴교육 1시간 이상 반영)

o 내부 인트라넷(e-푸른샘)에 '청렴 팝업창'을 게시하여 청렴 생활 정착

- e-푸른샘 로그인 시 관행적 공직비리 근절과 청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등에 관한 문구 게시

o 청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청렴산림공무원상 포상(반기)

- 청렴생활, 반부패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청렴공무원 발굴·시상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o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연중, 취약시기 직무감찰 실시

- 공직감찰팀 상시 운영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
- 총선 전·후,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금품・향응수수 등 개인 비위공직자 발본색원 및 엄정 처벌
-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 칸막이,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문제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전개하고 언론보도, 외부기관 통보사항, 민원내용 등 모니터링 강화

o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공직자 비위 적발사항에 대하여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정 처벌
- 개인 비리자에 대하여 패널티 부여(성과상여금 하향 등)
- 개인비리 발생기관은 소속기관 업무평가에 반영
- 외부 비위통보자에 대한 비위사건 처리기준 이행실태 모니터링

o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 개선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감사활동 강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개선 추진

라. 추진일정

o 2014년 부패방지・공직기강확립 계획 등 수립 : 2014. 1분기

o 내부인트라넷 '청렴 팝업창' 운영 : 연중

o 공직감찰팀 운영 및 취약분야·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 연중

o 산림청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측정 : 2014. 상・하반기

o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 : 2014. 하반기

o 소속기관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실시 : 2014. 하반기

o 청렴산림공무원 발굴·포상 : 2014. 상・하반기

12. 수요자 맞춤형 ‘창조적 산림행정’ 구현

목 표

◇ 산림행정3.0 비전 달성을 선도하는 산림ICT서비스 구축
◇ 디지털 산림행정 선진화로 ‘창조적 국유림경영’ 실현
◇ 일 잘하는 유능한 산림청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필요

- 데이터 개방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가시적인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업무 추진

o 새 정부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일환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폭증하는 데이터의 관리개선방안 마련 및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 추진

o 3.20 및 6.25 사이버 테러 발생과 IT인프라 확대 등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관리체계 내실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행정 3.0에 부응하는 ‘공유’, ‘개방’, ‘소통’, ‘협력’ 기반 마련

o 수요자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포털서비스 구현

o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활용 촉진

o ICT 기반의 국유림경영업무 선진화와 모바일 기반의 창조적 현장업무 확산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3.0 기반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대국민 포털시스템 소통·개방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 강화

o 공간정보 플랫폼 산림공간정보(FGIS)로 서비스 일원화

-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서 분산하여 서비스 중인 산림정보를 산림공간정보(FGIS)로 일원화하여 서비스

o 국가생물종정보시스템 2단계 추진

- 곤충정보의 주요정보(곤충명, 채취자, 문헌 정보)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국가표준곤충목록서비스 구축
- 생물다양성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생물수요 요구 환경에 효율적이며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연구결과 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o 산림휴양 서비스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 수립

- 국·공·사유림 자연휴양림예약 통합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자자체, 민간에서 서비스 중인 각종 산림휴양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주요기관 협의 진행

2) ICT기반의 국유림경영업무(경영분석・평가) 고도화(2차) 추진

o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국유림경영계획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국유림경영평가체계 개선과 연간계획제도 정비, 산림통계연계방안 도출 등 공・사유림경영계획 제도의 포괄적 수용을 위한 BPR 추진
-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현황 파악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영계획체계 구축 기반 마련

o 관리소 직원의 업무 부담감이 최소화 되도록 경영분석 및 평가기능 구축

- 분석체계개선을 반영해 실시간 분석기능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기능을 구축
- 경영업무담당자의 평가준비업무 및 평가프로세스를 온라인화
-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국유림경영 개선을 추진

o 국유림경영DB 현행화 및 공간정보 기반 보완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 41개 경영계획구에 대한 경영정보DB 보완 및 임소반도 시범정비 사업 추진
- 자료 현행화 미비로 인한 시스템 사용률 저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마련 및 서비스 구축

o 산림조사 지원체계의 고도화

- 사업이력정보, 임소반도 등 스마트야장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산림조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조사 품질 향상
- 산림자원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3)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민간개방 추진

o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등 산림자원업무 민간 확대 방안 수립

- 산림사업 설계를 위한 산림조사야장 정보 등록 및 표준화된 실시설계서 생성 및 검증 기능 구현
- 민유림 사업을 위해 지번기준 설계 및 이력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산림자원통합 및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서버 구축
- 공간정보파일 및 관련 파일 등록 기능과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o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사업종별 지침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기능 현행화
- 사용자 편의 및 시스템 활용 확대를 위한 연계 기능 및 편의기능 개선

o 교육, 정기세미나, 워크숍, 전담 유지보수, 홍보 활동 등 변화관리 지원

- 운영 및 기능 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담운영팀 구성·활동

4) 모바일 기반의 창조적 현장업무 확산 및 활성화

o 민간·공공 산림 현장업무 표준화 지원 및 업무효율 제고

- 스마트야장, 산림내비게이션 개방·공유를 통한 정부 3.0 실천
  - ·민간 활용을 위한 산림조사, 표준지조사, 매목조사 등 스마트야장 개방
  - ·산림내비게이션 플랫폼, 국가지점번호 연계 OPEN API 개방

o 모바일 기반 현장업무시스템의 사용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제고

- 사업지조사, 피해목조사, 국유재산경계조사, 임도시설구조물조사 추가
- 스마트 항공사진 및 산림내비게이션 기능 고도화
  - ·GPS 로그 개선, 아이콘 사용자 기능, 2013년 항공사진 및 주제도 제공
  - ·음성인식 연계, 다중 목적지검색, 일반도로 안내, 길안내 학습
- 음성인식 기반의 현장업무 적용 확대를 통한 1인 업무체계 구축
  - ·잡음제거, 음성인식 속도 개선, 음성학습 기능, 블루투스 기능 추가
- 모바일관리 PC용 프로그램 신규 구축 등 사용 편의성 제고
  - ·원-스톱 업·다운로드, 자동 버전관리, OS자동 패치 등 동기화시스템 구축
- 산림생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생산재검척(사진촬영방식) 방식을 검증하고 활용성 강화를 위한 고도화

o 스마트기기 보급 추가 지원 및 모바일 기반 현장업무 활성화 지원

- 노후 스마트기기 교체와 신규 및 관리직 지원 확대(100대)
  * 기 보급 : 669대('11년 45대, '12년 164대, '13년 460대)
- 모바일 기반 현장업무 활용능력 제고 및 활성화 지원
  · 현장업무 경진대회 2회(5월), 모바일 활용 아이디어 대상(8월)

5) 산림 IT 거버넌스 측면의 경영관리업무 질적 고도화

o 정보화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성과평가 등 시행계획의 적기 수행
-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등 정보화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현
- 사업투자관리, 발주계약관리, 사업수행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경영구조관리, 공통관리 등의 업무 개선

o 다양한 사업산출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산출물 점검기능 구현
- 산림청 다수의 정보화 사업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산출물을 통합관리하고 주요 점검사항을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구현

o 대용량 비정형데이터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저장소 기능고도화

6) 공공데이터 16개 DB 개방 및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o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계획에 따른 16개 DB 개방
- 산림과학연구정보, 민속식물 등을 16개 DB를 단계적으로 개방
- 트렌드, 국민관심 분야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방 데이터·정보 변경 및 다양화 등 능동적인 개방 추진
-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개방계획 검토 및 중요 DB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o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등 미개방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확보 노력을 통해 민간이 활용 가능한 개방 정보를 확대
- 디지털 워터마킹 등 전문 솔루션 도입을 통해 개방정보를 확대

o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응대 추진
- 개방 홈페이지(data.forest.go.kr)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및 개방포털(data.go.kr) 연계·협력 추진
-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공유 채널 확대(홈페이지, 유선, 관계 부처 간 협력 등)
- 보유데이터의 품질관리체계 마련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 추진

- 산림IT 컨퍼런스, 국토 엑스포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성과창출 유도
- 스마트 항공사진 및 산림내비게이션 기능 고도화
  · GPS 로그 개선, 아이콘 사용자 기능, 2013년 항공사진 및 주제도 제공
  · 음성인식 연계, 다중 목적지검색, 일반도로 안내, 길안내 학습

7) 협업 및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지식포털시스템 개편

o 내·외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합한 업무포털 서비스 구축
- 재해정보, 산림통계, 산림일자리 등 산림관련 정보를 지식포털시스템 내에서 연계하여 통합 업무포털 구축
- 인터넷망에서도 기본적인 업무(메일, 검색 등)가 가능하도록 인터넷망 지식포털시스템 구축

o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직위·직급·업무에 따라 개인화 서비스 지원
- 메인의 구조를 각 업무에 맞추어 구현
  * 예) 산림정책과 메인 : 산림통계, 산림관계법령, 일자리 등이 표출
- 구성된 메인은 각 개인이 변경(드래그 & 드랍형태)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o 국회운영관리, 산림일자리관리, 일정관리 등 업무시 필요한 신규 서버 구축

o 기존 지식관리, 커뮤니티 등 미활용 기능을 삭제 또는 통합, 재구축

8)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o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의 산림정보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웹 접근성 강화

o 산림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강화
-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관리(Service Layer Manage- ment) 적용
- 유지보수 지원범위를 모바일서비스, 소속기관 스마트기기까지 확대

o 네트워크 증속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2차 소속기관 집선화 추진
- 대상 : 총 17개 기관(산림항공본부 소속 9개 산림항공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1개 부, 3개 연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3개 지소)

9) 과학적 산림행정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o 순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시스템 2종(대표포털,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추진

o 산림교육원 전산교육장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오픈

10)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소속기관 IT인프라 보안 강화

o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사이버안전센터와 단계적인 관제 협조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침해시도 차단 등 일련의 침해사고 보고 체계 마련, 침해신고 의무화 추진

o 비인가 무선네트워크 사용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무선네트워크 취약점 및 위협에 대응하고 청내 정보자산 유출경로 차단과 무선AP 및 접속 단말기에 대한 트래픽 모니터링, 분석, 탐지 예방체계 구축

o 내·외부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및 보안의식 강화

- 인터넷망 상용메일 차단으로 해킹메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침해사고 최소화
- 외부 용역사업 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및 보안 점검을 통한 보안관리 강화
- 노후화된 보안장비 교체(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서비스 제공
- 전 직원 대상 연 2회 이상 보안교육 및 자체 사이버 위기 모의훈련 실시(7월중)

o 소속기관 네트워크·보안장비 통합 강화 및 단계적 망분리 추진

- 통합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솔루션 운영을 통한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 등 망 미분리 기관의 단계적 망분리 추진을 통해 소속기관 보안 강화

11)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

o 정부3.0 개방·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호보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문서보안(DRM)시스템 도입을 통한 유출 방지
- 개인정보 보호 유·노출 등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담당자 간 비상연락망 구축

o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 웹사이트 회원DB 통합에 따른 관련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o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7월)

-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의 개인정보 담당자, 취급자 등을 중심으로 모의훈련 실시
-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현장출동, 원인분석과 피해사고 차단 등 일련의 피해확산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신고 의무화 추진

o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급과 이용 확대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

- 개인정보 보유파일의 접근기록을 생성 후 6개월간 보관・관리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시 CCTV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영상정보 관리책임관 및 취급자에 대해 운영기준 교육 실시

o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처리 강화

- 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관리 추진
- 처리정보를 타 기관(부서)에 제공 시 타 기관(부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실시

라. 추진일정

o 제1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중 실행계획 수정 : 2014. 1월

-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2015~2019) 수립・공포 : 2014. 12월

o 2015년 주요 시행계획(안) 마련 : 2014. 4월

- 정보화시행계획, 성과시행계획 등

o 16개 DB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 추진 : ~ 2014. 11월

o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사업

- 정보화사업 최종예산 및 사업범위 확정 : 2013. 12월
-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심의 : 2013. 12월
- 통합정보화 사업발주 : 2014. 1월
- 사업관리(착수, 워크숍, 중간보고, 완료보고) : 2014. 3~12월
- 최종검수 및 인수 : 2014. 12월

o 2014년 정보화예산 확보

- 중기사업계획 마련 : 2014. 1월
- 정보화예산 확보 : 2015. 2~9월

o 노후 전산장비 교체 : 2014. 5월

o 소속기관 네트워크 집선화 추진 : 2014. 5월~8월

o 정보화 운영·유지보수

- 2014년 통합운영·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 : 2013. 12월
- 2014년 통합운영·유지보수 실행 : 2014. 1~12월

o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산림교육원 전산교육장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2014. 2월
- 정보시스템(대표포털,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 등) 전환 : 2014. 3~12월

o 대표포털 개편 및 운영

- 신규 대표포털 시스템 오픈 : 2014. 2월
-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 추진 : 2014. 5월
- 신규 콘텐츠 추가 및 내용 정비 : 2014. 1~12월

o 정보화 교육

- 산림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 2014. 7월
- 정보화 역량 진단 : 2014. 7~8월
- Forest IT포럼 : 매월
- 정보기술세미나 : 연 3회
- 정보화 전문 교육 : 연중

o 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화 기반확충

- 내부 정보보호 지침 개정 등 체계마련 : 2014. 3월
-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 : 2014. 4월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 2014. 6월
- 통합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솔루션 구축 : 2014. 9월
-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 2014. 3월, 8월
-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 : 2014. 5월
-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 2014. 7월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운영 : 매월

o 개인정보 보호

- 2013년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2014. 2월
- 2015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마련 : 2014. 3월
- 종이문서 관리 방안 마련 : 2014. 3월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 2014. 2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상반기
-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 2014. 6~8월
-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실시 : 2014. 7월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12~'13) 이행 점검 : 2014. 9월

13. 산림공간정보기반의 의사지원서비스 마련

목 표

◇ 산림공간정보 분석서비스를 통한 과학적인 산림행정 지원
◇ 산림공간정보의 공유·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편

가. 정책여건

o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이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행정지원을 위해 산림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의사결정서비스 마련 필요

o 정부3.0 추진으로 산림공간정보의 개방·공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공공·민간 정보와 융합된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요구

나. 기본방향

o 국가 산림공간정보체계 추진 계획('13.5월)에 맞춰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

-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종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산림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 분석 서비스를 마련

o 산림입지토양도 및 과거 촬영한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DB를 지속적으로 구축

o 정부3.0에 맞춰 산림공간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한 산림공간정보의 개방・공유

다. 세부추진계획

1)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위한 산림공간정보포털서비스 구현

o 산림재해·생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포털서비스 구현

- 기상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점의 산림재해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산불·산사태·병해충의 과거 정보와 기상정보의 연계 분석서비스 지원

  * 산림병해충과의 산림병해충 피해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피해지, 소방방재청의 산사태 피해지 정보를 일괄 구축

o 항공영상 정보의 시계열 서비스 및 추세분석 기능 마련

-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급한 항공영상을 연차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
- 북한산림영상 및 인도네시아 조림지에 대한 모니터링서비스 구축

o 산림공간정보 온라인 현행화서비스 구축

- 국유림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인별 운영하던 산림공간정책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

  * 개인별 PC프로그램(Stand Alone) 방식을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개선

- 공간정보 이력관리 기능을 함께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2) 산림공간DB 확대·통합 구축

o 축척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

- 대축척 산림토양정보 구축을 통해 맞춤형조림지도 등에 조기 활용
  · ('08~'13) 195만ha → ('14) 46만ha → ('15~'17) 347만ha(사업완료)
- 사업관리, 현장검수, 외부기관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을 통한 산림입지토양도 품질관리 강화
- 추진체계 : 산림청(총괄), 한국임업진흥원(주관)
- 대상지역 : 인구 20만 이상 시·군(예산 : 31억원)

o 탄소흡수원 확충 활동 검증을 위한 산림항공사진 DB 구축

- 1972~1980 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 6만매 중 2만매에 대한 디지털 사진 제작

  * '90년 전후 우리 산림에 대한 정사항공사진(692 도엽) DB 구축을 완료('12)하여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재조림 활동 검증 기반 구축. '12년 2만매 스캔 완료

☞ 항공사진 DB구축의 전문성 확보 및 무결성 DB구축을 위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간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

o 산림변화에 따른 산림분포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도 현행화 사업 추진

- 전국의 조림, 산지전용 및 산불 등 자연·인위적 산림변화를 반영하는 현행화 사업을 통한 임상도 정확성 제고

o 백두대간정맥자원실태조사, 국가지점번호, 산불확산예측지도, 소나무재선충 위치정보 등을 신규 구축하여 산림재해·생태 의사결정서비스에 활용

- 국가산림자원조사(NFI), 임상도, 항공사진 등 개별적인 대국민서비스로 운영되는 정보를 업무용서비스로 통합 구성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과업내용에 포함

o 위성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타부처 동향 등 검토 활성화

- 위성영상을 수급하여 해외조림 등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
  * 인도네시아, 아랄해 조림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지구관측그룹 활동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산림 분야 서비스 개선안 마련

3) 산림공간정보의 신속한 운영지원 및 교류 강화

o 산림GIS · GPS 활용 장비확충

- 소속기관의 활용기반 마련(18대, 223백만원)
  · GIS용 PC(8대), GPS 장비(8대), 칼라플로터(2대) 등

o 산림 GIS 및 GPS 시스템 장비유지 관리

- 산림GIS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의 기능 유지
  · 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맞춤형 GPS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교체, 수리, 교육 등)을 통한 장비 성능 최적화
  · 현지순회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Help Desk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o '2014년 전국 Forest IT 컨퍼런스' 개최

- 산림 정보기술의 아이디어 발굴, 최신 산림 IT 기술 전파 및 수요 창출
  * FGIS, 모바일 등 IT기술의 산림분야 활용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신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산림분야 정보화 수준향상 및 발전방향 모색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학회 등과 연계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36백만원)

o 공간정보(GIS) 관련 정책 · 기술 교류 강화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강화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주요정책 심의 등
-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GIS/RS자료 확보 및 현업 활용 지원
- 국가공간정보세미나 참가, 부처별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 스마트국토엑스포(국토교통부), 영상정보연례회의 · 워크숍(항공우주연구원) 등

o 산림공간정보 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 교육 추진

- 산림교육원 전문 과정(산림공간정보시스템반) 운영(5일, 2회 70명)
- 소속기관별 자체활용교육 지원(산림공간정보 보안교육 등 : 수시)

o '2014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참가 및 산림공간정보관 운영

-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 산림공간정보 운영 사례 등 전략적 홍보 추진

라. 추진일정

o 소속기관 GIS, GPS 장비 확충 : 2014. 1~3월

o 소속기관 GIS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 2014. 4~5월

o 2014년 전국 Forest IT 컨퍼런스 개최 : 2014. 9월

o 2014년 스마트국토엑스포 대회 참가(전시부스 운영) : 2014. 11월

o 임상도 현행화 사업 추진 : 2014. 1~11월

o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 2014. 1~12월

* 산림공간정보 기능개선 및 포털서비스 마련

o 산림입지토양도 확대제작사업 추진 : 2014. 1~11월

o 위성영상 DB구축사업 추진 : 2014. 1~11월

o 산림항공사진 DB구축사업 추진 : 2014. 1~11월

o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및 DB갱신 : 2014. 2~12월

o 2014년 GPS장비 유지보수 추진(순회 유지보수 및 교육) : 분기별

o 산림GIS교육 실시(정규 2회, 전문위탁 4회, 자체-수시) : 분기별

o 산림GIS 홍보 및 타 부처, 기관 간 기술교류 추진 : 수시

o 산림GIS 자료 확보·유통 및 갱신 : 수시

o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관련부서 배포 : 수시

14. 산림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성 증진

목 표

◇ 통계생산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편으로 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성 증진

가. 정책여건

o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수요 증가로 통계생산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조

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약체결시 상대국의 통계생산과정 관심 대두

o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농림수산통계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o 고객 위주의 맞춤형 이용 및 활용의 편리성 강조

나. 기본방향

o 정책수용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임업통계의 개발 및 발전

o 임산물생산조사의 조사체계 개편에 의한 통계조사 및 생산

o 임산물의 대외개방 협상을 위한 임업통계의 신뢰성 증진

o 수용자 중심의 산림·임업통계 서비스 매체 개발

o 측정・검증・보고가 가능한 온실가스 통계자료 지속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생산조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o 주요 5개 임산물(밤, 호두, 대추, 떫은 감, 표고버섯) 표본조사 도입

- 표본오차가 적고 신뢰수준이 높은 선진화된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표본조사
- 통계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로 FTA 대비 주요임산물 통계 경쟁력 확보

o 임산물생산조사 133개 품목에 대한 도급조사 체계 도입

- 산림청은 예산지원하고 각 시・도에서는 통계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
- 각종통계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해당 거주지에서 채용

2)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속 추진

o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확산

- '13년 대구・강원・전북 등 40개 시·군·구가 완료되고 '14년 전남, 경북으로 확산 구축
-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새올시스템을 통한 산림행정활동 DB 확보
- 조림, 숲가꾸기 등 설계·감리지침서 내 경영활동 DB보고 의무화
- 사업부서 월간·분기 및 각종 실적보고를 동 시스템으로 대체

o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패트롤 운영 추진

- '03~'11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림경영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DB 구축 패트롤 운영
- 전국 17개 시·도 각 1개단 총 28명을 배치하여 해당 시·군·구를 순회하며 현행화 작업

o 사유림경영정보 고도화 시스템 구축 운영

- 산림 경영률 계산 등 온실가스통계 및 경영정보의 필지별 지적공간정보 주제도를 구축하여 연도별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 검색

3)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 개발

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및 피해보전, 손실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통계 생산

- FTA 민감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임산물표준소득조사 통계 개발

o 조림, 목재 생산 등 산림자원정책 지원에 필요한 통계 발굴 추진

o 탄소흡수원법, 목재이용법 등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계 발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통계의 발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통계의 발굴

4) 임업통계조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o 임업통계조사의 통합 위탁 및 발주

-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통계감리 및 임산물 생산 표본조사를 통합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및 발주

o 이월 방지를 위해 임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와 분석업무를 분리 계약

- 임업통계조사 예산의 이월 방지를 위해 임업통계조사·분석업무 분리 추진
- '14년 1월~12월 현장실사는 2014년 임업통계조사 위탁 계약
- '14년 조사된 통계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15년 1월 수의계약

o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표본임가를 추출하여 임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이탈 방지 및 표본임가 조사 피로도 방지

-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임가경제조사 및 임산물생산비 조사 등을 위해 2,500 신규 표본임가를 구축하여 조사

o 표본 모집단 조사인 임산물생산 재배실태조사 보정조사 실시

- 기존 모집단 조사에서 누락 임가를 조사하여 표본모집단 보정 추진
- 전국 시·군·구를 통해 보정작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14년 표본조사에 반영하여 표본통계 산출

5) 산림 및 임업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o 통계청 2013 국가산림자원조사 품질진단 개선과제 후속조치 추진

-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 및 보완

o 산림청 승인통계 10종 정기 및 자체품질진단 지속 추진

* 2013년부터 자체품질진단 평가제도 도입 시행(통계청)

o 산림기본통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지속 강화

- 산림전용, 조림 등 산림변화정보 등의 행정자료 모니터링 추진

* 퇴직공무원, 조사본부 조사원, 진흥원의 연구원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o 감리 전문기관 등의 외부감리 활성화 및 내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외부감리기관의 통계감리를 통해 품질 진단 및 개선
- 임업통계조사 중간・최종보고회시 통계청 전문가 참석 정례화

o 임산물 생산자 및 산주 현황 분석을 위한 법령 개정 의뢰

-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생산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농가소득안정추진단)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확보를 위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산림경영소득과 소관)

o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안) 마련

-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국제기구/협약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평가항목 도출

o 산림・임업통계 생산을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 임업통계담당자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 강화
- 산림교육원 산림통계 강의 횟수 및 시간 확대 추진

  * '13년 산림통계 강의를 개설하여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6) 수요자 중심의 산림・임업통계 대국민 서비스 확대

o 시의성과 정확성을 갖춘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계정보 제공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에서 서비스되는 산림・임업통계를 지체 없이 현행화
- 간추린 임업통계, 임업통계연보, 기타 조사 결과보고서를 학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공 범위를 확대

o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 확산 지속 개발하여 통계정보의 이용성·편리성 제고

- 간추린 통계 모바일 웹서비스 강화 및 확대
- 정보이용자의 정보 활용 특성을 분석하여 간행물, 전자책, 모바일 등 제공 매체 개발

o 고객 위주의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산림통계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위해 각종 통계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

라. 추진일정

o 임업통계조사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및 통합 발주 : 2013. 11～12월

o 2014년 임업통계조사(표본조사 포함) 추진 : 2014. 1～12월

o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사업 추진 : 2014. 1～12월

o 2014년 임업통계담당자 교육실시 : 2014. 1～2월

o 국가산림자원조사 지원통합시스템 운영 : 2014. 1～12월

o 임산물재배실태조사 지자체 보정 조사 추진 : 2013. 12. ~ 2014. 1월

o 2014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보고 : 2014. 3월
o 2013년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표 : 2014. 4월
o 201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표 : 2014. 5월
o 2013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공표 : 2014. 7월
o 2014년 간추린 임업통계 발간 : 2014. 8월
o 2014년 임업통계연보(제43호) 발간 : 2014. 9월
o 2013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공표 : 2014. 10월
o 2014년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14. 12월
o 임업통계조사 표본 임가 간담회 : 2014. 2～12월
o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 현장교육 및 설명회 : 2014. 2～12월

15. 정책홍보

목 표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선제적·우호적 이슈 관리
◇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한 산림정책의 인지도·선호도 제고
◇ 온-오프라인 매체 간 융합으로 홍보효과 거양

가. 홍보여건

o **(정책)** 공약과제, 정부3.0 등 국정과제는 지속적으로 성과 요구

o **(사회)** 지자체 선거에 편승하여 부정적 이슈 발생 우려

o **(방송)** 지상파 중심에서 종편, IPTV 등 쌍방향 및 채널 다변화

o **(신문)** 일회성 사건 기사에서 기획, 탐사 등 집중 보도로 전환

o **(독자)** 정보통신기기 급성장으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정보수집 증가

나. 추진방향

o 국정과제는 결과물, 성과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효과 거양

o 홍보매체의 특성에 맞게 산림정책별로 홍보방법을 다양화

o 단순·전달 위주에서 공감·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정책이슈 창출

o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여 산림정책의 이해·호감도 제고

o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민간컨설팅 도입 등 홍보역량을 강화

<연간 정책홍보 계획량>

구분	기자 브리핑	청차장 기고	정책포털 사진자료	국민신문고 정책 Q&A	정책포털 기고	e브리핑	콘텐츠 제공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 팔로워
'13계획	30	70	1,510	91	14	107	106	21,000	28,000
(실적)	(20)	(73)	(4,952)	(96)	(18)	(100)	(103)	(24,623)	(30,468)
'14계획	20	58	2,470	94	26	168	131	30,000	36,000

* 계획량은 '14년 정부업무 평가지표(문체부) 확정 후 조정

다. 세부추진계획

1) 언론보도 집중화

가) (방송매체)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은 접촉도가 높은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기획캠페인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및 기관위상 제고

o TV 공익광고, 기획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등 패키지 형태로 집중 편성

- 접촉도와 신뢰도가 높은 지상파 TV(KBS, MBC, SBS)를 중심 추진

  * 접촉도 : TV 90%, 케이블 TV 60%, 신문 31%, 라디오 28% (한국리서치 '13.8)

o 핵심적인 산림정책을 기획캠페인 주제로 선정('13.12월)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공익광고 표출 및 식목일·산의 날 전후 특집다큐 편성

나) (신문·잡지) 이해관계자가 많은 정책은 적합한 유력 언론매체와 공동기획을 통해 정책 공감대 확산

o 산림행정3.0, 도시숲, 백두대간 생태복원 등 인식 저변확대가 필요한 정책은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통하여 이해도 및 인지도 향상

- 기획 주제는 부서별(기관별)로 희망 정책과제를 협의하여 반영

o 오피니언리더, 주부·노년층, 2040세대 등 정책 타깃별로 맞춤형 주제와 매체 선정

- 일간지는 발행부수 및 열독률이 높은 매체와 공동 기획보도 확대

- 월간지 등 잡지 등은 구독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홍보

  * 발행부수 : 조선(1,353천부), 중앙(944), 동아(750), 한겨레(211), 경향(187), 한국(175), 국민(145), 문화(135), 서울(113) 등(ABC협회·언론재단 '13.8)

o 모바일 이용증가에 따른 인터넷 뉴스 홍보를 위하여 반복적인 업무도 e-브리핑을 활용하여 정책정보 제공 및 기사화 유도

다) (언론관계) 기자브리핑을 정례화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으로 선제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

o 월1회 이상 기자브리핑(국장급 이상)으로 주요정책 및 현안이슈 홍보

- 이슈에 따라 대전청사와 세종청사 기자실을 적절히 활용

  * 청·차장 10회, 소속기관장 각 1회 이상(지방청 제외)

o 기자간담회,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한 정기 프레스투어, 체육대회 등을 통해 정책이해도를 증진 및 상호 신뢰도 강화

o 보도·설명자료, 인터뷰 등 취재활동 적극지원으로 언론노출 극대화

- 신문, 방송, 온라인 등 언론 보도내용은 매일 스크랩 정리 및 공유

- 문제보도 발생 시에는 24시간 내에 100% 이슈대응(해명·설명자료 등)

2) 온라인 홍보의 다변화

가) 모바일 홍보 플랫폼 도입과 주요 소셜채널 차별적 운영·강화

o 카카오페이지·스토리플러스 등 신규 모바일 플랫폼과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홍보 접점 확대

- 「산림청 카카오스토리」 런칭(3월) 후 연말까지 카카오 친구 2만명 달성
- T-맵(SK플래닛)과 MOU 추진으로 App안에 국립자연휴양림과 주요명산 음성·문자정보 수록 등 산림청 주요사업과 정책정보를 제공

o 2대 소셜채널(트위터, 위키트리)은 뉴스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는 보다 소프트한 주제에 재미와 오락적 요소 가미

* Klout지수 60점대 및 SNS 매체활용 최우수 유지, 이야기지수 10%이상 증대

나) 입소문 확산형 온·오프 통합 국민 공감 캠페인 전개(연2회 이상)

o 산림정책 관련 오프라인 이벤트 프로모션으로 화제성 이슈를 창출하고 이를 온라인 캠페인과 연계, 네티즌 입소문 확산을 유도

- 산림복지·식목일 등 산림정책 및 사업현안 대국민 체험행사 개최로 네티즌 관심 에피소드 발굴, 응원댓글·참여UCC 제작 등 온라인 확산

* 예시 : 숲 교육 '마음과 마음의 어울林' 캠페인('13.9)

다) PCRM 정책고객 운영 활성화 및 블로그 기자단 확대·운영

o 정책고객 고객 마일리지 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온라인 이벤트 확대(연 4회)

* 가족 숲 캠프, 청소년 등산학교, 어린이 숲체험 등

o 대학생, 주부, 파워블로거, 전문가그룹(여행·사진작가)으로 블로그 기자단 체제 확대·재편(1월)

- 지역 또는 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 팀장을 선출하고 팀장을 편집위원으로 위촉, 블로그 기자단의 기획능력 강화 유도
- 타 부처·지자체 블로그 기자단과 연계 협력 강화, 정책정보 확산 마련

라) 산림분야 콘텐츠 확산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추진

o 구글,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정책정보 제공 활성화

- 중점·기획홍보과제 등 정책에 따라 온라인 홍보매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현안정책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연 2회 이상)

3) 홍보 콘텐츠의 다양화

가) 산림청 소개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관 공식홍보물 제작

o 기관 이미지에 어울리는 홍보용 동영상 및 브로슈어 업데이트(국·영문)

- 팸플릿, 리플릿, 기념품 등 특색 있고 실용적인 홍보물 제작·보급

o 언론매체 방문, 팝업스토어, 전시회 등의 이벤트 홍보수단으로 활용

나) 주요 산림사업별로 수요자 중심의 '인포테인먼트'형 '인포모션'과 '타이포그래피', '인포그래픽' 등 제작 활용

o 부서별 중요 현안정책에 대해 이해가 용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를 개발

o 온라인상에서는 SNS 연계 수시이벤트와 정책정보 제공 모바일 광고 콘텐츠로, 오프라인에서는 신문과 포스터 등 지면매체 광고 콘텐츠로 활용

다) 'e-숲 이야기'를 확대 발간하여 우리청 대표 기관지로 발돋움

o 기존 팸플릿 형태의 'e-숲 이야기'(월간)에서 산림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제공하는 '산림청 대표 기관지'로 확대 개편(상반기 내)

* 'e-숲이야기' 발간 : ('13) 2,500부 → ('14) 20,000부/월

o 공공장소 등 대국민 주요접점 공간과 정책고객에게 배포하고 e-book 제작을 병행하여 홈페이지, App 등에 온라인으로 게시

라) 지하철 스크린, KTX 모니터 광고 등 다변화된 홍보매체 적극 활용

o 유동인구가 많고 순간 주목도가 높은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과 KTX 열차 광고 등에 다양한 홍보를 전개, 대국민 홍보 접점 제고

마) 국가 운영 전광판(문체부) 광고 표출 등 협력강화

o 현안 이슈, 정책 등을 문체부와 적극협력, 전광판을 통한 선제적 홍보로 홍보분야 선도 부처로 도약

* '13년 8회 표출(식목일, 산림교육, 산불예방 등)

o 정부지원 웹카툰 제작, 타부처 보유매체 협업홍보 등 문체부 지원사업 활용

* 타부처 보유매체 : 방송 11개, 정기간행물 300종, 온라인 간행물 279종

4) 홍보역량 강화 등

가) 정책홍보 성과분석을 위한 정책 인지도·선호도 컨설팅 추진 및 중장기 홍보분야 발전 로드맵 마련

o 민간전문 컨설팅을 통해 월별 중점 홍보과제와 연간 홍보전략에 대한 홍보기획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기획홍보의 성과 제고

- 주요 산림정책, 이슈에 대한 신문·방송, SNS,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분야 융합 홍보 프로모션 컨설팅을 병행하여 홍보에 활용

o 정책홍보 분야에 대한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 우리청 여건에 맞는 정책홍보 가이드라인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홍보미디어관리 및 조직·인력 강화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 연구

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 대비하고 소속기관 홍보평가의 내실화로 업무 부담을 완화

o 정부업무평가(문체부) 홍보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여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기자브리핑 홍보정책 사전협의(국민소통실), 협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대변인실과 협의체 구성 등 평가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

o 본청,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방법을 내실화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

- 브리핑, 기고, 정책포털 Q&A, 홍보 콘텐츠 제공 등 정부업무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 달성 유도

  * 정부업무평가 및 소속기관평가 평가지표는 별도 시행

다) 홍보콘텐츠의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미디어센터」 구축

o 산림사업사진, 동영상, 이미지 등의 홍보콘텐츠와 언론보도 기록물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편리한 이용·관리 도모

- 국토녹화사업, 각종 산림사업현장, 조림성공지, 경제림, 산림문화작품 등 산림분야 역사적 기록물 집약

o 과도기적으로는 지식포털시스템(이나라)에 DB 우선 축적, 미디어센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장기로드맵 연구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라) 협업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산림청 정책홍보협의회」 운영

o 산림정책 홍보 아이템을 발굴하고 정부시책 공통 협업홍보과제 확산을 위해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가 참여하는 홍보협의회 운영 활성화

- 상·하반기 정기 협의회 개최 및 홍보과제에 따라 그룹별 수시 개최
  * 소속기관(11개), 산하단체(녹색사업단, 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마) 정책홍보 마인드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

o 문체부(국민소통실), 농식품부 주관 등 외부 전문가 교육 적극 참여

o 산림교육원 직무교육에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역량 커리큘럼 추가

바) 뉴스채널 동영상 제공 및 취재지원 임차차량 운용

o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 등 방송 뉴스채널에 확산성이 높은 영상자료 제공

- 방송용 영상물 촬영·편집을 위한 민간 전문가를 우선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별정직 등 정원 확보 추진

o 기동성 있는 현장 취재지원 및 사진·영상 촬영을 위한 임차차량 운용

- 청·차장 현장 활동 촬영과 각종 주요행사 및 사업현장 취재 지원
  * 임차차량 차종 및 운행기간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선정

라. 추진일정

o 녹색자금 기획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 2013. 12월

o 정례 기자브리핑 및 간담회 : 매월(이슈발생 시 수시)

o 신문·방송·온라인 등 언론보도 스크랩 및 대응 : 매일

o 상·하반기 산림청 정책홍보협의회 : 6월, 12월(정기) 및 수시

o 온·오프라인 기관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반기별

o 새로운 SNS 채널 도입 및 콘텐츠 개발 : 3월, 연중

o 주요 포털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네이버, 구글 등) : 연중

o 블로그 기자단 확대 재편 : 1월(연중 운영)

o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전광판 광고’ 표출과제 신청 : 매월

o 온·오프 통합 ‘e-숲 이야기’ 발간 : 6월, 매월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1. 해외 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목 표

◇ 해외산림투자 지원제도 정비로 사업 안정화·활성화 도모
- o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도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 o 해외산림투자 지원 확대로 '14년 해외조림 30천ha 추진

◇ 해외산림투자 진출국 및 사업 다변화를 위한 기반조성
- o 중남미, 아프리카 등 조림투자 진출국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o 산림바이오매스조림 시범사업을 통한 신규 투자사업 모델 개발

가. 정책여건

- o 해외조림목 용도개발 연구 등을 통한 해외조림목 반입촉진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o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확대에 따른 목재펠릿 등 목질에너지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외산림자원 활용의 중요성 및 수요증가
- o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진출국가 및 투자유형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컨설팅 강화 등 맞춤형 지원체계의 정비 필요성 증가
- o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녹색사업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및 사업 발굴 필요

나. 기본방향

- o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 o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사업, 컨설팅 지원 등 투자기업 지원 강화
- o 해외조림 대상지 확보,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 투자확대 기반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제도 정비

- o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 마련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법률(안)」제정 추진

- (주요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심의회의 운영,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는 농축산물과 다른 임산물의 특성 반영 곤란

o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촉진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국내도입·가공·유통 등 반입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 목재펠릿 가공도입 등 해외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 해외 목재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o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정책자금 융자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융자지원 예산액의 지속적 확대 : ('13) 230억원 → ('14) 250억원
- 융자지원 신청액 기준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준조림단비 마련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주요 조림국가 및 속성수, 장기수, 고무나무 등 조림수종별 조림(육림) 기준 단비 조사용역 수행 및 결과 활용
- 사업종류 및 지원대상별 차등지원을 통한 자금지원 효과성 제고
  * 장기수 위주의 산업조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2) 해외인턴 취업률 제고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 관리 개선

o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 및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확대추진
-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파견기관 확대(국제기구, 국제산림협력사업 등)
- 선발인원확대 : ('13) 20 → ('14) 30 → ('15) 40 → ('16) 60 → ('17) 70명
  * 국정과제(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와 연계한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13.3월)

o 해외인턴 참여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관리 개선
- 졸업(예정)자, 청년 미취업자 우선 선발로 인턴 종료후 취업연계 강화
- 해외인턴 채용 실적 우수기업에 선발시 성적우수자 우선 배정
- 업체 수요조사시 채용예정 계획 제출 및 실적 저조기업 신청 제한
- 인턴-기업 맞춤형 채용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취업률 향상
  * 인턴참가자 당해년도 취업률 50%이상 목표

o 사업 운영기관(녹색사업단) 지정, 모니터링 강화 등 운영관리 강화
- 사업 운영관리 전담직원 배치를 통한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인턴참여자간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워크숍 프로그램 마련
  * 한-인니산림센터 주관으로 인턴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o 산림바이오매스 조림시범사업을 통한 신규 투자사업 모델 개발

-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 사업을 통한 목재펠릿 생산 일관화 시스템 개발 및 진출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중부자바 스마랑)

  * 일관화시스템 : 양묘 → 조림・육림 → 벌채 → 목재펠릿 가공 → (반입이용)

- 양묘장, 산림경영센터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녹색사업단)

o 국가간 조림투자협력 MOU 체결 추진 및 기체결지 진출사업 관리 강화

- 미얀마와 조림투자협력 MOU 체결 추진('14.4월, 한국)

  * (가칭) 한-미얀마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 MOU

o 투자기업 및 목재자원 수요자를 연계한 산림자원 개발방법의 다양화 추진

- 장기 안정적 원료 공급기지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 협력 확대
- 조림기업과 목재가공기업, RPS 적용 발전사 등과 연계한 투자 지원

o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환경조사 및 DB구축

-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 투자진출 대상국가 확대를 위한 조사 실시

  * 중남미 투자 및 실무가이드 발간(녹색사업단) : 에콰도르, 브리질

-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 홈페이지 자료강화로 활용성 제고

4) 추진체계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o 정부, 기업,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투자 활성화 지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사업단, 한국임업진흥원, 산조중앙회 등 기능강화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회사 및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투자기업 지원

o 해외산림원개발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건의 기능 강화

- 투자기업 중심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협의회 회원사(현재 39개 업체)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정보공유 기능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 해외산림자원개발 환경조사 컨설팅 지원 등 자체 사업 발굴

라. 추진일정

o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해외인턴 발대식 : 2014. 1월

o 2013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 보고 : 2014. 1월

o 해외산림투자 환경조사 및 융자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14. 2월

o 미얀마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 MOU 체결 : 2014. 4월

o 2014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상반기 실적 보고 : 2014. 7월

o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개최 : 2014. 3월, 8월

2. 양자 산림협력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

목 표

◇ 대륙별·권역별 전략적인 산림협력관계 구축

◇ 산림협력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성과 제고

가. 정책여건

o 해외에서 해외산림투자 증진, 기후변화 대응, 산림복지 서비스 및 사막화 방지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수요 증가

o 우리나라 산림경영 및 관리, 연구기술, 휴양시설 견학 등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사 방한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산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협력 필요성이 증가

나. 기본방향

o 산림선진국과 신규 양자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산림행정 선진화 도모

o 대륙별·권역별로 협력목표, 협력유형, 중점사업, 추진절차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구상

o 양국 정부 간 진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 선진국과의 신규 산림협력 MOU 체결

o 미주, 유럽의 산림복지 선진국과 신규 산림협력 약정 체결 추진

- 주요 산림보유국이며 산림 휴양, 등산, 힐링 등 복지서비스 협력 잠재력이 높은 미주(미국, 캐나다), 유럽(핀란드, 노르웨이 등)과의 약정 추진

o 선진국의 산림행정 습득을 위한 인적교류 및 훈련 기회 확대

* 양자협력 국가 : 28개 국가

- 아시아(9)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라오스
- 중앙아시아(5)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아프리카(4) : 튀니지, 알제리, 베냉, 에티오피아
- 미　　주(6) :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 유　　럽(2) : 러시아,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2) : 호주, 뉴질랜드

2) 실질적인 산림협력과제 발굴 및 사업성과 제고

o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및 실리적인 산림협력 의제 발굴

- 해외산림투자 증진, 산림복구, 생물 종 자원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별 협력회의 합의사항 이행 평가 및 실리적 측면의 의제 발굴
- 선진 산림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14년도 산림협력회의 계획(안)>

한국 개최(10회)	상대국 방문(3회)
· 몽　골(제8차, 2월) · 알제리(제1차, 4월) · 미얀마(제8차, 4월) · 러시아(제4차, 6월) · 라오스(제1차, 6월) · 캄보디아(제3차, 8월) · 에티오피아(제1차, 8월) ·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제8차, 9월) · 파라과이(제3차, 10월) · 아르헨티나(제1차, 10월)	· 베트남(제8차, 7월) · 일　본(제1차, 11월) · 우루과이(제3차, 11월)

* 구체적인 일정은 상대국과 협의하여 확정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사업 이행 평가를 위한 제8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 개최(9월, 한국)

-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조림, 산림생태관광 및 센툴 녹색협력단지 조성, 인적 교류 등 주요 협력사업 등

o 국가별 협력사업 모니터링 증진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 제고

- 양국 정상회의 산림분야 의제 후속조치 이행 및 기 선정된 협력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인도네시아 산림휴양 생태관광 시범사업, 베트남 우호의 숲 조성, 아랄해 유역 산림생태 복원사업(카자흐스탄) 등 추진

· 알제리 벤아쿤 공원 현대화 지원, 베넹 사막화방지 사업 등 협력사업에 대한 상대국 관계자 참여의 주기적인 이행상황 및 일정 등 점검

- 양자협력 의제준비와 성과공유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업·융합 행정 및 협조체계 마련으로 효과성 증진

· 외교부·농식품부 등 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녹색사업단 등 협력기관과 본청 실·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 '산림협력발전협의회'(가칭) 구성 및 운영

- 해외 산림협력센터의 사업현장 지원 역량 강화 및 확대

· 현재 한-캄보디아 산림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지원조직을 2개소로 확대

o 국가별 중장기 양자협력 발전방안 마련

- 기 협력국가(23개 국가) 대상의 각 국가별 산림협력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발전 및 개선방향을 제시

라. 추진일정

o 제8차 한-몽골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2월

o 제8차 한-미얀마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4월

o 제1차 한-알제리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4월

o 제1차 한-라오스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6월

o 제4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6월

o 제8차 한-베트남 산림협력위원회(베트남) : 2014. 7월

o 제3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8월

o 제1차 한-에티오피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8월

o 제8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한국) : 2014. 9월

o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 (한국) : 2014. 10월

o 제3차 한-파라과이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4. 10월

o 제1차 한-일본 산림협력위원회(일본) : 2014. 11월

o 제3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우루과이) : 2014. 11월

3. 한·중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목 표

◇ FTA 준비 단계부터 협상까지 철저한 대응으로 임산업 보호

가. 정책여건

o 2014년 1월 현재, 미국, EU 등 47개국과 10건의 FTA를 타결하였고, 중국과의 FTA가 진행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 발효·타결(11) : 칠레, 싱가포르, EFTA[1],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 진행중(7) :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o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경우 '25년 기준, 임산업에 4,211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협상도 '14년에 타결될 전망

- 단기임산물 3,266억원, 목재류 942억원, 석재류 3억원

o RCEP[2],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TPP[3]협상에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

나. 기본방향

o FTA 대상국별 교역규모, 피해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생산자 및 품목科,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상안 준비

o 청장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통상위원회, 국장이 참여하는 통상실무위원회 등 고위급 협상통로에서 임산물의 민감성을 반영 추진

o 한・중FTA 추진에 따른 국내대책(대경장 의결사항)에 임산물 분야(수출, 단기임산물, 목재류) 반영 추진

o 관세협상 외에 상대국 수출제한조치 해제요구, 불법벌채목 규제 등 협력 분야, 임업서비스, 원산지 등 분야에 임업분야 이익 반영 추진

o 타결・발효된 FTA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

1)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주도) + 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3)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미국 주도로 12개국 참여(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부르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파급효과가 큰 「한·중 FTA 협상」에 적극 대응

o 7차례 협상('12.5~'13.8월)에서 「제1단계 협상」 타결

- 초민감품목 : 품목 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 범위
  * 보호방법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계절관세 등
- 민감품목 : 11~20년 기간 중 관세 감축
  * 구체적 품목 수 범위는 2단계 협상에서 논의
- 일반품목 : 10년 이내 관세 감축
  * 구체적 품목 수 범위는 2단계 협상에서 논의

o 8차 협상('13.11월)부터 품목별 양허안 협상 시작

- 주요 단기임산물과 목재류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

o 중국과의 FTA 협상에 청·차장이 참여하여 임산업 보호 노력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위원회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여 임산업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14.6월 상품분야 타결 목표)
-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에 임산물 보호 대책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o 우선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전 품목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의 3가지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군별 처리방안 검토
  * 용역결과, 품목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 처리 방안을 마련
- 한중 FTA 체결 대비, 중국의 시장·수출여건과 국내 생산실태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준비대책을 마련

o 협상에서 주력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인하에 취약한 임산물 민감성이 품목별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농림축산식품분야 협력 내에 산림분야 협력 강화, 수출제한 금지 등 산림청 협력 사항을 최대한 반영

o 품목과와 공동으로 협상동향 설명회, 통상 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동향을 전파하고 임업인의 의견을 수렴

2) 협상중인 FTA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대응

o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4년도 타결 예정인 FTA 협상에서 국가별 민감성 반영을 위한 다양한 협상 추진

- 전문기관 연구결과, 품목과 의견 등을 반영한 민감 우선순위 확정
-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민감성 반영
- 합판, 섬유판 등 가공 목재산업 보호를 위한 민감성 반영

o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 수출 유망품목의 협상 대상국 관세 조기철폐 요구와 수출규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

o 해외조림 등 임산업 해외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안정성 확보방안 모색

o 원목, 목재칩 등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

o 협상중인 FTA에 대한 국가별 대응자료 마련(~'14까지)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중·일, RCEP,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3) 한·중 FTA 타결을 대비한 국내대책 마련

o 한·중 FTA대비 고위급 및 관련부처 회의를 통한 임산물 국내대책 마련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등 고위급 회의에 청·차장의 참석 정례화로 임산물 민감성 부각 및 국내임업 육성 지지기반을 마련
- 한·중 FTA대비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비 및 지원기반시설 연계 방안을 마련

o 한·중 FTA대비 국내대책에 임산물 피해 대책 마련

-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피해 대책 예산을 반영
- 밤, 건조표고, 반건시 등 주요임산물 중국시장 진출대책 등 포함
-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사업 확대를 위해 R&D 연구사업 진행('14년 7억 반영)

o 중국내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 중국내 식품안전성 우려 증가에 대응한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산물 수출이력 관리 품목 확대

* ('13) 1품목(밤) → ('17까지) 5품목(밤, 표고, 감 등)

4) WTO/DDA 등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

o WTO 신규 가입, GSTP, APTA 협상 등 다자 임산물 협상 대응

- WTO 가입신청 국가 및 GSTP, APTA 협상관련 품목별 양허안 검토

o DDA협상 동향 파악과 임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파악과 영향 분석 등 대비

- 농업협상과 NAMA[4] 협상별 민감품목 선정, 영향분석 등 대응
- 일부 분야에 대한 조기타결 움직임 등 파악으로 임업계 영향 최소화

5) TPP 협상 대비

o 정부의 TPP 관심표명('13.11.29)에 따른 임산물 분야 협상대책 수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범위에 임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대응

o 전문기관(농경연) 용역을 통한 세부협상 대응방안 수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범위와 겹치지 않는 범위로 연구범위 제한

o 통상인력 보충(통상팀 신설)으로 증가하는 통상업무에 대응

- 현재 3명 → 5명으로 확대 추진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통상협상 종합대책 마련 : 2014. 1~2월

- RCEP 2년차, TPP 대응 용역 포함

o 수시직제에 통상팀 신설계획 반영 : 2014. 1~3월

o 한·중 국내 대책 계획 수립 : 2014. 1~6월

o FTA 추진 국가별 대응자료 마련 : 2014. 1~3월

o 통상협상 간담회를 통한 임업계 의견수렴

- FTA/DDA협상 간담회, 대책회의 : 사안발생시 수시

o 통상협상 관련 회의 참가

- 임산물 통상협상 참가 : 연중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위원회, 통상실무위원회 등 : 연중
- 한·중 FTA 대비 관계부처별 국내대책 회의 : 연중(사안발생시 수시)

---

4) Non-Agriculture Market Access(비농산물 시장접근)

4. 임산물 수출확대

목 표

◇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조직 역량강화 및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확대

* 임산물 수출 확대 : ('13) 338백만$ → ('14) 450백만$(증 33%)

가. 정책여건

o 주요 FTA 타결·발효로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o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안과 주요국의 소비침체

o 원유, 목재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자원 확보 경쟁 심화

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각국의 규제강화와 수입통관 강화

나. 기본방향

o 전략품목 중심의 대표 수출상품 육성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o 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을 중심으로 핵심수출 조직 육성

o 품목·국가별로 전략적인 맞춤형 마케팅 전개

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전략품목 중심으로 대표 수출상품 육성과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o 수출규모와 성장가능성에 따라 전략품목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 주력품목의 경우 수출확대에 바로 연결되는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등 시장진입에 따른 전략적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마켓테스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등 지원으로 바이어 발굴 및 상담 기회 제공

o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장비(급속예냉, 자동선별장비 등) 지원
- '14년까지 2개소, 총사업비 20억원(국고 10, 지방비 4, 자부담 6)

2) 수출협의회 기능 강화 등 임산물 핵심수출조직 적극 육성

o 주요품목별 수출협의회(6개) 중심의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 촉진 지원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을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등 수출협의회의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수출협의회별 자율기능 강화로 품목별 품질기준 운용, 수출 질서 유지, 정보교류, 정책건의, 해외마케팅 효율화 방안 등 수출확대방안 협의
- 수출협의회의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강화

* 수출협의회 : 밤, 감, 건표고, 신선표고, 목제품, 합판보드(6개)

o 수출선도조직의 운영활성화 및 농가와의 결속력 확대

- '13년 수출실적 평가와 실적 저조업체 재선발 및 피드백을 통한 사업개선
- 참여농가 확대, 농가·수출업체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마케팅, 사업관리비, 선도조직 장비지원 등(2조직, 369백만원)

o 수출전문 인력 육성으로 수출역량 배양

- 수출협의회별 수출컨설팅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조직력 강화
- 수출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생산자, 수출업체 대상 교육
- 개별 교육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실무습득 기회 부여

3)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내실화

o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시장조사단, 해외판촉전 지원

- 신규시장 개척과 관련된 주요 국제박람회의 임산물 홍보관 운영으로 우리나라 임산물의 인지도 확대
- 시장조사단 파견으로 수출품목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판촉전 지원

o 신시장 개척 또는 신규 품목의 수출유망품목 지원

o 해외시장 마켓테스트 및 정보조사 지원

- 임산물 수출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시장정보를 분석, 제공(매월)
- 마켓테스트 등을 통해 신규 품목의 시장 진출 지원

o 수출분야 신규 R&D 사업 지원('14~'17, 700백만원)

- 중국 등 FTA 확대에 대응한 임산물 고부가 수출전략상품 개발
-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유통방법 개발

4)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o 지방자치단체 수출·유통 담당자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협조채널 구축

- 지역별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 예산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 협력사업 확대

o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 생산자간 상시적인 공조시스템 운영

- 산림조합의 수출참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콜센타 운영 등

o 농림축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농식품부 K-food Fair 참여 및 해외박람회 공동 참여 확대로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효과 극대화
- 수입국 검역 조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정책 협조
  - ·호주, 뉴질랜드 등 밤 검역 협상 지원, 분재 수출 조건 완화 등
  - ·검역협상 완료시 시장조사단 파견 및 마켓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추진
  - ·중국으로 분재 수출 관련 공동 검역 협조방안 추진 등
- 수출국에서의 통관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조

5) 수출장애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o 물류비 경감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판매촉진비 지원(1,869백만원)

- 수출가격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 고부가가치 수출 장려
- 수출여건과 국내 생산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류비 지원체계 운영

o 유망 육성 품목 및 가공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장비 지원(120백만원)

o 수입국의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응하여 현지검역비, 수출이력제 관리비용 지원(500백만원)

- 밤 잔류농약 검사 및 생산이력제 등 밤 수출 안전성 확보 지속 노력
- 밤 생산이력에서 신선표고, 감까지 수출이력 관리대상 확대 추진

o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용 카탈로그, 포장재 개발 지원(35백만원)

o 목재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 목제품 수출용 원자재 구입비 융자(이차보전, 20억원)
- 합판보드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지원을 위한 탄력관세 운영

o 수출업체, 생산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수출현장간담회, 부진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회의 등 개최
- 수출애로사항 의견수렴과 개선 추진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세부 추진계획(지침) 시달 : 2014. 1월
-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수시
- 판매촉진비 : 매월
- 수출선도조직 평가 : 2014. 2~3월
- 시장조사단 파견 : 2014. 상반기
- 기계장비 지원 : 2014. 하반기
- 임산물 해외 수출홍보 : 2014. 하반기

o 수출임업인 역량강화 및 수출전략 워크숍 : 2014. 6월

o 수출확대 간담회 : 수시

o 임산물 수출유공자 표창 : 2014. 11~12월

5. REDD+ 탄소배출권 확보 및 추진기반 확충

목 표

◇ 인도네시아 시범사업 내실화 및 다른 잠재국가와 협력기반 마련
◇ REDD+ 관련 민간기업 등 참여 및 전문역량 강화 추진

가. 정책여건

o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열대림 전용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논의가 활발(FAO 보고서)

o 최근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열대림 REDD+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로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REDD+ 사업이행 기반 구축 필요

o 지속가능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REDD+ 잠재력이 큰 동남아 개도국과의 RDDD+ 협력체계 확대 필요

*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2.4억 CO_2톤)를 자발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설정('09.11.17)

나. 기본방향

o REDD+ 사업으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o REDD+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정부 간 REDD+ 협력체계 구축

o 국내 기업의 해외 탄소배출권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능력 증진, 사업전문가 양성 등 투자환경 사전 정비

다. 세부추진계획

1) 인도네시아 시범사업은 탄소배출권 생산을 위한 여건조성 및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현장사업 위주로 추진

o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조사(14천ha) 실시 및 인니측과 사업에 따른 산림탄소량 분배 논의

- 산림조사, 배출기준선(REL), 사업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PDD) 작성
- 생산되는 산림탄소 분배를 위한 사례조사 준비 및 인니측과 협상

o 사업대상지 산림전용·훼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현장사업 실시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역 NGOs 및 현지투자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국유림관리소(FMU) 운영으로 보호사업 실시, 국유림 관리모델 전파
- 「REDD+ 사업단」 주도의 3차년도 현장사업 본격 추진(깜빠르, 14천ha)

  * 산림감시단 운영, 대체소득원 개발, 거주지 안정화사업, 황폐지복구조림 등

2) 캄보디아, 미얀마 등 REDD+ 잠재력이 있는 개도국과 협력 기반 마련

o 캄보디아 제안 사업대상지의 '15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13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캄풍톰 등 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협의

o 미얀마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REDD+ 국가이행체계와 타당성조사를 병행 추진

o 아세안 국가와 REDD+ 고위급 회의를 계획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인니·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산림당국의 정책결정자 초청 dialogue 계획

o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REDD+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고위급회의(1회), 국제심포지엄(1회), 포럼(1회) AFoCO 및 CIFOR의 국제심포지엄 참석 정례화

3) REDD+ 관련 민간기업 등 투자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o REDD+ 포럼을 활용한 관련 정책정보 공유 및 투자 확대 방안 논의

- 제2차 REDD+ 포럼(상반기), 기업참여촉진 세미나(하반기)

o 산림교육원, 대학과 연계하여 REDD+ 전문인력 양성

- '13년 개발한 REDD+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활용

o REDD+ 능력배양 교육훈련 실시(5월, 11월/연2회, 산림교육원)

- REDD+ 주요협력국 사업관계자 초청 연수로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4)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거래 방안 강구

o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거래가 가능한 해외 탄소배출권의 확보 전략 이행

- 탄소잠재량 및 대개도국 이행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선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o REDD+ 사업효과 및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리플릿 제작, 기술서 발간,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o 탄소배출권 기술 워크숍, 심포지엄, 포럼 등을 통해 REDD+ 역량 강화

라. 추진일정

o 한-인니 REDD+ 시범사업 점검 : 2013. 12월

o REDD+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의 : 2014. 1월

o REDD+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 2014. 3월

o REDD+ 포럼 개최 : 2014. 5월

o REDD+ 능력배양 교육 훈련 : 2014. 5월, 11월

o 국제 REDD+ 심포지엄 개최 : 2014. 8월

o REDD+ 고위급회의 개최 : 2014. 8월

o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사업 이행 : 2014년 연중

6. AFoCO 확대 설립 및 협력사업 성과 가시화

목 표

◇ AFoCO를 통한 국제 산림협력을 주도하여 확대 설립 추진

o 현 AFoCo 협정 연장 및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o 아세안에서 아시아로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력과 협상 추진

가. 정책여건

o AFoCO 확대 설립을 위해 '13년에는 각 2회의 이사회와 작업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비전과 목표, 기구조직을 확정하였으며, 아세안과 제3국이 참여하는 AFoCO New 작업그룹 발족

*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제3차 이사회('13.10,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로 확대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 협정 연장 합의

o 한·카자흐 정상회담(9.5)과 한·중앙아시아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10.4)에 따른 '아랄해 유역 산림생태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와의 산림협력을 통해 AFoCo 회원국 확대 기반 마련

* 한-중앙아시아 MOU는 다자간 협력 MOU의 첫 사례로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의 산림협력 추진 근거 마련

o AFoCo 사무국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협상 및 지역협력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발판을 구축

* 2개팀에 사무총장(인니 Mr. Hadisusanto Pasaribu) 등 8명의 정규직원으로 구성

o 협정의 성실한 이행 및 협정 연장을 통한 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AFoCO 확대 설립의 기반을 마련

나. 기본방향

o 산림협력 협정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산림분야 국제기구 설립·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내외 설립 추진 효과 제고

o 회원국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제3국 및 국제기구 등과도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

o 현 AFoCo 협정 회원국을 아세안에서 범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설립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잠재적 참여국가(제3차 이사회에서 승인) : 몽골, 카자흐스탄, 부탄, 동티모르

다. 세부추진계획

1) 현 AFoCo 협정 연장 추진

o 한시적인 현 AFoCo 협정('14.8.4 종료)을 '16년까지 2년 연장 승인('13.10)

o 현 협정 연장 회의를 AFoCO 설립회의와 연계하여 개최('13.12.10 부산)

* 협정 연장 회의와 관련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

o 협정 기한내 현행 AFoCo 협정의 연장을 추진

- 협정 제13조에 따라 협정 종료일('14.8.4) 이전 연장 발효 추진

* 협정 연장을 위해 외교부 및 아세안 국가와의 대화채널 강화

2) 아세안 이외에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AFoCO 설립 추진

o 산림청에서 외교부를 통해 아세안 각국과 잠재적 참여국가에 AFoCO 설립을 위한 'New 작업그룹 회의' 참여를 요청('13.11)

* 잠재적 참여국가 : 몽골, 카자흐스탄, 부탄, 동티모르

o AFoCO 설립을 위한 1차 작업그룹 회의 개최('13.12.11~12, 부산)

- TOR(위임사항) 및 ROP(운영규정)을 승인하고 AFoCO 협정문(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공유 및 검토 완료

* 아세안 및 잠재적 참여국가의 외교채널과 산림부서 참석(국장급)

o AFoCO 설립을 위한 다자간 협상(Dialogue)을 주도협상 진행

- 확대기구 설립을 위한 NEW 작업그룹 회의(3회) 개최

o 한-아세안 산림장관회의를 한-아세안 정상회의('14.12)와 연계 개최

- 신협정문 서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및 양자협력의 확대계기 마련

3) 자발적 AFoCo 신규 지역협력사업 추진

o 기존의 AFoCo 개별 및 지역협력사업 후속으로, 아세안 2개국 이상이 AFoCo 협력사업 분야 내에서 자발적으로 신규 지역협력사업을 구상하여 추진

o 1~2년의 단기사업이 아닌 중기(3~5년) 및 장기(6~10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개발

【2014년 대비 신규 사업 가이드라인】

o 사업 개요

- 대상 국가 : AFoCo 회원국인 아세안 10개국(산림관련부서)
- 사업 형태 : 개별협력사업 및 2개국 이상의 지역협력사업 모두 가능, 1개국에서 중복지원 가능(제한 없음)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5년(중기) 및 6~10년(장기)
- 사업 규모 : 사업 당 10만불 이내/1년/1국가 기준

o 사업 협력 분야(현 AFoCo 협력사업과 동일)

-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 및 훼손된 산림 복원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 관광
- 비목재 임산물 및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
- 석·박사 학위과정, 단기연수, 워크숍 개최 지원 등 인력양성 사업

4) AFoCO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Landmark) 추진

o 아세안 국가의 재원, 기술, 자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 장기적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훈련센터 건립, 산림훼손지 복원 및 홍보 등 4가지 세부사업을 포함

- 한-독 산림경영기구(강릉임업기계훈련원)를 사업모델로 한국형 해외 산림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
- 사업기간(10년) : 제1기('14~'18), 제2기('19~'23)
  * 제2기 사업은 제1기 사업추진 평가결과를 반영 추진

5) AFoCO 확대 설립을 위해 제3국과 산림협력 추진

o AFoCO 확대 설립을 위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산림협력 추진

- '한-카자흐 정상회담('13.9)에 따른 아랄해 복원사업 추진
  * 한-카자흐 아랄해 복원을 위한 pilot 사업('13.12)을 통해 사업지 선정, 조림사업, 교육훈련, 공동연구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자 함
- 한-중앙아시아(5개국) 산림협력 MOU 체결('13.10)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6) AFoCo 협력사업 성과 제고

o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참여 및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 ADB(아시아개발은행), MI(메콩연구소), HOB(보루네오협력센터) 등 타 국제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
-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확대
  - 회원국별 관심 협력사업 발굴로 참여국의 사업부담금 기여 유도
- 연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 기업의 기부금 출연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 추진

o 협력사업 추진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진행

- (사업의 선정) 회원국의 요구 및 우선순위를 감안 AFoCo 협력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
- (사업의 수행) 사업수행기관의 이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외부 감사 및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추진

7)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기반 구축

o AFoCo를 산림분야에서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회원국 및 국제기구・아세안 산림기관・산림투자기업(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등의 자발적 기여금, 선진국의 ODA 자금 활용 방안 모색

o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AFoCo 사업개발 및 확대

- 관련 국제기구 및 NGO : UNCCD, FAO, CIFOR, ITTO, UNFF, IUFRO, IUCN 등

o 선진국의 ODA 기금이나 국제기구 산림관련 재원을 AFoCo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o 주요 추진 내용

- 기존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 제안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REDD+ 및 사막화방지 사업 발굴 등
-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추진

  * 국제기구 초청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적극 활용

라. 추진일정

o AFoCo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추진

- 잠재적 참여국가와 양자협상 추진 : 2014. 1～12월
-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2014. 2～11월

o 이사회 및 AFoCO 확대설립 협상회의 참석

- AFoCo 이사회 및 실무회의 개최 : 2014. 3월, 12월
- AFoCO 확대설립 협상회의 개최 : 2014. 2월, 5월, 9월

o 협력사업 추진

- 협력 분야별 수요 조사 : 2013. 11. ～ 2014. 1월
- 협력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4. 2월
- 회원국 및 제3국 사업별 제안서 접수 및 검토 : 2014. 1～3월
- 승인 및 사업착수 : 2013. 4월
- 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2013. 4～12월

7. UNCCD 논의 대응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목 표

◇ UNCCD 목표 설정 등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 논의 참여 및 창원이니셔티브 지속 이행으로 UNCCD 내 우리나라 역할 강화

가. 정책여건

o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5]) 문제의 해결이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림은 DLDD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증대

o Rio+20 정상회의('12.6)에서 UNCCD COP10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으로 결과문서(The Future We Want)에 '토지황폐화 중립세계 - a land degradation neutral world (LDNW)' 문안을 반영

* LDNW는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UNCCD에서 처음으로 언급

o Rio+20 정상회의('12.6)에서 2015년까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DLDD에 관한 논의 진행

* UNCCD COP11에서 Rio+20 결과를 UNCCD 차원에서 검토하는 결정문 채택

o COP11('13.9, 나미비아)에서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창원이니셔티브 등의 역할을 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이행 기반 강화

* 창원이니셔티브 관련 결정문 원문 : "Invites Parties to consider the role that new initiatives could play as tools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Strategy, including, inter alia, the Changwon Initiative …."

o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COP11 의장단에 선출되어 DLDD 논의 지속 가능

나. 기본방향

o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COP11 의장단으로서 결정사항 이행 및 사막화 방지 국제 논의 적극 대응

5)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o UNCCD 목표 설정 및 국제사회에서 DLDD 논의, DLDD 인식 제고 및 UNCCD 인지도 상승에 기여

- SDG, MDG 설정 논의에 DLDD 관련 의견 제시 및 DLDD 및 LDNW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

o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운영, UNCCD 과학기반 구축, 생명의 토지상 등 지원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동북아 소지역 행동계획 등을 이행하여 아시아의 사막화 방지 허브 역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DLDD 저감을 위한 구체적 행동 목표 설정과 실천을 지원

o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가,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UNCCD 목표 설정 논의 등 주요 회의 참가 및 주최

o COP11 의장단 회의 등 UNCCD 주요 회의 참가 및 의제 대응

- 의장단회의(2회), 과학기술위원회, 협약검토위원회 등

o ELD 제3차 과학워크숍(3월)을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 연구에 한국 과학자 참여 추진

o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협상에 사막화, 토지황폐화 의견 제시 및 참가

o Global Soil Week 등 토지황폐화 및 LDNW 관련 국제 논의 참가

2)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운영

o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사업 평가 및 체계적인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업 추진 제계 정립

  * 산림청, UNCCD, UNEP로 운영위원회 구성(UNCCD 제10차 총회 기간 중 3자 MOU 체결 및 '12. 5월 GDP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사업 논의, 예비분석 실행, 사업 세부 실행계획 검토 및 사업 평가 등 시범사업 추진

o 건조지의 토지황폐화 지역 식생 복원 사업 추진 : 아시아 등 2개국

- 황폐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증진 기반 마련

-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 및 친환경 녹색성장 경험 전수 등 능력배양

3) UNCCD 협약이행 강화를 위한 과학기반 구축 및 '생명의 토지상' 운영

o 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국제 공동연구 지원

- ELD 국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아시아 허브 구축, 보고서 발간 등

o Rio+20 후속조치 정부간 작업반, Land for Life Award 운영 등 지원

4)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및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운영 및 소지역 행동 계획(SRAP)을 주관

- 한·중·몽 3자 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및 네트워크 포럼 개최
- SRAP 이행 평가, 시범사업 개발 및 이행, SRAP 조정 작업 수행
- NEASPEC 등 지역협의체 및 ADB 등 재정기구와 공동협력 추진

  *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계획, No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ADB(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

o 동북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중국-몽골 국경지역 황사 발생 방지 프로젝트 지원

  *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기('13~'15)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쿠부치포럼 등 동북아 지역 DLDD 관련 주요 회의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5) UNCCD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강화

o UN 총회 결정문에 DLDD 이슈를 UNCCD 협약 내로 이끌어오는 노력을 강화

6) UNCCD 사무국 인력파견 추진

o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UNCCD 사무국 신규 연락관 파견 추진

라. 추진일정

o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중장기 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4. 1월

o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참가 : 2014. 2월(독일 본)

o UNCCD COP11 의장단 회의 : 2014. 2월(독일 본 예정)

o ELD 제3차 과학워크숍 개최 : 2014. 3월(서울 예정)

o UNCCD 사무국 직원 파견 : 2014. 4월

o ELD 아시아 허브 구축 세부계획 수립 : 2014. 4월

o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SDG 회의 참가 및 부대행사 개최 : 2014. 5월

o 제3차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인셉션 워크숍 : 2014. 5월(아시아 2개국)

o 제1차 건조지녹화파트너십 현장 확인 : 2014. 7월(아프리카 3개국)

o UNCCD COP11 의장단 회의 : 2014. 9월

o 쿠부치포럼 참가 및 DLDD-NEAN 성과 공유 : 2014. 9월

o UNCCD 과학대회 : 2014. 11월

o UNCCD 협약검토위원회 : 2014. 11월

o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참가 : 2014. 11월

o Global Soil Week 참가 : 2014. 11월

8. 녹색 ODA 사업 확대로 해외산림협력 강화

목 표

◇ 산림협력 ODA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 증진으로 열대 목재자원 확보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Rio+20 총회시 그린 ODA의 확대를 천명, GCF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ODA 기여 확대 요구

o 양자 산림협력 확대를 통한 산림외교 다변화 및 협력 강화 기반 조성

o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막화 및 황폐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산림녹화 및 산림환경 복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할 전망

o DAC 상위 10개국의 산림 분야 ODA 비중은 평균 1.7%('07～'11, OECD)로 우리나라도 산림분야 ODA가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 산림분야 ODA는 국가 전체 ODA의 0.47% 차지(DAC내 비중은 0.9%로 15위)

나. 기본방향

o 기존 ODA 협력은 강화하고 사업 대상 및 사업 형태 다변화, 부처간 연계 사업 발굴 등으로 산림분야 ODA 확대를 추진

o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은 AFoCO 협력사업으로, 아프리카・남미 지역은 창원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o '12년 수립한 몽골 그린벨트 후반기(2012～2016)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목표(3,000ha) 달성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 마련 및 신규 사업 발굴·확대

o 녹화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 수요 증대 및 예산증가에 따라 효과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전략 마련

-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 유관기관 연계 협력, 사후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등

o 사업 체제 다변화 및 부처간 연계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확대

- 산림경관복원, DLDD, SDG 설정 등 국제 의제를 기반으로 한 부처간, 기관간 연계사업 발굴 추진
- 양자 협력, 창원이니셔티브 등 기존 체계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 공동 발굴 및 협력사업 확대
- KOICA와의 무상원조 업무협조를 위한 MOU를 기반으로 신규 ODA 사업 추진

o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까지 확장하여 추진하고, 창원이니셔티브의 건조지녹화파트너십을 신규로 확대

- AFoCO 회원국 확대 협상 및 UNCCD 성과 등과 연계하여 신규 협력 관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2) 황사방지 국제협력 대응사업 지속 추진으로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기여

o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후반기 사업계획('12년 10월)에 기반하여 몽골그린벨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목표(3,000ha) 달성

- 사막화방지 조림(100ha), 싹사울 복원 조림(300ha), 양묘사업(2개소), 연수생 초청, 공동연구사업(6과제) 등

o 중국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사업성과 제고

- 대상지 : 중국 쿠부치사막
- 수행기관 : 녹색사업단(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 사막화방지 조림, 조림기술지도 등

3) 개발도상국과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협력 지원체계 정비

o 개발도상국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현장 적용가능 지식 위주의 교육 실시

o 산림분야 국제협력사업 운영 전문가(PM)의 장·단기 해외파견

-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에 실무급 전문가 파견 지속 추진

o 민간부문의 사막화방지 활동 참여 촉진 지원

- 민·관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 사막화방지 활동의 사업 효과 제고
- 사업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녹색사업단을 통해 관리

라. 추진일정

o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2014년 운영계획 수립 : 2013. 12월

o 제7차 한·몽공동운영위원회 및 싹사울 전문가 워크숍 개최 : 2013. 12월

o KOICA 제4차 미얀마 녹화사업 계약 : 2014. 12월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사업계획 수립 : 2013. 12월

o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4. 1～2월

o KOICA 제4차 미얀마 녹화사업 현장 점검(1차) : 2014. 2월

o 중국 황사방지 협력사업 현지 점검 : 2014. 5월

o KOICA 제4차 미얀마 녹화사업 현장 점검(2차) : 2014. 5월

o 사막화방지의 날(6.17) 기념 조림 행사(몽골) : 2014. 6월

o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점검 : 2014. 8월

o 제8차 한-몽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2014. 12월

9.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목 표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협약 적극 대응으로 산림분야 역할 확대
◇ 유엔산림포럼(UNFF), FAO 등과 국제협력 확대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손실, 사막화 확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국제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

o Bonn Challenge[6] 출범('11) 이후 산림경관복원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토녹화 성공경험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참여

o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4, 평창)을 우리나라가 유치함에 따라 정부는 Korea Biodiversity initiative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산림경관복원이 KBI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o 한편,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3, 바르샤바)에서 REDD+(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가 패키기(활동, 재정)로 합의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REDD+ 활동이 촉진될 전망.

o 또한, 모든 국가들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2015년 초까지 제출토록 촉구함에 따라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이 본격화 예상

o 아울러, 유엔산림포럼에서는 비구속적 산림협정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의 전환을 논의할 계획

나. 기본방향

o 제12차 CBD 총회('14년, 평창)를 계기로 산림경관복원 의제화 및 이니셔티브 추진

o Post 2020대비 REDD+ 등 기후변화 협상 대응 강화

o 유엔산림포럼(UNFF), FAO 등과 국제협력 확대

6) Bonn Challenge : 독일 정부와 IUCN이 공동으로 주최한 산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출범한 '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5천만ha의 토지를 복원하자는 목표

다. 세부추진계획

1) 제12차 CBD 총회('14년, 평창)를 계기로 산림경관복원 국제협력 추진

o 산림경관복원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계획 수립

- 전문가 협의회 및 '13년 추진한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 컨텐츠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14.2월)
- CBD/FAO/IUCN/GPFLR과의 협력 내용, 이니셔티브 세부계획 등

o 제12차 총회에서 산림경관복원을 국가이니셔티브(KBI)의 핵심요소로 추진

- 국내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산림경관복원의 독립성을 확보
- 국제적으로는 CBD 사무국과 협력하여 관련 의제의 결정문에 반영 추진
- 생태계복원 이행 능력배양 지역·소지역 워크숍을 활용하여 이슈화
  * 의제 내용은 CBD 사무국에서 초안 작성('13.12월) → 산림청 검토 →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업무협의('14.1월) → 산림청이 CBD와 협의하여 내용 확정('14.2월) → CBD와 함께 생태계복원 능력배양 지역·소지역 워크숍을 활용하여 당사국 지지 확보('14년 연중) → 제18차 SBSTTA에서 결정문 초안 회람('14.6월, 캐나다) → COP12에서 결정문 채택('14.10월, 평창)
-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CBD에 우수정책사례로 제공('14.2.)
  * 동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PPT 자료를 작성하여 정책 소개 자료로 활용
- CBD, FAO, IUCN·GPFLR[7] 등과 협력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CBD, FAO 등과 산림경관복원 부대행사 공동개최 및 이슈화

※ Korea Biodiversity Initiative(가칭)

o COP12 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 및 아이치타깃 이행을 촉진 하기 위해 제시할 평창 로드맵을 지원하는 범부처 합동 이니셔티브

o 핵심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협력(환경부, 100만불), 해양보호구역지정(해수부, 50만불), 산림경관복원(산림청, 50만불)을 구상 중

o 국가 이니셔티브로 공동 론칭하되, 각 프로그램은 소관부처가 해당 의제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

  * KBI 추진절차 : 환경부가 CBD와 이니셔티브 초안 협의 및 기획('13.12월) → 관계부처 협의('14.1월 중) → 환경부와 CBD가 결정문 협의 및 당사국 지지확보('14.7월까지) → 결정문 채택 및 공포('14.10월 COP12)

7) 산림경관복원지구파트너십 : '03년에 IUCN, WWF, 영국 산림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산림경관복원 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20개 국제기구(CBD, CIFOR, FAO, GM, IUCN, IUFRO, ITTO, UNEP, WWF 등)와 13개 국가(중국, 엘살바도르, 핀란드, 가나, 이탈리아, 일본, 케냐, 레바논, 네덜란드, 남아공, 스위스, 영국, 미국)가 회원으로 참여 중

2) REDD+ 등 기후변화 협상 대응 강화

o REED+ 협상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REDD+ 활동방법론 및 재정 방법론이 패키지로 합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 심층 분석을 실시
-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GCF 유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REDD+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추진

o Post-2020 신기후 체제에서의 산림분야 협상 대응 준비

- 산림분야 감축잠재력을 조기 분석하여 협상 시나리오별 옵션 검토
- 현재(CP2)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 별 우리나라에 대한 장단점 분석
- 국립산림과학원의 Post-2020 대응 탄소계정체계 고도화 연구역량 강화

3) 유엔산림포럼(UNFF), FAO 등과 국제협력 확대

o 국제산림협정(IAF[8]) 제정 효과성 평가 등 UNFF 논의 적극 참여

- 비구속적산림협정의 효과성 평가 설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13.12)
- 구속력있는 산림협정의 제정에 관한 국가 의견을 정립한 후 제11차 UNFF('15.5월, 뉴욕) 회의에 참여

  * 산림정책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등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o FAO와 산림경관복원 협력 신규 MOU 체결(6월 로마, 청장)

- 기존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 MOU로 추진하고 세부 프로그램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
- CBD 산림경관복원 이슈화·의제화 및 이니셔티브 추진에 활용

  * IUCN·GPFLR, ITTO, IUFRO, CIFOR, ICRAF 등 관련 국제기구 협력관계 활용

※ 산림경관복원 관련 FAO 동향

o 산림경관복원 국제협력 주도를 위해 FLR facility를 구성할 계획

o 최근 CBD와 글로벌 생태계복원 이행 촉진을 위한 능력배양 지역·소지역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기로 하는 등 CBD와 협력체계 구축

o 지난 11월 북경에서, 동북아 산림경관복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산림경관복원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

8)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 :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산림협정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지속가능한산림경영(SFM) 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하려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 느슨한 적용을 주장하는 중국, 인니 등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비구속적산림협정(NLBI) 채택('08. 제7차 UNFF)되었으며 2015년 제11차 UNFF 시 재 논의 예정임

o IUCN, SER, BGCI 등과의 협력 채널 유지 및 협력사업 신규 발굴

- 산림경관복원 이행 평가지표 개발(IUCN), 과학기반 구축(SER), 지구식물 보전협력(BGCI) 등과 공동으로 관련 행사 및 연구 추진

4) 국제협상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이행 준비 지원

o 국제협상 전문가들의 안정적인 협상 참가 및 대응 지원

- 전문가들의 협상 참가 및 국내 이행 지원을 위해 연구사업에 반영
- 외부 전문가의 협상 참가 및 전문 능력 활용을 위해 정책연구 지원

o 협약별·국제기구별 전문가 pool 구성·운영

- 본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전문가 지정
- 주요 이슈에 대한 의제검토 및 국내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회의에서 합의한 지침 등에 대해 산하기관에서 국내 적용 연구를 추진토록 하여 시책 건의토록 유도

  *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프로세스 등에서 합의된 지침 등은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

o 국제협상 동향 전파를 위한 정례 보고회 및 뉴스레터 발간

- 산림분야 주요 이슈 추진 동향, 협상 결과 등을 뉴스레터로 발간
- 주요 협약(UNFCCC, CBD) 당사국 총회 결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

o 해외 파견자(고용휴직, 유학 파견 등)들을 통한 현지 동향 정보 입수

- 고용 휴직 파견자들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활동을 보고토록 조치
- 유학 파견자에 대해서는 유학국가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 요청

o 관련 부서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이행 준비를 위해 회의 참가 확대

라. 추진일정

o 3대 환경 협약 및 국제기구 이슈별 전문가 Pool 구성 : 2014. 1월

o 제32차 FAO 아태지역총회 : 2014. 3월, 몽골

o 제5차 APEC 불법벌채 및 관련무역 방지 전문가회의 : 2014. 5월, 청도

o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STA) : 2014. 6월, 본

o 제22차 FAO 산림위원회 및 산림경관복원 MOU 체결 : 2014. 6월, 로마

o 제18차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 : 2014. 6월, 몬트리올

o 제6차 APEC 불법벌채 및 관련무역 방지 전문가회의 : 2014. 8월, 하얼빈

o 제3차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 회의 : 2014. 9월

o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 2014. 10월, 평창

o 제50차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 : 2014. 11월, 요코하마

o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 2014. 12월, 리마

산 림 자 원 국　소 관

1. 산림기본계획 이행 제고 및 제도 개선

목 표

◇ 산림기본계획의 통합조정 역량 강화로 이행실효성 제고
◇ 산림부문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가. 정책여건

o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 수립·시행

o 정부 3.0,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개발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산림계획 및 분야별 정책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o 해외 및 타 분야 우수 정책의 조사·분석으로 산림분야 신규 정책 발굴 및 개발 추진

o 산림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

o 산림박람회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부담 및 업무수행 체계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정합성 강화

o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13.7)에 따라 진행 중인 지역산림계획 변경을 지원하고, 계획간 상충요소 해소

o 지역산림계획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산림계획 수립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 건의 사항 발굴

o 산림기본계획과 타 분야 산림정책 계획간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 현재 개별법령 및 시책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산림정책계획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과 연계성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중장기적으로 국토계획평가에 준하는 산림분야 계획간 정합성 강화 장치 마련을 검토

2) 변경된 산림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

o 27개 핵심과제 단위로 연차별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피드백

o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13.6)의 중간성과 점검・보고 추진

3) 산림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o 산림기본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된 국제기구지원, 산림정책심의회, 산림통합관리권역 관련 조문 개정

4) 신규 산림정책 발굴 강화

o 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정부 3.0,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롭고 이행가능한 정책 발굴・개발

o 기후변화대응,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증진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타 분야 정책동향 파악・분석

5) 산림박람회의 국고보조율 개선 및 품질제고

o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50→100%)하여, 개최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 (기획재정부 협의 추진)

o 본청 직접수행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으로 전환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계획제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세미나 : 2014. 5월

o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법 시행 : 2014. 7월

o 산림박람회 개최(강원 화천) : 2014. 8월

o 해외산림정책 우수사례 조사・분석・보고 : 상, 하반기

o 산림기본계획 이행 실적 모니터링 : 2014. 11월

2.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기반 마련

목 표

◇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활용 촉진에 기여

가. 정책여건

o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3.2)

o '2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 제기

나. 기본방향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이행

o 산림탄소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법령 개정으로 제도 운영기반을 고도화

o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활성화

o 산림탄소 업무의 협업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 협의체 운영 및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탄소흡수원법의 제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14. 12)

o 기후변화 대응 대책(녹색성장 지원단 주관) 및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주관) 등 국가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

o 관련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사업단, 한국임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o 공청회, 부처 의견 조회,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 등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 방향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보급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o 산림분야 온실가스 정보·통계 및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o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2) 국정과제 이행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가칭) 산림탄소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탄소흡수원법 개정

o 국정과제 이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탄소전문가 제도 도입

o 산림탄소 분야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가칭) 산림탄소협회 설치

o 배출권 거래제법과의 중복 조정을 위해 감축실적형 사업* 조문 삭제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등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자체장, 사업자의 의무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사업

3)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확대 등 제도 운영기반 고도화

o (운영표준) 식생복구, 산림전용억제 유형 추가(5개 → 7개 유형)

- 식생복구 : 도시숲 조성 등 신규조림/재조림 외 식생 조성 활동
- 산림전용 억제 :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

o (규정제정) 산림탄소등록부 운영 방안 및 수관울폐도 기준 제정

o (기술개발)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갱신 및 검증 수종 확대(6→16수종)

-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림부문 통계 재산정
- 잣나무, 졸참나무 등 10개 수종 국가 고유 흡수·배출계수 개발

o (해외조사) 산림탄소상쇄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배출권거래제의 외부감축실적(상쇄)에 산림분야 포함 논리 개발 등

4)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활성화

o 산림탄소센터 주관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관심 기업·지자체·산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1:1 집중 컨설팅 실시

- (산림관련기업) 산림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발전사, 제철, 전기회사 등 의무감축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 개최
- (산림소유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인협회 등을 통한 참여 유도

o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기업·단체를 위한 사업대상지 DB화
- '국민의 숲' 등 국유림을 대상으로 조사 후 기업에 대상지 정보제공
- 지자체 공유림을 대상으로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공동사업 추진

o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 기획 보도 등 홍보 실시
-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탄소흡수원 관련 공익광고 제작·방영
- 강원도, 이브자리 등 사업등록 사례를 활용한 안내 책자 발간

o 지자체, 산림조합 등 사업담당자 및 검증원 교육 실시(2회)
- 산림청·지자체·산림조합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책교육 실시
- 산림탄소센터를 통해 검증기관 지정·운영 및 검증원 교육

5) 산림탄소 업무의 협업 및 투명성 강화

o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 심의·의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 및 검토 안건(안)>

o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안) 검토 및 심의
o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안) 검토 및 심의
o 산림·습지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결과 심의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o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검토 등

o (산림탄소협의체) 산림탄소 관련 정책, 연구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
- 세미나, 현장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전파
- 사업참여자와 공동으로 현장의 애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산림탄소협의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 녹색사업단, 한국임업진흥원, 서울대, 고려대, 상쇄사업자(이브자리, 강원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o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 사업 신청 및 등록 →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 탄소흡수량 검증 → 흡수량 인증 및 인증서 발급 → 거래 등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 구현
- 사업 신청부터 모니터링,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산림탄소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으로 개발

5)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에 따른 산림분야 세부 시행계획 관리 및 점검

o 국립산림과학원, 본청 관련 부서와 함께 산림/생태계 분야, 국토/연안 분야, 국제협력 분야 등 산림청소관 16개 과제 추진
- 한반도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및 생태축 복원, 임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산림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산림재해 대응 체계 구축 등

o 세부시행계획 이행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자체 성과 평가 실시 및 환경부 주관 종합 평가 대응

6) 산림탄소센터 및 산림탄소인증센터 운영

o (산림탄소 센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지원 및 타당성 평가 수행 등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및 타당성 평가
- 제도 설명회, 관련 안내 책자 발간 등 제도 홍보
- 검증기관 지정·운영 및 검증원 교육·훈련 등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o (산림탄소인증센터) 목재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및 산림탄소 인증
- 농식품부와 함께 목재업종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검증체계 구축 및 산업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축목표 할당
- 목재 업체의 목표관리제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연구회 운영 실시
-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 표준 및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산림탄소 흡수량 시범 인증 추진 등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라. 추진일정

o 산림탄소센터 및 산림탄소인증센터 운영 : 연중

o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 : 2014. 12월

o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4. 10월

o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 2014. 12월

o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 : 2014. 7월

o 탄소흡수원 증진 위원회 : 분기별 1회

o 산림탄소상쇄과정 시책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o 기업,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 상·하반기 각 1회

o 산림탄소협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o ’13년도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 상반기

3.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추진

목 표

◇ 산림분야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13~'17)

* 장·단기일자리 균형 및 신규 산림 일자리 적극 발굴

◇ 현장 인력양성 기반 구축 및 취업지원 강화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가. 정책여건

o 국내·외 장기 경기침체로 청·장년 실업문제 심각성 부각

o 산림분야 일자리정책을 장기 안정적 전문일자리 정책으로 전환 필요

o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활용한 전문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단계

나. 기본방향

o 산업육성, 인력양성이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

o 새로운 인력양성 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o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등 산림일자리의 사회적 기능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o 장·단기일자리 균형 정책추진으로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

- 목재산업육성 및 전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장기일자리(5천개) 창출
- 농·산촌지역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31천개) 추진

o 산림일자리창출 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한 점검체계 활성화

- 정례적 일자리창출 이행상황 점검(월별 1회) 및 자문회의 개최(분기별 1회)

o 일자리창출 점검체계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및 일자리대책 수정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변경에 대응

2) 산림일자리 신규 발굴 및 구인·구직자 미스매칭의 해소

o 산림분야 전문자격제도 정착지원 및 신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기 도입된 자격제도별* 자격취득자 활동현황 모니터링 및 교육부, 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자격취득자의 활동범위 확장

* 기 도입된 자격제도 :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임업기계오퍼레이터

- 나무의사, 산림탄소전문가 등 자격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o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단기일자리 인력의 장기고용 전환

- 3개 임업훈련원을 활용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o 맞춤형 고용박람회 개최(3회) 및 청년취업을 위한 산림인턴제도 운영

- (박람회)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및 은퇴자·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
- (인턴제) 산림분야 특성화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실시

3) 산림특성화고, 한국농수산대학 등 현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o 산림과학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통한 산림특성화고 발전기반 조성

- 목재산업체, 산림법인 등과 산림과학고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 청원산림보호직, 공공기관 등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o 한국농수산대(산림조경학과)의 현장교육 및 졸업생 창업 지원

- 산림사업 현장연계, 임업훈련원을 통한 기술훈련 등 현장교육 지원
- 한농대 졸업생에게 임업후계자에 준하는 경영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o 산림분야 현장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산림특성화고, 한농대 지원 및 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담

4)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지정 및 협업을 통한 경영지원 확대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지정 확대(8개 추가)

- 창업 설명회(2회) 및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사업 개최
- 숲해설가 및 숲가꾸기패트롤 등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진

o 산림형 사회적경제 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보육체계 개발

- 한국임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등과 경영지원 협업체계 구축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보육서비스 제공

o 제도개선을 통한 산림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확대 및 홍보강화

- 녹색자금 공모사업 참여기회 부여 및 우수업체 제품구매 등 지원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제품전시회 등 홍보 지원

5) 지속적인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o (가칭)「산림산업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13년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최종검토 후 '14년도 입법추진

o 산림일자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원기관 역량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일자리 통계 집계 기능 보강
- 한국임업진흥원내「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설립

라. 추진일정

o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 연중

o 한국임업진흥원내「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설립 : 연중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4. 5월, 11월

o 산림고용박람회 계획 수립 및 개최 : 2014. 3~4월

o 산림인턴제도 실시 : 2014. 6~8월

4. 수요자 중심의 R&D 추진 및 실용화 강화

목 표

◇ 연구개발(R&D)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협업연구 및 현장애로 현안연구 강화
◇ 산림행정 3.0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가. 정책여건

o 연구개발(R&D)의 질적 성장에 따라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

o 연구성과 도출 및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o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나. 기본방향

o 연구개발 규정 단순화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R&D 투명성 제고
- ‘산림연구개발규정’을 국가 규정에 맞게 개정 및 통・폐합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FTIS) 고도화 및 전자 협약시스템 도입
- 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류 제출 최소화 및 정보 공개 확대

o 협업연구체계 구축 및 현장애로 기술 중점개발
- 다부처 공동연구 과제 참여 등 부처 협업과제 적극 발굴 및 참여 확대
- 한・중 FTA 등 임업현장 애로 및 지원과제 중점 추진

o 산림분야 R&D 기관 확대 및 조직 확충을 통한 추진・관리역량 강화
- 산림유전자원 및 종자생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기반 강화
- 한국임업진흥원을 R&D 과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등 신규 기관 설립 및 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o R&D 기획 및 연구 성과 관리 강화
- ’15년 예산안 편성부터 R&D 심의회 운영
- R&D 및 기타 용역을 포함한 연구 성과 이력관리체계 구축
- 연구 성과 점검・평가시 전문가 참여 확대

o 산림행정 3.0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임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조정협의체' 구성
- 소속기관,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 산림분야 전문가 인명사전 발간

다. 세부추진계획

1) 연구개발 규정 단순화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R&D 투명성 제고

o '산림연구개발규정'을 국가 규정에 맞게 개정 및 통·폐합

- 과제관리 업무절차 표준화를 통해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13년) 5개(규정 1, 지침 4) → ('14년) 2개 (규정 1, 지침 1)
- 유사 서식 통폐합 등으로 제출서식 간소화
- 연구사업단 구성시 '연구사업단장의 자격 기준' 강화로 전문성 제고
- 소속 연구기관은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 보완·조치(상반기)

o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FTIS) 고도화 및 전자 협약시스템 도입

- 공고부터 신청·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연구자 편의성 증진
- 부서별로 운영 중인 사업성 연구도 FTIS에 등록·관리
  * 정책연구용역, 시험연구, 사업성 용역 등의 정보를 입력대상에 추가

2) 협업연구체계 구축 및 현장애로 기술 중점개발

o 다부처 공동연구 과제 참여 등 부처 협업과제 적극 발굴 및 참여 확대

- 범부처 공동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및 포스트게놈 유전체 사업 추진
  · (GSP) '12년 표고종균 국산화율(평균 25%)을 '21년까지 70% 달성 목표
  · (포스트게놈) 산림분야 산업화 지원을 위한 미생물유전체 전략연구 추진
  ·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미래부 주관)에 따른 과제 발굴 및 참여
- 대학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학술림(시험림 포함) 등 연구 추진
  · 학술림을 운영하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과의 연구활동 연계 강화
  · 학술림 등의 기능 활성화, 교육·연구기능 강화로 연구인력·기반 확충

o 한·중 FTA 등 임업현장 애로 및 지원과제 중점 추진

-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
- 지방임업소득연구지원사업은 지역특산 임산품의 특성화에 집중 지원
  · 사전 연구계획서 제출받아 타당한 사업에 예산 배분
  · 지역별 예산의 균형 배분 행태 지양

3) R&D 기관 확대 및 조직 확충을 통한 추진·관리역량 강화

o 산림유전자원 및 종자생산 관련 기술 개발·보급 기반 강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R&D 기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15년 R&D 예산 확보 추진
  - ·연구개발로 추진 가능한 과제 선별 및 과제추진 구체화
- 한국임업진흥원을 R&D 과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R&D 과제의 계약·관리업무 위탁
  - ·산림청은 R&D 기획·선정·평가업무에 집중
-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 중복성 해소 및 효율화를 위한 T/F 운영

o 신규 기관 설립 및 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건축(1년차, 71억원),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건축(1년차, 10억원), 남부산림연구소 특수임산동 신축 설계(2억원)
-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조직·인력 확보를 위해 '15년 정규직제 협의 추진

4) R&D 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 강화

o 해결과제(Target)을 우선 선정 후 정책달성이 가능한 R&D과제 추진

- 현안과제 해결 중심 연구개발 추진으로 단기 가시적 성과 창출
- 실용화·정책화 가능한 연구과제 우선 추진

o '15년 예산안 편성부터 R&D 심의회 개최·운영

- 신규사업 기획 및 계속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및 선택·집중화

o 연구 성과 이력관리체계 구축

- R&D 및 기타 용역 사업종료 후 성과물 활용도를 5년간 모니터링
- 연구성과물이 사장되거나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자, 담당부서 등은 연구과제 선정 제외 또는 예산배분 축소 등 '패널티제' 운영

o 연구성과 점검·평가시 전문가 참여 확대

- 본청 정책전문가, 연구전문가를 통한 '참여 평가제도' 도입·시행
- 산림(임업)분야 외 타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5) 산림행정 3.0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o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임업연구기관가 참여하는 '연구조정협의체' 구성

- 연구조정협의체(반기별)·실무협의회 정례화(분기별)로 협업·소통 강화

o 소속기관,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 산림분야 전문가를 망라하는 산림 전문가 인명사전 발간

- 연구영역·연구이력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여 활용도 제고

라. 추진일정

o「산림분야 연구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3. 12월

- 소속 연구기관 자체 규정 보완 : 2014. 상반기

o 2014년도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공고 : 2013. 12월

- 자유공모과제 : 2013.12월
- 기초연구지원사업단, 기획연구과제 : 2014. 1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사업단, 기획) 협약 : 2014. 3월

o 2014년도 산림정책연구용역 착수 : 2014. 3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 : 2014. 2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승인 및 선정·최종평가 : 2014. 3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지원사업단 중간평가 : 2014. 5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현장실태조사 : 2014. 8월

o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작성 : 2014. 11월

o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FTIS) 고도화 : 2014. 상반기

o 전자협약시스템 도입 : 2014. 하반기

o 사회문제해결형 R&D 과제 발굴 : 2014. 상반기

o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R&D 기관 지정 기본계획 수립 : 2014. 상반기

o「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2014년 상반기

- 한국임업진흥원 전문기관 지정 반영

o 산림과학 '연구조정협의체' 구성 : 2014. 3월

- 연구조정협의체(반기별)·실무협의회(분기별)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목 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및 한국형 산림인증제 도입

가. 정책여건

o 국제적인「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행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경영인증의 필요성 인식 확산

o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근거법률 :「산림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에 국가차원과 현장단위의 SFM 반영

나. 기본방향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지표 보완 및 국가보고서 제출

o 기존 산림경영인증림의 유지 및 인증 목재 생산·공급 확대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확산을 위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SFM C&I 이행 체계 정립

o 몬트리올프로세스(MP)의 SFM C&I(7개 기준, 54개 지표)에 부합하는 국내 C&I(국내 7개 기준, 28개 지표, 2005)의 적합성 검토 및 보완

2) SFM C&I 국가보고서 작성

o 2009년 국내 SFM C&I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MP사무국 제출

o 2014년 SFM 국가보고서 발간을 위한 MAR(.Monitoring Assessment Reporting) 체계 정립

* 제18차 MP회의(2007)에서 2009년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향후 5년 마다 자발적인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의

3) 국제기준 산림경영인증림 유지 및 인증목재 생산·공급 확대

o 국유림의 FSC 산림경영인증림 8개소 유지 및 심사기관 다변화

- 산림경영인증림의 개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영계획구 단위에서 당해 기관의 전체 경영면적으로 확대하여 인증심사 추진
- 유지심사 7개소(318,717ha) : 난대연구림 2,741ha, 홍천 33,879ha, 인제 114,063ha, 평창 65,766ha, 울진 49,130ha, 보은 25,717ha, 함양 27,421ha
- 갱신심사 1개소(63,753ha) : 양양 63,753ha

o 산림경영인증 심사기관의 다변화로 경쟁체제를 통한 업무효율성 모색 및 심사비용 절감 도모(FSC 인증사 3개소, 국내인증제도 도입 등)

o 인증 국유림의 목재생산 확대를 통해 인증목재의 유통 및 활용촉진

- 목재산업계 및 국유림관리소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 및 공급량 조절

4)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o (가칭) 한국산림경영인증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한국임업진흥원 내)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운영
- 산림경영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 추진(하반기)

o 운영표준 개발, 공청회('14.4) 등을 거쳐 시범인증사업 추진

-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실시 후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확대

*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가입('16)

라. 추진일정

o SFM 기준과 지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안연구 추진 : 2014. 3~9월

- 국내 7개 기준, 28개 지표의 적합성 검토 및 보완
- SFM 기준과 지표에 대한 DB자료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정립

o SFM 국가보고서(국·영문) 발간 : 2014. 11월

o 몬트리올프로세스 사무국 제출 : 2014. 12월

o FSC 산림경영인증 유지(갱신)심사(홍천 등 8개소) : 2014. 2~10월

o (가칭) 한국산림경영인증위원회 추진단 구성 : 2014. 3월

o 산림경영인증제도 도입을 위한「산림자원법」개정 추진 : 2014. 하반기

6.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직 역량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

목 표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의 역량 강화
◇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산림산업 저변확대

가. 정책여건

o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 경쟁력 강화의 지속적 요구
o FTA 확대로 인해 임업·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요성 증대
o 로하스(LOHAS)와 힐링 등 산림 및 청정임산물에 대한 관심 확대

나. 기본방향

o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요자 기반의 지원활동 강화
o 품질인증제품 저변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목재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o 고객맞춤형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 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o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정보공개·경영공시 확대 및 정부정책 적극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지식·신기술의 보급 확산

o 수요자 요구에 의한 현장밀착형 산림경영컨설팅 강화(900회)
  - 전화·내방·산림현장 등 임업지식·신기술보급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o 임업기술거래 기관지정 추진 및 기술사업화 현장적용 시범사업 추진(2건)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및 맞춤형 경영지원(14업체 지정·유지)

2) 산양삼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o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정착을 위한 RFID태그 및 QR코드 관련법령·규정 정비
o 초·중·고급과정의 단계별 교육과정의 권역별 3개소 교육센터 운영
  * '13년 2개소(영주, 평창) → '14년 3개소(영주, 평창, 남원)

o 산양삼테마랜드 조성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성 제고 및 산업화 허브기지로 활용

o 품질인증 품목 확대 운영(임의제) : ('13) 7품목, 38건 → ('14) 10품목, 46건

o 목재제품 신규인증제도 기반마련 및 시범운영 실시

* 목재제품 안정성평가 및 신기술지정, 탄소저장량표시·측정, 지역간벌재인증

o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지정 추진 : 목재분야(조달청)

3) 산림인증 활성화

o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표준 및 업무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o 목재업종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검증(MRV)체계 구축

o 국내 산림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산림·업체 선정(3~4개 업체)

o 임업장비 인증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4) 산림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o 산림자원조사 DB관리 및 국가산림자원조사시스템(NFIS) 확대 운영

o 산림행정 3.0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맞춤형산림정보 서비스 제공

* 'One-click 산림종합정보 웹(web)서비스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단기소득임산물 소득공정 매뉴얼 강화 및 경제성분석 비용·소득공정 알고리즘 개발

o 생산 통계자료를 관련논문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임산물 재배의 생산효율성 등)

5) 역량강화 경영체제 확립

o 「미래전략추진단」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 중장기경영목표 설정('14~'18) 및 경영개선 이행실적을 지속점검(36과제)

o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표준정관운영에 따른 이사회구성 변경(2인 확대)

o 변화대응 경영효율화의 '조직합리화방안' 추진 및 사후모니터링(상반기내)

6) 공공기관 조직문화 구축

o 정보공개 심의회 활성화 및 사전정보공개 단계별 확대(7월 → 원문전체공개)

o 성과지향형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 공통역량, 직무역량 및 맞춤형 교육추진

* 개인별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 제도 도입

o 조직 소통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도입(전체 10개 P/G)

라. 추진일정

o 맞춤형 산림종합정보 웹(web)서비스 개방 시작 : 2014. 1월

o 조직개편 및 비전선포 전직원 워크숍 : 2014. 1월

o 교육센터입학식 및 개원식(남원지소) : 2014. 3월

o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설명회 개최 : 2014. 5월

o 품질인증사업 정책고객간담회 개최 : 2014. 9월

o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지정 : 2014. 10월

o 산양삼 테마랜드 완공 : 2014. 12월

7. 녹색사업단 조직체계 정비 및 사업성과 제고

목 표

◇ 녹색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체계 정비
◇ 녹색사업단의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녹색사업단의 국내외 사업다각화로 기관의 역할 및 위상 정립

가. 정책여건

o 국민의 산림복지 서비스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녹색자금 사업용도에 맞는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필요

o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써 해외산림자원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필요

o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상쇄 관련 사업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정책·사업 확대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3.2)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및 확대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녹색자금 지원체계 및 사업유형 개선을 통한 효율성, 공정성 제고

o 사회적 약자층 중심의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정립

o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사업 참여 확대

o 새로운 해외조림사업모델 개발과 미진출 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 해외조림투자를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녹색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체계 정비

o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한 녹색자금 용도의 확대방안 마련

o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및 사업유형 개선

o 사업유형별 중기재정 소요전망, 성과지표, 측정방법 수립

2) 녹색사업단 조직 개편을 통한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o 임원 선임의 투명성 확보 및 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추위 도입

o 비상임 이사장제를 폐지하고 상임 이사장(단장)이 기관을 총괄

o 전무직을 총괄본부장(상임이사)제로 전환하여 기관의 외연 확대

3)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의 칠곡 산림복지나눔숲 개원 및 운영

o 개원('14. 6월) 및 시범운영('14. 6~8월)

- 시설 가동상태 점검, 프로그램 시범적용 등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

o 소외계층 대상 녹색체험교육, 숲 유치원, 청소년 숲 체험, 중·장년층 산림휴양 녹색체험 교육 등 200여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상주 '백두대간 숲생태원' 인력을 칠곡 '산림복지나눔숲'으로 재배치

- 식당 및 매점 등은 위탁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상주 직원이 직접 운영

4) 녹색자금 지원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o '14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기술적 지도・점검

- 소외시설녹색공간조성 106개소, 녹색나눔숲 25개소, 숲체험·교육 4만명

o '15년도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모 및 선정

- 녹색자금 운용계획 확정(녹색자금운용심의회, 14.6)

- 공모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녹색사업단, 14.7~14.10)

5)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홍보 강화

o 검증기관 지정, 운영 지침 마련 및 산림산소상쇄 사업모델개발 및 컨설팅

o 제도 설명회 개최, 홍보부스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동영상 송출

6) 해외조림 사업을 통한 사업모델 구축 및 민간투자진출기반 조성

가)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사업

o 조림지 위치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스마랑

o 조 림 규 모 : 500ha (13년도 조림지 육림 이행 : 500ha)

o 조 림 수 종 : 글릴리시디아

나) 파라과이 해외조림 사업

o 조림지 위치 : 파라과이 중남부 지역

o 조 림 규 모 : 500ha('13년도 조림지 육림 이행 : 250ha)

o 조 림 수 종 : 유칼립투스 그란디스

다) 뉴질랜드 해외조림 사업

o 조림지 위치 : 뉴질랜드 북섬 East Coast 지역

o 조 림 면 적 : 500ha

o 조 림 수 종 : 라디에타 파인

7) 해외산림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사업 확대

o 국내외 해외산림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 개도국 석박사 양성사업, 대학생 해외산림연수, 개도국 단기초청연수, 해외인턴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해외산림전문가 양성 사업을 확대

o 국제산림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산림ODA 사업 발굴 및 수행

- 국제산림협력 사업 발굴 추진 등을 통해 국제산림협력 수행 전문기관으로 도약

- 체계적인 국제협력 수행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산림ODA 사업 추진

라. 추진일정

o 녹색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체계 정비 : 2014. 4월

o 산림복지나눔숲 개원 및 시범운영 : 2014. 6~8월

o 녹색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014. 6~10월

o 산림탄소상쇄 사업모델개발 및 설명회 2014. 1~12월

o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사업 : 2014. 3. ~ 2015. 2월

o 파라과이 해외조림 사업 : 2014. 2~12월

o 뉴질랜드 해외조림 사업 : 2014. 4~9월

8. 조 림

목 표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

- 조림 21,800ha, 51,772천본, 990억원 -

가. 정책여건

o 세계적인 산림면적 감소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목재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림육성이 시급

o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목재생산용 장기수 조림을 기피하고, 산업화 연계가 가능한 특용자원의 식재를 선호

o 대면적 벌채를 지양하고 친환경 벌채를 통한 생태적 산림복구 순환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산림관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

o 휴식, 치유, 교육의 공간으로 숲이 부각되고 있으며 숲을 찾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산림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

나. 기본방향

o 경제림 육성단지 집중 조림 및 불량림 갱신으로 조림 확대

- 산림의 목재생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 조림
-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에 대한 벌채·조림을 확대하여 경제수종으로 갱신

o 큰나무 조림 및 지역특화림 조성 확대를 통한 공익성 강화

- 경관조성, 재해복구 및 예방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하도록 조림

o 지역·기후를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대표 수종으로 조림

- 목재자원, 바이오매스 등 경영목적에 맞는 전략수종을 차별화하여 조성

o 효율적인 조림시스템 개발 및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 벌채와 동시 조림 예정지정리 작업을 실행하여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풀베기 등 사후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성공적인 조림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2014년 조림계획 : 21,800ha, 990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14년 조림계획 (국고보조금)
① 경제림조성	▪ 국고 보조율 : 70%(지방비 20%, 자부담 10%)	▪ 15,610ha, 521억원 · 국유림: 2,150ha, 70억원 · 민유림:13,460ha, 451억원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 3,000본/ha, 479만원/ha	▪ 15,610ha, 521억원 · 국유림: 2,150ha, 70억원 · 민유림:13,460ha, 451억원
② 큰나무조림	▪ 국고 보조율 : 50%(지방비 50%)	▪ 4,920ha, 290억원 · 국유림: 920ha, 85억원 · 민유림: 4,000ha, 205억원
가. 큰나무공익조림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수종 식재(수고 1.5m 내외) ▪ 350본/ha, 1,167만원/ha	▪ 2,120ha, 131억원 · 국유림: 120ha, 14억원 · 민유림: 2,000ha, 117억원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 산사태, 산불·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조림 ▪ 1,500본/ha, 887만원/ha	▪ 2,800ha, 160억원 · 국유림: 800ha, 71억원 · 민유림: 2,000ha, 88억원
④ 지역특화조림	▪ 국고 보조율 : 70%(지방비 30%)	▪ 1,270ha, 137억원 · 국유림: 380ha, 35억원 · 민유림: 790ha, 102억원
가. 금강소나무육성	▪ 강원·경북지역의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금강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 ▪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400ha, 14억원 · 국유림: 300ha, 11억원 · 민유림: 100ha, 3억원
나. 안면소나무육성	▪ 충남 태안지역의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안면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 ▪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100ha, 2억원 · 민유림: 100ha, 2억원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 강한 해풍,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 산림의 녹화 ▪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등 2,012만원/ha	▪ 150ha, 22억원 · 국유림: 20ha, 4억원 · 민유림: 130ha, 18억원
라. 운두령특수 활엽수림 조성	▪ 운두령 특수활엽수 시범단지 조성, 산림관리 등 3,334만원/ha	▪ 30ha, 10억원 · 국유림: 30ha, 10억원
마. 석포모델숲조성	▪ 경기도 용인지역 대면적 기부산림을 국유림 경영 모델숲으로 조성 및 관리 ▪ 벌채지 조림, 산림공원 등 시설 3,334만원/ha	▪ 30ha, 10억원 · 국유림: 30ha, 10억원
바. 지역특화림 조성	▪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2,012만원/ha ▪ 동계올림픽 경관림(220ha), 낙산사 복구 후계림(13ha), 대둔산 철쭉특화림(37ha),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50ha), 대나무 특화림(20ha), 득량만 난대 특화림(70ha), 보은산 테마숲 조성(50ha), 송이 소나무 특화조림(20ha), 5대명산 가꾸기(60ha), 칠갑산 특화림(20ha)	▪ 560ha, 79억원 · 민유림: 560ha, 79억원

* 설계감리비 28억원(국유림 5억원 민유림 23억원), 사업운영비 14억원

다. 세부추진계획

1) 경제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5,610	2,150	13,460
사업비	52,089	6,976	45,113

※ 국고 보조율 : 70%

o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를 다양화하여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림 단지 조성**
>
> **목재자원 단지** :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 등 용재수종
> **바이오매스 단지** : 펄프재, 표고자목, 펠릿원료 등 속성수종
> **특용자원 단지** : 옻, 닥, 죽(竹), 헛개, 황칠, 등 특용수종

<경제림 조성의 종류>

① 목재생산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등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을 단순화하여 대면적·집단화 조성

* 조림지 여건을 고려하여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복층림 조성 등 적절한 조림방법을 적용

② 바이오순환림조성

· 목재펠릿, 펄프재, 표고자목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

· 백합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생태조림)으로 조성

* 최종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밀식 조림하여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③ 특용자원조림

·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의 대단지 조림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화 기반조성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종 및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수종을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재

*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직접 구매하여 식재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행

④ 유휴토지조림

·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 조림수종은 유실수, 산지과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가) 목재생산조림

o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조림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생산성 증진

- 현재 경제림 조성의 조림수종이 지나치게 많아 묘목생산, 식재 및 수확벌채의 비효율성 등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저하

- 목재, 바이오매스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조림수종은 단순화하고 대면적으로 규모화하여 조림

  ┌ 확대 : 소나무, 낙엽송, 졸참·굴참나무, 유망자생수종
  ├ 축소 : 잣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 현수준 유지 또는 확대 : 삼나무, 편백 등(기후변화 대비 수종)

o 벌채 시 전목·전간재 집재를 활성화하여 임목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림 예정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 원목반출 후 조재산물의 임내정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부산물 수집으로 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및 식재공간을 최대한 확보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대규모 집단화 추진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경관수종, 유실수·특용수는 지역특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여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참조)

o 묘목의 종류 및 식재본수는 현지 입지여건과 산림경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

- 소묘·중묘·대묘, 움싹·파종·천연하종, 복층림 조성 등 조림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림방법을 적용

  * 목재생산 목적의 대묘조림은 경제림조성에 포함하여 추진

- 목재생산조림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라 조정 식재

  · 일반 노지묘, 침엽수 용기묘(2-0), 활엽수 용기묘(1-0) 3,000본/ha 식재

  · 비옥지에 낙엽송을 조림하는 경우 2,000본/ha 식재

  · 대경재 생산을 위해 백합나무를 조림하는 경우 1,100본/ha 식재

  · 백합나무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시는 2,000본/ha 이상 식재

  ·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묘는 1,500본/ha 식재

<주요 수종의 묘목규격>

수종별	소묘	중묘	대묘	비고
소나무	1-1	2-0(용)	1-1-2	
낙엽송	1-0	1-1	-	
잣나무	2-2	2-3	2-2-3	
편백	1-1	1-1-1, 2-0(용)	1-1-2, 1-2-2	
삼나무	1-1	1-1-1	-	
리기테다소나무	1-1	2-0(용)	-	
백합나무	1-0, 1-1	-	-	식재후 대절
가시나무류	-	2-0(용)	-	

  * 조림용 묘목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묘목을 수급(종묘 생산지증명 등)

o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사후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규격 묘목으로 묘령 및 규격이 큰 중·대묘 조림을 확대

- 산림내 유기물이 축적에 따른 조림목의 경쟁 식생 번성에 대응하고, 농·산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

- 경제림 조성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중점 조림수종의 묘목 크기를 상향 조정하되, 속성수, 활엽수 조림은 중·대묘 조림 지양

- 중·대묘 식재본수는 묘목 규격 상향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향 조정

  * 소묘(3,000본/ha)와 대묘(1,500본/ha)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비옥도와 생장 속도를 감안하여 설계에 의하여 적정 본수 산출

o 용기묘 조림은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침엽수 용재수종을 중심으로 확대

- 용기묘 생산 효율성, 현지 적응성이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확대
-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를 위주로 용기묘 조림 추진

  * 단벌기 경영 목적의 산림은 용기묘 조림 대상에서 제외(상수리나무 등)

  예) 표고자목 생산, 목재칩 생산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조성 등

o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o 천연하종갱신, 맹아갱신 등 저비용·고효율 조림을 확대

- 개벌·인공조림 위주의 갱신에서 인공조림과 병행한 맹아·천연하종 갱신 및 복층림 조성 등을 확대하여 저비용 조림을 실현(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적지에 실행)

o 조림목의 절단 방지 및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해 조림목 표시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 사용

o 허가(신고)에 의한 벌채지 및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의무조림 및 조림명령 철저 이행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 온대 중・남부 지역 잣나무・리기다소나무림 등의 수확지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조림을 추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편백 등 기후대 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을 확대하되, 조림수종의 조정은 산림기후대 북상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

o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난대·아열대 수종 시험조림 및 대체수종 개발

- 지방청별로 3~5ha를 시험조림한 후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연계하여 적응성 및 생육상황 모니터링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 난대 유망수종 자원화 연구('08~'12)

- 북부·동부·중부는 편백 등 난대수종, 남부·서부는 붉가시나무 등 난대·아열대 수종 시험 식재

  * 리기테다소나무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온대중부 지역까지 조림 확대

나) 바이오순환림조성

o 목재펠릿, 펄프재, 보드·섬유판, 표고자목 등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생태조림)을 활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에 따라 '20년까지 10만ha 조성
- 소·중경재 단벌기 순환림 또는 대경재 생산림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 실행요령은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자원육성과-940호, 2009.2.26.) 및 '바이오순환림조성 실행계획'(산림자원과-3673호, 2009.12.18.) 참조

o 조성대상지는 가급적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맹아갱신,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지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우선 조성

o 펠릿공장, 산림탄소순환마을 등 수요처와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을 중점 추진

- 기관별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운영 및 연차별 조성계획을 준수하여 추진 대면적 시범단지(개소당 50ha 이상) : 지자체(도) 및 지방청별 2개소
  - 국·사유림 연계 시범단지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북부, 중부, 서부 각 1개소

  * 시·도별 연차별 조성계획(변경) 및 시범단지 내역은 붙임 참조

o 불량림 벌채, 비료주기 등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셈적용 등 원가계산에 차질 없도록 반영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공정산출 및 설계 참고사항
  - 불량림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의하여 벌채공정 반영
  - 임산물운반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 요령으로 공정 반영
  - 조림목의 빠른 생육을 위하여 반드시 전면적 비료주기 작업 실행
  - 기타 식재공정 등은 일반 조림사업에 준하여 설계

o 조림수종은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식재본수는 대상지별 입지여건과 묘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식재수종 :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포플러류,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자작나무는 온대북부 지역에 식재)

- 식재본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 2,000본/ha 이상
└ 기타수종 : 3,000본/ha 이상

* 백합나무 2천본구 식재간격은 2×2.5m 또는 5×1m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대절 후 2개 이상 움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시 정리
* 백합나무는 한건풍·동해 우려가 없는 적지에 한정하고 조림면적을 축소

- 바이오순환림조성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o 척박지, 능선부 및 산정부 등 백합나무 식재가 부적합한 대상지는 임지여건을 고려하여 침엽수 용재수종을 대상교호 또는 군상혼효로 식재하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 산업용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ha당 3,000~5,000본까지 밀식

* 대상·혼효 식재한 용재수종은 바이오순환림 단지면적에 포함

o 조림비용의 절감과 조림지 사후관리 어려움을 감안하여 움싹, 천연치수 등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자연복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움싹, 천연치수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식재(300본～1,000본/ha)
- 보완식재하는 묘목은 움싹, 천연치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성수로 식재

* 바이오순환림 관리대장은 「조림사업 설계·감리시행지침」의 '조림지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o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매뉴얼 및 연차별 운영 모식도 등 체계화(국립산림과학원)

- 바이오순환림 조성 시험연구를 통해 기후대별 수종개발과 식재본수, 간벌시기, 간벌량 및 적절한 수확기 등 효율적인 시업체계 규명

다) 특용자원조림

o 약용, 식용, 공업용 등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특용수종을 단지화 조림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자원 조성

- 특용자원 단지 조성계획, 특용수종 조림 적합지, 산업화 연계 효과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유망 특용자원(예시)

* 옻나무(옻칠공예, 식약재), 닥나무(한지산업), 대나무(죽공예), 헛개나무(식약재),

박달나무(운동기구), 황칠나무(전통도료), 산수유(식약재), 동백나무(유지), 참죽나무(가구재, 식약재) 등

* 산림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 허가·신고대상 수종은 제외

※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효과적인 산업화 성공을 위해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우선 선정 ▪ 단순하게 수실을 채취하여 소비하는 수종보다는 원료, 가공품으로 2, 3차 산업화 유발 효과가 큰 특용자원 발굴 ▪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 사업자 사업비 투입 및 개별적으로 인허가) ▪ 대상 수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산림의 조성이 아닌 재배·경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관목류, 만경류 등은 제외 ▪ 지역별 고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망 특용자원의 개발

o '14년 사업계획 : 2,000ha(국비 11,643백만원)

- 민유림 1,700ha(9,894백만원), 국유림 300ha(1,749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특용자원 조림 사업비는 단가(4,788천원/ha당)에 구애받지 말고 경제림조성 전체 통합 예산을 활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 집행

- 특용자원 조림 사업단가 : 4,788천원/ha당(특용자원 묘목구입비 포함)
- 식재본수는 비옥도, 묘목의 크기 등 토양 및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유실수(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 : 400~800본/ha
  └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o 보조방법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주희망, 지자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로 편성

o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수를 조림하는 산주에게 특용자원조림을 우선 지원

- 기 조성된 운재로·작업로의 유지 보수와 비료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반영

라) 유휴토지조림

o '14년 사업계획 : 민유림 1,000ha(국비 3,351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한계농지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지적법」 제5조에 의하여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 참조(산림자원팀-1731호, 2006.11.27.)

o 조림수종은 유실수, 산지과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 밤나무는 과잉 생산을 감안 지원대상 수종에서 가급적 제외

o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조치

o 기후변화 대응 신규 산림조성에 대한 산림사업 실적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반드시 계획량 이상으로 추진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에도 조림 가능

2) 큰나무조림

가) 큰나무공익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2,120	120	2,000
사업비	13,067	1,400	11,667

※ 국고 보조율 : 50%

o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 제고

- 경관수종(수고 1.5m 내외)은 350본/ha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가능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2,800	800	2,000
사업비	15,959	7,093	8,866

※ 국고 보조율 : 50%

o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

- 산사태 피해지는 우선 복구를 지원하고, 주택가, 농경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는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피해지는 자연복구와 병행하여 인공복구 추진
- 경작지, 주거지 주변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방풍림 조성

o 식재수종은 대묘(1,500본/ha) 이상 큰나무를 식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소묘 또는 관목류 식재 병행

- 피해목 벌채, 비료주기 및 대묘식재 등 기본 공정에 반영

o 태풍으로 인하여 부러지거나 쓰러진 입목 피해지는 2차적인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목을 제거하고 집단피해지는 재조림 추진

- 단목(單木), 소규모 분산 피해지는 숲가꾸기 산물처리 방법에 따라 조재 후 임내정리 또는 매각 처분
- 피해목 제거 후 재조림이 필요한 집단 피해지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후 조림계획에 반영

* 「산림자원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물처리

4) 지역특화조림

가) 금강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400	300	100
사업비	1,295	1,050	245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목재가치가 높고 역사·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종임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숲에 낙엽이 쌓여 씨앗발아가 어렵고, 낙엽활엽수와의 경쟁에서 쇠퇴

<분포현황>

o 금강소나무는 강원, 경북의 백두대간에 주로 분포(373천ha)

- 강원(강릉, 삼척 등) : 226천ha(국유림 28%, 민유림 72%)
- 경북(봉화, 울진, 영양 등) : 147천ha(국유림 25%, 민유림 75%)

* 금강소나무(*P. densiflora* for. *erecta*)는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한 품종으로 곧고 통직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음

<사업개요>

o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강원·경북지역 금강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특수재 및 고급대경재 생산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우량형질로 육성

- 솎아베기 : 동령림은 생육밀도 조절, 다층림은 상층의 송지채취 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대경목 위주로 실시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위주의 금강소나무 육성

o 임지의 여건에 따라 모수작업, 모두베기를 통하여 적정 임분 관리

- 남향 또는 남동향 사면의 노령목 주벌 수확지는 모수작업을 적용
- 벌기에 도달한 임분 또는 과거 송지채취·산화피해를 받은 노령목 분포지역은 모두베기 실시
- 단순림, 혼효림, 단목림 등 임분의 형태에 따라 전문가 현장토론 등을 거쳐 적정 작업종을 결정하여 시행

o 후계림 조성은 일조량, 토질, 경사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천연하종 및 파종조림으로 갱신하고, 식재조림을 병행 실시

- 천연하종 및 파종은 일조량이 많아 종자 발아율이 높은 남동, 남서사면에 실시
- 어린묘, 대묘, 용기묘조림은 모든 곳에 조림이 가능하나 북향의 경우 생육이 다소 저조하므로 신중히 식재

o 금강소나무 생육분포도 작성 및 DB화하여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이력 기록 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 후계림 보전을 위한 인공갱신 시험시업지에 대한 생육상황 조사
- 문화재용 특수재 목재생산림 지역 등 사후관리 철저

o 대관령, 소광리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은 금강소나무 시범전시림으로 조성하고 숲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나) 안면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00	-	100
사업비	245	-	245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안면소나무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재 등으로 공급된 목재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경영산림으로 선정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안면소나무 보전·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08년, 충청남도)

<분포현황>

o 충남 안면읍・고남면 일원에 4,802ha 분포(공유림 3,550ha)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안면소나무림은 약 2,770ha

* 수령 80～120년(직경 30cm 이상)의 성숙림은 381ha(141천본) 분포

<사업개요>

o 형질이 뛰어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안면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고급대경재 생산 및 관광 자원화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밀도조절 등 숲가꾸기 및 후계림 조성을 통해 문화재용 고급대경재를 생산하는 우량림으로 육성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동령림은 밀도조절을 실시하고, 성림지는 솎아베기 후 안면소나무 복층림으로 조성
- 천연하종, 파종 및 인공식재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안면소나무림 확대

o 강산성 토양은 질소질 비료와 석회를 시비하고, 솎아베기로 토양내 공기유통 및 수분흡수 촉진하여 안면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정

o 안면소나무림에 생육하는 리기다소나무는 벌채하여 안면소나무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부실초지 등 유휴지는 복구조림을 실시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50	20	130
사업비	2,233	402	1,831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의 녹화 및 식생복원으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o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필요

<추진방향>

o 자생수종 중심의 조림·숲가꾸기 추진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o 섬지역 고유의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o 주거지역, 관광지 및 뱃길 가시권 지역의 산림을 우선 추진

<사업개요>

o 자생수종 중심으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방법을 적용하고, 신속한 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적용

- 난대지역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난대 자생수종으로서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섬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계로 복원

- 큰나무조림을 확대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객토, 유기질비료, 수목 운반시 수분접착 마대 활용 등 신속한 산림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개발·적용
- 식재수목의 규격 및 식재본수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단비표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사업실행은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o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건강한 산림가꾸기 추진
- 치수보육, 움싹조절 등 숲가꾸기를 병행 실시하고, 자생수종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작업
- 산림경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생태계교란종은 제거

*** 사업 제외대상**
· 일반 산림지역에서 실행하는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가능한 지역
·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국립공원으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가 불가능한 지역
· 수목식재 등 산림조성 대상지가 없고 관목류·초본류 식재만 가능한 지역

라) 운두령특수활엽수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0	30	-
사업비	1,000	1,000	-

※ 국고 보조율 : 100%

o '06년 FSC 인증을 취득한 운두령 지역 특수활엽수 조림지에 산림경영과 목재생산 기술개발·연구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북부지방청)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 국유림 170ha
- 조림수종 : 자작나무, 물박달나무, 들메나무, 피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 가래나무, 물푸레나무 등('77~'88년 조림)

o 기존 조림지와 연계한 조림확대 및 숲가꾸기로 활엽수 조림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 및 방문자 기술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활엽수 특수용재 생산을 위한 연차별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활엽수림에 대한 체계적인 무육·관리 기술 정립
- 지황 및 임황인자 DB구축과 하층식생 천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목생장량 변화 측정 및 희귀·유용식물 등 실태조사 추진
- 임업종사자, 학술분야 등 관계자의 조림지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정책홍보 안내시설 등 편의 시설물 설치

마) 석포모델숲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0	30	-
사업비	1,000	1,000	-

※ 국고 보조율 : 100%

o 용인·안성일대 대면적 기부산림을 산림기술 교육·문화·체험 공간 등 모델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정책 및 대국민 산림교육·홍보장소로 활용

- 소 재 지 : 용인시 이동면 묵리 산59번지 외 46필지
- 면　　적 : 662ha(용인시 관내 600, 안성시 관내 62)

o 벌채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통한 기념공원 조성, 작업임도 등 산림경영기반구축 사업과 경계측량 및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림보호 시설

바) 지역특화림 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560	-	560
사업비	7,888	-	7,888

※ 국고 보조율 : 70%

o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

-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사업대상지>

지역별	사업내용	사업량(ha)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70%)
강원(평창)	동계올림픽 경관림	220	'14～'15	4,427	3,099
강원(양양)	낙산사 복구 후계림	13	'14	262	183
충남(논산)	대둔산 철쭉특화림	37	'13～'14	745	521
전북(진안)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50	'14～'15	1,006	704
전남(담양)	대나무 특화림	20	'13～'14	402	282
전남(보성)	득량만 난대특화림	70	'12～'14	1,409	986
전남(강진)	보은산「테마숲」조성	50	'14～'15	1,006	704
경북(봉화)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20	'14～계속	402	282
대전	5대 명산 가꾸기	60	'14～'18	1,207	845
충남(청양)	칠갑산 특화림	20	'14～'18	403	282
계	10개소	560		11,269	7,888

5) 설계·감리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비	2,846	500	2,346

※ 국고 보조율 : 70%

o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공무원이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시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로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가능

o 실시설계는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당해년도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거나 전년도에 실시

-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동력식혈기 품셈기준 등 개정된 설계지침 준수

o 이윤율,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 간접노무비는 조경업종으로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로 간주

o 조림사업 실행자(시공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1회 풀베기 이후 조림지 활착상황을 포함하여 감리 실행

o 임업기계화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동력식혈기 및 비료주기 품셈기준을 신설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적용비율을 종전 전문공사에서 조경업종으로 적용

o 산림경영정보 DB 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조림지관리도」및「조림지관리대장」을 전자파일로 관리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지자체·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세부적인 시행방법은「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참조

6) 비료주기

o 산불피해지 등 지력회복이 필요한 산림과 척박지 등 재해우려지에 우선 실시하고, 바이오순환림, 경제수조림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실행

-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포함된 비료주기 공정을 활용하여 조림사업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실행

< '14년 비료주기 관련 총사업량 >

(단위:ha, 천㎏)

구분	계		경제림조성 (30㎏/ha)		산림재해 방지조림 (90㎏/ha)		금강·안면 소나무육성 (360㎏/ha)		섬지역 산림가꾸기 (700㎏/ha)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계	21,180	1,196	15,610	468	4,920	443	500	180	150	105
민유림	17,790	927	13,460	404	4,000	360	200	72	130	91
국유림	3,390	269	2,150	65	920	83	300	108	20	14

주) 해당 사업에 기본공정으로 포함된 비료주기임

o 조림목의 뿌리가 활착된 5~6월경(식재 1개월 이후)에 실시하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름, 가을철에도 시비

- 초기생장 동안 많은 양분이 요구되는 낙엽송이나 활엽수류는 조림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시비

- 비료주기는 실행시기에 따라 식재작업과 동시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개별 사업으로 추진(전년도 조림지 등)

- 이듬해 시비할 경우에는 봄철 나무심기가 집중되기 전에 우선 실행하여 조림사업 노동력을 분산

* 시비 작업요령은「산림과 임업기술(II)」 산림조성편(229쪽),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조림설계지침 참조

7) 조림지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60,000	9,000	51,000
사업비	31,154	8,127	23,027

※ 국고 보조율 : 50%

o 조림지 사후관리의 사업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통합사업으로 실행

- 덩굴류가 없는 조림지는 기존대로 풀베기만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덩굴류 제거사업을 별도로 시행

<풀베기 작업요령>

o 작업시기는 5~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 실시

-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 비료를 준 조림지는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 한해·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o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는 5회를 기준으로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상황에 따라 가감

o 작업방법은 예초기, 낫 등을 이용하여 현지여건에 알맞게 적용하되, 조림목의 식별이 어려운 조림지는 조림목 보호를 위해 인력으로 둘레베기 실시 후 예취기 사용

-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림지 여건에 따라 작업 횟수, 공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실시

o 풀베기 기간이 끝나면 어린나무가꾸기를 조속히 실행하여 공백기간 동안 조림목이 천연치수, 움싹에 의해 피압되지 않도록 조림지 관리 철저

<덩굴제거 작업요령>

o 조림지 및 도로변에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에 따라 조림지 및 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 '09~'10년에 기실행한 '덩굴류 집중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재발생한 덩굴류는 봄철 조림사업이 완료되는 5월부터 집중 제거
- 조림지는 가급적 숲가꾸기 기능인력을 투입하고, 도로변 등 성림지 덩굴 제거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활용

*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 참조(자원육성과-1270호, 2008.12.5.)

<덩굴제거 우선순위>

① 조림지

② 고속도로변 > 국도·지방도변 > 마을도로, 농로 등

* 도로에서 조망되는 가시지역은 모두 제거대상에 해당함

③ 그밖에 일반 산림지역

* 산주,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피해가 신고된 산림은 우선 제거

o 덩굴류 제거시에는 맹독성 약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썩는 비닐랩밀봉, 기계 및 인력굴취 등 친환경적인 제거 방법을 확대

-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작업횟수를 연간 2~3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입목이나, 야생동식물, 경작지,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인력에 의한 제거

o 약제처리 시에는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산림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 약제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 디캄바액제는 증발에 의한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온(30℃ 이상)에서 작업 중지
- 약제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o 조림 후 5년이 경과된 조림지로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육에 지장이 있는 조림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여 조림 성공률 제고

*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실행

8) 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

o 농·산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임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계화를 도입함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비 절감

- 식재구덩이 파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 조림사업의 기계화 작업을 확대하여 작업의 효율성 제고

o 조림용 동력식혈기를 도입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조림목 활착률 제고

- 동력식혈기 사용시 곡괭이 등에 의한 인력작업에 비해 식재구덩이를 충분히 팔 수 있어 뿌리 활착에 도움
- 용기묘 식재시에는 가급적 'OK 식재기'를 활용하고, 식재기 사용이 어려운 석력지 등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한 식혈방법을 적용

o 조림용 동력식혈기 작업시 적정한 소요인력, 기계경비 등은 품셈기준 적용

- ha당 3,000본 식재시 보통인부 10.3인 및 5인당 동력식혈기 1대 적용
- 동력식혈기 감가상각비, 식혈날 등 소모품 대가 및 유류대 등 연료비 적용

  * 동력식혈기 공정 및 품셈은 개정된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고

o 덩굴제거,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작업시 기계이용 활성화

- 덩굴제거 대상지 여건에 다라 인력굴취, 비닐랩밀봉과 병행하여 칡뿌리 절단기 적극 활용
- 풀베기 작업은 예초기 사용을 확대하되, 조림목 피해가 없도록 표시봉을 설치하고 낫에 의한 둘레베기 실행 후 작업

  * 풀베기 및 덩굴제거 공정 및 품셈은 개정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고

9) 밀원수 조림

o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 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60~'70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 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o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주요밀원수종>

개화기	교목류	소교목류	관 목
3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매실나무	진달래
4월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5월	아까시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족제비싸리, 찔레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6월	밤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피나무, 황벽나무, 산딸나무		싸리나무류
7월	황칠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	싸리나무류
8월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9월		붉나무, 산초나무	
10월		차나무	

o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아까시나무림 단지조성
  * '10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에서 각 3ha 이상 조성 추진중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우선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합계	228ha	6	6	27	106	75	8
지자체	13개 시·군	남양주시(3) 가평군(3)	강릉시(3) 양구군(3)	영동군(27)	공주시(100) 논산시(3) 보령시(3)	곡성군(50) 구례군(23) 강진군(2)	안동시(3) 영양군(5)
수종		헛개나무 피나무	미정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옻나무 등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6955(2011.11.21.)호

o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ha 이상 밀원산림 분포 : 3,741개소, 29,278ha('10년)

10) 특수·도입수종 시험조림

o 오동나무 및 벽오동나무 시험조림 및 양묘를 통해 생육상황 등을 검증하고 생육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13년 국정감사 지적 및 전통 국악기 주재료 확보)

- '14년 서부청 1ha(오동나무), 전남 1ha(벽오동) 시험조림 및 생육상황 검증하고 벽오동은 확보한 종자(2kg)를 활용 양묘 후 '15년 식재 추진

o 조림수종 선발을 위한 루브라참나무 시범조림은 각 지방청별로 묘목생산량을 참고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조성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3년 묘목생산 : 33.8천본(북부 8.2, 동부 11.8, 남부 2, 중부 4.5, 서부 0.3, 과학원 7)
- 묘목 및 조림대상지를 제공하고 종자채취, 양묘, 조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관리(지방산림청)
- 시험조림지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험조림지 관리 지도

11) 제69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o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

-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황사 등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나무심기로 상징화

o 기관별 식목일 기념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4월5일 식목일 당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예방 등 기관실정에 따라 조정

- 어린이, 지역주민, 기업 등 많은 국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심기 체험행사 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전개

<국민참여 식목일 행사 대상지>

① 2014년 조림지

-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재해복구지, 지역특화숲 등 조림사업 예정지

② 생활권 주변지역

- 공원, 도시녹지대, 기관청사 주변, 마을 또는 아파트단지내 공한지, 주요 도로 및 철도 조망권내 산림

③ 지역축제, 국제행사 개최지

- 지역별 대표적 축제장소 주변, 국제행사 장소 등 기념조림 및 기념식수

12) 조림용 묘목의 조사 및 검사

o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격 측정 등 묘목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급

- 조사·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

-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이끼류 등 묘목의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물수세미는 곤포당 4㎏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 사용

- 묘목의 포장 외부에 묘목의 규격, 생산지, 생산자 등의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출하

o 묘목의 품질표시 위반, 출하금지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종묘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정히 집행

- 국유양묘장, 민간양묘장 및 종묘생산업자의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산림청, 시·도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묘목의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양묘사업 공정 준수 여부 등 묘목 생산체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추진

13)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o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위해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금액확정 등 정산 및 잔액 반환 철저

- 정산 확정 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별도 고지에 따라 납부기한 내 조속히 납부
- 잔액 보조금의 반납 지연 시에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당년도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는 등 불이익 강화가 불가피

o 경제림조성, 유휴토지조림 등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보조사업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정산

-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산주 또는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징수하여 사업 실행
- 자부담금 10%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으로 실행

  * 경제림 조성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산림소유자가 직접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은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인 및 정산

- 지자체 예산편성 시 민간보조 사업을 확대하여 벌채·조림 활성화 유도

14) 조림 사업장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o 조림사업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현장 대리인 선임계, 작업원 운영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현장 투입 여부를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의 과업으로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사항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 사업방지 및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o 조림사업 실행지의 필지별, 계약 건별 사업실행 이력 관리 철저

- 사업완료 즉시 필지별 사업내역서, 조림지 관리대장 작성 등 DB 관리
- '조림사업실적 통계'에 의한 세부 인자별 조림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적 관리(재원별, 소유별, 대상지별, 실행주체별 등)
- 활착률조사 표준지는 GPS 좌표에 기록하고 가능한 도면화하는 등 사후 현장 검증 등을 위한 대응자료 구축

o 조림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조림 사업지의 세부사업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 관리 및 실적 보고 시 현장 사진중심의 보고체계 강화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o 각종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조사에 이용된 표준지에 대한 좌표기록 유지 등 사후 검증에 대비

o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현지점검, 준공검사 등의 사업이력 처리 활성화(지방산림청)

라. 추진일정

o '14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 2013. 12월

o 지역별 조림계획수립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3. 12. ~ 2014. 2월

o 봄철 나무심기 및 제69회 식목일 행사추진 : 2014. 3~4월

o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 2014. 5~10월

o 조림지 활착상황조사 : 2014. 6~9월

o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2014. 9~11월

o '15년 조림설계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4. 11~12월

<붙임 1>

조림 권장 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수종(78개)

구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중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붙임 2>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바이오순환림의 개념

o 짧은 기간(20~35년)에 목재를 수확하여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와 산업용재를 공급하는 산림

* 바이오순환림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임도, 기계화 등 인프라 확충 필수

<바이오순환림의 탄소순환>

<바이오매스 수확>

□ 바이오순환림에 적합한 수종 및 적지

o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2,000본/ha, 기타 수종은 3,000본/ha 이상 식재

o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적합한 지역

- 토심이 깊고 비옥한 지역으로 토지생산성이 높은 지역
- 대면적으로 집단화·단지화 조성이 가능한 지역
- 도로, 임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 경사가 완만하여 조림·벌채작업에 기계화가 용이한 지역

□ 연차별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

계	'11년까지	'12년	'13년	'14년	'13~'20
100천ha	20천	6천	3천	2천	69천

□ 백합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례

▶ 조성대상지(경기 양평)

▶ 조림 3년차(경기 화성)

▶ 성림지(전남 강진)

9. 숲가꾸기

목 표

◇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
- 시기별 현장점검·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사업 내실화

o 숲가꾸기 : 246천ha (국유림 47천ha, 민유림 199천ha)
* 예산 : 221,450백만원 (국유림 72,237백만원, 민유림 149,213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은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체로 인정

o 지금까지 목재생산 위주로 관리되던 산림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이용되어야 할 공간으로 변화

o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의 대안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산림관리 방식도 자연과 인간이 균형 잡힌 생태적 접근법을 추구

o 국내·외 산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사업을 대표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시기가 도래

나. 추진방향

o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4~'18)에 따라 새로운 숲가꾸기 추진

o 전국 단위 산림기능구분을 완성하여 기능별 산림관리 체계 확립

o 인공림 위주의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o 활엽수 천연림 보육사업은 축소하고, 개량사업은 폐지

o 숲의 기능별 수요에 필요한 특성화된 숲가꾸기 추진

o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확대 등 철저한 관리로 조림 성공률 제고

o 시기별 현장 지도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모니터링 확대

o 관행적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

o 사업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

o 현장에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감리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o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로 예산낭비 방지

다. 세부추진계획

정책 분야

1 제3단계「숲가꾸기 5개년 계획(2014~2018)」추진

o 전국 산림에 대한 기능구분을 완성하여 기능별 산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

o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내실화 방안 추진

o 현장 수요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큰나무가꾸기 물량은 축소하되,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 총 사업량 : ('13) 302천ha → ('14) 246천ha (△56ha, △19%)
* 큰나무가꾸기 : ('13) 250천ha → ('14) 156천ha (△94천ha, △38%)
* 조림지·어린나무가꾸기 : ('13) 52천ha → ('14) 90천ha (38천ha, 73%)

2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경제림>

1) 인공림 위주의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o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높은 지역의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생산성 증진

o 숲의 상태와 목표 수확별 시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목재공급기지로 육성
* 숲가꾸기 사업량(큰나무 기준)의 70%를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

2) 활엽수 천연림 보육사업은 축소하고, 개량사업은 폐지

o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

o 형질 우량목 본수, 임지 생산력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고, 현장 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기준, 지위·소밀도 중 이상,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임지

o 대상지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계·시공·감리를 철저히 이행

3) 전국 단위의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보급('13~'14)

o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산주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산림관리 방향과 연속성을 확보

o 웹 기반의 사유림 기능구분도를 제작·보급하여 현장 활용성 증진

<공익림>

1) 공익림은 숲의 기능별 수요에 필요한 특성화된 숲가꾸기

o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공원, 도심 생활권, 야생동물 관리, 대나무 숲, 사찰림, 학술림 등 숲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숲가꾸기 실시

o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13.3)」을 참고하여 기능별 숲 관리사업 실행

< 공익기능별 산림관리 방향 >

기능별	관리 방향
수원함양림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생활환경보전림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산림휴양림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환경 개선을 통해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산지재해방지림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2) 국유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층림가꾸기 추진

o Ⅳ영급 이상 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다층림가꾸기 추진

- 실시설계부터 후계림 수종 선정, 예정지 정리 등 조림계획을 사전에 반영하여 기존 숲가꾸기 방식과는 차별화

- 다층림 조성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거 시행착오 최소화

o 다층림 조성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작업방식 적용 유도

- 형질우량림 뿐만 아니라 형질불량림 등에 대한 적극적 갱신 유도방안으로 활용
- 숲가꾸기와 조림의 개별 분리추진에서 벗어나, 숲가꾸기 과정에서 불량임지는 일정 면적으로 벌채 후 공지조림(인공조림 또는 천연하종 등)을 통해 갱신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이 연계된 개념으로 추진

3 조림지 사후관리 및 산림사업 이력관리 강화

1) 조림지 사후관리 확대

o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량을 확대 반영하고, 사업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의 효과 극대화

- 풀베기는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되,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 연 2회 실시하고,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10년 경과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될 때 착수하고, 생육 여건에 따라 추가 실시
- 풀베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목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o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조림지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지자체 평가지표 : ('13) 큰나무가꾸기 → ('14) 모든 사업종 반영

o 풀베기 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 사업 품질 제고

- 풀베기 사업 실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림목 고사, 면적 변동 등 조림지 상태 관리 및 부실사업 감시
-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림목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배상 조치

* 감리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14)

2) 산림사업 이력관리 강화

o 조림~벌채에 이르는 모든 산림사업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

- 국유림의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공간정보 포함)', 사유림의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입력을 의무화하고 각종 평가와 연계

o 숲가꾸기 실행 결과 등 사업 이력을 산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우편, 메일 등)하여 산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사업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

o 시·군 단위에서 조림 이후의 이력관리 업무를 숲가꾸기 담당자로 일원화하여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혼선 방지

o 산림사업장 책임실명제를 적용하여 사업 담당자는 물론,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관리 강화

- 부실 발생 및 위법사항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여

4 시기별 현장 지도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 확대

1) 현장 위주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o 주요 사업종별로 감사 수준의 일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 적발 및 시정·개선 조치

- 사업지 누락, 불법 하도급, 무자격자 투입 등 부실사례 집중 감시

o 숲가꾸기 사업장 품질평가를 통해 기관별 경쟁의식 고취 및 품질향상 유도

- 평가 대상지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 평가 실시
- 우수기관 포상 및 부실한 기관은 공개하여 기관의 경각심 부여

2)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확대

o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기술 수준 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

o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담당공무원, 산림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숲가꾸기 발전방안을 토론

5 관행적 제도 개선 및 재정집행 관리 강화

1) 숲가꾸기 사업 보조율 개선

o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산주의 사업 참여 부담 경감을 위해 산주의 수익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전환

- ('13) 국 50% : 지 40% : 자 10% → ('14) 국 50% : 지 50%

o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국고보조금 정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산주의 자부담 없이 정부(官) 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산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2)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o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 우선순위와 명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솎아베기 사업 반복 실행을 제한
- 지역·기관별로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프로세스 마련 및 적용

3) 산림사업 공고제도를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차단

o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지자체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산주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의절차를 반드시 이행

- 기본적으로 사업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실행
- 공고의 대상은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명확한 '소재 불분명'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무응답' 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

o TV 공익광고 등 산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안 마련

- 인터넷 신청서비스 확대, 산주 컨설팅 등을 통해 동의율 제고

o 숲가꾸기 설계, 시공 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사업 실행 전 반드시 산주·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안내판 게시

6 산물수집 및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1) 숲가꾸기 산물은 목재·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

o 설계 단계부터 산물수집·활용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

o 이용 목적을 고려한 생산재 공급으로 자원의 효용가치 제고

o 작업임도 개설 및 임업기계화를 병행하여 생산비용 절감

2) 숲가꾸기 산물 처리로 재해요인 사전 제거

o 산불·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산물을 반드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 부식이 촉진되도록 단목 처리

- 계곡부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도로·임도·농경지,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사면거리 30m 내외 지역

o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내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

3) 재해 우려지역에 공익림 숲 관리사업으로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o 도심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차원의 숲 관리 확대

-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에 숲 관리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나무의 뿌리 발달 촉진 등 재해에 대한 저항성 증진

o 산불,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숲 관리사업 실시

- 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소나무단순림에 숲 관리 확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숲 관리사업은 금지함
- 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구역 외곽 선단지역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숲 관리사업을 집중하여 숲의 건강성 회복 및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증진

7 녹색댐 조성사업

1) 사업 추진체계

o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양 기관이 '녹색댐 조성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07.11.20)

o 사업 시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기본설계(한국수자원공사) → 연간 사업 계획 수립(산림청) → 실시설계, 숲가꾸기, 감리(국유림관리소, 시・군)

2) 사업 추진요령

o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댐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및 사업 실행

o 세부적인 사업요령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참조하여 실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표준 매뉴얼의 수원함양림 작업 기준

o 녹색댐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o 실시설계서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

o 녹색댐 추진 실적자료 관리 철저

- 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05~'11년, 26개댐)한 댐 유역의 지자체별(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실적자료 정리 및 이력 관리 철저

  * 기본계획에 의한 댐별, 연도별, 개소별 현지 숲가꾸기 추진실적('06~'14년) 관리

실무 분야

1 숲가꾸기 설계·감리

1) 기본 사항

o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개소는 반드시 설계·감리 실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시행
- 부실 설계·감리 근절·방지를 위한 자체적으로 사전교육 등 강화
  *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강화, 감리원의 역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o 소규모(50ha 미만) 산주 직접 사업지는 지자체에서 위탁 설계·감리업체 지정

- 위탁 설계·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서 수리 후 보조금 지급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해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를 통해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 완료

o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정확한 현지조사 및 산림 여건을 반영하여 소반을 세분화하고, 소반에 필요한 사업종을 적용하여 숲가꾸기 설계도·서 작성
- 특히, 전 구역을 천연림 개량과 같은 단일 사업종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갱신 등 다양한 작업종 반영
- 숲가꾸기 기계화작업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정은 추가 반영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참조

o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附隨的)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산림사업 통합 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송이산 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 식재, 피해목 제거 등 포괄적인 숲가꾸기 사업 범위에서 실행
- 단,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경우 유사한 작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물과 단기소득 묘목대 등은 집행 불가

2) 품셈 적용 기준

o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 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o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산조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o 산림조합·산조중앙회는 이윤과 수수료를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과 수수료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o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o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12. 9. 22)**
>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국토해양부 고시)
>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
> ・국민연금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 ・국민건강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o 숲가꾸기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3) 선목사업 분리발주 및 사업 시행자 자격확인 철저

o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o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 실행

o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아닌 산주 실행사업은 미래목 선정, 작업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미래목 선정자 실명 기록 유지)

o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6호 서식)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현장 지도 점검 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숲가꾸기 작업원 기준 미달 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업체에 시정명령 조치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http://fec.foa.go.kr/legal/)' 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o 현장 점검 실행 시 부실사례를 발견할 경우, 一罰百戒 차원에서 시공업체 및 감리자 등 산림기술자에 대해 의법 조치

4)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 ·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단·영림단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 ·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o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2 숲가꾸기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 및 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현지 집행 추진

- 시·도(시·군·구)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보조)', '공공산림가꾸기(보조)'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

o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 ·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12. 9. 22)**
>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부터 제39조)'
> ※ 계약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2) 숲가꾸기 국가 보조금 정산 철저

o 총 사업비의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 처리

* 숲가꾸기 기준 보조율 : 국고 50%

o 국고 보조금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행정 착오 등 오류로 인한 재정산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 철저

- 국고보조금 미 반환에 따른 감사 지적 사례 방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을 위한 숲가꾸기 예산 배정시기 조정

o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 및 기능인력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자체의 숲가꾸기 예산은 가급적 하반기로 배정

- 조림지 사후관리,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필수예산을 제외하고, 솎아베기 사업 등의 예산은 하반기에 배정

* 대상지역 (6개 시・도) : 부산,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3 직무역량 강화 및 기술 지도 등

1)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o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력 향상

- 숲가꾸기 담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상반기)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3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2) 산림기술자 직무 교육

o 도 주관으로 해당 시・군에 소재한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3)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례화

o 50ha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o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o 지방청・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

< 숲가꾸기 기술 위원회 >

o 목적과 구성

- 목 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 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공・사유림), 전문가 등
- 역 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지도, 제도개선 의견제시, 홍보 등

o 시・군,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기 및 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o 도,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4)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활성화

o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현장 토론회 추진

- 도・지방청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상의 산림 기능별 토론
  * 숲에 대한 경영목표, 작업방법, 작업강도 등 토론
  *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산물수집 확대 방안 등 숲가꾸기 기술 공유
  * 산림청에서는 자체 현장토론회시 지자체와·지방청 요구에 따라 지원

o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 추진 및 장기 모니터링 추진

5)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

o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o 안전깃발 릴레이, 안전캔디 데이, 1일 안전인사 등 현장 무재해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별 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전파

4 숲가꾸기 사업 평가 및 홍보

1) 숲가꾸기 사업 평가

o 기관평가

- 민유림 : 수시 현장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안전행정부 주관)에 의함
- 국유림 : 소속기관 평가 계획에 의함

o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

- 설계~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 사업장 선정
-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을 통해 품질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 담당자의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2)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o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주요 사업지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 개최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o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숲가꾸기 홍보 입간판 정비
- 노후화된 홍보 입간판 도색 또는 철거, 입간판 주변 풀베기 등 수시 정비

o 숲가꾸기 사업 효과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 신청 참여 유도
- TV 공익광고, 리플렛,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 동원

o 숲가꾸기 사업이 수해 등 재해를 유발하거나 밀원수종·꿀벌을 감소시킨다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 사전 대응
- 숲가꾸기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순기능에 대해 홍보 강화

o 숲가꾸기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주요 사업지의 세부사업 추진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관리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4)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o 숲가꾸기 기간(11.1~11.30)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 체험 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 강화

o 산림청 및 산하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숲가꾸기 장소 제공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5) 사랑의 땔감나누기

o 사랑의 땔감 나누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의 일부를 지역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공공시설(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하되,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집중지원
- 2014년 지원 목표량 : 10천 세대에 50,000㎥ 지원(1세대 당 평균 5㎥ 지원)

라. 추진일정

o 2014년도 숲가꾸기 발대식 : 2014. 1월

o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 2014. 1월

o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014. 상반기

o 숲가꾸기 기간행사 계획 보고 : 2014. 10. 15.

o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 : 2014. 11월

o 지역별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 2014. 수시

o 2013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 2014. 3월

o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 2014. 10. ~ 2015. 2월

*** 매월 5일 기준으로 숲가꾸기 추진실적(월보) 제출**

10. 공공산림가꾸기

목 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

o 고용인원 : 3,380명(국유림 135, 공・사유림 3,245)

* 예산 : 28,192백만원(국유림 3,137, 공・사유림 25,055)

가. 정책여건

o 인력 의존도가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농산촌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물수집의 확대와 임업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

o 산림재해의 예방・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수원함양림 육성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나. 추진방향

o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자, 장기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 3천 4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의욕 고취

o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집중적인 산림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

o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o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 민원의 조기 처리에 '숲가꾸기패트롤' 인력 확대 투입

o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DB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공통사항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개요

o 3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o 운영 인원 : 3,380명

- 지방청 : 135명(숲가꾸기 패트롤 135명)
- 지자체 : 3,245명(수집단 3,045명, 자원조사단 200명, 숲가꾸기패트롤)
  * 지자체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로 선발

o 운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o 사업 추진 :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조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2) 주요 사업 내용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정책 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활용 촉진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구축 등의 관리 등

o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3)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

o 신청 및 선발 기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구성을 통해 통합 모집(접수)・선발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숲가꾸기패트롤)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신청서 접수현황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하며, 우편접수 허용

o 참여자 모집공고

-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사업내용을 공고한 후 공개채용 실시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을 50%이상 선발함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신청서에 취업취약계층임을 표시할 수 있는 서식 마련

o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고교·대학 재학생 등은 신청자격을 제한(세부사항은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조)

o 결원 보충 및 추가모집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선발 시 작성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수시 고용하거나 또는 추가모집 가능

4) 사업 참여자 선정

o 사업 참여자 선정주체

-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지방자치단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o 취약계층 고용 기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제외)

o 참여자 정보 및 근로내역 실적을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Ⅵ장 참조

5) 임금 및 교육 훈련

o 인부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일반인부-45,000원/1일, 기술인부-50,000원/1일(일반인부임+기술수당)
- 숲가꾸기패트롤 : 60,000원/1일

o 교육 훈련

- 근로자 기술교육은 2주의 교육기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의 경우는 신규 3주, 보수 1주의 교육을 추진
- 모집 공고문에 기술교육 참여가 의무사항임을 명시하는 등 참여자 전원 교육 이수 추진

  * 공공산림가꾸기 기술교육 추진계획 참고
- 사업 참여자에게 직업상담·채용박람회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6) 안전 관리

o 안전 관리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조치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현장에 구급약품 비치
-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 건강진단 실시
- 감독공무원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 교육시간 이수 등 준수**(세부사항은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조)

o 안전 장구 구입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 보호구 구입 지급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 여성 근로자의 참여 증가에 따라 필요시 탈의 및 간이화장실로 이용 가능한 텐트형 파라솔 등 편의시설 구입·제공

7) 대행 제도

o 행정력 절감을 위한 대행제도 시행

- 근로자 선발, 예산 집행을 제외한 현장 기술지도 업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산림조합계통 조직)하도록 하고 대행 수수료(인부임의 7%이내)를 지급

8) 사업 점검단 운영

o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고 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이상)

o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사업추진 실적, 일자리 창출 홍보,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등 중점 점검

세부 사업별 기준

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o 선발 기관 및 대상

-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 모집(접수)·선발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업무보조요원으로 구분하여 선발

  * 지방자치단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패트롤 단원 선발

o 자격 및 선발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 50%이상 고용

  *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합동평가시 반영계획
- 2년 연속 반복참여자 및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간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선발 제외(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집인원 부족 등 예외 허용. 관련지침 참조)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o 주요 사업내용

-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관리 사업(덩굴류 제거 등)
-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사업
- 숲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 산불, 풍수해, 병해충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기타 사업추진 요령은 「201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름

2)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o 선발 기관

- 시·군 산림사업 부서에서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o 자격 및 선발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등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o 주요 사업내용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병해충 등 산림피해 조사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 등 산림정보 구축·관리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사유림경영정보 DB 시스템(새올연계) 업무 적극 수행

3) 숲가꾸기패트롤

o 선발 기관

- (민유림) 시·군·구 산림사업 부서에서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 지자체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운영
- (국유림) 지방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o 자격 및 선발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 등
- 사업기관별 1개단에 5명 내외의 단원으로 선발
-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전용차량 운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

o 주요 사업내용
-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라. 추진일정

o 근로자 신청·접수, 선발 : 2013. 12. ~ 2014. 2월까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함

o 근로자 기술교육 : 2014. 3~7월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물수집 등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 2014. 5월, 10월

o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성과 보고 : 2014. 12월까지

공공산림가꾸기 세부 적용 기준은『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에 의한다.

11. 종묘생산관리

목 표

◇ 묘목생산체계개선을 통한 안정적 우량 종묘생산 및 국유양묘장 운영체계 정비로 경영효율화 도모

o 사업량 : 종자 45톤 및 묘목 46백만본 생산, 산간양묘장 1개소

가. 정책여건

o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안정적 묘목생산을 위한 시업포지 및 노동력 확보 등 기반 확충과 위축된 양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양묘장의 운영정비 필요

o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농촌인력 고령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요구

o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직배양묘목 생산 등 선진 양묘 기술 정착이 필요하며, 활착률 및 산지 적응성 제고를 위한 기반 확보 필요

나. 추진방향

o 적지적수, 계획조림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묘목생산체계 개선 및 국유양묘장의 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o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등 효과적 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성 향상 및 종자의 생산·유통·관리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

o 간이온실·저온저장고 등 시설 기반구축을 통한 양묘장 재해예방 및 우량묘목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제도개선·시업기술 개발로 양묘산업 활력 증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강화 및 종자공급원 확충

가) 종자공급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성 향상

o 종자공급원(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등)의 효과적 관리

- 지역별 ‘종자공급원 일제정비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수종에 대해서는 조성·지정 등 확대 추진(종자공급원 3,515ha('13))

-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임도 등 관련사업과 연계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의 적극적 추진('채종림 관리 매뉴얼('12)' 참조)

o 「종자공급원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채종원 관리·운영 및 확대

- 채종원 확대 : ('13) 669.4ha → ('14) 675.9ha(신규 3.0ha, 갱신 3.5ha)
  - ·2030년까지 채종원 1,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 90%이상 공급
  - ·'채종원 관리 실태조사('12)' 및 「종자공급원 조성·관리 기본계획('13)」에 따라 채종원의 기능 재 구분, 조성·폐기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채종림에 대한 관리 권한 위임 검토(산자법 개정시)

<채종원 실태조사에 따른 재 구분>

('13.12. 현재) (단위 : ha)

계	관리대상				폐기 (타용도)
	소계	채종원	채종림	보존	
781.7	765.6	669.4	66.9	29.3	16.1

  - ·'미니 채종원' 대한 조성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일본 '편백', '삼나무' 미니 채종원 조성사례)
  - ·주요 조림수종 종자는 채종원, 시범사업·특색사업 등을 위한 종자는 지역 채종림(임분)에서 채취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유도

- 지방청 및 도에서는 채종원 확대를 위해 소관 국·공유림 지역 채종원 조성부지 확보 등 적극 협조

o 지역별 채종림(임분)에 대한 지속적인 적정성 검증 및 정비 실시

- 노령, 기준미달 채종림은 해제하고 지역별 조림 수종 위주로 추가 지정
  - ·소나무, 낙엽송, 편백, 느티나무 등 주요 조림수종은 확대, 상수리, 자작나무는 축소, 채종원산으로 전량 수급 가능한 잣나무는 제외
  - ·채종림(임분)은 가급적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지정·해제 시에는 반드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사전 협의
  - * 채종림(임분) 확보가 어려운 희귀 수종은 단목형태 또는 소수의 우량입목에 대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채종목으로 지정

- 지역별 국·공유림 등을 이용한 난대유망수종, 특용자원 채종림 조성(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협조)

- 산림 종자공급원에 대한 유전자원 조사·수집(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공급원의 임황, 지황, 유전자원 현황, 기반여건, 위치정보, 존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 조사·수집('14년도 140ha)

o 숲가꾸기, 작업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을 통해 채종림(임분) 종자 결실 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하여 종자 생산성을 극대화

- 종자결실환경 개선사업 : 관리도로, 종실가해 해충방제, 밀도조절 등

나) 산림용 우수종자 생산 및 기계화

o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검증된 종자공급원에서 채취하여 우수종자를 공급

- 우수 산림용 종자생산 : 45톤
  - ·종자공급원 외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종자채취 현장지도 점검 강화
  - * 싸리, 아까시 등 북한황폐산림복구용 종자는 일반 우량임분에서 생산 가능
- 채종원산 종자는 소량이라도 반드시 채취하여 우수 산림용 종자 공급
  - ·채종원산 종자 공급 목표 : ('13) 30% → ('17) 50%

o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 지자체에서는 종묘생산업 등록자, 임업종묘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종자채취단'을 구성하고 도급계약으로 종자채취 실시(권장)
  - * 도급계약 설계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종자채취 표준 작업공정 활용
- 종자예찰 등 종자관련 업무에「숲가꾸기 패트롤」적극 활용
- 채종원 종자채취 작업 시 기계(버켓크레인 등) 사용 활성화하고, 지방청·지자체에서는 휴대용 등목사다리(남부청 자체개발), 아보리스트 고용 등을 통한 채종작업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수종별 종자채취 표준 작업공정, 임목종자표준품질표, 수종별 종자량(kg) 대비 조림가능면적(ha) 산정표 마련(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종자채취 단비 현실화 추진(예산단비 : ('13) 16천원 → ('14) 16.7천원/kg)

다)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 강화

o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생산-검사-보관-유통) 강화

-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은 검증된 종자 이외의 사용은 제한
- 종자유통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및 보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

o 종자저장시설 운영 활성화

- 종자결실(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종자수급(국가비축)을 위하여 종자저장고 운영(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저장고(GeneBank) : 최대 51톤 저장규모

* 면적 1,808㎡(2층), 단기수급 종자저장(51톤), 장기보존 종자저장(15만점) 등

- 저온저장고 시설을 통한 채취종자의 저장·보관으로 활력 유지(신규 10동)

o 산지증명제도 운영

- 산지증명제도 정착(산지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는 종자 검사 불가)

- 불량종자의 차단 및 산지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식별기술 개발

* 원산지 식별 가능수종 :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잣나무

2) 우량 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조성

가) 묘목생산 및 기반 강화

o 우량묘목의 생산·공급

- ('13) 44백만본(20천ha) → ('14) 46백만본(21천ha)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백합나무는 수요 및 적정 대상지에만 식재하도록 생산량을 축소

o 형질이 우수한 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클론임업의 활성화

- 조직배양에 의한 클론묘목 생산기술 개발을 확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13까지) 백합나무 → ('14이후) 백합나무, 강송, 낙엽송, 테다 등

※ 클론묘목 수종 다양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전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클론생산) → 국·민유양묘장(묘목으로 육성) → 산지조림용으로 공급

· 클론묘목 생산 : ('13) 29만본 → ('14) 30만본

o 간이온실·저온저장고 등 시설확충을 통한 우량묘목 생산기반을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양묘장 재해, 농촌 노동력 감소 및 산지 활착률 제고를 위한 시설양묘 확대(간이온실 14동, 관정 8공, 저온저장고 10동)

* 용기묘 생산 ('13) 35% → ('14) 37% → ('15) 40%

- 양묘장에 대한 토양조사 실시(국립산림과학원) 및 토양개량사업 확대

나) 묘목 품질향상 및 시범사업 추진

o 묘목 품질 및 범위 기준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기술력 제고

- 간장 등 크기 위주의 묘목검사에서 생장비(H/D율)에 따른 품질검사로 전환
  · 소나무 시범적용('14) → 낙엽송, 잣나무 등 주요 조림수종으로 확대('15~)
- 범위기준의 묘목규격 적용을 통한 건실묘 생산 및 기술개발 도모
  · 최소 크기기준(예:간장 25cm이상) → 적정 범위기준(예:간장 25~35cm 이내)

o 목재활용의 다양화를 위한 시범양묘 실시

- 벽오동·오동나무의 양묘를 통한 시범림('15) 조성(벽오동 3kg, 오동 3kg)

o 산림용 종묘가격 산정 체계 개선

- 수종별·묘령별 종묘가격 시업기준 등 적용인자 정비
  · 수종별 시업기준 및 시업공정의 재정비, 선진국 종묘가격체계 검토
- 시험연구를 통한 수종별 시업기준의 재정립
  · 연차별 2~3개의 수종을 선정하여 시업연구 결과를 통한 묘령별 시업기준의 재정립(국립산림과학원)

o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폐기 등 조치 실행
  ·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묘목검사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종자(산지증명) → 양묘장(산지표시) → 묘목수급(산지, 생산·검사자) → 조림(산지, 생산자)
- 지자체에서는 민간양묘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시업기준 준수여부, 시업상황 등 생산실태 점검
  · 묘목생산 대행자의 의무 이행(지정량 등) 및 자격·기술조건 검증 철저

o 묘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 묘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산림용 묘목품질인증제' 단계적 도입
  ※ 묘목의 외형적 규격 뿐 만 아니라 병해충 등 내적 형질 품질검사 도입

<산림용 묘목 품질 인증 제도 체계(안)>

인증 신청 (생산자)	→	접수 (인증기관)	→	심사 (인증심사위원회)	→	인증 및 인증서 교부
						↓
묘목 유통	←	시판품 검사 (지방청 등)	←	묘목 출하	←	묘목 생산 (생산자)

3) 조림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묘목생산체계 구축

o (국유림) 조림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자·묘목 수급체계 마련

-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선을 통한 수급체계 제도화
  * 종자채취 및 묘목생산을 기초로 조림사업이 추진되는 체계로 개선
- 평가체계 도입 등을 통한 묘목생산과 조림사업의 연계율 제고
  * 지방청별 조림계획에 따른 수종별 묘목생산 달성률을 기관평가에 반영

(기존)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	조림	
(개선)	종자채취	→	묘목생산	→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 종자채취

o (민유림) 묘목생산 유형 및 수요분석을 통한 수급체계 정형화

- 지역별 적정 묘목생산량 조사를 통한 중앙 심의제 운영
  * 조림추이·전망 및 정책·산주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묘목생산량 적용
-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묘시설 현대화 및 클론묘목 생산체계 정착
  * 민유양묘장의 재해예방, 활착률 제고를 위한 시설양묘 확대(36→50%)

현 행	개 선
▪ 상향식(Top-down) ▪ 생산량 중심의 산주 배분 ▪ 종자 및 묘목 확보량 위주 ▪ 민간 중심의 소품종 집단 양묘 생산지정 [지자체] → 묘목생산 [대행생산자] → 조림실행 [지자체]	▪ 상·하향식(Top-down+Bottom-up) 혼합 ▪ 정책 + 지역 수요 반영 ▪ 지역적 특성화 및 브랜드화 중심 ▪ 국가와 민간의 다품종 맞춤 양묘 수요조사 [지자체] → 수급심의 [산림청] → 생산지정 [지자체] → 묘목생산 [대행생산자] → 조림실행 [지자체] → 수요조사 [지자체]

4) 국유양묘장 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활력도 증진 및 특성화

o 국유양묘장별 역할구분으로 기능화 및 특성화 유도

- 중심양묘장(6)과 부속양묘장(5)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중심양묘장은 지역적 대표 수종 양묘로 특성화 및 민유양묘장 선도 경영
- 산간, 직영화 등 부속양묘장은 큰나무 중심의 산지적응, 시험양묘 추진
  * 역할구분 : 중심양묘장(소묘, 용기묘 중심), 부속양묘장(중·대묘 중심)

< 5개 권역별 양묘장 특성화 >

중심 양묘장(6)	운영 방향
용문(북부)	다기능 복합 양묘장 (소나무·잣나무·낙엽송)
정선·평창 (동부)	침엽수 및 동해안 산불복구, 백두대간 복원용 묘목생산 (금강소나무·낙엽송)
춘양(남부)	금강송 종묘생산 기지 (금강소나무·참나무류)
삼성(중부)	바이오순환림 중심 양묘 (백합나무·참나무류)
보성(서부)	난대림복원, 소득과 연계된 난대수종 양묘 (백합·편백, 후박·가시나무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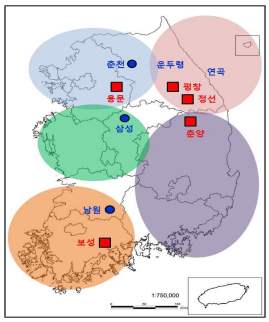

* 양묘장 위치에 따라 목적수종 생산에 제한이 있는 묘목은 기관별 협의 운영

o 산간양묘장 조성을 통한 중·대묘 생산성 및 산지 적응성 제고

- 기후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13~)
- 우량 중·대묘 생산 및 동계올림픽 경관 등 묘목수요에 대응

  * 대관령양묘장(2.8ha, '13), **봉화양묘장(5.0ha, '14)**

o 직영 전환된 민간위탁 양묘장의 시업체계 정비 및 기반조성

-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시업량 확대 및 시범양묘·재배시험 등 기술배양
- 토양개량·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 현대화(온실 등)를 통한 기반구축

  * 직영화 양묘장(20.2ha) : 춘천양묘장(5.9), 삼성양묘장(8.0), 남원양묘장(6.3)

5) 민간양묘장 묘목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o 묘목 대행생산자를 확대하고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양묘사업 경쟁력 강화

-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을 확대(각 도)
- 양묘장 재해예방 시설 등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을 강화

  · 종묘생산기반 : 종자채취(40톤), 토양개량(12ha)

  · 시설양묘기반 : 간이온실(14동), 관정(8공), 저온저장고(5동)

  · 클론생산기반 : 조직배양시설(1동), 클론재배시설(2동)

라. 추진일정

o 2014년 종묘가격 심의회 및 결정 : 2013. 12. 30.

o 2014년 산간양묘장 조성(봉화) : 2014. 1. 1.

o 2014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 : 2014. 1. 15.

o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등 종자공급원 정비현황 보고 : 2014. 2. 5.

o「내나무 갖기 캠페인」 : 2014. 2. 15. ~ 4. 15.

o 2014년 양묘시업 상황 파악・보고 : 2014. 5. 31.

o 2014년 종자결실 예찰 조사・보고 : 2014. 8. 1.

o 2014년 묘목생산 실태 조사・보고 : 2014. 10. 31.

o 2014년 제42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개최 : 2014. 11월

o 2014년 종자채취 결과 파악・보고 : 2015. 1. 15.

12. 선도 산림경영

목 표

◇ 산림경영단지 운영 정착 및 확대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 저비용 고효율 산림경영체계 개발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
- 조림·숲가꾸기·벌채 등 통합실행, 국유림 24억원, 사유림 32억원 -

가. 정책여건

o 현재의 영급구조는 숲가꾸기 등 가꾸는 시기가 중심인 3~4영급이 대부분이나, 10년 후에는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기대되는 5~6영급이 주류를 이루는 시기 도래

o 산림녹화와 산지자원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산림에서 소득을 얻어낼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산림정책과 경영기법 개발 필요

o 산림경영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국유림·사유림에서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산림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사유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선진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유림 전문경영단지 운영의 내실화 및 체계화

o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o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 전문경영단지 운영의 내실화 및 체계화

o 성과평가·분석 및 환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영 효율화

- '13년 운영성과의 분석·평가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1월)
- 경영 효율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14년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실행(2월까지 계획 확정)

* '13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경영수지 분석을 강화

o 저비용 고효율 산림작업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장관리 강화

- ‘차세대 산림시업기술 개발 연구사업단’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등 추진

- 정보・기술 등의 공유・의견수렴을 위해 현장토론회 실시(분기 1회 이상)

2)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o 단지별 경영계획의 신속한 수립 및 실행으로 조기 안정 유도

- 경영주체가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5월까지 경영계획 수립·인가가 완료되도록 현장 점검 등 집중 관리

- ’14년 사업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o 운영 예산의 적극 반영으로 연차별 선정·운영 계획의 차질 없는 달성

  * 선정계획 : ('13) 3개소 → ('14) 8 → ('15) 12 → ('16) 12 → ('17) 15

3)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o 선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및 평가

o 선도 산림경영주체 및 시・군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조기 안정을 위해 국유림 전문 경영단지와 연계 강화(현장토론회 등 활용)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전문경영단지 성과보고회 : 2014. 1월

o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계획 수립・인가 : 2014. 5월까지

o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계획 수립 상황 점검 : 2014. 3~4월

o 선도 산림경영 현장토론회 : 2014. 2~11월

o 경영전문관 및 선도 산림 경영주체 정책연수 : 2014. 6월

o 2014년 상·하반기 성과보고회 : 2014. 1월, 7월

13. 산림생명자원 관리 및 신품종 개발지원

목 표

◇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특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 지원

o 산림생명자원 조사·수집 : ('13) 120만점 → ('14) 125만점

o 신품종출원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마련 : ('13) 181종 →('14) 200종

가. 정책여건

o 2014년 나고야의정서('10.10 채택)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주권수호와 바이오산업 소재로서 잠재력이 큰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필요

- 생명자원의 배타적 권리와 자원 주권강화를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 필요

  * 산림생명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이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

o 2012년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림분야 신품종 육성의 본격적인 활성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

- 품종보호제도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법화하여 운영

나. 기본방향

o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을 통한 자원의 조사·수집, 특성평가, 보존 등을 수행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 정보화 등 진행

-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수집, 특성평가, 증식·보존, 이용활성화의 4개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 관리기관 지정확대를 통한 산림분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

  * 3개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 ('12) 21개소 → ('13) 25개소

- 2014년 나고야의정서 국내비준을 위하여 국내 이행법안 마련 추진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환경부 주관)

o 품종보호 대상종 확대와 관련법의 분법화에 따라 산림분야 신품종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규 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 산림분야 신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및 관련 예규 제정
-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 육종가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14년도 시행계획 수립·이행

o 식물, 미생물, 곤충, 종자 등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 실시

- 표본 제작, 실물수집 등을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자료 구축

o 산림생명자원의 현지내·외 보존과 복원·증식 기술 개발

- 유전다양성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현지내 보존 추진과 Gene Bank 및 종자 은행 등을 통한 현지외 보존 확대
-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저장기관간 협력을 통한 중복보존 방안 마련

o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강화 및 DB구축 추진

- 산림생명자원의 형태적,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신품종 개발 및 출원의 기준이 되는 특성조사 요령의 지속적 개발 추진
- 책임기관간 DB 연계를 통해 산림분야 산림생명자원의 정보 연계성 강화
  * 산림생명자원 DB자료는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중

<'14년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이행 근거>

o 근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o 대상(책임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각 책임기관에서 지정한 관리기관의 보유 자원도 해당
o 내용 : 책임기관별 소관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 평가, 보존, 정보화 등

2)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확대

o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 국내외 동향 파악 및「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국내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

o 산림분야 이익당사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Help desk 운영 및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o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 연구소, 대학, 지자체, 공·사립 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 ('13) 25개 → ('14) 30개

3) 품종보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이행

o 품종보호제도 관련법 분법화에 따라 효과적인 산림분야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 품종보호제도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재위임 사항 검토 및 소속기관의 재위임 지정요청과 직무육성품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예규 제정

  *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종자의 생산, 보증, 유통 및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종자산업법」으로 분법되어 2013년부터 시행

o 신품종 육종가 정보제공 및 현지 컨설팅 등 지원확대를 통해 산림분야 신품종보호출원 적극 유도

o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에 따라 산림분야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 고부가·고품질 산림종자 개발 및 공급 등 산림분야 시행계획 추진

<'14년도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이행 근거>

o 근거 : 종자산업법 제3조

o 대상 : 산림청(산림소관작물), 농진청(농업소관작물), 국립종자원

o 내용 : 신품종개발을 위한 육종기반조성, 고부가가치 품종육성, 종자생산 및 유통체계, 민간역량 강화 등

라. 추진일정

o 2014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 : 2013. 12월

o 2014년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산림분야 수립 : 2013. 12월

o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및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사업 수행 : 연중

o 산림생명자원 관련 법률 제·개정 대응 : 연중

o 품종출원 및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품종보호업무 총괄 진행 : 연중

o ICNP-3, CBD-COP12 등 산림생명자원 국제 협력업무 추진 : 2014. 2월, 10월

o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응 인식제고 : 연중

14. 한반도 녹화기반 구축

목 표

◇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준비체계 마련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새 정부 국정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비정치적·인도적 산림분야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

o 북한은 산림황폐화가 지속되면서 산림 복구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나. 기본방향

o 안정적인 북한 산림 복구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o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대북용 종자 및 묘목 준비

o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대북용 종자 확보 및 묘목 생산 확대

o 사업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북용 종자 3톤 채취 및 저장

- 지방청은 잣, 아까시, 싸리 등 대북용 종자를 일반 산림용 종자와 병행 채취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송
- 국립품종관리센터는 채취된 종자를 장기 저장하고 활력도 실험 실시

o 대북지원용 묘목 생산 및 북한용 유실수 시범 양묘 확대

- 북한과 기후가 비슷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양묘장 추가 조성
- 기 조성된 대관령 산간양묘장을 적극 활용하여 사방수종 외에도 밤나무, 블랙초코베리 등 북한이 선호하는 유실수 시범 양묘 추진
- 긴급 요청시 남한 조림용 양묘의 약 30%를 북한 지원용으로 전환

2)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산림복구 역량 강화 및 정보 수집

o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FAO를 통해 개도국(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진행

- 개도국(북한) A/R CDM 및 REDD+ 워크숍 개최·교육 훈련 사업 실시
- A/R CDM,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양묘장 및 시범사업 추진

  * FAO와 개도국(북한)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 진행 중('09～'16)

o 북한 산림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3) 정부, 지자체·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사업 역량강화

o 통일부,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산림분야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산림복구와 식량·에너지난 문제 해결 병행 추진

o 지자체 및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대한 자문·기술 전수

- (양묘장 조성) 양묘장 적지, 수종별 양묘 시업방법, 토양·양묘포지 관리 등 양묘장 조성과 묘목생산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 등
- (병해충 방제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산림병해충 피해 판단 및 피해지 조사를 요청할 경우 산림청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지원

o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상설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o 대북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상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라. 추진일정

o 북한 산림복구 대비 종자·양묘 계획 수립 : 2014. 2월

o '북한 산림복구 실무역량 향상과정' 운영 : 2014. 5월

o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채취·저장 : 2014. 11월

o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 운영 : 연중

o 북한 산림복구 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연중

o 남북산림협력관련 홍보활동 전개 : 연중

o 남북관계 개선 시 대북 산림협력사업 지원 : 연중

15. 국산 목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

목 표

◇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국산재 공급 확대
o 2017년 자급률 21% 달성('14년 18% 달성 목표)

◇ 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목재 공급으로 목재 이용 확대

가. 정책여건

o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 규제, 자국의 자원 보호 등으로 목재 수입 여건 악화

o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제도(RPS) 도입으로 인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급증

o「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친환경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진흥 기반 마련

o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과 로하스의 영향으로 한옥, 목조건축, 문화재 등 목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나. 기본방향

o 국산목재 공급 확대로 안정적인 목재 수급 및 산업 원자재 부족난 해소

o 지속가능한 영급구조 개선을 위한 목재생산 추진

o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목재 수요 예측과 공급으로 안정적 수급

o 목재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벌채사업 품질 제고

다. 세부 추진계획

1)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국산재 공급 확대

o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을 고려한 목재수급 전망 수립

- 목재 자급률 : ('13) 17% → ('14) 18%
- 국산재 생산량 : ('13) 4,900천㎥ → ('14) 5,240천㎥
- 국유림의 목재 공급 확대 : ('13) 135천㎥ → ('14) 142천㎥

o 자연재해 피해목, 수익간벌지 등 벌채되어지는 입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벌채 산물의 이용을 증대

- 태풍 등 자연재해 긴급 벌채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산주 소득 확보
- 수익간벌지 등 벌채 수확지에 맞는 기계보급 확대

o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 추진 및 원목생산업 교육을 통한 벌채사업 품질 향상

- '13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비, 기계화 작업로 단비를 현실화하고 사유림 지원 확대 및 '14년도 지침 개정 반영
- 원목생산업자 대상 기술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벌채기술 향상 유도
- 원목생산업자 대상 저비용 고효율 집재방식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벌채 기술 향상 유도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를 운영하여 경제성이 없어 버려지던 소량으로 분산된 목재 및 특수용도 목재를 수집·규모화하여 용재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목재자원 활용성 제고('14년도 예산 : 5억원)

- 시설장비 보완(3.5억) : 5개 지방청 × 70백만원(우드그랩 및 기타장비)
- 운영비(1.5억) : 5개 지방청 × 30백만원(연 인건비 100백만원, 운영비 50백만원)

2)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마련

o 국산재 생산 확대를 위한 벌기령 완화 및 현장여건에 맞는 제도 정비

- 불량림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산재의 공급 증대 및 조림면적 확대를 통한 영급구조 개선
- 단벌기 산업용재 공급 수요에 맞춘 활엽수 벌기령 완화 방안 마련
-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에 대한 제주지역 삼나무 임목수간 재적표 추가 및 남부지역 해송 임분수확표 조제, 활용을 위한 자료 보완
- 목재생산용 임지를 중심으로 법정림에 가까운 벌채를 유도
- 목재산업체가 의무적으로 기업경영림 보유 및 운영방안 검토

o 개선된 원목 규격에 따른 목재 시장 가격을 매각 기관 및 산주에게 정보 제공

- 국내 원목의 수종별·용도별 산원가격 및 제재소 가격을 분기별로 조사·제공하여 지방청 시가 조사 부담을 줄이고, 산주·매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o 기존 대금사정 프로그램(엑셀)의 간소화 및 전산 시스템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기계화 벌채 품셈 반영 및 과거 인자의 현행화·간소화 및 기초 금액 산정 방식의 현실화 추진

o 목재 관련 통계 자료의 정확도 제고

- 주요 목재 수출입국의 목재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제공하여 수입 여건에 민감한 목재 산업체 대응력 제고
- 목재이용 실태조사의 조사 업종 확대 및 전수조사 추진으로 원목 이용 현황 통계의 정확성 제고

라. 추진일정

o '13년도 목재수급전망 수립을 위한 기관별 수요 조사 : 2013. 12월

o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 시가 위탁조사(한국임업진흥원) 실시 : 2014. 1월

o 대금사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산림자원통합시스템 운영(정보통계팀) : 2014. 1월

o '14년도 목재수급 및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심의회 개최 : 2014. 1월

o '14년도 목재수급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2014. 5월, 9월

o 입목벌채허가신고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o 지방청 목재생산 분야 평가 : 2014. 11월

16. 목재이용 활성화

목 표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이용 증진
◇ 목재문화 체험 기회 다양화 및 목재이용 캠페인 확대

가. 정책여건

o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확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됨으로써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5.24)으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목조주택, 교육적 효과 등 목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나. 기본방향

o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 증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용도 개발

o 공공분야에서 목재 이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으로 확산

o 일반인이 참여하는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o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용도 개발

- 간벌 소경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장소에 적용하기 위한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추진(지자체 주관)
- 2개소(강원·전남), 총 사업비 4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o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조경가치가 우수한 수목을 공용·공공용 사업으로 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 운영(지자체 주관)

- 29개 시・군(강원·전북·전남·경남) 및 제주(2개시), 광특 2,953백만원
- 나무은행 조성·운영 실태 및 사업비 편법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2) 목재 이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전략 추진

o 「I LOVE WOOD」 목재이용 활성화 캠페인 추진(산림청 주관)
- 3차년도 캠페인 사업자 선정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목재의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위한 국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
  · 목혼식 페스티벌, 우드 캠핑, 목재공부방 꾸미기, 홍보영상 및 포스터, 온라인 이벤트, 목재이용 활성화 공모전, 목공DIY App 및 캐릭터 개발 등
- 목재산업박람회, 목조건축전시회, 기획 홍보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목재 관련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체 지원중심의 행사로 전환
- 교육원, 훈련원 등 교육기관의 참여를 통해 캠페인 확산 추진

o 공공분야 목제품 활용 확대 및 “목재문화지수” 개발 시범사업 추진(산림청 주관)
- 공공기관의 국산재 우선구매 및 공공건물 신・증・개축 시 목재 활용을 장려
- 지자체의 목재문화 정도를 계량화한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사업 추진
  ·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목재이용의 활성화,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의 지수 측정

3)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o 목재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민간단체 주관)
-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
-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양성 교실, 초·중등 교사 목공체험, 목재산업박람회 등
  * 목재체험교실 사업자는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정산 및 성과를 평가하고 당해년도 공모시 재선정 여부 반영

o 목공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자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원(지자체 주관)
- 목재문화체험장 신규조성 대상지는 사업설명 및 자문위원 심의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13년도 신규 조성은 도시형 및 산촌형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목재체험 공간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의무화
- 기존 휴양시설, 산촌관광시설 등 지역 특색사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사후관리 효율성 및 운영의 성과 제고
  * ’14년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9개소(운영 6개소, 조성 중 33개소)

o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운영에 따른 사업시행자 워크숍을 통해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산림청 주관)

- 시설 확대 위주에서 이용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성공요인 분석, 이용객 유치 성과 등 발표 및 우수 사례집 발간

4) 목재저장·유통시설 활성화

o (목재저장센터) 지역별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수종을 수집·저장하여 특용수 및 희귀수목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 산지매각보다 고비용이 소요되는 일반용도의 목재 운반·매각 지양

o (목재집하장) 노후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방안 마련

- 건조시설, 원목선별시설, 집재장비 등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을 개선

*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7개소 조성, 최근 2년간 2개소 시설 보완

o 목재저장센터, 목재집하장 등 국내 운영상황 분석 및 뉴질랜드 등 산림 선진국 성공우수사례 도입 검토

라. 추진일정

o '13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주관단체 공모 : 2014. 2월

o "I LOVE WOOD" 캠페인 추진 : 2014. 2월

o '14년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사업 공모 : 2014. 2월

o 목재이용 캠페인(3년차) 사업수행자 선정 : 2014. 1~2월

o 목재산업박람회 추진계획 점검 및 행사개최 : 2014. 6~12월

o 목혼식 페스티발 개최 : 2014. 9월

o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 : 2014. 12월

o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보고 : 완료 즉시

o 나무은행 운영 결과 보고 : 상・하반기 익월 10일까지

17.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목 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기반 조성
◇ 노후화된 목재 생산시설의 개선 및 유통시스템의 합리화

가. 정책여건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5.24)으로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

o 웰빙, 로하스(LOHAS) 부각과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으로 목재의 소비는 증가하고 관련 산업 시장은 확대될 전망

o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목질계의 신재생에너지원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목재자원보호 정책으로 산업용 원자재의 부족난이 가중

나. 기본방향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이행

o 노후화된 목재이용·가공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시스템의 합리화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o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마련 및 시장의 품질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법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산업 육성 정책 추진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 단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목재문화 진흥,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계획, 목재산업 육성 계획 등 반영
- 학회, 목재산업단체, 자자체 등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6월중)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연건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전국 시행계획(산림청) 및 지역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시・도지사)

o 목재 산업·문화·교육·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기구 설립 운영

- 목재법에서 규정하는 제도, 고시사무 등의 정책 심의 기구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구성('13.10.28.) 및 운영

  * 위원장 산림청 차장, 목재이용활성화 분과(10명), 목재산업경쟁력 분과(10명)

-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설립(2월중) 및 운영

o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고시사무의 단계적 추진('13~'15년)

- 목재제품의 안전성 등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격・품질기준 등의 관련 고시를 '14년 우선 추진

  * '14년 법정고시 계획 : 목재제품 자체검사 공장 지정 기준, 규격・품질 검사 기관 지정기준,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신기술 지정 기준 등

o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본격 시행으로 업종별 관리체계 구축

- 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 등록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임업전문 훈련원과 민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등록교육 지원(2월부터)

- 지자체 등록시스템(새올)의 연계를 통한 전국 차원의 정보화 관리체계 구축

2) 목재 생산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고 유통시설을 재정비

o 주요 벌채지 및 목재생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제재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의 규모화・집단화 추진

- 지역 간벌재를 활용한 지역 목제품 생산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

- 난대림 이용을 위한 목재전문산업단지 2차년 조성(전남 장흥)

o 목재집하장 등 유통시설의 고부가가치 목재제품 생산 지원 및 경영 개선 추진

- 경영이 우수한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을 중심으로 노후장비의 현대화 시설 지원(건조시설, 원목선별시설, 적재장비 등)

- 목재집하장별 지역 간벌재 중심의 특화수종 집하 및 용도의 차별화 등 경영방식 개선 및 수익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목재유통센터의 목제품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 시설 보완(790백만원)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기계화 장비 지원
- 5개 지방청별 우드그랩 등 집재장비 지원(5억원, 지방청별 1억원)

o 소규모 영세 산업체의 자금지원으로 노후시설을 개선
- 가공시설 자금 및 원자재 구입자금 등 5개 분야 융자(184억원)

3)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o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목재제품 전체 품목으로 연차 확대
- ('12) 4품목 → ('13) 9품목 → ('14) 12품목 → ('15) 15품목
- 확대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제정 고시(안) 마련

o 목재제품 품질표시 시행과 병행하여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 연계 추진
- 우수 목제품 생산업체의 품질인증 검사수수료 지원(16백만원)

o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단속을 강화
-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 본격 시행(11개 지자체, 50명)
  * 산림청 목재생산과-4162(2013.8.8.)호,「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

o 품질관리 집행력 제고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규격·품질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지자체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136백만원, 시・도별 8백만원)

o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목재제품 명인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등

라. 추진일정

o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 : 연중
o 목재문화진흥회 법인 설립 : 2014. 2월
o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 등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 2014. 2월

o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등 민간 국고보조금 교부 : 2014. 2월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2014. 6월

o 목재집하장 및 유통센터 등 국고보조 사업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 2014. 6월

o 목제품 품질표시제도 시행 및 품질단속 : 연중

o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규업체 지정 : 2014. 7월

o 인증·인정 제도, 목재제품 안정성 평가 제도, 목재문화지수 개발 시범사업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각종 법정사무 추진 : 연중

18.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목 표

◇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체계 마련
- o 목재펠릿 비수기 생산·비축 후 성수기 공급 체계 확립
- o 목재 에너지림 조성을 통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공급처 확보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분야 확대
- o 모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이용 현황 점검 및 관리
- o 관련 연소기에 대한 제작 및 관리 기준 마련

가. 정책여건

- o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매우 취약
- o 정부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08.8.)하여 추진 중
- o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여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급증
- o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2012년부터 RPS[9]제도 시행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요 급증에 대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공급처 확보 필요

나. 기본방향

- o 제조시설 가동률 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목재펠릿 수급 관리
- o 목재펠릿 연소기 품질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부정적 인식 개선
- o 목재펠릿 수요 급증에 대비한 원료 공급처 확보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 o 이용 저변 확대를 통한 목재펠릿 산업 육성 및 자발적 시장 형성

9)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 생산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펠릿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o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추진

- 사업 대상 : 2013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사업 내용) 생산규모 확대, 저장시설 증설, 자동화시설 설치, 건조 시스템 개선 등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및 자부담 20억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0~20%, 자부담 30~50%

o 목재펠릿 수매사업 추진

- 수매 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 내용) 목재펠릿 수요가 적은 하절기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목재펠릿 수매 후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공급
- 지원 예산 : 산림사업 종합자금 30억원 융자(10,000톤×30만원)
- 수매량 : ('13) 5,000톤 → ('14) 10,000톤

  * 국내산 수매량 부족 시 수입산 1등급 포함 수매 추진

o 목재펠릿 비축사업 추진

- (사업 내용) 제조시설 가동률이 저조한 비수기에 목재펠릿 생산·비축 후 성수기에 공급하여 제조시설 가동률 향상 및 생산량 증대
- 비축 기간 : 2014. 6월~10월
- 비축 계획 : ('13) 20,000톤 → ('14) 30,000톤

2)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속적 보급 확대

o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보급 대상 : 농산어촌 주택,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도시 주택
- 보급량(예산) : 2,000대(2,820백만원)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 : 4,700천원
- 보일러 용량 : 20,000kcal/hr 내외

  * 산림청에 등록된 5개 제조업체 제품만 보급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① 기존에 설치했던 보일러의 고장으로 폐기처분하고 재설치 하는 경우, ② 한 마을에서 5가구 이상 집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 신청 순

o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보급 대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 및 고아원, 보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보급량(예산) : 100대(235백만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 4,700천원
- 보일러 용량 : 20,000kcal/hr 내외

  * 산림청에 등록된 5개 제조업체 제품만 보급 가능

o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 지원(1개소)

- 사업 대상지 : 충남 아산시 강장지구 전원마을(약 30가구)
- (사업 방식) 마을 중앙에 대형 온수보일러(600,000kcal 내외) 1대 설치 후 배관을 통해 각 가구에 열공급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자부담 90백만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보급 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산업시설
- 보급량(예산) : 20대(30억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 3억원/대(스팀 2톤/hr 용량 보일러 기준)
- 보일러 용량 : 스팀보일러 0.5톤/hr 이상, 온수보일러·열풍기 200,000kcal 이상

  * 산림청에 등록된 6개 제조업체 제품만 보급 가능

o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 보급 대상 : 국가·공공기관

  * 목재펠릿 홍보 효과가 큰 읍·면·동사무소에 중점 보급,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보건소, 소방서 등에 우선 보급

- 보급량(예산) : 보일러 2대(2억원), 난로 100대(2억원)
- 기준단가 : 보일러 1억원, 난로 2백만원

  * 난로의 경우 2백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설치 기관에서 부담

3)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o 목재 에너지림 조성

-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 공급을 위해 새만금 에너지림 조성 면적 확대 : ('13) 25ha → ('14) 30ha(기반조성 50ha)

  * 사업비 : 2,166백만원(기반조성 1,320백만원, 조성 및 관리 846백만원)

- 2013년 추기 식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춘기 식재 수종 결정
- 안정적인 식재 묘목 공급을 위한 micro-cutting 기술 도입

o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가공·이용 및 전시·홍보·체험 공간 조성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 사업 추진
  * 1차년도 사업비 : 28억원(국비 14억원, 지방비 14억원)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o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추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인증제 도입 추진

o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 목재칩, 목재브리켓, 화목 등 모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연소기에 대한 이용 및 제작·관리기준 마련
- 산림바이오매스 장기수급 전망 및 해외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확대 등

o 목재펠릿 품질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제정)
- 깨끗한 원료 사용,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급
- 보급사업으로 보급된 보일러 사용자는 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목재제품에 '임산펠릿' 추가(임산펠릿 : 잔디부산물, 잣껍질 등 바이오매스첨가)

o 목재제품 안전기준에 목재펠릿의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 기준 마련 고시(제정)

라. 추진일정

o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 2014. 1~4월

o 2014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2012. 2월

o 목재 에너지림 조성 춘기 식재 : 2014. 4월

o 목재펠릿 수매·비축사업 추진 : 2014. 6~10월

o 2015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공모 : 2014. 9월

o 목재 에너지림 조성 추기 식재 : 2014. 10월

o 2015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공모 : 2014. 11월

o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 워크숍 : 2014. 11월

19.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촉진

o 임업기계장비 보급 : 130대(지방청 50, 지자체 80)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으로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

o 사유림은 전문 인력 부족, 임도 등 작업여건 미비 등으로 국유림에 비해 임업기계화 수준은 낮은 실정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을 통한 기계화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의 보급으로 사유림 기계화 산물수집의 도입여건은 성숙

나. 기본방향

o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한 임업기계장비의 확대 보급

o 사유림의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물수집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

다. 추진계획

1)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기계화영림단의 지속적 양성

o 임업기계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임업기계의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 시스템' 개발 방안 마련
- 한국형 핵심 임업기계장비(프로세서, 임내차 등) 연차적 개발
- 임업기계장비 개발 시 소형 작업도구(덩굴제거 낫 등)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

o 임업기계장비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입 기종 선정(1월중)

- 기계장비는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은 기본 장비를 세트화하여 보급 추진
  · 기본 장비 셀 : 트랙터집재기, 우드그랩, 소형윈치, 2드럼 윈치류
- 화물차량·가공장비는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있는 시·군에 우선 배정

o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 신규로 개발 보급된 구입 장비는 성능, 안전성 검증을 위해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조치

o 현재의 '기능인영림단'을 '기계화영림단'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민유림) : 기계화 시범사업 시군과 연계하여 도별 1개단을 양성
  * 시범사업 추진(시·군) : ('10) 8 → ('11) 16 → ('12) 24 → ('13) 32 → ('14) 40
- 선정된 기계화영림단에 대하여는 임업기계훈련원의 기계화영림단 과정 등 기계화교육 과정을 우선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o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적합한 기계의 집중 보급
- 중·소경목 집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2) 기계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o 지방청은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숲가꾸기 모델 숲 등에서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o 지자체별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확대 추진(32 → 40개 시·군)
- 숲가꾸기 사업량, 임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별 5개단씩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여 시범운영(특·광역시, 제주도 제외)
-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는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에 우선 배정, 기타 운반·가공장비 등은 지자체 수요 및 영림단 현황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계화영림단 운영 시·군에 대하여는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숲가꾸기 사업량, 작업임도 등의 기반시설을 타 시·군보다 우선하여 배정
- 지자체별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기계화 영림단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교육훈련, 장비구입, 산물수집 설계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지자체별 보유 임업기계장비는 정책숲가꾸기 도급계약 시 산물수집이 계획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 중 산림조합 등에 장비 대여

o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평가단 및 기술지원반 운영

- 원활한 사업 실행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기술자문평가단 및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지도 및 모니터링 실시
  - ·기술자문평가단 : 공무원,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지도
  - ·기술지원반 :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등으로 구성, 관할지역 순회지도

o 윈치류 등 산물수집 장비의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

- 소형 윈치류 및 트랙터집재기 사용법에 대한 현장 매뉴얼 작성

3) 임업기계장비의 보관 등 사후관리 철저

o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및「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임업기계장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장비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관별 보유한 기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내용연수 경과 장비 등에 대하여는「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용일지 기록관리

o 임업기계장비 보관 장비고 설치

- 장비고 등이 없어 장비가 분산 관리되거나 야외에 보관되고 있는 장비는 간이 장비고 또는 컨테이너를 확보하여 장비를 보관

4)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의 기계화 중심점으로 육성

- 지자체의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량 등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자체 사업 물량 확보에 노력
- 기계운전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강화 및 현장 토론회 등 실시
- 기계장비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인근 지자체 및 일반산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산림지, 전문지, 등) 실시
-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o 지방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 지방청 보유 중·대형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청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 북부·남부청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성과를 반기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5)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국가공인자격 추진

o 임목생산시대 진입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의 기술수준 등을 인정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음

-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추진체계

- 민간자격 신설('12) 등록 후 국가공인자격으로 운영
  - ·자격종목(3개) : 임업기계 오퍼레이터(우드그랩, 가선집재, 트랙터집재)
  - ·자격관리자 : 임업기계훈련원

6)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등 임업인 지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기계장비 구입 등

o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장비(동력기계톱 등 15종)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o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산림사업 종합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임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지원조건
  - ·임업기계장비 구입자 : 금리 3%,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30백만원)
  -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금리 4%,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100백만원)
  - * 2014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4. 1. 20일까지 해당 산림조합
- 자금용도
  -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금
  -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나)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업무 철저

o 산림조합중앙회는 면세유류의 공정한 공급 관리를 위해 전년도 기종별 면세유 사용량을 종합 분석하여 산주 및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o 임업용 면세유류는 기획재정부에서 상·하반기 공급한도량 배정전이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o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2회이상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타용도 등으로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철저

o「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5조 규정에 의거 신고된 임업기계는 보유현황을 재 신고(2년마다)토록 하고, 신고 기간 내 재 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라. 추진일정

o 임업기계장비 구입 : 2014. 6월까지

o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임업기계장비 자체 실연회 및 토론회 : 수시

<지방산림청 보고>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 실적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4. 12. 31.

<지자체 보고>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4. 12. 31.

<산림조합중앙회 보고>

o 2013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 : 2014. 1. 18.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 : 익월 15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면세유류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 보고 : 2014. 12. 31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4. 12. 31일까지

20.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목 표

◇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에 따른 숲가꾸기 등 녹색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산림기술자 양성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o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 ('07) 10,000명 → ('17) 20,000명

가. 정책여건

o '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 비전 아래 마련된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에 의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도시 녹색공간 확충과 산림서비스 생산 증진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산림공원, 치유의 숲과 수목장림 조성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o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전문화된 임업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o 영림단의 소득 및 고용제도 불안정 등으로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산림사업 실행시 안전사고 재해율이 높은 편임

나. 기본방향

o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체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o 산림기술자의 적정 수급 및 능력 함양으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o 숲가꾸기, 산림서비스증진분야 등 산림사업의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영림단 조직·운영의 활성화

o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로드맵 구축

- 다양한 산림수요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기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o 산림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교육시스템 및 전문 임업기능 인력을 내실 있게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 정비 및 교육시설 확충

다. 세부추진계획

1)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투명한 관리

-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 및 산림기술자 자격 등록사항을 지자체, 국유림 관리소 및 산림사업법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상시 지도·감독

o 산림정책 활용을 위한 산림사업별 수주실적 등 자료 조사

2)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관리 및 지도 강화

o 「산림기술진흥법」제정 등 관련 법 제·개정

- 산림분야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실태점검 및 산림기술자 이력관리
- 기술자격을 통합 관리하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o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3) 임업기능인 양성 및 교육

o 녹색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인력을 임업기능인으로 적극 유도

o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전문 산림작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림단원들에게 임업기계분야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가) 기능인영림단 교육

o 기능인영림단원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과정별로 전문 산림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o 산림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영림단원 교육시 과목별 안전한 산림작업 실행요령 방법을 구성하고,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및 실습 시간을 확대 운영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사고예방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
- 산림분야 안전사고예방 요령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임업기능인 기술교재의 안전예방 분야를 재편

o 임업기능인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간담회) 정례화

- (개최시기) 그동안 추진되어 온 임업기능인 양성 교육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여 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상·하반기)으로 간담회 개최
- (참석대상) 산림조합중앙회 및 3개 임업훈련원 등 이해당사자
- (주요과제) 임업기능인 교육내용, 교육생의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등

o 현장위주의 체험식 임업전문 교육훈련 실시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구성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이론교육보다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

o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작업의 질 향상 및 교육이수자 이탈 등에 수시로 대비

o 교육훈련은 사업이 없는 시기(1~2월, 12월)에 집중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o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술교육에 차질 없도록 비상체계 가동

o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실시

다) 산림경영자 양성

o 교육인원 : 100명(3회 교육실시)

o 교육기간 : 12주

o 교육기관 : 임업기계훈련원(강릉)
- 교육대상, 기간, 내용, 교육이수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o 취업알선 홍보 등을 통해 현장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방안 강구

라) 산림토목기능인 양성

o 교육인원 : 60명(2회 교육실시)

o 교육기간 : 3주

o 교육기관 : 임업기술훈련원(양산)

o 교육내용 : 산림토목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능인력 양성

4) 영림단 조직・운영

가) '14년 영림단 조직

o 민유림 영림단은 신규 조직 및 이탈인원에 대한 보강

o 국유림영림단은 기존 영림단의 이탈인원에 대해 보강하되, 사업량 확대 등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직 확대

나) 민유림 영림단 운영

o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소속 영림단의 임업기술능력 향상 및 영림단 구성요건 확보를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체 구성인원의 60% 이상이 반드시 산림경영기술 2급 자격증 소지

다) 국유림 영림단 운영

o 국유림 영림단원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방안 적극 추진

- 국유림 산림사업은 소속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계화 촉진을 유도
- 소득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사업물량을 책정

o 계약 시 참여하는 영림단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실행 중 수시 점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3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및 지원·육성

5)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o 개최시기 : 2014년 하반기

o 임업기능인의 기술발전 및 사기진작, 임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및 임업기계장비 실연회와 연계하여 추진

- 산지에서 임목생산 장비 등을 활용한 기능경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

6)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o 산림자원 성숙에 따라 본격적인 산림경영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며 숲가꾸기, 벌채생산, 임도・임업기계 등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 증가

o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을 통하여 기능인, 기계화 영림단 등 젊은 임업경영 인력 양성

o 임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겸임교원' 또는 '외부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최신 현장기술 교육 지원

o 교육과정 시설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o 임업경영 인력수요와 산림분포를 감안, 우선 1개교 시범운영

- 대상 : 경북. 봉화. 춘양.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 지원규모 : 300백만원/년

※ 교육과정 개발·운영(200백만원), 임업실험·실습 기자재 구입(100백만원)

라.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실행 주체별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4. 2. 20.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시·도) : 2014. 4~6월

o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및 산림기술자 운영실태 점검 : 연1회

o 임업훈련원 운영실태 점검 : 하반기

o 기능인영림단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임업기능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 하반기

o '13년도 임업기능인훈련 교육훈련계획 보고 : 2014. 12. 31.

o 임업훈련원 교육실적 보고(반기보)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14년도 영림단(국·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연보) : 2014. 12. 31.

2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o '12년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결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0.59%)보다 4.2배, 건설업 등에 비하여 약 3배 더 높은 추세임

- 광업 6.94% > 임업 2.46% > 제조업·건설업 0.84%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08) 5.4% → ('09) 6.2% → ('10) 6.6% → ('11) 6.5% → ('12) 7.2% → ('13) 8.0%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협력체계 강화

- 산업안전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 산림사업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행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다발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문기관과의 합동 특별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
- 사업착수와 동시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현장 확인 지도·감독 강화
- 산림사업 시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시 안전수칙 등 준수토록 지도·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 산림사업 사업시행 기관별로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안전사고 예방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 저감

* '13년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재해율 2.1% 이하 설정

o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 기관별 재해발생현황 매월 분석 및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

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사항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 공동 실행
- 산림분야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합동 점검 등 공동 실시
- 안전한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교육·홍보자료의 보급 확대
※ 산림사업 재해예방 업무협약 기간('11. 7. 7 ~ '13. 7. 6) 연장

o 기 구성된『산림사업 안전관리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 참여기관·단체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본부 역할을 수행
- '산림사업 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 공동 캠페인 전개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재해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가) 산림사업 착수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o 숲가꾸기 등 작업 착수 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임업훈련원 교관 등을 초빙하여 현장중심의 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 착수

o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일 경우에는 발대식 날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및 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착수
- 작업 착수 후 주기적으로 안전한 산림작업요령 등 보수교육 실시
-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한 기계사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 상황별 처치방법의 실습교육 강화

나) 임업훈련원(기술, 기계, 기능인)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목 재편 및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방법으로 내용을 개편
- 응급처치 위주의 교재내용을 산림사업별 안전작업 요령으로 재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o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교육 강화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위탁교육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점실시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다) 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수 전 현장에 부합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작업 착수

- 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 포함

o 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에 관해 조치할 사항

-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기계톱 등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등

3)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가) 산림사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o 사업시행자는 위험한 산림사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호구 의무착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제32조

o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는 참여제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 조치

- 연속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 시행

나) 작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낭독

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③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 ④ 산림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한다. ⑤ 작업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o 기계톱 등 위험장비 사용시 안전한 사용법 반복 교육 실시

o 작업현장에 안전수칙, 안전교육일지 등을 비치 및 기록 관리

다)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사고발생시 신속 보고

o 작업 착수 전 작업반장은 반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건강유무 확인

o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일지에 기록·관리

o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등에 연락 및 환자 이송

o 자치단체 및 지방청 등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 발생 시 산림청 목재생산과(FAX : 042-471-1446)로 신속 보고

4)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강화

가) 화학약품 약제 처리방법 이행 철저

o 덩굴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화학약품 사용시 작업자, 지하수, 야생동물 등을 오염시키므로 각별 주의

o 화학약품 처리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반장은 약제처리 관리 감독을 강화

나)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및 지도 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시 취급되는 약품은 고독성 농약 등이므로 안전관리 수칙 준수

o 화학약품 작업일은 수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우천 등에 대비

5) 산림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가) 기관별·월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분석

o 기관별 재해발생 통계자료 구축·활용(본청)

- 기관별 재해발생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매월 재해원인 및 재해 발생 형태를 분석(지자체 등)

나) 산림사업 재해발생 취약 사업장의 집중관리

o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은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 재해다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조사 분석
- 중대재해 발생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예방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o 지자체, 지방청 등에서는 현장 출장 시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를 지참하고, 연접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

6)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 추진

가) 산림사업 안전관리 예방 목표관리제 설정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을 낮추는 계기 마련

o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 설정

- 목표치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상시인원 대비 재해자 2.1% 미만
- 기관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 제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유공 표창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사고 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한 공적이 있는 자 대상
  · 훈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점), 산림청장(3점)

나) 기관장·부서장의 적극적 안전대책 실시

o 지자체장·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격려·점검

7)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보급

가) 산림사업 재해예방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o 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 휴대용 수첩, 리플릿, 교육용 PPT 자료, 동영상 등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작업 매뉴얼 제작

o 사업종별 안전사고 예방에서 사후조치까지 처리요령이 담긴 매뉴얼 제작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 최초 사업 발대식 개최 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 예방교육 : 매일, 정기 안전교육 : 매월 1회 이상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 2014. 3. 31일까지

o 안전사고 다발기관 및 재해발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상·하반기

22.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목 표

◇ 목재생산과 임업기계 활성화를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재해안전성 강화

o 사업량 : 간선임도(454km), 작업임도(343km), 구조개량(316km), 보수(3,480km)

o 사업비 : 179,854백만원(국비 142,141 지방비 25,142 자부담 12,571)

가. 정책여건

o 인공조림지 성림화에 따른 목재생산에 대비한 산림관리임도 필요성 증가

o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임도 시설 요구

o 임도를 이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의 국민적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임도신설은 경제림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산림사업 및 임도활용성 증진

o 임업기계화 목재생산을 고려한 간선·작업임도의 시설로 임업생산성 향상

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에 안전한 견고한 임도 시설

o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임도는 안전진단 후 구조개량 실시

o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병행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1) 임도신설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간선임도		작업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797	116,564	454	79,558	343	37,006
민유임도	555	72,650	327	51,167	228	21,483
국유임도	242	43,914	127	28,390	115	15,524

가) 노선선정

o 간선임도는 제3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경제림단지의 경영계획이 수립되었고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한 개소에 설치

- 지역(산)별로 국·사유림간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기존도로(임도로 활용가능한 산림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활용성이 높게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산림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을 완결하여 임도 이용도 증진('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작업임도는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중 목재생산(수종갱신·조림·숲가꾸기·간벌)이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

- 작업임도 노선은 반출계통을 같이하는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기계화 등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일괄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지역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하고, 계곡·능선임도는 지양
- 대면적 숲가꾸기 대상지로 국유림 또는 공·사유림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사업 실행주체를 달리하는 산림도 포함하여 실행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지자체 ↔ 지방산림청간 협조 → 사업 비중이 큰 기관주도로 추진)
- 기존의 임도, 또는 기타 도로에 연결하여 시범림·특수림 등 산림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등을 위한 순환임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산림 내 폐기된 도로를 이용하여 임도시설이 가능한 노선(임도시설 후 활용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

  * 과다한 산림훼손과 집중호우 시 국민의 재산 피해 우려지역, 지형적 여건으로 구조물 시공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은 임도신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m 마다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작업장(300㎡) 시설

o 임도신설 대상지를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용산지 위주로 사업추진 확대

- 경제림육성단지 내 기반시설 확대추진 계획

구 분	경제림단지		임도시설 확대비율(%)				비 고
	개소	면적(천ha)	(현행)	2013	2014	2015	
민유임도	345	2,339	47	50	55	60	* '16년 이후는 실행현황 검토 후 '간선임도 설치계획('16~'20)'에 반영하여 추진
국유임도	105	580	85	85	85	85	

* 각 도 및 지방산림청 별 총괄 사업량을 기준으로 확대 추진

나) 사업추진

o 월동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사전설계비를 이용 사전설계로 5월말까지 시공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개소별 추진 공정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 '임도사업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임도신설 실시설계 비용 산출 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3조 3항(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을 준수하여 실행
- 노선 설계시 지형여건과 산림자원량을 고려한 기계화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설계실명제 준수

o 임도신설 사업비를 구조개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없도록 목적별 계획대로 집행하되, 계약잔액을 이용하여 추가시설 가능

- 민유임도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최대한 재해위험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임도사업에 집행('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임도신설는 예산물량에 구애됨이 없이 현지 지형여건에 부합되게 설계·시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개설(기준단비 150% 초과지 유보)

- 급경사지의 임도시설에는 작업현장의 시공여건을 감안하여 층따기 등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o 임도의 시공품질 향상과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 철저

- 사업비 2천만원이상은 반드시 감리계약 추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o 민유임도 사업의 경우 산주 부담금(사업비의 10%)은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지원

- 임도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산주부담금은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추진('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15년에 시설할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14.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와 병행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산주 부동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동의 완료 후 설계 등 사업추진('12년 감사원 감사 검토사항)

* **임도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임도의 시점과 1km간격, 교차점 등에 국가 지점번호판 설치**(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5933(13.10.29) 참조

2) 구조개량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316	200	116
사업비	17,024	9,326	7,698

o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은 지역완결 원칙으로 시공하되,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실행('15년까지 완료 목표)

- 임도 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일반주민 이용률이 높은 임도
- 전간재 반출이 어려운 구간은 선형개량, 작업공간 확보 등 병행 추진
- 기존 구조개량을 실시하였거나, 최근 시설한 임도(하자보수기간 만료)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추가 실시(필요성 및 사업실행 근거 명문화)

o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발행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등

- 사설임도도 국·공설임도로 필요한 지역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편입 추진
- 편입된 사설임도 및 타용도 도로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 재해안전성 강화

o 각종 구조물 시공은 필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시공편의 중심으로 필요성이 낮은 공종 및 과다시공 지양

- 임도하단부에 주택 등 피해예방을 위한 구간은 재해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타 지역은 산림사업과 임업기계화에 필요한 공종위주 검토
- 구조개량 사업시 노면포장위주의 시설지양('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특히 경치가 좋은 노선 등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임도는 기능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 테마임도는 임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 유도

o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임도주변의 산원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조치 필요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하여 실시

3) 보 수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3,480	1,280	2,200
사업비	8,553	6,021	2,532

o 보수사업 대상지는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이며,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여 1차 보수는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임도피해지역 보수는 계약잔액을 이용하여 추진
- 임도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율보수 조건으로 통행 허용

o 해빙 후와 우기 중에 임도관리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상시관리 체계 강화

- 임도관리원은 해빙기 후부터 바로 임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기 중에 집중적으로 활용

  * 임도관리원은 지역별로 임도시설 거리, 관리의 난이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원 및 예산단가를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조정 시행하되, 타 사업으로 사용하고 임도보수를 소홀히 할 경우 관계공무원 문책

- 국유임도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배치·활용

o 국유임도의 일부구간(2,200km)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되, 기타 노선은 자체 장비 및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실시

- '14. 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기 전에 사업 완료
- 민간위탁 : 1회 보수 6월 중순까지 완료, 2차 보수는 9월말까지 완료

4) 간선임도 사전설계 실시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175	137	38

* 간선임도 사전설계비 단비 : 12,782천원/km(220,000천원 × 5.81%)

o 임도사전 설계는 2013년에 금년도 사업지를 설계하였으므로 금년 사업비로 2015년도 사업지에 대해 사전설계

- 적설기 임도 측량·설계로 인한 현지 지형여건과 불부합되는 부실설계 방지

o 사전설계비는 명년도 사업대상지를 고려하여 시·군 및 관리소별 조정하되 아래 대상지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등 집약적이며 연속적으로 임도신설 지역
- 동절기 적설량이 많아 3월말까지 현지측량이 어려운 지역
- 측량·설계업무가 상반기에 편중되어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 기타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판단하여 전년도 사전설계가 필요한 지역

o 13년도 사전설계로 사업비가 남는 '14년도 설계비 반영예산을 활용하여 '15년도 사전설계비로 집행

5)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운영

o 산림의 집약적 경영·관리를 위해 지정된 '임도시설 시범단지'의 임도는 시설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시공한 재해에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설로 상시학습장으로 활용

- 시범단지 : 10개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방산림청)

o 임도시설 시범단지는 노선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13년에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실시 후 연차별 사업 추진

- 산림자원량을 고려한 간선·작업임도의 노선 및 기계화 작업공간 배치
- 연차별('14~'16) 노선별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와 산림사업 추진
- 시범구역내 편입된 사유림은 기본설계시 산주동의 완료

라. 기타 사항

o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산림토목사업 실행체계 제도개선 지침」(치산복원과-55, 2008.4.8.)의 공개경쟁 비율 확대

- 각 시·도 및 지방청 단위 사업금액의 35% 이상 임도사업 공개경쟁 실시

o 임도시설 건당 사업규모가 2억원 이상일 경우에 차상급기관의 설계심사를 통해 품질향상 도모(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o「환경영향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 타 법률로 규정한 평가사항을 준수하여 임도가 재해유발 원인이 되는 사회적 책임성에 적극 대비

o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발표 한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임도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자료로 활용

* 생산유발 계수 1.546 고용창출효과(10억원당) 14.6명 부가가치 유발 1.188

예) 산출식 = 투자액 × 계수, 총 생산액 = 투자액 + 생산유발액

마. 추진일정

o 임도담당자 정책·기술 교육 실시 : 2014. 3월

- 지자체 담당자 인사이동 후 임도워크숍과 병행하여 실시

  * 신규 임도담당자는 산림교육원의 임도시공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o 도 및 지방산림청 별 '임도시설 시범단지' 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설계에 대한 현장자문 실시 : 2014. 3~4월
- '14년도 임도시설 시범단지 실시설계 및 시공추진 : 2014. 4~11월

o 임도(간선・작업)신설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4. 1~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4. 5~11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산주동의 : 2014. 10월
- '15년도 간선임도 사전설계 : 2014. 7~11월

o 구조개량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4. 2~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4. 5~10월

o 임도보수 및 민간위탁사업

-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2014. 2~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4. 4~6월

o 임도시설 호우피해 예방사업

- 임도하단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추가 조사완료 : 2014. 3~6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 : 2014. 5~6월

o 임도사업 성과평가

- 안행부 합동 및 지자체 자체평가(민유임도) : 2014. 3월, 11월
- '13년도 국유임도 사업평가(지방산림청 등) : 2014. 11월

o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 : 2014. 10월

- 임도시설 우수사례 제출 현황 및 수상자에 따른 사업량 배정 및 해외 연찬 기회 제공

  *** 임도시설 우수사례는 2013년도 시공지 또는 2014년도 중 시공 완료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공년도가 경과하였거나 미 준공 임지는 현장평가에서 제외**

23. 도시녹화운동 전개

목 표

◇ 국민·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숲의 조성·이용·관리 활성화 도모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와 참여 욕구 급증

* 도시숲 월 1회 이상 방문 71.3%,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성 및 관리에 76%가 참여 의사 표시[10]

o 대내적인 다양한 요인 등으로 도시숲 조성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도시숲 조성시 기업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숲을 확충하고 대국민 녹색복지 서비스 확대

* 국민의 88.7%가 기업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참여에 찬성[11]

나. 기본방향

o 국민 참여형 도시녹화운동 본격 추진으로 도시숲 조성에 국민·기업·단체의 참여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기업·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녹화운동 전개

o 국민들이 직접 도시숲 조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

- 지자체 자율적으로 각종 식재 작업도구와 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시민이 참여하여 조성한 도시숲은 명칭 부여 등 검토

- 그린오너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도시숲에 대한 참여의식과 책임감 고취

o 도시숲 조성관리에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기업참여 유도

---

10) 11)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한국갤럽)

- 향토기업 등 지역별 연고기업에 대한 도시숲 사업의 참여 확대
-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조성한 도시숲에 기업명칭 및 기념표식 사용 등
- 기업참여 유형에 따라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부 등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으로 기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우선 알선 기회 부여

o 조성된 도시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계 도입
- 지자체 또는 기업·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 개인·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관리 자체 운영 규정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 공모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도시숲을 통한 사회공헌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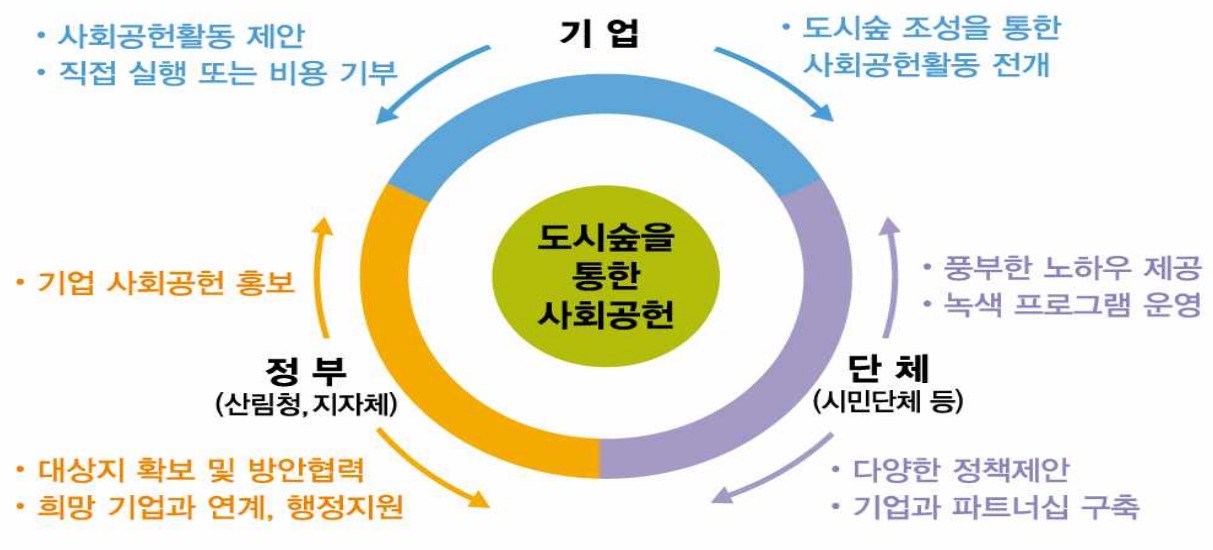

2) 도시녹화운동 전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o 도시녹화운동 전개 활성화를 위한 (가칭)도시숲트러스트 구성·운영
-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가칭) 도시숲트러스트 구성
  *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2월중)
- 상호 업무분담을 통한 민관협력 체제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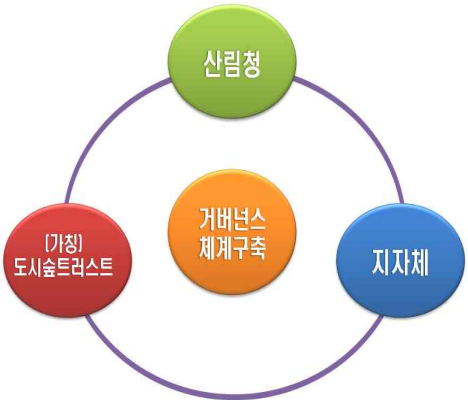

o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연중 캠페인 실시

- 시기별, 대상별, 테마별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 도시녹화 캠페인 네이밍은 도시숲 가치의 관점에서 도시민들이 숲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가 더욱 좋은 장소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도시愛숲'**으로 선정함

[도시녹화 캠페인의 시그니쳐(심벌+로고타입)]

<가로형>
<세로형>

-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 네이밍과 로고를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 **도시** : 청주愛숲, 구미愛숲 등
  - **기업** : 삼성화재愛숲, 00기업愛숲 등
  - **범위** : 우리동네愛숲, 빌딩愛숲, 홍길동愛숲, 00동아리愛숲 등
- 캠페인 발대식 및 지자체간 연계구조 강화로 도시녹화운동 전개 공유 및 이해증진 기반 마련

  * 도시녹화운동 선포식 등 개최(4~5월)

o 도시녹화운동 홍보 동영상 활용

- 각종 행사, 워크숍, 토론회 등에 홍보동영상 활용으로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홍보 강화(산림청 제작자료 활용)

o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개인, 시민단체, NGO 들의 아이디어, 집단지성의 의견 교환, 전문성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참여 공간을 마련

3)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가) 사업목적

o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군·구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나) 사업내용

o 대상 : 지자체별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 사례

o 신청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신청

o 추진절차 : 지자체 녹색도시우수사례 선정과 병행하여 추진

라. 추진일정

o 도시녹화캠페인 발대식 : 2014. 4~5월

o 도시녹화캠페인을 위한 온라인 공간 오픈 : 2014. 6~7월

o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 : 2014. 8~10월

o 도시녹화운동 전개 추진실적 제출 : 2014. 10월

24. 도시숲 조성 · 관리

목 표

◇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

o 녹색쌈지숲 조성	: 156개소(92.16ha)	17,085백만원
o 생활환경숲 조성	: 45개소(47.16ha)	7,000백만원
o 산림공원 조성	: 33개소(151.85ha)	11,121백만원

◇ 도시숲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가. 정책여건

o 국민 1인당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면적이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국민들도 도시숲 조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12)]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11년 7.95㎡),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의 88% 수준, 도시숲 면적이 부족하다고 응답(국민 71.2%)

o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활권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도시숲에서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o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나무와 꽃 등을 위주로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자, 분수 등 시설물 위주의 조성은 지양

12)·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8월, 한국갤럽)

다. 세부추진계획

1) 도시숲 조성 및 확충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o 도시숲 조성사업 적기 추진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특별관리 현장책임관 지정·운영(국비 3억 이상)
- 사업추진 전년도부터 행정절차 이행조치 및 사전설계 등 추진

o 사업공고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숲 사업'임을 명시
- 도시숲 사업공고시나 조성 후 명칭은 ○○도시숲 또는 ○○공원 도시숲으로 명칭부여

o 조성된 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계정착 유도
- 지자체 또는 기업·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 개인·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도시숲 조성·관리 (자체) 운영규정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 공모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o 조성된 숲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
-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보완

가) 녹색쌈지숲·생활환경숲 조성사업

(1) 대상지

o **녹색쌈지숲** : 시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해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o **생활환경숲** :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벽면녹화)과 그 주변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과 그 주변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조성방법

o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동·읍 또는 시·군·구내의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규모 있는 도시숲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설계

o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 공간을 조성

o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 잔디밭 조성이나 관상수 식재 중심의 조성방식 지양
- 시설물은 이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 표지석 등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
- 편의시설, 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시숲 조성사업비 외의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시설

o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 추진
- 토양이 척박한 경우 토양개량 등 먼저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대책마련 후 조성 추진

o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초화류 식재
- 주변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자생 초화류를 섞어 심어 심미적 경관 창출
  * 야생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식재면적의 10%이상 야생화 조성

o 준공검사 시 설계의 식재규격 점검 등 엄정한 기준 적용
- 식재목의 규격 외에도 건강성·수목 활력 등을 점검

o 독립적인 비오톱(Biotop)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 큰나무 위주의 제한된 수종보다는 면적, 위치 등을 감안 다양한 식생 도입

o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 인공지반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나) 산림공원 조성

(1) 대상지

o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다른 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이미 취한 지역

o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도가 높은 산림공원 확대 조성
- 산림서비스림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지자체는 국유림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이행

- 산림서비스림의 매수 취지를 살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o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소관 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산림과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예정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되 다른 법에 의한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도시숲 조성·관리의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장기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2) 조성방법

o 자연적·사회적 및 인문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

-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공원형 및 방풍·방음형으로 조성
- 도심 속에 고립되어 방치된 경우에는 생태형으로 조성

o 사업은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성

- 조망점 중심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경관 숲가꾸기 실시
- 보완식재가 필요할 경우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실시
  * 야생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식재면적의 10%이상 야생화 조성

o 시설물은 이용도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입지여건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주변 숲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표지석 등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

o 자연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이용시설물 설치 등

-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 과다한 이용으로 훼손된 산림공원은 복구사업 반영 등 재해안전성 확보

o 신규 조성하는 개소는 유아숲체험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도시숲에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별첨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참조)

다) 국유지 도시숲 조성

(1)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o 신규 조성하는 도시숲은 유아숲체험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도시숲에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4년 국유지 도시숲 신규조성 2개소 중 1개소는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도입하고, 기 조성된 도시숲 3개소에는 대피소 등 시설을 보완하여 운영
  * 신규(1) : 충남 공주 봉정
    보완(3) : 서울 노원 상계, 인천 서구 가좌, 경기 고양 덕양

o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o 야생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식재면적의 10%이상 야생화 조성

(2) 산림서비스림 매수지 관리 철저

o 산림서비스림 매수지는 당초의 매수 목적과 관리계획의 목적에 부합토록 재산관리에 철저

- 해당 기관별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관리토록 조치
  * 『산림서비스림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당초 도시숲 조성을 목적으로 공모·매수한 임지의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사후관리 철저
- 산림서비스림을 도시숲 등으로 조속히 조성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 지자체가 산림서비스림을 도시숲 등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산림사업"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

라) 지자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o 변경된 도시림 기본계획('13~'17)에 따른 지자체의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 수립 철저

-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1년 이내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함
  * 도시림기본계획 변경 통보(산림청 도시숲경관과-1501호, '13.5.27.)
- 지방자치단체 수립 여부를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등에 반영

2)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가) 사업목적

o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모범 사례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사례를 전파

o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해 '05년부터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실시

나) 사업내용

o 사업대상 : 2006년도 이후 신규로 조성한 도시숲 및 가로수

o 신청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신청

o 추진절차 : 선정계획 통보(5월) → 접수(6월) → 서류심사(7월) → 현장심사(8월) → 선정 및 시상

o 시상내용 : 11개 기관(최우수 1, 우수 3, 장려 5)

- 최우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패 수여 및 최우수지역 인증
- 우수 및 장려 기관은 산림청장상패 수여

o 사례집 발간 : 녹색도시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3) 제6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가) 사업목적

o 기존 공원과는 차별화된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획·설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

o 산림청의 도시숲 정책방향에 맞추어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조성을 지양하고 산림형에 가까운 숲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유도

나) 사업내용

o 참여대상 : 도시숲 설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o 사업방법 : 위탁사업으로 추진

o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작품제출 → 작품심사 → 선정 및 시상

o 시상 및 작품전시 : 18개 작품(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입선 10)

- 최우수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장, 우수, 장려 및 입선은 산림청장상장 수여
- 수상작에 대한 작품 전시

o 사례집 발간 : 도시숲 설계 공모·선정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4) 교육 및 매뉴얼 보급으로 사업품질 향상

가) 도시녹지관리원 과정 운영

o 담당업무 : 도시숲 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방제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o 사업규모 : 219명(지자체 212명-제주 30명 포함, 지방산림청 7명)

o 사업예산 : 3,064백만원(국비 1,666백만원, 지방비 1,398백만원)

o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직접사업 100%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특회계 예산이며 국비 70%임

o 선발기준 및 자격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2014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참조

o 도시숲 및 가로수 등 관련 정책과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에서 3월 중 연 1회, 100명 교육예정

나) 도시숲 정책담당자 과정 운영

o 교육목적 : 도시숲정책 방향 공유 및 관련 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

o 대상 : 지자체 도시숲 등 담당자

o 교육인원 : 200명(기당 100명)

o 교육기간 : 2월~3월중 2일

  * 도시숲 유형별 조성·관리 매뉴얼내용 등 교육

다) 도시숲의 유형별 조성·관리 매뉴얼 보급

o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 등에 대한 설계 표준도면, 수목선정 및 식재비율, 사업추진 절차 등 제공

라. 추진일정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 2013. 12월

o 유형별 도시숲 조성·관리 매뉴얼 보급 : 2014. 2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실무교육(2회) : 2014. 2~3월

o 도시녹지관리원 교육(1회) : 2014. 3월

o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조사 : 2014. 5월

o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2014. 4~10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4. 10월

o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점검 : 2014. 6월, 11월

o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 2014. 5~10월

o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2014. 12월

25. 학교숲 조성·관리

목 표

◇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 주민의 녹샘쉼터 활용 및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

o 학교숲 조성(보조) : 70개교, 2,1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을 위한 학교숲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학교숲이 갖는 환경개선 효과와 이를 활용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

o 학교숲은 생활권 녹지확보를 위한 최적의 공간

- 학교는 생활권에 일정 위치마다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숲 조성을 통해 도시녹색네트워크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나. 기본방향

o 학교의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반영한 유형별 학교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의 확보 및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및 녹색쉼터를 제공

o 학교숲 설계 및 조성시 자연체험 또는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정서함양 도모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토록 조성

o 학교숲 조성사업이 '15년부터 광특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13년도 수준이상의 사업량 확보에 노력

다. 세부추진계획

1) 학교숲 조성사업

o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체계 : 개교당 60백만원(국비 50%), 1년, 지자체 보조

o 학교숲 조성학교 선정기준

-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의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 가능성이 높은 학교
-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숲 조성의지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 위 선정 기준의 부합여부가 비슷할 경우는 학교숲 조성 면적이 0.05ha (500㎡) 이상이거나 행정구역상 읍 이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

  * 기존의 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

【 학교숲 조성학교 선정 체계 】

【단 계】	【주요내용】	【수행주체】
공고 및 접수 (9~10월)	• 각 시·도별 익년도 학교숲 조성사업량 배정·통보 •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1차심사 (9~10월)	•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기초자치단체
⇩		
최종선정 (10~11월)	• 익년도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 - 지역적 균형, 학교구성원의 참여도를 고려 • 최종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 선정된 학교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통보	광역자치단체
⇩		
선정 결과의 홍보 (10~11월)	• 선정된 학교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고	산림청
⇩		
협약체결 (12월)	• 기초자치단체-학교숲 조성학교 간 협약 체결	기초자치단체·학교

o 학교숲 조성 시 고려사항

- 자연성 확보
  -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
  -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 ·개별 수목들의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한 상태로 조성
- 기능성 실현
  - ·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 교육성 강화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학교숲 설계 및 조성
  ·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생태학습, 도시농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
    * 단, 도시농업 체험공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배치

나라꽃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긍지를 나타내는 의미 깊은 꽃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숲 등 친숙한 일상 가까이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무궁화 식재를 확대

o 학교숲 조성의 품질향상을 위해 '학교숲 조성 설계 심의회' 구성·운영
  - 시·도별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숲의 품질향상을 제고
    * 심의회를 통해 학교숲 조성 설계심의 및 현지·점검 실행 고품질 학교숲 조성 기반 마련
  - ('13) 149개교, 4,470백만원 → ('14) 70개교, 2,100백만원

o 학교숲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숲 프로그램 제작·보급
  -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자료(가이드 북, 동영상, 교구 등) 개발

o 학교숲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적 활용도 제고
  - 학교숲 조성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간 조성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강화
  - 학교 교사에 대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등 교육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 제고

o 학교숲 조성시 일률적인 예산지원(개교당 6천만원)보다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학교숲 조성분야, 관리 및 활용분야를 구분하여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추가조성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확대

2) '기업-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참여 학교숲 활성화 및 확대

o 기업(삼성화재·유한킴벌리)참여 학교숲 조성 계획 : ('13) 7개교 → ('14) 9개교

o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확대를 위해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연고 기업 적극적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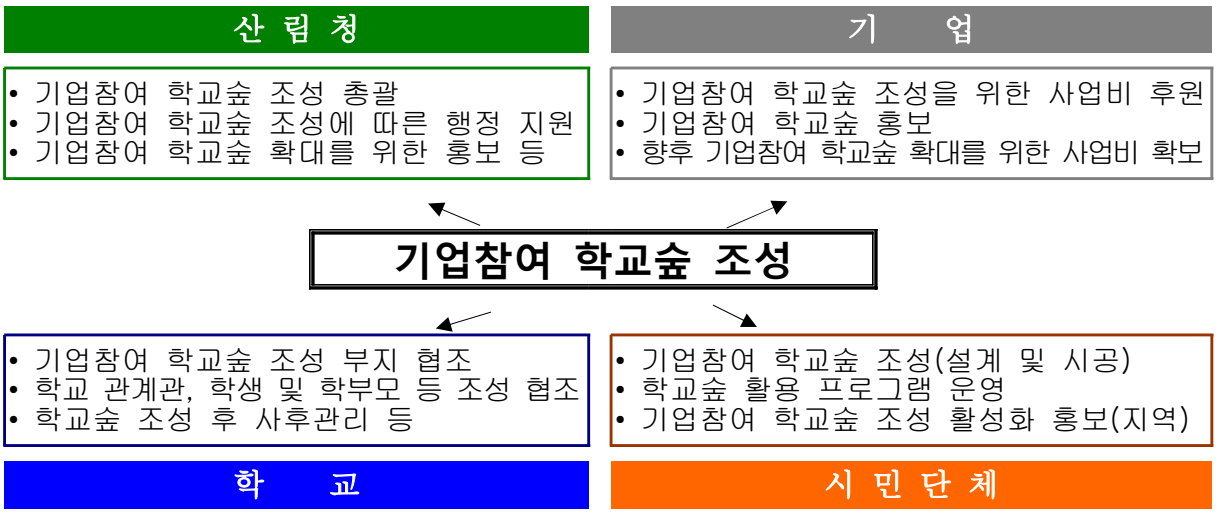

3) 학교숲코디네이터

o 목적 및 운영방향

- 학교숲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수목 식재·관리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산림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녹색일자리 제공

o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0명
- 사업예산 : 700백만원(국비 350백만원/지방비 350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o 주요업무

-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사후 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배치 등 식재계획 수립 컨설팅
  - ·주요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 요령 자문
  -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목 식재·관리 등 현장 기술자문 및 지원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등
  - ·학교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
  - ·학교구성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방법 안내
- 학교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 ·학교숲 설명 및 교육 지원
  - ·학교숲 자원 조사 및 DB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기타 선발권자가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o 추진체계

- 산림청 : 총괄
  - · 학교숲코디네이터 추진지침 수립, 예산확보, 행정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지자체 : 사업추진
  - · 학교숲코디네이터 선발, 지역학교별 수요조사 및 배정, 근로감독 등
  - *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 및 근무일지 기록

라. 추진일정

o 학교숲코디네이터 채용공고 및 선발 : 2013. 12월

o '13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2014. 1월

o 시·도별 '학교숲 조성 설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2014. 1월

o 학교숲코디네이터 채용 결과보고 : 2014. 1. 29.

o 학교숲코디네이터 교육훈련 : 2014. 2. 19~21.

o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 2014. 3~12월

o '14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 : 2014. 5월, 10월

o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 2014. 9월

o '15년도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2014. 9~11월

o 학교숲코디네이터 운영 결과보고 : 2015. 1. 12.

26. 전통마을숲 복원

목 표

◇ 훼손·소멸되고 있는 전통마을숲 복원 및 보전을 통해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산림문화유산을 육성

o 전통마을숲 복원 : 2개소, 25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농·산촌 주민의 고령화 및 건물·도로 등 개발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마을숲의 훼손·단절이 우려

o 전통마을숲은 역사·풍수·사회문화적 이유로 주민들이 조성 또는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온 산림문화유산으로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증가

나. 기본방향

o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변 산림과 연계한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

o 토착신앙, 역사·전설·구전 등 마을숲의 문화자산을 계승하며, 마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속문화 공간으로 조성

o '14년부터 광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광특회계 사업 잔액을 이용하여 사업추진하고 '15년부터는 광특회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

다. 세부추진계획

1) 전통마을숲 복원

o 복원방향

- 전통마을숲의 유래, 역사·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산림문화자산으로 조성
- 전통마을숲이 지닌 경관/풍수, 환경조절, 문화/종교, 휴양/관광, 자연/생태적 특성을 회복하여 특색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

- 마을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산림문화와 역사를 잇고 마을숲을 교육 및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

【 전통마을숲의 기능에 따른 복원방향 】

경관/풍수	• 마을숲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마을숲의 조형미적 기능을 고려 • 풍수적인 비보(裨補)[13], 압승(壓勝)[14], 수구막이[15] 등 전통마을숲 기능 제고
환경조절	• 방풍, 방사, 온도·습도 조절, 그늘 제공 등 마을숲을 통한 미기후 개선·조절 • 수문환경개선을 위해 포장을 최소화하고 토양유실방지 기능을 향상
문화/종교	• 전통놀이, 축제, 제례 등을 위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원형 복원에 주의 • 마을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
휴양/관광	• 휴양·휴식을 위한 공간과 마을숲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 • 생태관광, 체험,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식재 및 공간구성

* 마을숲은 기능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조성방향을 설정

o 사업대상지 선정 체계

- 사업대상지는 서류·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최종 선정(기 사업지원 개소는 대상지에서 제외)
- 선정 방식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최종선정

【단 계】	【주요사항】	【수행주체】
서류접수 (8~9월)	• 16개 시·군·구 별 대상지 선정 제출 → 시·도	기초자치단체
⇩		
서류평가 (9월)	• 마을숲자문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 각 시·도별 신청 개소 중 선정기준을 통해 평가	광역자치단체
⇩		
현장평가 (9월)	• 서류평가 결과 선정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광역자치단체
⇩		
최종선정·통보 (10월)	• 서류·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 선정·통보	광역자치단체 →산림청

13) 비보(裨補) : 풍수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

14) 압승(壓勝) : 풍수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눌러 제압하는 것

15) 수구막이 숲 : 마을의 앞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출구나 지형상 개방되어 있는 마을 앞부분을 은폐하기 위한 숲

o 전통마을숲 주요 선정기준

- 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마을숲 복원여건이 좋은 지역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은 지역
-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

o 2014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지

시·도	명 칭	개 소	면 적 (ha)	사업비 (백만원)
강 원	송계 솔밭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81번지	0.8	50 *지방비
경 남	소석마을 마을숲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089-1번지	1.34	200 *광특예산

* ('13) 6개소, 300백만원 → ('14) 2개소, 250백만원

o 전통마을숲 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숲의 복원방향과 부합되게 복원하며, 마을숲이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인공적 시설물 및 재료의 사용은 지양
-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던 당산제 등 지역 문화축제는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굴하여 그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마을숲의 특성을 살린 산림문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복원
- 마을숲이 이용객 등에 의한 답압으로 인해 수목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목류, 야생화 식재 및 돌담 등을 설치
- 마을숲내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생하는 지역은 활엽수로 인해 침엽수(소나무)가 피압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활엽수 수형 조절

2)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o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사업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보완) 마련 배부

o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전국 전통마을숲 1,346개소(´11년 현황파악) 중 65개소 복원

3)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보완·추가

o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산림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마을숲 현황 추가 정리

라. 추진일정

o 실시 설계 및 사업착수(지자체) : 2014. 1～3월

o 전통마을숲 기본계획 자문회의 개최(지자체) : 2014. 2월

o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배부(산림청) : 2014. 3월

o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중·장기적 계획 수립(산림청) : 2014. 1~6월

o 전통마을숲 복원 추진상황 현장 점검(산림청·지자체) : 2014. 5월

o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보완 및 갱신(산림청·지자체) : 2013. 1～12월

o 2015년도 사업희망 대상지 조사(지자체) : 2014. 8월

o 2015년도 사업대상지 현장 심사 및 최종 선정(지자체) : 2014. 9～10월

o 2014년도 전통마을숲 복원 완료보고(지자체) : 2015. 1. 12.

27.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목 표

◇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 추구와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경관적 측면에서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o 경관의 핵심요소인 산림경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경관법」 제정('07.11),「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09.12) 등

나. 기본방향

o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시각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으로 보전

o 산림경관 유형별로 지역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 모델숲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목　　적 : 경관 수요가 큰 산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o 사업기간 : 2014 ~ 2015년(2년차 계속사업)

o 사업내용 : 산림경관계획 수립,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

o 사업규모 : 1개소, 10억원(총사업비 30억원), 국고 100%

*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시행 : 지방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 포함)

【경관숲】「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o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큰 곳을 선정

공모 절차	사업신청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대상지 선정

o 대상지 선정 원칙 및 기준

- (원칙)산림경관 조망수요가 있거나, 경관수요 창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산림경관 관리와 창출이 필요한 지역
- (기준)대상지의 적합성, 경관숲 조성에 따른 영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o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1~2차 서류 및 현장 평가에 참여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3)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시행

o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절차

추진 절차	산림경관계획 수립	→	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시행	→	관리 및 모니터링

o 산림경관계획 수립

- 산림경관 자원조사, 산림경관의 분석·평가, 산림경관 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산림경관 구획 및 기본구상, 산림경관 세부 실행계획 수립,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o 자문위원회 구성

-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o 사업시행

- 산림사업의 시행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 시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기존 산림사업에 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반영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관리 및 모니터링

-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참고

라. 추진일정

o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공모추진 및 대상지 선정 : 2013. 12월

o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 2014. 1월

o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지 산림경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2014. 1~4월

o 복합 경관숲 조성 시범사업지 시공 및 감리 : 2014. 4~12월

28. 가로수 조성・관리

목 표

◇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창출
◇ 가로수 생육관리 강화로 건전성 제고 및 민원해결
o 가로수 신규 조성 : 382㎞, 15,260백만원
o 명품가로숲길 조성 : 181㎞, 4,354백만원

가. 정책여건

o 가로수에 대한 국민 수요 변화에 대응한 가로수 조성 다양화
o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문화·예술·관광자원 기능 강조
o 녹색 네트워크의 핵심요소로 도시경관 및 도시생태의 중심역할 부상

나. 기본방향

o 가로수 조성・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o 가로수 생육관리 강화로 건전성 제고 등 녹색네트워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가로수 조성

o 도시림 기본계획(변경)과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성
o 주변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으로 탄력적 가로환경 확보
- (대로변) 큰키나무 식재 : 쾌적한 교통환경 및 녹음제공
- (상가 및 좁은지역) 작은키나무 및 초본류 식재 : 간판가림 등 민원 해소
  * 초본류는 국내 자생 야생화를 우선 선정하고, 가로수 수목보호대 면적의 20%이상 식재함(「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반영 시행, '14.1.1)
o 특이 수종 선정 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지침 따른 체계적 조성
- (소나무)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
- (무궁화)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2) 명품 가로숲길 조성

o 지역별 요소를 고려한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으로 지역명소화

o 사업내용

- 가로숲길 신규 조성 : 합리적인 수종 선정
  * 역사·문화・향토수종・주민요구 반영
- 특색있는 수형 관리 : 수종별 생리, 특징을 살리는 수형모델 적용
  *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지치기 및 수형관리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 토양개량, 관수 등 가로수 생육기반을 개량
  * 토양오염, 답압, 지하구조물 등을 고려한 지하부 생육환경 개선
- 가로수 건강성 증진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 치유 가로숲길 조성 : 도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거리(2개소)
  * 피톤치드 함양이 높은 수종 식재, 편안한 디자인 설계 등(대구, 전남)
- 차 없는 가로숲길, 지역축제와 연계한 가로숲길 조성(2개소)
  * 지역 랜드마크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강원, 전남)

3)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o 가로수의 정상적 생육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 제공

- 토양 양분부족, 협소한 생육공간 및 답압된 토양 등
  ⇒ 토양개량, 유공관 및 수목보호시설 설치, 가지치기 조절

o 유형별 가로수 피해 예방관리방안 마련

- 병충해 조기발견, 재해대비 수종선정 및 관리, 보호시설 설치 등
  ⇒ 병해충 식별요령 홍보, 짚으로 만든 보호막,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4) 특색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o 특색있는 수형관리로 지역의 랜드마크화

- (가지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 실행
- (특별수종) 소나무, 무궁화 등 가로수관리 지침을 활용한 관리

o 아름다운 가로수관리로 도시경관 향상 및 상가간판 가림 등 민원해소

o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2010.4)에 따른 체계적인 수형관리

5)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체계화

o 도로 및 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 관리 모델 개발

-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의 유형별 세분화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반영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추진(1월)
- 유형별 모델 개발 및 보급 교육 실시(5월)

o 주민 참여형 가로수 조성·관리 체계 구축

- (가로수조성관리 위원회) 수종 선정 및 식재방법 결정
- (그린오너제) 병해충 점검, 비료주기, 물주기, 열매 및 낙엽 채취관리
- (수목정보공유) 가로수 수종, 특성 등 정보공유방안 마련
  * 봉사활동시간 인정 및 기념증 수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구축

o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한전선로 주변) 한국전기공사-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및 관리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시 가로수 조성 공간 협력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앙분리대, 원형교차로 가로수 식재 협조

o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철저

-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2011.7) 및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준수

o 가로수에 설치하는 장식전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철저

- (설치시기) 12월부터 설치 * 수목 휴면기를 고려한 설치
- (철거시기) 상록침엽수는 일 최저기온이 영상이 되기 전인 2월말까지, 낙엽활엽수는 3~4월 중 꽃이 피기 전 또는 잎이 나기 전에 철거
- (유의사항) 철거 시, 전깃줄이나 철사줄 등 설치물 완전히 제거

o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지장물 제거 및 조절

- 수목 분뜨기에 활용된 고무바, 철사 등은 제거
- 수목 비대생장을 고려한 지주목 및 수목보호시설 규격 조절

o 가로수관련 민원관리 대책으로 사전 예방

- (열매 중금속 검사) 중금속 오염으로 식용이 불가한 경우, 일괄채취 폐기
  * 주민 건강을 위한 식용 부적합 푯말 설치
- (열매냄새 및 낙엽) 일괄 채취 및 수거, 불법채취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
  * 열매 및 낙엽수거에 대한 보상제도 시범추진(시도별 1개소) 및 경관을 고려한 효율적 낙과수거장치 관련 연구용역 추진

- (수나무 식재)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식재 계획 수립
  * 은행나무 성(性)감별법(국립산림과학원, 2011)

6) 가로수 조성・관리의 내실화

o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
  - (전문인 양성) 가로수 기술자 교육과정 운영(연 2회, 100명, 산림교육원)

o 가로수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 가로수 조성·관리의 체계 확립을 위한 도로법상 법령 개정 협의

라. 추진일정

o 가로수 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14. 1월

o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13년말) 보고 : 2014. 2월

o 가로수 기술자 교육과정 운영 : 2014. 2월

o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 대상지 현황 제출 : 2014. 2월
  - 치유가로숲길(대구, 전남)
  - 차없는 가로숲길, 지역축제와 연계한 가로숲길(강원, 전남)

o 효율적 낙과수거장치 관련 연구 용역 추진 : 2014. 3~11월

o 명품가로숲길 조성예정지 확인 : 2014. 3월

o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보급 교육 : 2014. 5월

o 사업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시・도) : 상·하반기

o 가로수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시・도) : 2014. 12월

o 관련 부처간 가로수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29.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

목 표

◇ 생활권 주변의 무궁화 지속 확대 및 문화운동의 내실화
◇ 무궁화 법제화를 통한 보급 확대 기반 추진
o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0개소, 500백만원
o 무궁화 문화행사 : 심포지엄(6월), 전국축제(8월) 등

가. 정책여건

o 언론매체 등을 통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o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및 참여 증가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주변 무궁화 확대 보급 및 관리 강화

o 나라꽃 무궁화의 교육 강화 및 문화행사 내실화

o 무궁화 법제화를 통한 무궁화 확대보급 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주변 무궁화 볼거리 명소 조성

o 무궁화동산 신규 조성 및 기존 조성지 관리

- 무궁화 식재 희망 학교 무궁화 묘목 무상 공급
  · 지원규모 : 51개소, 25천본(학교 500본) *('14~'17) 10만 2천본 공급
  * 산림청-교육부-홍천군간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
  · ('13년까지) 51개소 → ('14년까지) 61개소
  ⇒ 국민들의 관심유도 및 무궁화의 이미지 개선
- 기존 무궁화 조성지의 가지치기, 시비, 제초 등 집중 관리 실시
  *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지침』에 따른 무궁화 조성 및 사후관리 철저

- 2014년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
  ·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0개소, 500백만원
  · 무궁화 관리사업 : 20개소, 100백만원
  * 고속도로 IC주변 등 무궁화 조성사업(국유지) : 100백만원(별도 추진)

o 무궁화 중심·거점도시 기반 조성
- (특화도시) 무궁화 볼거리 제공 및 무궁화 확대 보급 거점지역으로 활용
  · 무궁화 수목원, 박물관, 테마공원 등 관련 시설 종합 조성
  * 중심도시(강원 홍촌), 거점도시(충남 보령, 전북 완주)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	'14	'15
계	22,300	900	3,340	2,500	6,260	5,900	1,000	2,400
홍천	7,900	900	1,000	700	1,000	900	1,000	2,400
보령	10,800	-	340	600	4,860	5,000	-	-
완주	3,600	-	2,000	1,200	400	-	-	-

2) 나라꽃 무궁화의 교육 강화 및 문화행사 내실화

o 무궁화관리 실무담당자 교육 실시(200명)
- 목적 : 체계적인 무궁화 관리를 위한 집합 교육(2일)
- 일시 : 2월 중순(가지치기 실습)
- 장소 : 산림교육원(실습장소 : 남양주 진관IC 무궁화 동산)

o 교과서 내 무궁화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 목적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꽃에 대한 인식 제고
- 기간 : 2월~9월
- 내용 : 무궁화 교육 대상·내용 선정 및 보급 추진

o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중앙행사 별도 추진
- 목적 :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 확대
- 일시 : 2014년 8월 초·중순 (광복절 기념)
- 장소 : 지자체 4~5개소
- 추진방침 : 민간단체·지자체 주관(계획수립, 집행), 산림청 주최
  * 체험, 전시, 이벤트 행사 등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

o 무궁화 전시회 개최와 지원 확대

- 무궁화 관련 사진, 그림, 설치미술, 공연 등 개최 및 지원
- 관공서, 주요 광장 등에 무궁화분화 전시회 개최

o 연중 지속적인 무궁화 문화행사 확대 추진

- 어린이와 함께하는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및 조림행사(4월), 무궁화 심포지엄(6월),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6~9월), 무궁화 전국축제(7~8월),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 교육(7~9월) 실시 등

o 나라꽃 무궁화 실태조사 실시 기반 조성

- 무궁화 식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실태조사 실시 지침(안)」마련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무궁화 식재현황 DB 구축('14~'17)
  * 무궁화 특화도시(홍천・완주・보령) 우선 시범 실시(생육현황, 좌표값 등)

o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꽃임을 알리는 세계화 사업 구축

- (해외 무궁화 동산) 관공서, 무궁화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 2013년 조성 및 관리사업 교류 추진(우루과이, 일본 등)

3) 무궁화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o 무궁화 식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무궁화 묘목 무상지원 확대체계 구축

- 산림청, 교육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MOU 체결)

<무궁화 확대보급 사업계획(안)>

- 사 업 량 : 204개교, 102천본
  * 17개시도 * 3개교/시도 * 500본/개교 * 4개년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내 화단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무궁화 동산조성용 묘목지원
  * (산림청)묘목지원, (시군)조림지도, (학교)조림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 2014~2017년(4년간)
  * 도시림 기본계획기간(2013~2017) 적용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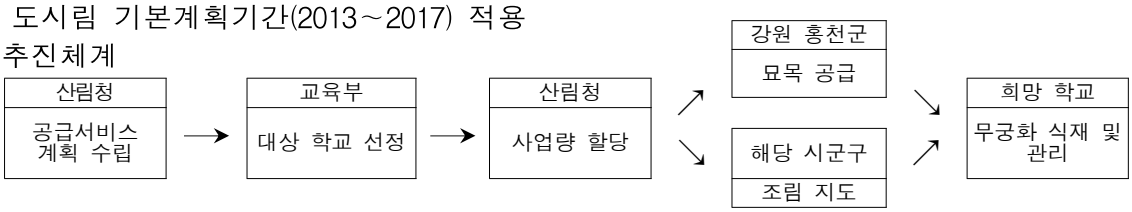

o 무궁화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

- (무궁화동산・꽃길 조성) 민간단체 및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①기부채납하거나 ②비용 부담 또는 ③직접 조성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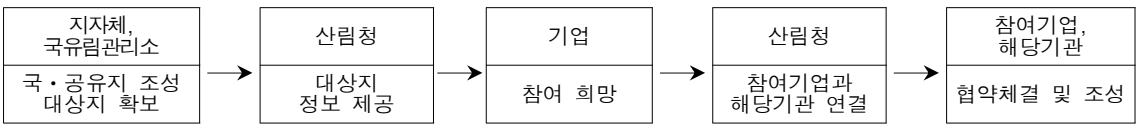

- (선양 활동) 민간단체 및 기업이 무궁화 축제, 무궁화 묘목나눠주기 등 선양활동에 참가 및 소요경비 부담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	→	기업	→	산림청	→	참여기업, 해당기관
연간 선양활동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정보 제공		참여 희망		참여기업과 해당기관 연결		협약체결 및 선양활동

4) 무궁화 확대 보급을 위한 무궁화 법제화 추진

o 무궁화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예산 확보 기반 미비

- 생활권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 무궁화 관련 5개 조문 신설 및 의원입법 추진

※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식재・관리, 민간단체 지원 내용 포함

5) '14년 무궁화 확대 보급 및 선양 유공자 포상

o 나라꽃 무궁화 선양 유공자 포상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 무궁화 선양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등 포상

라. 추진일정

o 무궁화 묘목 무상지원 협약 체결 : 2014. 1월

o 교과서 내 무궁화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 2014. 1～10월

o 무궁화 관리 실무자 교육 실시 : 2014. 2월

o 어린이와 함께하는 무궁화 나눠주기 및 조림행사 : 2014. 4월

o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책자배부 : 2014. 3월

o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사업 지도・점검 : 상・하반기

o 무궁화 심포지엄 개최 : 2014. 6월

o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문학상, 콘텐츠) 및 시상 : 2014. 6～10월

o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2014. 8월

o '15년도 무궁화 관련 사업 공모 : 2014. 10～12월

o '14년도 무궁화 조성・관리사업 실적보고 : 2014. 12월

o 무궁화 법제화 추진 : 연중

o 무궁화 식재현황 DB 구축('14～'17) : 연중

산림이용국 소관

1. 산림복지 정착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목 표

◇ 산림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및 후속조치 이행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완료

가. 정책여건

o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은 산림률(64%)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 차원의 활용 요구 증가 추세

o 반면, 산림복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가 없어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 관련 법령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

o 기존의 자연휴양림 등 단기체류형 휴양모델이 아닌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모델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o 현재 추진 중인「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이행

- 산림문화·휴양, 교육, 치유 등을 포괄하는 산림복지 개념 정립
- 산림복지를 위한 체류공간 조성 및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o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마련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텐츠 발굴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o 산림복지 개념 정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산림복지 관련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완료

- 그간 추진경과 : 대표발의(황영철 의원, '13.5.29), 입법공청회 개최('13.6.17), 관계부처 등 의견조회 및 협의('13.7~9)

o 부처별 쟁점사항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심사에 철저히 대응하여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법적근거 조속히 구축

2)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이행

o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 산림복지단지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요건,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 조사방법, 산림복지진흥부담금의 징수, 산림복지단지의 인증, 산림복지서비스의 평가, 산림복지공단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등

o 한국산림복지공단 설립

- 기존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한국산림복지공단으로 전환
- 한국산림복지공단 설립위원회 설치(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운영

3) 산림복지단지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o 산림복지단지 표준모델 마련 및 현장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산림복지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연도별 시범사업 일정 마련

o 지차체, 민간(공익법인 및 일반기업)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대상자의 산림복지단지 시범사업시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텐츠 발굴

o 산림복지단지 유형별·수요계층별 프로그램 발굴

o 기존 산림휴양·문화, 산림교육 및 치유시설과 차별화되는 산림복지 서비스 컨텐츠 기반 구축

라. 추진일정

o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특별법 제정(안) 전체회의 상정 : 2014. 2월
- 법안 심사 및 제정완료 : 2014. 상반기

o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 2014. 하반기

o 산림복지단지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개소 확정 : 2014. 하반기

2. 합리적 산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목 표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산지관리 제도개선
◇ 제도개선 완료 과제의 현장정착을 통한 효과 극대화

가. 정책여건

o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은 10,118ha로 '09년 이후 경기침체 영향과 그간 지속적인 산지개발 수요의 해소 등으로 안정적 감소추세 진입

- 산지전용 면적(ha) : ('09) 15,877 → ('10) 11,851 → ('11) 8,026 → ('12) 7,753

o 다만, 범정부적으로 민간 투자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 관리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역시 증가 추세

나. 기본방향

o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산지는 해당 입지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

o 효율적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의견수렴 체계 구축

o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현장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지의 이용 등과 관련한 주요 민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

o 국민신문고 등 민원내용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반영

o 자주 질의되는 민원에 대하여 Q&A를 통한 민원해소

- 산지이용과 관련한 Q&A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 게시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해소

2)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o '13년 산지관리 제도개선 공모제'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추진

o 기획재정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검토 반영

- 법령해석 및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 권고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 부담금 통합징수 방안과 연계한 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추진

3) 타부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협조체제 강화

o 산지이용에 관하여 타부처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법령개정 추진

-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제적인 제도개선 실시

o 「산지관리법」과 관련한 타부처 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타법률의 제·개정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4)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및 현장 점검

o 산지이용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교육 실시(연 2회)

- 산지관리자반 교육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교육

o 산지관리 워크숍을 통한 산지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공유

라. 추진일정

o 타부처 및 지자체 제도개선 수요조사 : 2014. 2월중

o 지자체·타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14. 4월중

o 산지관리워크숍 개최 : 2014. 6월중

o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14. 하반기중

3. 정부3.0 등 정책수요를 반영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목 표

◇ 산지관리계획에 기반한 계획적·전략적 산지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산지관리제도 관련 연구 및 산지 전문가 네트워크화 구축
◇ 정부 3.0에 부합하는 효율적 산지관리정보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정부3.0은 국정운영 전반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적용·확산하여 정책·사업·일하는 방식과 의식·문화·서비스 등을 대폭 바꾸어 가는 새로운 국민 중심의 서비스 등을 혁신할 필요

o 전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체계(기본-지역계획) 수립·시행으로 합리적·계획적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나. 기본방향

o 「산지관리기본·지역계획」에 따라 획일적 산지관리체계가 아닌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지역적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구축

o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위주의 기능개선으로 편의·접근성을 개선하고 내부 업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지관리기본-지역계획」에 따라 합리적·전략적 산지관리체계 실현

o 획일적 산지관리체계가 아닌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구축

- 산지관리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추진

o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산줄기연결망 공간 DB 구축’으로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통합적 산줄기연결망’관련 정책 마련

- 백두대간축 이외 정맥·기맥·지맥과「산지관리법령」상의 보전산지와의 법적·논리적 연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선점

o 산지관리계획의 핵심인 ‘산지경관 관리’ 및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각 2년차 심화연구('13~'15)실시

- ('14년) 산지경관 관리 및 경관영향조사 체계 구축 방법론 개발
- ('14년) 백두대간-민북지역-보전산지의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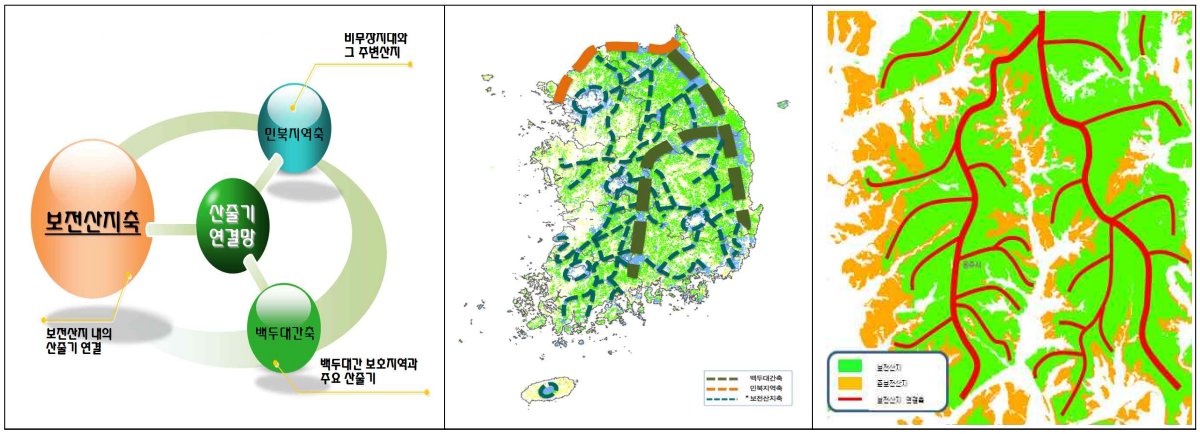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개념도　　공주시 인근' 보전산지축 발췌한 산지구분도

o '13년부터 3년간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로 연구 추진

* 산림정책·산림생태·산림지리정보 등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으로 상시적 의견 수렴

2)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현실화를 위한 실증 연구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방법론 모델은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추가 연구('12~'15)를 한 후, 법령에 기반한 제도화('16~) 추진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 보고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 의견수렴 및 반영

3) 「산지山地포럼」 발족으로 산지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o 국내·외 정기심포지엄 및 학술 등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각 연 2회 개최

o '14년 비영리단체 법인화 추진

4) 정부3.0 이행을 위한 국민맞춤형 산지관리정보체계 추진

o 정부 3.0시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 전자태그,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시범적으로 실시

- 평면도 위주의 현행 산지정보시스템에 항공영상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형, 지적과 항공영상지도 등 종합적인 산지관련 정보 제공

o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산지구분 조정에 필수적인 지역·지구 변동사항 등 유관 DB모니터링 및 산지정보시스템 지원 고객지원센터 전담 운용(☎1588-3493)

o 산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산지정보시스템 활용과정을 운영하여 현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3기 → 4기 확대)

o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지역 등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 내역 등을 산지이용정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개선 최적화

5)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관리 추진

o 「산지관리법」 개정('12.8)으로 산지보전협회로 산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관리 위탁규정 마련

-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간 위탁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 추진

  * '06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그간 (주)SK C&C에 위탁·관리하였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12.5)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유지·관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라. 추진일정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용역 추진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3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2014. 5월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산줄기연결망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2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2014. 7월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산지山地포럼」 개최

- 「산지山地포럼」 세미나 개최 : 2014. 상반기
- 「산지山地포럼」 정기 심포지엄 개최 (국내・국외) : 2014. 하반기

o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관리 추진 : 2014. 3월

o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용교육 실시 : 2014. 4월, 6월, 9월, 11월

o 산지관리정보체계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 연중

4.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

목 표

◇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관한 계획적, 생태적 보전 관리
◇ 민북지역 산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제도정착

가. 정책여건

o 민북지역은 지난 50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

-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

o 통일부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DMZ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어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의 자연친화적・생태적인 개발 유도 필요

- DMZ평화공원(통일부),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등

o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조직·인력 등의 정착기반 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o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산지관리 체계 구축

- 민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지관리의 정책목표・방향 정립 등

o 민북지역 산지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o 민북지역 특별법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수립

o 추진근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o 계획기간 : 제1차 종합계획 2014. 12. 31까지 수립(계획기간 2015~2019)

o 대상기관 : 3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및 2개 지방산림청(북부, 동부)

o 추진방침

- 민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지관리의 정책목표・이용방향을 정하여 향후 생태적 산지전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수립

2)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o「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점검・교육 전담

o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구성(안) 마련 : '14. 2~3월

-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연계방안 마련 및 역할 정립

o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설립 및 운영 : '14. 6월 ~

- 민북지역산지관리단 법인 설립
-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이용을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감시 등

* 민북지역 산지관리단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억원 반영('14)

3) 민북지역 특별법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o 민북지역 특별법 법령의 현실적용성에 대한 모니터링 : '14. 2~3월

- 지자체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

o 민북지역 특별법의 법령 및 제도개선안 마련 : '14. 4~5월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 조사,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안 마련

o 민북지역 특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14. 12월

라. 추진일정

o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 2014. 12월

o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설립 : 2014. 상반기

o「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공포 : 2014. 12월

5.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리 강화

목 표

◇ 안정적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등 토석채취 허가기준 강화
◇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기 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가. 정책여건

o 토석산업은 건설공사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토석채취 현장에는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환경피해에 극히 취약

o 토석자원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o 산지전용 후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토석자원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

o 자연친화적 채광·채석을 위한 관계자·공무원에 대한「산지관리법」및 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토석채취가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o 토석산업현장의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에 관한 입지 유형별 적용모델 개발 및 지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사업장 안전 확보

o 산지훼손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지도점검을 통해 적기 복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o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o 석재채취·가공단지 조성,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석재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주도적인 진흥정책 추진

2)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o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 8회 실시

o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순회 교육 실시

3) 토석산업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 표준모델 개발

o 토석사업장에 대한 환경피해 및 재해취약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장 입지 및 지질 등의 유형별로 환경피해 저감 및 재해예방 표준모델 개발

o 표준모델 개발 후 '18년까지 전국 800여개 토석사업장에 대한 환경피해 저감 및 재해예방 체계 구축

4)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지 실태점검

o 채석단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13년말 채석단지 지정된 17개소에 대해 사업계획서, 심의조건 이행 여부 등 점검

o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도별 자체 조사 및 합동조사 실시(6~10월)

5)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산지전용·채광지·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이행 실태 점검('14년도 상반기)

- 도별 자체 조사 및 공동조사(도별 3개소 이상) 실시

o 불법전용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조사 실시

- ('13) 대전·세종시, 충남, 전북 조사 → ('14) 2개 시·도 조사

라. 추진일정

o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추진 : 2014. 상반기

o 도별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 연중

o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2014. 5월

o 채석단지·토석채취허가지 실태점검 및 복구이행상황 점검 : 연중

6. 국유림의 역할 및 국유림경영 정책 강화

목 표

◇ 국유림의 역할 재정립 및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강화
◇ 체계적인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o 산림조사 153천ha · 경영계획 작성 153천ha(사업비 1,762백만원)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 · 국유림의 기능강화 등 역할 재정립 필요성 대두

o 공 ·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계획적인 국유림 경영 · 관리 필요

o 지자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유림 이용 수요 증가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 개선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 조성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유림의 생태적 · 경제적 · 사회적 수요 충족과 현장여건에 부합한 경영계획 수립

o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반영된 국유림의 거버넌스 구축

o 국유림의 위치적 특성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파트너십 강화

o 국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유림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유림정책 추진 및 지자체와 협력강화

o 국유림의 역할 재정립 및 경영정책 강화로 공 · 사유림 선도적 사업수행

o 지자체의 관심사업 지원 등 협력방안 추진

o 지자체 · 산주 ·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특수성과 국유림 행정을 접목시킨 정책 추진

2) 국유림 종합계획과 연계된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o '14년도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계획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산림조사 (개소)	**14개소**	3개소 (화천, 서석, 화성)	1개소 (주문진)	3개소 (청송, 칠곡, 창원)	3개소 (괴산, 청원, 서산)	4개소 (순창, 완주, 해남, 순천)
경영계획 (개소)	**11개소**	2개소 (청평, 원주)	3개소 (진부, 사북, 교가)	1개소 (춘양)	3개소 (음성, 옥천, 제천)	2개소 (부안, 남원)

o 산림조사는 직영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로 구분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o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제5차 지역산림계획(변경), 제1차 국유림종합계획(변경)과 연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o 국립공원지역이 포함되는 경영계획구에 대해서는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

o 산림조사 전문기관 및 용역업체 등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기술사협회, 산림사업법인 등

o 현장여건에 적합한 산림조사를 위해 표준지 조사 방법(원형, 정방형), 직영 및 용역 단가 등 개선 추진

가)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

o 사업량

(단위 : ha)

구 분	계	%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계	152,718	100	53,251	14,869	25,843	16,859	41,896
직 영	68,718	45.0	24,321	6,637	11,535	7,525	18,700
위탁(용역)	84,000	55.0	28,930	8,232	14,308	9,334	23,196

o 산림조사 일반

- 직영조사 및 위탁(용역)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조사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기 착수로 동절기 이전에 조사 완료

- 산림조사시 산림입지도, 적지적수도, 항공사진, 산림토양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
- 모바일 야장을 통한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o 직영 산림조사
- 조사반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 추진
- 가급적 비녹음기에 산림조사를 추진하고 녹음기에는 전산 내용입력 등 내업 실시

o 용역 산림조사
- 세부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초 산림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밀한 조사를 위해 항공사진, 적지적수도, 산림기능평가도, 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국유림종합계획서 등 지원

o '15년도 산림조사 사업계획량 조사·보고
- 계획기간 만료 경영계획구, 신규매수지, 사권설정지 해제, 권리보전, 교환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15년도 산림조사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o 사업량

(단위 : ha)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면 적	152,863	18,140	68,135	18,914	21,456	26,218
계획구수	11	2	3	1	3	2

o 국유림경영계획 일반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계획 작성
-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자와 부합되도록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영계획서 작성
-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참고자료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
- 산림조사 요령, 평가분야 및 여건변화에 따른 내용 등

다)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o '14년도 평가대상 경영계획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연간 평가	103	27	18	21	18	19
중간 평가	7	2 (춘천, 양평)	2 (대화, 호산)	1 (울진)	2 (부여, 대전)	-
최종 평가	11	2개소 (청평, 원주)	3개소 (진부, 사북, 교가)	1개소 (춘양)	3개소 (음성, 옥천, 제천)	2개소 (부안, 남원)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중간・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o 각 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한 경영계획구의 운영 상황 및 성과분석 결과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공유

o 평가 및 분석결과는 다음연도 또는 차기계획에 반영

- 미래지향적인 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제시, 각종 사업계획 등 변경

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o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등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행
- 산림자원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직 연계되지 않은 소득・임도・사방분야 등에 대해서는 빠지는 사항 없이 입력

o 개정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경영계획 수립/변경 등 추진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2차 고도화 추진

- 국유림경영DB 및 임・소반도 현행화, 경영평가 방안 마련 등
- 지방청에 배치되는 DB 현행화 전문인력(용역)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실시

o e-푸른샘(산림청지식포탈시스템)의 '행정정보시스템-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o 각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별로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책임관리제(반드시 팀장급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

o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경영계획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사업담당자도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도록 운영

<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주요 변경 내용 >

o 국유림관리소 업무분장에 시범경영계획구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내용 포함(안 제4조)
o 산림조사 자료의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록 사항 추가(안 제6조)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사업실행상황 등록 사항 추가(안 제11조제1항)
o 중간평가 내용을 지방산림청장이 중간점검하는 내용 포함(안 제12조)
o 국유림경영계획 승인 요청시 시스템을 통해 도면 첨부(안 제13조제1항)
- 위치도 등 4개 주제도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첨부
o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15조)
- 작업방법이 유사한 큰나무가꾸기의 솎아베기(무육),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및 임목생산의 솎아베기(수익) 사업간 사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승인 없이 사업 실시
- 임·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의 경우는 경영계획 변경
- 임·소반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임・소반도 첨부
-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승인

< 국유림경영업무(경영분석・평가) 고도화(2차) 추진 내용 >

o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국유림경영계획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국유림경영평가체계 개선과 연간계획제도 정비, 산림통계연계방안 도출 등 공・사유림경영계획 제도의 포괄적 수용을 위한 BPR 추진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영계획체계 구축 기반 마련

o 관리소 직원의 업무 부담감이 최소화 되도록 경영분석 및 평가기능 구축
- 분석체계개선을 반영해 실시간 분석기능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기능을 구축
- 경영업무담당자의 평가준비업무 및 평가프로세스를 온라인화
-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국유림경영 개선을 추진

o 국유림경영DB 현행화 및 공간정보 기반 보완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 41개 경영계획구에 대한 경영정보DB 보완 및 임소반도 시범정비 사업 추진
- 자료 현행화 미비로 인한 시스템 사용률 저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마련 및 서비스 구축

o 산림조사 지원체계의 고도화
- 사업이력정보, 임소반도 등 스마트야장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산림조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조사 품질 향상
- 산림자원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마) 지방산림청·관리소 등의 관리자가 해야 할 사항

o 계획수립 및 운영 중인 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부 자료 입력 및 보완

- 산림조사부, 경영계획서, 갱신대장, 조림 및 사후관리 대장, 임·소반 수치도면 등에 대한 수정·보완 실시
- '13년도 산림조사결과 및 '14년도 경영계획 작성 자료 입력

o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연간·중간·최종평가 실시

- 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경영계획 성과를 평가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지방청 자체 사용자 교육 실시로 시스템 활성화 도모

3) 시범경영계획구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계획 선도적 역할 수행

o「시범경영계획구 운영관리 규정」,「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충분히 이해 한 후 사업추진

- 시범구(6개) : 북부 홍천(가리산), 동부 평창(가리왕산·봉평), 남부 영주(장군봉), 중부 보은(샘봉산), 서부 무주(민주지산)

o 시범경영계획구 운영시 새로운 산림경영·관리기술 개발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적 운영 추진은 가능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참조

o 시범경영계획구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은 경영전문관이 수행

4) 산림경영대행제도 활성화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대상지 발굴 및 실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o 타부처 국유림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 부처별 국유림현황 : 103,831ha
  - ·국방부 63,652ha, 교육과학기술부 29,928ha, 기획재정부 7,211ha 등
- 각 부처 경영대행 요청지에 대한 경영대행 가능여부 조사 결과 1,026ha 산림경영대행 가능
  - ·국방부 795ha, 국가보훈처 176ha, 국토교통부 55ha 등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적극 추진

-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에 대한 산림경영대행 적극 추진
- 산림사업 기정 예산(숲가꾸기 사업비 등) 최대한 활용 협의 추진

5) 지역사회와의 산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o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위해 추진

o 공동산림사업 추진 현황(34건 825ha)

- 산림생태복원 3건(115ha), 산림소득개발 11건(465ha), 산림휴양 12건(104ha), 도시림 4건(49ha), 생태숲 2건(73ha), 산림기반연구 2건(19ha)

o 공동산림사업 실태 점검 실시

- 사업 대상지 계약 대상·면적·기간, 직접 수행, 사업수행 지속 가능 여부 등 사업지 운영실태 점검
- 공동산림사업 관리책임자 지정,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청 관리실태 점검

6) 국유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 개최

o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유림경영방향 공감대 형성

o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산림소득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강구

o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성공사례 발표 및 문제점 제시와 지방산림청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 강구

7)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o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청별 가능한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의 개최

o 구성위원은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등을 다양하게 위촉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o 위원회 소집,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국유림사업 등을 자문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의 구애 없이 주요사안(재산처분 등)이 있을시 포함하여 개최·심의 추진

o 지방산림청별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비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라. 추진일정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사업계획 수립 : 2014. 상반기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평가(국유림관리소), 중간・최종평가(지방산림청) 실행 및 반영 : 2014. 4분기

o 정책강화를 위한 국유림관리소장 현장토론회 개최 : 2014. 하반기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추진 : 연중

o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 매 분기별 1회 이상

< 보고사항(지방산림청 → 산림청) >

o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수시보고

o '15년도 산림조사(경영계획구별) 계획량 보고 : 2014. 1월

o '13년도 경영대행 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4. 1월

o '13년도 공동산림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운영 실적 보고 : 2014. 2월

o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완료보고 : 2014. 12월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보고(총괄) 보고(경영정보시스템) : 2015. 1월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중간・최종 평가결과 보고 : 2015. 1월

7.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목 표

◇ '30년까지 국유림률 32% 달성을 위한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o '14년 사유림 매수 7,104ha(사업비 58,679백만원)
◇ 비예산 국유림 확대로 산림휴양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
o 사유림 매수 외 교환, 타부처 국유림 사용승인, 보존등기 등
◇ 보존부적합 재산의 교환 매각을 통한 정리 및 국유림 확대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국유림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o 공유림 등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국가 산림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휴양·치유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대두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제한림 등의 매수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가 동시에 필요

o 국유림 확대재원(세입 증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교환, 타부처 국유림 사용승인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비예산 국유림 확대가 절실

나. 기본방향

o 국유림 분포율이 낮은 지역에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 매수하되, 거점지역 확보 보다는 지역별로 국유림이 고루 분포되도록 추진

o 산림으로 환원할 수 없고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은 경영 가능한 사유림 등과 교환취득으로 처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제고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공유림 등과 교환하여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국유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각 추진

o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

o 관리되고 있지 않은 DMZ지역 산림 등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사용승인, 기부채납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직영임지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수

가)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계		산림경영임지		치유숲 및 곶자왈보전림		소양강 탁수저감		백두대간		광릉숲 완충지역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계	7,104.25	57,649	6,945	45,140	144	9,720	10	1,500	5	500	0.25	789
북부청	210	3,300	200	1,800	-	-	10	1,500	-	-	-	-
동부청	303	1,830	300	1,530	-	-	-	-	3	300	-	-
남부청	1,710	9,063	1,710	9,063	-	-	-	-	-	-	-	-
중부청	1,751	15,500	1,750	15,400	-	-	-	-	1	100	-	-
서부청	3,080	22,167	2,985	17,347	94	4,720	-	-	1	100	-	-
수목원	0.25	789	-	-	-	-	-	-	-	-	0.25	789
제 주	50	5,000	-	-	50	5,000	-	-	-	-	-	-

→ 본 예산은 부대비(입목조사, 감정수수료 등)가 제외된 순수 토지매입비(목:410)임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추진
  - (계획) 9,028ha, 500만원/ha ⇒ (조정) 6,945ha, 650만원/ha

* 치유숲은 서부지방산림청(94ha), 곶자왈보전림은 제주특별자치도(50ha) 사업량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o 국유림 분포율이 높은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된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포율이 낮은 지역은 산림경영에 유리한 사유림을 우선 매수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공유림 등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과 분산 소규모 또는 기존 국유림과 원거리로 이격된 재산과 또는 재산가격이 고가인 재산은 매수 지양

o 매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초에는 당해 연도의 목표 물량, 하반기에는 다음 해의 목표 물량 확보
- 매도 승낙된 공유림 등에 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수 추진
- '14년 하반기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모든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니 정보를 정확히 입력

o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티커, 광고 전광판 등 모든 홍보수단과 방법으로 연중 활용(특히, 지역 CATV, 교차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

o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수 절차와 감정평가 자료 제공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행위를 공개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 등 엄격 심사
- 감정평가법인에 자료제공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수준으로 공개

o 매수대상지내 입목조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가격이 재산가격 결정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목조사 실시

- 매수대상지가 30ha 이상인 경우는「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림조합중앙회, 법인, 기술사사무소, 산림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의뢰하여 조사

②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o 기관별 국유림 분포율과 신청된 물량 및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하되, ha당 단가는 집행기관별 차등하여 추진

-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가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 계획량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o 국가 경영임지는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경영·관리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

o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며 국유림관리소별 계획대비 25%범위 내에서 매수 추진하되, 기관별 연간 매수계획 물량 확보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o 산림경영임지에 게재·연접된 토지(전·답 등)는 현실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로는 매수를 엄격히 금지함. 다만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거나 현황 임야인 경우에는 현황대로 감정하기로 한 후 매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ha당 매수 단가를 고려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매수 가능

③ 제주 곶자왈보전림

o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매수 추진

- 조천(선흘)·한경곶자왈 지역 위주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 추진
- 공유지분의 산림(토지 포함)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매도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

④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o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o 대상지 선정시에는 실제 토사유출방지 효과가 큰 곳을 위주로 매수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높임

⑤ 백두대간 지역 등의 산림(토지 포함)

o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청구한 사유 토지 등을 우선 매수

o 기타 일반 산림은 산림경영임지 예산으로 매수

⑥ 사유림매수 사업 민간위탁

o 사유림 매수 사업량 일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추진(토지매입비 60억원)

- 지방산림청 실정에 맞게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산림청의 직접 매수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산림소유자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가 매수할 대상지역의 범위를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지정하거나 지역 산림조합원의 소유 산림을 위주로 추진하되, 계획물량의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o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지방산림청장이 사유림매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매도승낙서 접수, 현지조사, 매수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유림 매수업무 일체의 대리권을 행사
- 위탁수수료는 매수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성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제출
- 수탁자와 국유림관리소간 매도신청접수 상황을 매월 2회이상 교환
- 수탁자가 전문 인력을 확보 후 사유림 매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 인근(유사)재산에 비해 매수 단가가 높다거나 소유권 이동이 빈번하였던 재산 등은 여러 방면으로 확인 검토
- 현실적으로 매수 단가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을 우선 매수하도록 조치
- 상반기 매수 실적을 파악 후 원활한 매수 계획달성을 위해 사업량 조정

o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행위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

⑦ 광릉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보존

o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0.25ha(8억원)매수

- 완충지역 지정 현황 : 1,845필지 572ha 4,402억원(남양주 216, 포천 356)
  * 법적근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

o 국립수목원장은 주차장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재산의 활용도 등 매수 대상지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릉숲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교환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교환 취득으로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인·허가 등 협의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을 조건으로 협의

o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써 연고매각 대상 국유림의 처분은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매각으로 추진

- 면적이 시 지역은 1ha 이상, 시 외의 지역은 2ha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

o 국유림과 교환취득·처분 때에는 반드시 입목조사 실시. 다만, 공유림 등의 소유자가 입목조사를 생략할 것을 원하면 생략할 수 있음

- 입목조사는 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은 소유자가 각각 부담

3)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집행

o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연간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하거나 처분(매각·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각 지방청은 '15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5월말까지 제출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는 취득·처분, 행정재산 사용승인, 개발 및 사용허가·대부,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

  * 201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분야) 국유림관리과-3664('12.10.12)호 참조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 등도 협의단계에서 사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 후 집행

- 예산집행 전 디지털예산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형태로 입력

o 기재부 '2014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개정사항을 숙지

- 매각 대상재산의 면적에 관계없이 총괄청의 승인 대상 확대
  - ·국유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등
- 교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토법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공항·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o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당해 연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말 것

- 엄격한 실질심사 후 관련법령 및「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집행
- 당해연도「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

4) 국유재산 일반관리

o「국유재산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인 후 제출하되, 청사, 관사, 양묘장, 임도(운재로 시설용 토지 포함), 자연휴양림, 시험포지 등 토지와 산림경영임야로 실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 예) 임도부지, 마을숲 조성계획, 저목장 또는 운재로 시설계획 등

o 국유림의 종류가 현실 이용현황 및 장래 활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림 구분 기준에 따라 재 구분 조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4호에 따라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이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되어 그 합산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2만제곱미터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 면지역은 제외) : 5만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지역 : 10만제곱미터 이상

o 분할 · 합병 등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은 수시로 국유재산대장(카드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즉시 정리한 후 관리

o 각종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신축이 반영된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

5) 타부처 미활용 국유림 사용승인

o 기획재정부 · 국방부(DMZ지역)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파악(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반회계)하여 산림경영관리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총괄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은 해당 관리청 소관의 다른 국유림과 교환 형식으로 상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이관 대상으로 분류된 유휴 행정재산 중 우리 청에서 활용하고자 인계하지 않은 재산은 국유림 경영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개정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본청 및 지방청 관계관을 포함하여 T/F팀 운영
- 개정령안 입안에 필요한 자료 수집 후 토론회를 정례화

7) 제주특별자치도내 국유재산 관리 감독

o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장이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도·점검을 수행

- 국유재산 취득·처분검토와 조림대부지 관리, 각종 산림사업의 추진상황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지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 관리 예산배분은 서부지방산림청을 통해 집행
  - · 재산 현황(19,892ha) : 요존 17,942, 불요존 1,950(제주 8,900, 서귀포 10,992)
    - ☞ 불요존 국유림 종류 재구분 추진(불요존 1,950ha(10%) → 5%대로 유지)
  - · 곶자왈 매수지(353ha) 전체를 시험림(300ha)으로 지정 관리(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140ha 중복)
  - · 대부현황 : 196건 2,083ha(제주 87건 1,113, 서귀포 109건 970)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확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운영 : 2014. 1. 1부터

o 사유림매수

- '14년도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 : 2013. 12월
- '14년도 사유림매수 추진 상황 : 연중(상반기:주간, 하반기:월간·주간보고)
- '13년도 사유림매수 실적보고 : 2013. 12월

o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등

-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 : 2014. 1월

  * 기획재정부(총괄청)에 제출 : 2014. 1월

-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제출(기획재정부) : 2014. 6월

  * 각 지방청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6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o 2013년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출 : 2014. 1월

o 2013년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4. 1월

o 2014년도 국유재산 매각·교환실적 결과보고 : 2014. 12월

o 국유림의 종류구분 및 재구분 : 연중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사용승인 신청 : 연중

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등 사후관리 강화

목 표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가. 정책여건

o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용 국유림 수요증가

o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소득사업용 대부·사용허가 요구 증가

o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 편입 증가

o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부·사용허가 제도 변화 필요

o 국가세입 확보에 기여하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의 운영이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촌지역과 임업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방형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운영

o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광업용 등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관리강화 및 부실대부지 취소요건 개선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o 대면적 신규 대부·사용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교환을 실시하여 경영임지 감소를 방지

o 농림어업인을 위한 대부·사용허가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운영하여 불편을 해소하되 장기대부를 억제하여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o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지의 분류체계 기준 마련으로 현장실무의 혼란 방지와 대부 통계의 신뢰도를 확립

o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정보공유를 위한 대부용도별 현장토론회 개최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대부·사용허가 사업 검토 철저

o 신규 대부(사용허가)는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국유림경영의 지장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

- 신규 대부(사용허가)를 가급적 억제하되, 대부(사용허가)시는 면적 최소화
- 「산지관리법」의 전용기준 부합여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저촉여부,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 여부 등 검토 철저

o 선행 대부(사용허가)가 후속 대부(사용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 처리하는 인·허가시스템 운영

-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과 풍력발전 입지사업을 연계 검토토록 하여 선행 인허가에 따른 후속민원을 사전에 차단

o 지방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 감독을 강화

- 지방청장 승인사업 : 3ha 이상 대부지, 기존 대부지에 연접하여 추가 신청으로 3ha 이상이 되는 대부지와 광업용, 스키장·골프장, 신·재생 에너지설비사업

o 국유림의 유상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부과 방식으로 국고세입 확충

- 법정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식에서 현황 지목별로 구분 적용
- 대부심사시 사용 용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률 및 요율을 정확히 적용

o 신규 대부·사용허가 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실대부지 발생을 방지

2) 대부지 관리 및 실태조사 제도 개선

o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무단점유 분류체계 기준(안) 마련으로 대부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

-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의 종류별 구분으로 국유림의 공적기여도 부분과 공직가치를 제고
- 산업용 및 농림어업인 소득사업 등을 종류별 단일 분류체계로 정비하여 국유림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기여도의 통계수치로 활용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별 현장토론회 개최로 정책 품질향상을 도모

- 대부용도별 다양한 계층 참여로 대부지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을 강구

  * 주요 대부지 및 이슈 대부지별 현장토론회와 화상회의로 대부지 정보공유와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o 대부료 납부기간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납부기간과 동일하게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부자의 부담 완화 및 혼란을 해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항 개정을 추진

o 불요존국유림의 공개 대부 시범사업으로 국고세입 증대

- 국유림 경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불요존국유림을 경쟁에 의한 낙찰방식의 공개대부를 시범운영하여 국유림의 활용도 제고 및 세입증대를 도모

- 공개대부 대상용도 및 대상지 선정, 절차와 방법, 대부 기간, 사용료 부과 방식 등 공개 대부기준(안)을 마련(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하여 제도화

  * 시범운영 후 성과가 높을 경우「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제도화

o 타용도 사용, 상습·고액 대부료 미납 등 대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 대부지는 불량대부지로 처리

- 불량대부지는 대부지실태조사 점수와 상관없이 경고·불량대부지로 분류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토록 하여 대부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 대부지실태조사 시 수집된 체납대부자의 세부정보를 수집하여 채권징수 부서와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채권징수 강화 및 미수납 채권 방지

o 대부지 실태조사는 면적별, 중요도별 대부지를 선별하여 소속기관간 교차 점검방식으로 추진하여 대부지 연고주의 문제를 해소

- 지방청, 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귀포시 등 각 기관의 인력 및 대부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차등 선정

o 대부지 실태조사 추진 점검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본청 지도·점검 실시

- '14년 국유림대부지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주요 대부지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

- 대부·사용허가 정책추진에 따른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추진

o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부지 변화 관리지표 증빙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전 항공사진과 사업계획도를 확인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 산지전용 사항을 의무적으로 파악

- 실태조사 시 양식에 따른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연차별 변동 사항 관리

o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임간방목 허용방안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시범사업 계획을 위한 사업 지원
-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불요존국유림 내에서 임간방목 사업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확정

3) 무단점유지 색출 시스템 강화

o 무단점유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색출 시스템운용

- 무단점유감시원의 항공사진 판독기술 교육 및 운용을 통한 능력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
- 항공사진을 통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점유를 근원적으로 차단

o 색출된 무단점유지는 지역주민에게 국유림의 무단점유가 경범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중단하기 위해 엄중히 처리

o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

o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의한 불법점유도 예외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점유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

- 국유림 무단점유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지체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4) 무단점유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비임야)의 정리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적법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이 불가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으로 처분(개정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정리

5) 골프장 대부료 반환 소송에 대한 대응 강화

o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골프장 업체의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현행 국가-변호사 업무협약 관계를 공고히 유지

o 본청-지방청-관리소-변호사의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여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한편 소송건별 다른 사항은 유연하게 대처

o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운용 및 국고세입 유지

o 향후 유사사례 대부료 반환 소송시 활용토록 DB구축으로 국가승소 기반 마련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계획 시달 : 2014. 2월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현장토론회 추진계획 시달 : 2014. 2월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분류체계 기준 마련 시달 : 2014. 2월

o 불요존국유림 공개 대부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대부기준 시달 : 2014. 2월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계획 시달 : 2014. 2월

o 국유림 무단점유지 조사 방안 마련 : 2014. 5월

o 장기무단점유지 정리 추진 : 연중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 2014. 3~11월

o 국유림 대부지 지도·점검 실시 : 2014. 9~10월

9.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목 표

◇ 조림대부·분수림의 사유입목사업 확대로 경영임지의 광역화

o '14년 입목매수 1,300ha, 156천㎥(사업비 2,88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92년부터 추진 중인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사업은 '13년말 현재 82%를 매수하여 잔여지는 21천ha(18%)

o 조림대부·분수림은 수대부자 등이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간벌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하여야하나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고, 숲가꾸기 기술인력과 기술부족 관리가 소홀

o '05년도를 정점으로 이후 매수량과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계속적으로 적정규모의 매수 유지로 직영임지 확보가 시급

o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을 매수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매수 추진

나. 기본방향

o 장기적인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 매도신청 유도로 국유림 경영의 집약경영 추진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 매수 대상지에 대한 자재조사 방법 개선으로 임황조사의 정확도 확립과 지도감독 강화

o 입목가격 결정의 신뢰성 확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대부자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

o 조림대부·분수림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대부지 실태조사 강화로 부실대부지로 판명된 경우 매수를 적극 유도하여 직영임지 확보

- '13년 기간 만료지 : 14건 132ha(조림대부 3건 25ha, 분수림 11건 107ha)

다. 세부추진계획

1)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를 통한 경영임지 확보

o 사업량 : 1,300ha, 156천㎥(2,880백만원)

o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산림청별 조림대부·분수림 입목매수 신청 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

(단위 : ha, 천㎥, 백만원)

구 분	총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제주도
면 적	1,300	250	150	350	250	200	100
수 량	156	30	18	42	30	24	12
예 산	2,880	480	288	672	480	768	192

o 매수안내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을 '14. 1월에 산림청·지방산림청·제주특별자치도·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에 홍보하여 조기에 매수완료
- '14년 1월말까지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 전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매도 권유

o 매수대상지 선정

- 매도승낙서가 제출된 임지는 입목수량·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
- 연중 추가적인 매도승낙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입목수량 조사

- 건당 면적이 30ha 미만인 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건당 면적이 30ha 이상인 임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입목조사시 고사목·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실시

o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 관리소장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입목수량 및 가격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제출받아 검수
- 조림대부·분수림의 수대부자 등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기반시설(임도)에 투자비용 보전을 위해 현존가치를 감정 평가하여 가격결정에 반영

o 대부지(분수림) 소멸통지 및 국유림 종류 재구분

- 입목대금 지급과 동시에 수대부자 등에게 서면으로 대부계약(분수림 설정)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고,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국유림 종류 재구분(의무) 및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하여 직영임지로 관리 철저

o 조림대부·분수림의 입목매수는 경영임지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번 단위 매수를 원칙으로 매수 즉시 요존국유림으로 종류재구분 해야 하며, 일부매수 및 반환하여 불요존국유림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주의

- 입목매수 매입예산 부족, 공익사업 편입 등 부득이 일부반환 할 경우 요존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라. 추진일정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사업계획 공고 : 2014. 1월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추진 및 결과보고 : 연중

10.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목 표

◇ 국가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유재산권 보전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이행 철저로 소유권 확보

가. 정책여건

o 정보공개 등 사회여건 변화로 국가소송은 감소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국유화된 무주부동산 및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증가

o 일선 소속기관 국가소송 수행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응능력 미흡

나. 기본방향

o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o 지방청 소송수행에 대한 본청의 지원·감독·평가기능 강화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에 대한 산림청소관 국유화 추진

o 지적관련 공부정리 등 국가소유권 확보 조치철저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재산 소유권 보전을 위한 국가소송의 적극 대응

o 전직 세무공무원(이석호) 불법매각재산 자진반납권유 및 소송제기 환수

- 원고 환수소송 진행 중 7필지 9ha
- 소송환수 준비 134필지 69ha(가처분 완료)

o 국가권리귀속대상재산 색출 적극 대응

- 조림성공을 원인으로 일본인에게 양여한 재산에 대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부당등기 말소 소송 등을 적극 제기하여 국가재산으로 환수
- 구등기부, 구임야대장, 국가기록원 보관 양여·허가, 임야원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증거서류에 대한 위변조 확인

2) 국가소송 승소율 제고

o 소송가액이 높거나 규모가 큰 재산 및 은닉재산은 본청과 지방청이 공동수행

-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면적 100ha 이상, 은닉국유재산

  * ('11) 4건 → ('12) 3건 → ('13) 3건 → ('14) 8건 예상

o 산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나 복잡한 유형의 고액소송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 골프장 대부료 관련 소송, 헌법소원 청구사건 등

o 지방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은 본청과 연계하여 공동대응

o 공익법무관(2명),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

3)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에 대한 산림청소관 국유화 추진(인제, 양구, 고성)

o 지적공부 정리 등 국가소유권 확보조치 철저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o 권리보전조치 유형별 미 정리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리

o 토지(임야)대장·국유재산대장·등기부·지적도 등 지적공부 확인철저

4) 국가소송수행 지휘체계 확립

o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판결 등 진행상황 보고 철저로 공동대응 강화

o 국가소송 수행자의 불변기간도과 등 소송해태사례 방지 철저

o 국가소송 사건 처리부 및 소송기록부 작성 비치

5)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대응 능력 배양

o 국가소송 전문교육 실시 및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화

o 관할 검찰청의 국가소송 실무교육 이수

o 기 발간 배부한 국가소송관련 업무편람을 적극 활용하여 실무능력 향상

- 국가소송업무편람, 국가소송백서, 국유재산등기 실무편람

라. 추진일정

o 국가소송 수행자 전문교육 이수 : 연중 수시(산림교육원 교육 2월)

o 국가소송수행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o 국가소송 수행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실태 지도점검 : 2014. 6월, 12월

11.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목 표

◇ 국유림행정 일선 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o 국유림행정 업무특성상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접근성 저하

o 현장중심의 업무로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요구

o 새로운 임업기술이나 선진화된 임업경영기법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접촉할 기회가 부족

나. 기본방향

o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선진 임업기술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체험위주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o 산림수련관을 운영하여 산림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o 산림관련기관·단체의 교육, 회의 등을 통한 산림경영의 역량강화 도모

o 산림수련관의 안전관리 철저 및 쾌적한 편의제공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지방산림청 운영지원

o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20백만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관리분야 공무원 선발 포상
- 지방청 :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o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해외 정보교류를 위한 정책연수 실시
- 방문 국가에 대해 현장 체험 등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 연수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연수 추진
-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수 추진 : 상반기(5~6월), 하반기(9~10월)

o 산림사업 관학연구 개발비 지원(북부, 동부, 남부) : 150백만원

o 지방청 및 관리소 관사 보증금 인상액 지원 : 20백만원

2) 산림수련관 운영·관리

o 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 기능저하 등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 조치
- 건물 등 시설물 주변 또는 진입로 주변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o 수련관의 노후시설 분야는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추진
- 노후시설은 지방산림청별 대 수선비를 우선 반영하여 보수 추진

o 수련관 운영관리
-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요인 수시확인 개선
- '14년도 운영예산 : 202,356천원

기 관 별	북 부 (설악산)	동 부 (양 양)	남 부 (포 항)	중 부 (신진도)	서 부 (변 산)
금액(천원)	22,409	38,126	23,309	61,216	57,296

* 수련관 안내실에 지역특산 임산물 판매처 안내서 및 홍보물 비치

라. 추진일정

o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 2014. 상반기(5~6월), 하반기(9~10월)

o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 2014. 11~12월

o 국유림경영·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분야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2014. 11월

o 산림수련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점검(지방산림청) : 연중

12.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목 표

◇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 정책여건

o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추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사회여건변화로 야외 휴양수요 증가
-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이 단순한 편리성·편안함 추구가 아닌 적극적 참여에 의한 행복감·건강 증진으로 변화

o 숲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

- 19세 이상 성인인구의 41%가 월 1회 이상 산행에 참여하며 연간 누적 산행인구는 4억 6백만 여명에 달함
- 등산 활동과 자연휴양림 이용 외에도 숲길 걷기, 산림치유,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확산

  * 치유의 숲 31만명, 산림교육 93만명, 트레킹 길 40만명 이용('12)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종합계획('13～'17) 전략별 과제의 이행

o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종합계획('13～'17)」 전략별 과제의 이행

o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산림복지종합계획」전략별 과제 추진

- 산림복지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산림복지 연구추진, 관련 법령 제·개정 등
- 세부추진계획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o ’14년 이후 도입되는 신규 산림복지 정책, 제도, 법령 후속조치 준비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산림복지진흥 부담금 등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한국산림복지공단의 예산, 조직, 역할 마련 등 공단 신설 준비

2) 생애 주기별로 휴양·문화·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제공

출생기	⇨	유아기	⇨	아동·청소년기	⇨	청년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회년기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악레포츠 시설 운영		자연휴양림, 산림치유공간, 조성·운영		산림요양 서비스 및 자원봉사		수목장림 확충

가) (출생기)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탄생목 심기

o 산모 및 태아의 건강·감성 증진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임신 24~36주 부부를 대상으로 명상·요가·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o 5살 이하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탄생목 심기’ 행사 추진

- 전국에 있는 관련 NGO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나) (유아기)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확대조성·운영

o 체험·놀이 위주의 자연친화적인「유아숲체험원」확대조성 및 운영

-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5개소)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o 지자체·민간에서 조성·등록 및 운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보급

다) (아동·청소년기)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산림체험·교육 확대

o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산림교육센터」설치 및 녹색체험교육 확대 운영

- 산림교육센터 조성(2개소, 장성, 청도), 지정 및 운영
- 주말산림학교, 방과후 숲교실 등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확대
- 유아·청소년 대상 ‘숲으로 가자’ 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홍보 강화

o 교육부 등과 협업을 통해 학교 내 산림교육 확대

- 학교 교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 직무연수 확대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제시
- 교과서 내 산림관련 내용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 요구

라) (청년기) 등산・레저・문화 활동 지원 활성화

o 전국 단위의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 등 산악레포츠 활성화

- 임도, 국민의 숲 등을 이용하여 산악스키,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매니아층 확대
- 임도 등을 레저 스포츠길로 지정하고 관리방안 마련

o 산림생태・문화 등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숲길' 조성

- 숲길 조성을 확대하고 옛길・임도 등과 연계한 전국 숲길 네트워크화

마) (중·장년기) 산림휴양・치유서비스 지원

o 지역별로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

- 자연휴양림(19개소), 산림욕장(5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10개소) 등

o 산림치유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공립 치유의 숲 확대 조성

- '14년 계획 : 총 29개소(4개소 운영, 2개소 시범운영, 23개소 조성)

바) (노년・회년기) 산림 요양・장묘서비스 지원

o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제고

- 지역별 특색 있는 국·공유 모델 수목장림 확대 유도
- 국유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 구역면적 확대(10ha→30ha)
- 수목장림 인식제고를 위한 신문, 기획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강화

라. 추진일정

o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4. 3~10월

o 탄생목 심기행사 추진 : '14. 3~5월

o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숲으로 가자! 운동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수목장림 활성화방안 추진 : 연중

13. 산림복지공간 타당성조사 및 인증제 도입

목 표

◇ 산림복지공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가. 정책여건

o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

o 산림 내에서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나. 기본방향

o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정의 및 조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o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의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o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의 운영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다. 세부추진계획

o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정의 및 조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는 산림청장, 공·사유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성

o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별 경관, 위치 등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인증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별 안전기준, 시설규모 등 인증기준 마련

o 시설별 조성계획 승인 시 산지전용신고 의제처리 범위 확대

- 의제처리 범위 : (기존) 국유림 → (개선)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대상시설 : (기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 (개선) 기존 시설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추가

o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의 이용료(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 징수 근거 마련

*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만 이용료 징수 근거가 있었음

라. 추진일정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상정·의결 : 2014. 2월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마련 : 2014. 8월

o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 2014. 12월

o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2015. 1월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 2015. 2월

14.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목 표

◇ 지역별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가. 정책여건

o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수가 꾸준히 증가

o 계층별, 지역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요구 증대

o 저렴한 이용요금 및 주중 가동률 저조 등의 이유로 경영수지 악화

나. 기본방향

o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수요 충족

o 대상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o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이용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으로 수요 충족

o 자연휴양림 : ('13) 21개소, 205억원 ⇒ ('14) 19개소, 170억원

- 국립(3개소) : 부산 (1), 경기(1), 전남(1)
- 지자체(16개소) : 경기(3), 충북(2), 전북(1), 전남(2), 경북(5), 경남(3)

o 산림욕장 : ('13) 5개소, 9억원 ⇒ ('14) 5개소, 9억원

- 지자체(5개소) : 경기(2), 강원(2), 경북(1)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3) 10개소, 148억원 ⇒ ('14) 10개소, 135억원

- 강원(1), 경기(1),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2), 경남(2)

o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2년차) : ('13) 1개소, 5억원 ⇒ ('14) 1개소, 25억원

o 울진 백암숲 체험장 조성(신규) : ('13) - ⇒ ('14) 1개소 5억원

2)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o 가족단위 체험형, 치유형, 교육형 등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획일화된 저가 체험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고품격 유료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숙박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 통고산(금강소나무 생태탐방), 용화산(에코힐링캠프), 청태산(가족캠프)

o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기회 제공 확대

-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대 및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휴양림별 지역 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숲체험 행사 추진
  ※ 숲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숲길 트레킹 등

o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ARS 예약제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 ARS 시스템 운영 장비도입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상반기)
- 성수기 시범사업 추진 및 결과 분석 후 개선 보완

3)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이용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o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 단체연수 전문업체와의 MOU확대

- 휴양림을 플랫폼으로 한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기차로 떠나는 캠핑 등 주중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강화로 브랜드화
- 국내 여행사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투어 상품 개발
- 단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업체와 전략적 업무협력 강화

o 언론,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 일간지 주말 섹션을 통한 기획보도,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광고판 활용
- 투어상품 홍보 블러그 운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o 펠릿보일러, 태양광 시설확대로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경비 절감

- 산림문화휴양관 등 규모가 큰 시설부터 펠릿보일러 확대 설치
  * 펠릿보일러 확대(국립) : ('13) 29대 → ('14) 34대 → ('17) 49대
-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지열 등 에너지 절약시설 적극 도입
- 탄력적 인력배치, 적자가 큰 휴양림 민간컨설팅 등 관리비용 절감방안 추진

o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료 인상 추진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원가계산' 연구결과 12~34% 인상요인 발생
- 고객 선호도를 고려하여 숲속의 집은 17.4%, 산림문화휴양관은 6% 인상 추진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는 주중 요금할인 적용

4)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관리 강화

o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행('14~'23)

o 휴양림에 적합한 목조주택 모델 보급과 다양한 디자인 창출을 위한 설계 공모 확대 및 '설계심의회 자문단' 운영

o 휴양시설 조성·관리를 위한 '전문관' 제도 도입

- 휴양림 경험이 많은 은퇴공무원을 현장 배치하여 조성 및 관리감독 강화

5) 재해·재난, 산불 및 화재예방, 먹는 물 관리 강화 등 고객 안전 강화

o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산사태, 낙석위험지 등 휴양림 내 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순찰 강화
- 여름철 산림재해대책상황실 운영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 대응

o 산불·시설물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휴양림별 산불방지 대책 및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철저
- 야외소화전, 소화기 등 산불·화재 진화장비 확보 및 자체 훈련 강화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o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휴양림내 안전한 먹는 물 제공

- 음용수는 연 4회(분기별), 물놀이장 등의 생활용수는 연 2회(반기별) 실시
-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객실 등에 신속히 공지 및 수질개선조치

o 등산로, 산책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 강화

라. 추진일정

o 자연휴양림 계속 및 보완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 2014. 2월

o 산림욕장 조성(보완)계획 수립 승인 및 공사 발주 : 2014. 2월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공사 발주 : 2014. 2월

o 사유자연휴양림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4. 2월

o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상황 상반기 현장점검 : 2014. 6월

o 국립자연휴양림 ARS 예약제 시범운영 : 2014. 8월

o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상황 하반기 현장점검 : 2014. 10월

<참 고>

2014년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보완 현황

가. 자연휴양림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합 계	90	36,636	
설 계	1	250	경북(청도 250)
조 성	18	16,789	
<1년차>	5	5,705	
부 산	1	2,600	부산(달음산 2,600)
경 기	1	819	안성(서운산 819)
전 북	1	86	김제(모악산 86)
전 남	2	2,200	진도(진도 1,700), 완도(수목원 500)
<2년차>	2	3,300	
경 기	1	300	경기(연천 고대산 300)
경 북	1	3,000	본청(안동호반 3,000)
<3년차>	11	7,784	
경 기	2	2,550	양주(아세안 2,300), 의왕(바라산 250)
충 북	2	2,200	진천(생거진천 1,000), 괴산(성불산 1,200)
전 남	1	400	구례(산수유 400)
경 북	3	1,534	본청(팔공산 864), 포항(비학산 170), 성주(독용산성 500)
경 남	3	1,100	하동(구재봉 600), 창녕(화왕산 450), 산청(한방 50)
보 완	71	19,597	
국 유	37	9,244	국유자연휴양림(유명산 등 37개소 9,244)
공 유	34	10,353	
대 전	2	600	서구(장태산 350), 동구(만인산 250)
강 원	3	450	본청(집다리골 150), 원주(치악산 100) 태백(고원 200)
충 북	4	1,410	본청(조령산 250), 괴산(성불산 60), 옥천(장령산 600),청원(옥화 500)
충 남	7	1,458	본청(금강 400), 부여(만수산 100), 홍성(용봉산 200), 보령(성주산 200) 아산(영인산 250), 예산(봉수산 200), 금산(남이 108)
전 북	2	885	완주(고산 135), 장수(와룡 750)
전 남	7	2,850	여수(봉황산 200), 순천(순천 1,300), 화순(한천 250), 장흥(유치 200), 강진(주작산 300), 해남(가학산 300), 보성(제암산 300)
경 북	2	550	문경(불정 50), 청송(청송 500)
경 남	4	1,450	본청(금원산 900), 거제(거제 200), 양산(대운산 200), 합천(오도산 150)
제 주	3	700	본청(교래 200), 제주(절물 200), 서귀포(붉은오름 200, 서귀포 100)

나. 산림욕장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산림욕장	8	1,174	
<조성>	5	874	경기(양주 264, 안산 10), 강원(철원 200, 홍천 200), 경북(포항 200)
<보완>	3	300	강원(삼척 기룡산 100, 인제 봉황산 100, 고성 수성샘터 100)

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합 계	10	13,496	
조 성	10	13,496	
<1년차>	2	2,000	경북(영천 500), 경남(함양 1,500)
<2년차>	1	500	경남(의령 500)
<3년차>	2	3,300	경기(가평 465), 전북(무주 2,835)
<4년차>	5	7,696	전남 (보성 1,975), 경북 (영덕 1,950), 강원(정선 1,250), 충북(증평 1,000), 충남(금산 1,521)

15.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시범조성

목 표

◇ 산림훼손을 최소한 산림 체험형 숲속캠핑장을 조성하여 모델로 활용

가. 정책여건

o 급속한 도시화,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체험하고 힐링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 증가

o 무분별한 사설 야영장 난립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이용객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산림 체험형 국·공립 숲속야영장 조성

o 숲속야영장 조성의 시설 기준·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및 제도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급증하는 캠핑 수요 충족을 위한 숲속캠핑장 조성

o 도시근교 국유림에 숲속캠핑장 시범 조성

-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근교 국유림에 숲속캠핑장 시범 조성

  * 산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피크닉장, 캠핑장, 체육시설 조성

2)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o 지자체 및 사설 캠핑장의 무분별한 산림훼손 억제를 위한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타당성평가 기준 등 마련

-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타당성평가 기준 등 마련 용역 추진

-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타당성평가 기준의 법적인 제도화 추진

<자연휴양림 야영장과 숲속야영장 차이점>

□ 자연휴양림 야영장

o 자연휴양림 편익시설의 일부로 주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이용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계곡부 등 산간지형 특성상 기존 야영장 확장에 어려움이 따름

* 자연휴양림 지정 최소 면적은 20ha(사유)~30ha(국·공유)이상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며 큰 폭의 야영시설 확대가 어려움

□ 숲속야영장

o 야영활동에 특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만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장소

* 2~3ha의 소면적으로 숲속야영장 조성이 가능

라. 추진일정

o 숲속캠핑장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 : 2014. 2월

o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 2014. 2~5월

o 숲속캠핑장 시범 조성 추진 : 2014. 6~12월

o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타당성평가 기준의 제도화 추진 : 2014. 6~12월

16.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목 표

◇ 산림치유 공간 조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제공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o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산림치유 효과규명을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o 국·공유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공간 확대, 양성기관 확대 지정 등으로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기본방향

o 치유의 숲 확대 조성 및 관련 법령 제도 정비

o 치유의 숲 운영·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o 산림치유 효과규명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인식 확산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확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계획적인 양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치유의 숲 확대 조성

o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여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

- ('13) 총 24개소(3개소 운영, 21개소 조성)
  ('14) 총 29개소(4개소 운영, 2개소 시범운영, 23개소 조성)
  * 치유의 숲 : 개소 당 50억원 규모로 3년(설계 1, 조성 2) 사업으로 추진

o 국립 2개소(양평, 울주) 실시설계 수립 조성추진(1개소 17.5억, 조성 3년)

- ('13) 기본계획 → ('14) 실시설계 → ('14~'16) 조성공사

o 강릉「저탄소 녹색시범도시」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됨에 따라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11～'15)

- ('11～'12) 기본계획・토지매입 → ('13) 실시설계·토지매입 → ('14～'15) 조성공사

o 연 2회(상·하반기) 국·공립 치유의 숲 조성·운영 현황점검을 실시하여 차질없는 사업진행 도모

- 2015년 광특회계의 경우 예산심의회를 거쳐 신청토록 유도('14. 2월)

2) 치유의 숲 입지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 정비

o 타당성 평가제도, 인증제도 도입 등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치유 목적에 적합한 입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도입

-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 마련

o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의 확대·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산림기사·숲해설가 등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경력포함)를 포함하여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자격 부여 효과 도모

  * 현행 산림, 의료, 간호, 보건계역 학위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 → 임업관련 자격소지자 및 산림교육전문가까지 확대

- 현재의 관련학과 세부규정 지침을 산림청장 고시로 변경하여 제도적으로 명확화하고 교육생들의 혼란 방지

  * 현재「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세부규정」을 마련('13.8)하여 시행 중

o 산림치유지도사 교육분야별 교육시간 조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타 산림관련 자격증과의 중복과목, 교육과정 내 교과목정비, 실습시간 확대 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 관련 별표 개정

3) 치유의 숲 관리규정 마련 등 세부지침 보완을 통한 운영 활성화

o「치유의 숲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치유의 숲에 대한 운영 내실화로 이용 만족도 제고

- 치유의 숲 세부운영 방법 및 치유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 규정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표준교재를 발간하여 평가 및 교육 안정화 도모

o「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운영관리 지침」('12.6)을 개정하여 1회 평가시험의 개선점 보완(평가대상, 평가방법, 합격결정 기준 등)

4) 산림치유 효과규명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인식 확산

o ‘산림치유 연구사업단’ 등 산림치유 관련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등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산림치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 연구기관・대학・민간단체 등을 총망라한 산림치유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자문 청취

  *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o 기획과제 등 연구결과는 연 1회 이상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산림치유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

o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산림치유의 과학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5)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o 산림치유지도사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양성기관을 지정

- 산림 및 보건・의학 교육기능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추진

  * 양성기관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2.8월),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13.7월),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13.7월),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13.7월)

o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 추진

라. 추진일정

o 공립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 : 2014. 2월

o 국유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 2014. 2월

o 산림치유지도사 검정평가 : 2014. 8월

o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 연중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 : 2014. 6월

17.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 활성화

목 표

◇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홍보강화로 수목장림 인식 전환 및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

가. 정책여건

o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의 묘지가 발생

o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치공간은 부족한 실정

o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 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

나. 기본방향

o 국·공·사유 수목장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수목장림 수요 충족

o 친환경적인 자연장인 수목장림의 홍보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o 범국민 수목장림 실천운동 및 '작은 장례' 운동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장림 조성 확대

o (국유) 하늘숲추모원의 구역면적을 확대 조성 및 운영하고 지방산림청별 모델 수목장림 조성

- ('13) 10ha(추모목 2천본) → ('14) 30ha(추모목 6천본)
- 지방청별 모델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실시

o (공유) 광역시·도별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고(광특회계 지역계정)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참여 유도

- 공유 수목장림 1개소(충남 보령) 조성 추진

o (사유)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대한 장기·저리 정부 융자지원으로 활성화 도모

-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사업 우선 지원

2) '작은 장례' 문화 확산과 수목장림의 건전한 운영·관리

o 종합적인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존 묘지시설의 수목장림 전환시 국고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 사설 수목장림 조성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지속 홍보
- 일반 국민이 수목장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신문, 기획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강화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 안내 리플릿 배부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o 불법 수목장림 특별단속 정례화로 산림훼손 및 유가족 피해 사전 예방

- 보건복지부,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관련 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추진
- 수목장림 조성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및 불법 산림훼손 행위 단속

라. 추진일정

o 하늘숲추모원 구역 확대 조성 : 2014. 2 ~ 5월

o 종합적인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 마련 : 2014. 상반기

o 지방산림청별 국유 모델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 선정 : 연중

o 광역시·도별 공유 모델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 선정 : 연중

o 수목장림 제도 이해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 연중

o 불법 수목장림 합동점검 및 위반행위 단속 : 2014. 상·하반기 2회

18. 전국산촌기초조사 및 산촌역량강화

목 표

◇ 전국산촌기초조사로 산촌마을 현장진단과 기초자료 수집
◇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가. 정책여건

o '95~'10년까지 전국적으로 240개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o '09년 4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예산편성

o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

나. 기본방향

o 전국산촌기초조사(10년마다)로 기초자료수집 및 산촌진흥계획 토대 마련

o 산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o 산촌마을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전국산촌기초조사(10년마다) 실시로 산촌기초자료 수집

o 전국적으로 산촌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산촌진흥지역을 선별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기반이 될 지표를 선정하여 각종 통계자료 현장조사 실시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24조 : 산림청장은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조사를 해야 함

* '03년 전국산촌기초조사 시행, '07년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o 기초조사 및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국립산림과학원 및 학계 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관(한국임업진흥원·산림조합 등)에 위탁하여 실시

2) 산촌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컨설팅사업 지속 추진

o 산촌마을을 기반으로 산촌유학 프로그램, 귀산촌인 정착 프로그램 등 지원

-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o 산촌마을의 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시기별, 유형별 전문가 컨설팅 실시(계속)

- 소득경영·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 등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o 산촌마을의 특성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주재 산림치유마을, 산촌유학 활성화 방안 연구 등)

3) 산촌주민의 역량 강화 및 마을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o 각 도 단위로 「우수 산촌마을 주민현장학교」를 개설하여 인근지역 산촌마을 벤치마킹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 운영 능력 배양

- 마을대표 및 청년층(운영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o 도 단위 「산촌생태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간 협력방안 마련 등 네트워크 강화

o 온라인 홍보 강화와 더불어 산촌생태마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마을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숲에 On을 통한 우수산촌마을 적극 홍보 및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 홍보

4)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조성·운영 지침마련

o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산림탄소순환마을(2개소, 경북 봉화·강원 화천)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o 정기적인 운영성과 모니터링(분기별)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성과 산출 및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운영 지침 마련

라. 추진일정

o 전국산촌기초조사 실시 : 2014. 3월

o 산촌역량강화 공모사업 시행 : 2014. 4월

o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실시 : 연중

o 우수산촌마을 주민현장학교 개설 : 연중

o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과정 평가 및 결과보고 : 2014. 11월

19.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목 표

◇ 산림교육 수혜자 1,000만명 시대를 준비하는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참여·주도형 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자연 중심의 유아교육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유아숲체험 참여 현황 : ('08) 13천명 → ('10) 83천명 → ('12) 430천명

o 유아·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산림교육이 그 대안으로 자리매김함

* '숲으로 가자!' 캠페인 참여 인원 : ('13. 10월까지) 87만명

나. 기본방향

o 산림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o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공간 확충

o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확대

o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산림교육문화과) 신설

o 체계적인 산림교육 정책 추진과 산림복지 일자리 양성, 국정·협업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전담 부서 마련(1분기)

- 조직 구성(안) : 산림교육기획, 산림교육인력양성, 산림문화 3개 계로 구성
-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산불, 목재 교육 등 유아·청소년 대상 교육 총괄

2) 교육부, 여가부 등 유아·청소년 관련 부처와 협업 강화

o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한 유아숲교육 확대 방안 마련

o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o 교육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일선학교 등과 연계하여 '숲으로 가자!' 캠페인 전개

o 교육부, 여가부와 협업 과제 신규발굴 및 타 부처로 확대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o 수요, 접근성,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수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유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 '14년 신규조성 5개소(1월,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지 선정)
-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신규 조성되는 도시숲에 유아숲체험원 설치 확대

o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13년 제작) 보급

- 지자체·민간에서 조성·등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유아교육기관 등에 배포
- 지자체·민간에서 조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4) 체계적인 산림체험·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센터 설치 확대

o 소외계층·청소년들의 산림체험·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설치

- '14년 조성계획 : 2개소(전남 장성, 경북 청도)

o 산림교육센터의 지역 내 역할, 운영·관리 지침 등을 담은「산림교육센터 운영 기본계획」마련

o 지역별 교육수요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도록 유도

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o 계층별로 개발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화하고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숲에 on' 홈페이지에 게시

* 개발 프로그램 : ('08) 초등 → ('09) 중등 → ('10) 유치원 → ('11) 특수 → ('12) 고등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인증 매뉴얼 제작 및 홍보

6)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강화

o 학교장, 교사 등 교원의 산림교육 역량 강화

- 기 개발된 학교교사 산림교육 표준연수 커리큘럼 보급

- (국가)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원, (지자체)산림환경연수원, (민간)생명의 숲 등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추진

o 초·중·고등 교과서 내 산림교육 내용 강화

- 새롭게 적용되는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산림관련 내용의 반영 확대 추진

7) 숲사랑소년단을 명실상부한 청소년 산림단체로 육성

o 지역단위 조직 보강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활동 활성화

-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회를 확대

- 숲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캠프형 체험활동 활성화

o 교사·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관심도 등을 조사하여 학년별·성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o 일체감, 자긍심 조성을 위한 CI, 마크 및 단복 등 제작・보급

라. 추진일정

o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계획 수립 : '14. 1~2월

o 산림교육센터 조성·운영 : 연중

o 산림교육전문가 보수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 '14. 3~10월

o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중

o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강화 : 연중

o 범국민적으로 '숲으로 가자!' 운동 추진 : 연중

20. 산림복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목 표

◇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복지 분야 괜찮은 일자리 창출

가. 정책여건

o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의 핵심운영 인력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지역 내 주민, 전공자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대

  * 양성 현황('13까지) : 숲해설(5,820), 숲길(898), 유아숲(80), 산림치유지도사(36)

o 숲해설가를 제외한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는 도입단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개선 필요

- 자격 간 불분명한 역할 구분, 보수체계 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교육과정, 평가제도)도 개선이 시급

o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국가·지자체 고용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은 10개월 고용, 46,000원/일의 임금으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

나. 기본방향

o 국가·지자체 고용 단기일자리를 괜찮은 전문일자리로 전환

o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추진

o 산림복지 서비스업 설립 근거 및 전문가 배치기준 마련

o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등 자격제도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지자체 고용 단기일자리를 괜찮은 전문일자리로 전환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일자리 전환 시범사업 추진

- 1개 지역(기초 지자체 단위)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휴양림, 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숲해설) : 숲생태지도자협회, 산림문화콘텐츠 연구소, 한국숲해설가협회

-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문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 현 행 >

산림청

↓(예산배정)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휴양림 등)

↓(고용계약)

숲해설가

○ 10개월 단기 고용으로 낮은 보수 수준 (46천원/1인 1일기준)
  -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식

○ 매년 기관별 공고를 통해 고용·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음

↓

< 시범사업 >

산림청

↓(예산배정)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휴양림 등)

↓(용역계약)

산림사업법인
(숲해설가 상시고용)

← **소비자 비용지불**

○ 법인에 숲해설가를 상시 고용함으로써 비용 대비 사업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일자리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 숲체험 시 수익자의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숲해설 서비스의 질 향상

○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경쟁력 확보

○ 장기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추진

o 숲해설 등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 공모' 실시

-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등 현장에서 활용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숲반, 목공예 체험, 문화센터, 기업의 연수 등

o 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시설에서의 지불의사(WTP) 조사

- 조사된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방안 마련

3) 산림복지 서비스업 설립 근거 및 전문가 배치기준 마련

o 숲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서비스업 설립 근거를 마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복지 서비스업 등록, 지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o 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복지 시설에 전문가 배치기준 마련

- 기존 배치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

4)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등 자격제도 개선

o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 중복되는 교육과목 개선

- 각 산림복지 전문가의 직무분석을 통해 산림복지 전문가 공통과정 마련
- 양성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선 설명회 개최

o 산림복지전문가 보수교육 의무화

- 자격증 취득자, 양성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 보수교육 운영기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o 국가자격의 위상에 맞는 시험 난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

- 시험문제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난이도 조절
- 실습평가에 적합한 표준평가지표를 개발 보급
- 전문가 양성 평가 등 양성기관 관리·감독을 강화(상·하반기 1회씩 점검)

라. 추진일정

o 전문일자리 전환 시범사업 : 2014. 2~10월

o 서비스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 공모' : 2014. 3~5월

o 교육과목개선, 보수교육 의무화 등 산림교육법 개정 : 2014. 3~7월

o 산림복지서비스업 등록근거 및 배치기준 마련 : 2014. 3~7월

21.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목 표

◇ 취약계층 및 청·장년실업자 등을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고용하여 실업극복에 기여하고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고용인원 : 1,202명, 예산액 : 111억원 -

가. 정책여건

o '12~'17년간 고용률 70%·23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o 최근 웰빙 및 주5일제 확산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에 대한 산림휴양 및 생태교육 등 산림서비스분야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서비스분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제공

o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장기일자리로 발전시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14년 예산 및 고용계획

세부사업명		고용계획(명)	예산(백만원)	고용기간
산림서비스 도우미	계	1,202	11,108	
	숲해설가	429	4,674	10월
	숲생태관리인	131	1,414	〃
	숲길체험지도사	236	2,021	〃
	산촌마을운영매니저	99	693	〃
	도시녹지관리원	189	1,376	〃
	학교숲코디네이터	50	350	〃
	수목원코디네이터	63	471	〃
	일자리DB요원	5	109	〃

2)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o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장년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준수하여 선발·운영

o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여성 참여비율(33%)을 준수하여 선발·운영

3)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o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림서비스분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o 산림서비스분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산림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장기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o 산림교육원 등에서 2~4월 중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 참여자가 연 200일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전체 고용인원의 76%)

o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위한 산림서비스분야 장기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 숲해설가 등을 상시고용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 전문성 확보 및 시장 활성화 도모

5) 참여자 노무관리 및 중앙점검 실시

o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 참여자 노무관리 철저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공고, 신청·선발현황, 참여자 등록, 지원금 관리 등을 매월 정확하게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하여 수시로 중복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자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

o 산림서비스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o 세부사업별 선발기준, 근로계약, 사업추진 요령 등은 별도 시달하는『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서비스도우미 모집공고 및 선발 : 2013. 12월 ~2014. 1월

o 산림서비스도우미 착수(예산배정 즉시) : 2014. 1월

o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훈련 실시 : 2014. 3~6월

o 산림서비스분야 장기일자리 시범사업 계획수립 : 2014. 3월

o 산림서비스분야 장기일자리 시범사업 시행 : 2014. 4월

o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장 지도·점검 실시 : 2014. 상·하반기 각 1회

o 산림서비스분야 모니터링 실시 : 연중

22.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목 표

◇ 전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이 높아짐과 함께 여가시간을 숲에서 즐기려는 국민 요구 증가

o 국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보급 미흡

나. 기본방향

o 산림문화자산의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o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녹색문화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o 숲태교 프로그램 등 산림문화 통한 숲 중요성과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보존

o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등과 산림 내외 옛길, 산성, 봉수 등 산림 문화자산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추가 지정

- 산림문화자산 지정 후 홍보 및 사후관리
- 충청·전라·경상·제주권역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지정 추진

o 산림이 우리 민족의 삶과 인연을 맺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집대성한 산림문화대계 발간 추진('16까지)

-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원칙을 근간으로 각 장르별 산림문화자산 총망라
- 현세대에게 체계적으로 산림문화자산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o 운영·관리가 필요한 산림문화자산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에 시범적으로 해설가 배치하여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개발·운영을 통해 숲의 문화적 가치 증진

- 산림문화자산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산림문화 영역 확대

년 도	'14년	'15년	'16년	'17년
인 원	3명	10명	15명	30명

2) '국민의 숲' 운영으로 산림문화 활성화

o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대상지 정비

- 지정된 국민의 숲의 활성화 실적을 고려하여 운영예산 등 지원
- 국민의 숲 미운영 개소 폐지 및 '숲에on' 국민의 숲 현황자료 정비

o 산림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방안 홍보를 통해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기반 기업에 국민의 숲 제도 적극 홍보 및 참여 유도
- 산림치유·교육·문화행사 등 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3) 숲에On을 통한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o 산림문화자산, 산림문화행사 등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

o 주요 명산에 대한 기본정보 및 등산로, 레포츠 정보를 웹 GIS로 제공 확대

o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자료 현행화 추진

4) 다양한 산림문화행사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중앙 및 지방 산림문화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계절별·유형별·대상별·주체별 산림문화행사 개최·지원계획 마련
- 산림문화자원을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문화행사 적극 발굴

o '산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림인 축제로 운영

-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산의 날'을 자체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5)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o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등의 협조 및 홍보 등을 통해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 생태공예 체험 등 이용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목재 체험 도구 및 프로그램 교체하여 이용객의 관심도 및 이용율 제고

라. 추진일정

o 산림문화행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4. 2월

o 제13회 산의 날 행사 등 산림문화행사 : 2014. 1～12월

o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 : 2014. 2월

o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지정 : 2014. 3～11월

o 산림문화 행사 및 산악레포츠 대회 : 연중

o 숲사랑체험관 운영 및 국민의 숲 지정. 정비 : 연중

o 숲에On 콘텐츠 확충사업 추진 : 연중

23.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및 경영기반 구축

목 표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 선발 및 지원 확대
o 전문임업인 : ('13까지) 5,774명 → ('14) 6,274(500명)

◇ 산주 및 창업희망자 등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
o 실대출액 : ('13) 1,126억원 → ('13) 1,366억원(증240억원)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탄소흡수원 확충, 청정임산물 생산 및 휴양수요, 귀산촌 희망자, 미래 젊은 임업인 양성 등을 위한 경영임지 수요 및 산림의 중요성 증가

o (대내여건) 산주와 임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귀농·귀산촌 희망자 증가로 산림 경영 관심 증대

나. 기본방향

o 전문임업인 등 산림경영 주체 육성을 위한 경영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

o 사유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등 경영기반 구축

o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확대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을 경영주체로 육성

o 독림가·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산림경영주체 확대 선발·육성
- 전문임업인 : ('13까지) 5,774명 → ('14까지) 6,274명

o 사유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 임업단체의 경영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실시(105백만원)
- 산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산림경영컨설팅' 행사 개최

o 전문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및 각종 행사 지원
- 독림가 하계연찬회 및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56백만원)

- 식목일·산의날 등 각종 행사시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유공표창
-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벤치마킹) 지원(15백만원)

o 전문 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임업인을 위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완화
  * 지원기준 완화 : 임야 소유 면적 15ha이상 → 10ha이상,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별로 굴삭기 지원기준 완화

2) 산주 및 은퇴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사유림경영컨설팅 활성화 추진

o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경영컨설팅센터를 현장 중심 기술컨설팅 체제로 운영(900회)

- 산주요구에 따라 전문가 Pool을 구성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속 추진
  * 현장컨설팅 추진(3ha이상 산주 요구) : ('13) 32회 → ('14) 60회
- 산림경영컨설팅 지원프로그램(적지적수,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 품목별, 주산지별로 임업인, 재배자 등에게 최신 임업기술을 무상 제공하는 현장 임업기술교육 확대 : ('13) 26회 → ('14) 30회

o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자 등 관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림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재산주, 베이비부머를 위한 품목별 단기소득 전문가교육과정 운영
  * 한국임업진흥원(4회), 협회 산림경영모델학교(4회), 산학협력 전문교육기관(수시)

o 산림조합중앙회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한 사유림 경영컨설팅 활성화 유도

- Cyber 산림경영시스템의 컨텐츠 추가 등 프로그램 및 산림경영지도원(특화품목) 체계 개선으로 컨설팅 및 경영정보 제공 확대 검토
- 산주와의 만남행사 지원을 통한 사유림 경영컨설팅 추진(95백만원)

3)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지은행 제도 도입 추진

o 소규모·분산적 임업경영의 여건 개선 및 산지에 대한 수요창출,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등 산지은행 제도를 국정과제 세부행계획에 따라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 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마련('13)
- 법적근거 마련('14~'15) 및 시범운영('16)
- 시범운영 후 도입 및 효과성이 높은것부터 순차적으로 실행('17)
  ① 산지의 임대·매도중개 → ② 직접임대차·매매 → ③ 산지연금사업

o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해 산지은행도입이 필요하며 원활한 산지은행 기능 수행을 위한 산지가격 평가방법, 연금지급 기준 연령 등의 검토 필요 (국립산림과학원 산지은행도입 타당성연구, 2013)

o 김우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산림조합법」개정 법률안('13.7.9)과 연계하여 추진

- 산림조합법 개정 정부 수정안 마련 제출('14년 상반기)

o 산지은행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공청회 개최(2월)

4) 지속가능한 사유림 경영을 위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내실화

o 전문임업인 및 일정규모 이상 산주들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참여 유도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 우선 지원 : 84천ha
- 산림경영계획 편성지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방안 마련

o 산림경영계획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 및 작성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담당자교육(워크숍)실시 및「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매뉴얼 보급
- 산림경영계획 작성 우수기관에 대한 연말 표창(2개 기관) 및 포상금 지급
-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세금감면혜택 교육(재산세 → 분리과세)

o 장기·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세제 개선을 지속 추진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위한 분리과세 대상의 확대
- '농어업인과 임업인 지원정책 비교분석 및 임업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업세제 개선 추진(기획재정부)

o 체계적인 시업관리를 위한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새올) 구축 및 실시간 통계 확보

5)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임업인의 소요자금 적기 대출

o 안정적인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 확대(240억원 증)

- 융자지원액(실대출금) : ('13) 1,126억원 → ('14) 1,366억원

  * '14년 예산 : 379억원(국고융자 234, 이차보전 145)

o 임업인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적기 자금지원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기조정(전년도 1월 → 당년 신청)

- 임야매입자금 지원은 가격에 관계없이 3.3㎡ 당 50,000원 한도 지원
- 조경수생산 지원단가를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으로 반영(80%, 2억 이내)
- 경영인협회 등 가입회원과 비회원간의 산림사업융자 지원비율 합리화

o 임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산림비즈니스창업지원 사업 신설
- 산림비즈니스를 위한 초기창업자금 융자금지원으로 청·장년 등의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촉진(예비창업자 10명, 벤처창업자 4명, 규모: 총 50억원)

o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관리 강화를 위한 운용실태 점검(산림청,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사업자선정, 대출금 집행, 대출금 사후관리 등 점검(상・하반기 실시)
- 기타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문제점 파악 등 제도개선

라. 추진일정

o 산지은행제도 도입 추진계획(안) 마련 : 2013. 12월말까지
o 2014년도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발간・배부 : 2014. 1월
o 산림경영모델학교(독림가, 임업후계자) 운영 : 2014. 3～11월
o 산림사업종합자금 담당자 교육 실시 : 2014. 4월
o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 2014. 4월
o 임업인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 2014. 3～11월
o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 지도 점검·지도 실시(산림청) : 상·하반기
o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점검·지도 실시(산림청) : 상·하반기
o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실태 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o 지자체 산림경영계획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4. 9～11월

24.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목 표

◇ 산주 조합원 확대, 임업기술지도 등으로 협동조합 역할 강화

o 조합원 확대 : ('13까지) 494천명 → ('14) 10천명 확대

◇ 특화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경영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육성

o 산림조합특화사업 : ('13까지) 29개조합 → ('14) 4개조합 확대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산림사업법인 증가,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로 사업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상호금융 환경도 악화

o (대내여건) 단기임산물 기술지도수요에 비해 특화품목지도원이 적고 산림사업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조합의 자립기반 역량도 약화

나. 기본방향

o 협동조합 기능 확립을 위해 산주·임업인 중심조직으로의 산림조합 역할 강화

o 변화된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산림경영지도 기능 강화

o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조합별 금융·특화사업 강화 추진

o 부실우려조합의 경영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정상화 달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조합원 확대를 통한 산주·임업인 중심의 산림조합으로 정착

o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 친절서비스교육 강화

o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조합원 가입 확대 추진

- 이용고배당, 출자배당, 장학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 혜택 확대
- 대리경영, 임업기술지도 등을 통해 산주의 조합원 가입 유도

2) 산림경영지도원 역량강화 및 산림경영지도 품질향상

o 전문지식습득과 현장교육을 병행한 산림경영지도원 지도역량 강화

- 지도원 교육과정 평가 내실화 및 평가결과 성과관리에 반영
- 특화품목지도원 부품목 전문지식 함양 여부를 성과관리에 반영
- 학습동아리, 국립산림과학원 및 학계와 연계하여 전문능력 배양

o 산림경영지도원의 사기 앙양 및 산림경영지도 품질향상 추진

- 산림경영지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원 배치 조정 및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자 선발 및 분야별 우수자 포상

o 아날로그 방식 이외 영상물, 사이버상담 등 경영지도 방법의 다양화

- 각종 조합 행사에서 사유림경영 안내 동영상('13.8월 제작) 시청

o 임업인 기술지도 확대를 위한 특화품목지도 광역단위 시범운영(전북)

3)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o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o 지역 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o 금융업무 전문성 및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 내외부 전문교육 : ('13) 2,006명 → ('14) 2,000명
- 고위험 조합 조기 인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
- 잔액통보제도, 직원간 상호견제제도 등 내부통제 제도 강화 추진

4) 사유림의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대리경영사업 적극 추진

o 대리경영 계약면적 확대 및 계약임지 우선 사업실행 추진

- 계약면적 : ('13까지) 565천ha → ('14까지) 595천ha(증 30천ha)
- 사업실행 : ('13까지) 45천ha → ('14까지) 65천ha(증 20천ha)

o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주들을 대상으로 대리경영 참여 유도

o 산림의 수익 창출을 위해 대리경영방식을 도입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에 적극 참여

5) 지속적인 경영구조개선 및 특화사업을 통해 건실한 산림조합 육성

o 국고 지원 중단 후에도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부담으로 경영개선 지속 추진

o 자금 지원받는 조합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o 부실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상태 점검 및 지도강화로 경영위험 사전예방

o 조합원 보호, 조합경영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별로 외부감사제도 추진
  - ('13) 1,000억 이상 → ('14) 700억 이상 → ('15) 500억 이상

o 산림조합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지속 추진
  - ('13까지) 29조합 → ('14) 4조합
  -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연초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6) 임업분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임업인연수원 조성

o 산림경영기술 선진화 및 임업발전을 선도할 임업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교육시스템 구축
  - 3년간('12~'14) 총사업비 200억원(국고 134억원, '14년 57억원)

o 개원에 대비 산주·임업인을 위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운영계획 마련
  - 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기자재 등 구입, 홍보

라. 추진일정

o 특화품목지도사업 광역단위 시범운영 설명회 개최 : 2014. 1월

o 특화품목지도사업 광역단위 시범운영 성과 평가 : 2014. 상·하반기

o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추진 성과 평가 : 2014. 상반기

o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참석 : 분기 1회

o 산림경영지도사업 지도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2014. 6~7월

o 2015년도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자체 공모선정 : 2014. 9~10월

o 산림경영지도 사업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014. 10~12월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임산물 품목별 규모화·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

o 산림작물생산단지 : ('13까지) 140개소 → ('14) 15개소, 120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 : ('13까지) 40개소 → ('14) 12개소, 36억원

* 맞춤형산업화단지 : ('14) 표준모델개발 및 사업지 조사(2개소), ('15) 시범사업

◇ 한·중 등 FTA 대응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 식품 안전성 관심고조, FTA 시장개방

o (대내여건) 생산규모 영세 및 시설 낙후, 생산지역 분산 등으로 경영여건 열악

나. 기본방향

o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경쟁력 강화로 임가소득 증대 도모

o 임업인 개별 지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규모화 유도

o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o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FTA 대책반에 임업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추진하여 임업분야 정책을 적극 반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집단화·규모화 등 지원

o 품목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규모화·집단화(15개소, 12,000백만원)

o 사업 지원대상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 부산물류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작업로 시설, 감시 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 재배시설 등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o 맞춤형 임산물 산업화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

- 특화된 품목 중심으로 재배단지, 테마공원, 체험장, 유통・판매장, 전시 홍보관 등 융합된 산업화 단지 조성

  * ('13) 기본구상・조성계획 수립 → ('14) 표준모델개발 및 사업지 조사(2개소) → ('15) 시범사업 → ('16년 이후) 확대

2) 임산물 생산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o 수실류, 관상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증대 도모(4,913백만원)

- 밤나무 노령목관리, 병해충 방제장비, 친환경 방제(포충등, 성페르몬 등), 생산장비(굴삭기, 4륜 오토바이, 선별기, 밤수확망 등), 관수시설, 작업로 등

o 수령이 노후화되어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를 고소득 대체작목(수실류, 산채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작목 조성사업비 지원(1,820백만원)

o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 토양 개선을 위한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청정 임산물 생산증대 도모(1,748백만원)

- 밤 504천원/ha,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4,750천원/ha 지원

o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기술교육 등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

- 원목・톱밥표고 생산시설 지원 및 우량종균 공급, 연중 재배시스템 구축(11억원)

- 재배기술교육 및 정보지 발간 등으로 기술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연중「표고 재배반」운영(초급반, 전문가 양성반)

- 남부권(나주) 표고톱밥배지센터 조성으로 톱밥배지 안정적 공급(10억원)

  * '12년 표고현황 : (생산) 4,424톤(건표고 기준), 2,083억원, (수출) 179톤, 2,948천$

3) 목재생산과 연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o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 및 약초・약용수종 등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복합경영 확대(12개소, 36억원)

-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 지원내용 : 숲가꾸기와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시설 등

o 현실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지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 및 시공감리 시범사업 추진

  * 품종선택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

4) 산림소득사업지 점검・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모색

o 주요 임산물생산단지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작물생산단지('12년까지, 107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12년까지, 24개소)

o 잘된 사례와 미흡한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5)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정착 및 관련제도 정비

o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생산과정확인제도' 정착 및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검사비용, 포장자재비 등 지원(1,124백만원)

- 종자·종묘, 재배, 생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배이력시스템 운영
- 생산과정 기록 의무화 및 매 3년이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전문기관 확인
- 생산이력 과정 참여 재배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강화
- 생산과정 이력 관리, 품질검사 강화 및 품질표시 의무화
-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검사 등 비용 지원
  * 총 1,124백만원(생산적합성조사 380, 품질검사 240, 포장자재비 504)

o 산양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신고센터 운영

- 산양삼 테마랜드 조성(영주, 50억원)으로 산양삼 위상 정립 및 재배기술 확대 보급
  * 임산물교육센터 운영 : '13년 2개소(평창, 영주), 3개반 100명 교육
- 산양삼 품질 규격의 국제 표준화 및 외국산과 구별 요령 홍보
-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산양삼 바로 알리기 운동' 전개

o 가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규격·등급기준 등 정립
  * 산양삼 고부가가치를 위한 표준규격 정립 등에 대한 연구

6) 표고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씨드 프로젝트' 수행('21년 까지)

o '21년까지 품종보호·수입대체용 표고 신품종을 개발·상용화하여 자급률 60% 달성 및 수출 100만 달러 달성
  * 우리 청 구성 : 국립산림과학원, 산조중앙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경상대, 단국대 등
  * 정부 총 예산 : 4,897억원(정부 3,985, 민간 912) * 우리 청 100억원('21년 까지)

7)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지원과 홍보 강화

o 청정임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웰빙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임산물 지원 품목 확대(눈개승마 등)
  * 소득지원대상 품목('12.1.26) : 수실류·버섯류·산채류 등 90품목

o 임산물 수요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 지원

- 한국분재대전, 대한민국난대전, 산양삼 전시회, 잔디세미나 등

o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의 다양화 및 지원 강화

- 식품 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8) 한·중 등 FTA 대응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o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13~'17년)」 이행 후속사업 추진

- 임산물 재배 규모화를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확대
- 임산물 주요 생산지와 연계한 산업화단지 조성(군위·청도, 20억원)
- 임산물의 저장·가공기술 개발 및 식품 소재화 연구('13.6.~'16.6, 16억원)
  * 수실류(밤, 떫은감, 대추, 복분자 등) 및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
- 첨단재배시설 리스제도 도입 및 고부가가치 신기능 물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임산물재배시설을 국가(지자체)에서 시설하여 귀농·촌 및 소자본 임업인 등에게 임대
  * 한·중 FTA 체결로 수입증가와 생산액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

o '농업인 지원위원회' 등에 임업전문가를 포함시켜 임업분야 적극 반영

-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임업전문가 포함('14. 2월)
  * 임업전문가 포함 합의('13. 11월), 임업전문가 추천('14. 1월), 위원회 재구성('14. 2월)
  *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등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 임업분야 적극반영
-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에 임산물반이 구성되도록 하여 임업분야 대책 마련
  ·(1단계 : '14. 6월까지) 총괄반, 농업반, 수산업반
  ·(2단계 : '14. 6월이후) 총괄반, 농업반(임업반), 수산업반, 제조업반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대책반에 임업분야도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

라. 추진일정

o 일선 시·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2014. 1월

o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임업전문가 포함 추진 : 2014. 1월

o 일선 시·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2014. 1월

o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임업전문가 포함 추진 : 2014. 1월

o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단속 실시 : 분기 1회

o 한·중 FTA 대책반 임업분야 구성 추진 : 2014. 2월

o 산양삼 테마랜드(영주) 조성 : 2014. 2월

o 남부권 톱밥배지 센터(나주) 조성 : 2014. 2월

o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2014. 3월

o 임산물 지원 품목 확대 : 2014. 5월

o 표고재배기술 교육 : 2014. 1~12월(월 1회)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2014. 6월

<붙 임>

2014년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2014예산안		형 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30,512		35,206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농특】		27,519		32,701		
- 표고종균생산연구지원	3종	2,310	1종	1,100	보조	100:-:-:-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12종	4,233	12종	4,193	보조+융자	20:20:20:40
- 친환경토양개량 사업지원	6,589ha	2,658	4,333ha	1,748	보조	70:20:-:10
- 밤나무대체작목조성	325ha	910	650ha	1,820	보조	40:20:-:40
- 산림작물생산단지	12개소	12,000	12개소	12,000	보조	40:20:-:40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6개소	300	6개소	240	보조	50:50:-:-
- 산림복합경영단지	9개소	4,500	9개소	3,600	보조	40:40:-:20
- 산양삼테마랜드	1개소	257	1개소	5,000	보조	100:-:-:-
- 임산물산업화단지(군위, 청도)	2개소	320	2개소	2,000	보조	50:40:-:10
- 톱밥표고 배지센터	-	-	1개소	1,000	보조	50:20:-:30
o 산림재해복구지원【농특】		2,993		2,505	보조+융자	

26. 단기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목 표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o ('13까지) 79개소 → ('14) 8개소, 35억원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임산물 브랜드화 추진
o ('13까지) 46품목 → ('14) 4품목, 19억원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계 성장 등으로 임산물 유통 여건 악화

o (대내여건) 전문유통조직 부재, 소규모 분산생산, 다단계 유통경로 등으로 유통비용 과다 및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o 임산물의 수집·저장·건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o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및 명품 브랜드화 지원

o 임산물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촉진을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강화

o 임산물 수급 안정 및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유통종합정보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강화

o 산지 임산물의 수집·저장·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지원
- 임산물산지유통센터(신설) : ('13까지) 79개소 → ('14) 8개소, 3,250백만원
- 임산물산지유통센터(보완) : ('13) 250백만원 → ('14) 250백만원

o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 개선,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 155개소, 1,860백만원

o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박피기, 탈삽제 등 임산물 기계화 가공 지원
- 임산물 가공지원 : 640대, 640백만원

o 유통효율성 제고 및 청정임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탑차 지원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42대, 168백만원

o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유통센터별 유통경로·운영실태 파악 및 경영상태 분석
- 복합 거점지역에 다품목을 취급하는 거점 임산물유통센터 설치 검토
- 유통센터 경영컨설팅 예산반영 추진 및 우수 유통센터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센터에 대한 원료구입 자금 지원 확대(50 → 100억원) 및 담보 제공기간 확대(6 → 10년)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 ·미승인 근저당 해지촉구 및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을 시 보조금 반환 추진
  - ·지도·점검(연1회 → 3회 이상) 및 등기부 등본 열람(분기별 1회 이상) 강화
  - ·신설 유통센터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채권보전 대책 추진

2)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상품화 및 브랜드화 지원

o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상품화 개발 지원

- 임산물 상품화 : 153개소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8개소 500백만원

o 지리적표시 및 친환경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 12개소, 720백만원

o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을 발굴하여 지역별 향토 브랜드화 추진

- 지리적인 특성, 명성, 역사성, 품질관리 등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강화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별로 등급(A~E) 부여 및 DB구축으로 사후관리강화
- 지리적표시품 홍보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실시(농식품부 합동)
- 지리적표시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등록단체 운영실태 수시 지도·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확대 : ('13까지) 46품목 → ('14까지) 50품목

o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유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한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 변경된 한국산업규격(KS) 체계에 맞추어 포장규격 코드 변경
- 임산물 표준거래 단위품목 확대 및 확대품목에 대한 임산물 등급규격 추가
  - · 떫은감, 석류, 복분자, 산딸기, 다래, 꽃송이버섯, 산수유, 곤드레, 오미자, 구기자 등

3)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를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지원

o ‘e-숲으로’와 ‘푸른장터’를 통합 운영하여 임산물 소비촉진 시너지 효과 거양
  - 임산물 쇼핑몰 직거래장터 운영 : 49백만원

o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판매 및 전시·박람회 등 행사 지원 : 450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임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소비촉진 직거래 행사 추진
  - 우리 임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등 지원 및 식품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

o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성수품 공급기간 동안 임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특별대책반’ 운영
  - 산림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절 성수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산림마트, ‘푸른장터’ 등을 통한 성수품 특별판매 행사 실시
  - 성수품 공급기간 중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산림청·지자체·농관원 합동)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임산물유통종합정보 제공

o 유통정보 제공 및 직거래 촉진을 위한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조성
  - 판매장, 전시장, 체험장, 저장 및 가공시설 등 설치 : 86백만원(설계비)

o 임산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및 수출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임업관측 정보 제공
  - 임업관측 : 6품목(밤, 표고, 떫은감, 대추, 관상수, 산채류), 600백만원

o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임업관측 대상인 떫은감, 산채류, 조경수 등 3개 품목은 「농안법」 상의 임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포함되도록 개선

o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산물 종합정보 제공 : 352백만원
  - 임산물 쇼핑몰, 직거래정보, 가격유통정보 등 서비스 제공

o 우수하고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마련
  - (’13까지) 54품목 → (’14) 4품목(고려엉겅퀴, 잔디, 병품쌈, 만삼 등)

o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소득운영지원시스템’ 개선
  - 산림소득사업 D/B를 시·군·구별로 일괄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라. 추진일정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실태조사 및 경영분석 : 2014. 1분기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도점검 : 2014. 3~4분기

o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 2014. 1월

o 명절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2014. 1월, 9월

o 임업관측 법적근거 마련(농안법 개정) : 2014. 2분기

o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 관리실태 점검 : 2014. 3분기

o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연중

o 산림소득사업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 연중

<붙 임>

2014년 임산물유통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		2014예산안		형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o 임산물유통지원【농특】		9,365		9,658		
- 임업관측	6품목	600	6품목	600	보조	100
- 임산물유통DB운영	1식	352	1식	352	보조	100
-「e숲으로」임산물직거래장터 운영	1식	49	1식	49	보조	100
- 임산물소득소비촉진	1식	150	1식	450	보조	100
- 분재 등 산업활성화	1식	300	-	-	-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7개소 (보완)5개소	3,000 250	(신규)8개소 (보완)5개소	3,250 250	보조	50:20:-:30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유통차량)	49대 (냉동 28) (일반 21)	250 (168) (82)	49대 (냉동 42) (일반 -)	168 (168) (-)	보조	(당초) 30:20:-:50 (변경) 20:20:-:60
- 임산물 상품화지원	161개소 (일반153) (특별 8)	1,233 (733) (500)	161개소 (일반153) (특별 8)	1,233 (733) (50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명품브랜드화	12개소	720	12개소	720	보조	40:20:-:40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2개소	1,826	155개소	1,86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 가공지원	635대	635	640대	64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 유통종합정보센터	-	-	1개소	86	보조	50:-:-:50

27. 임가 소득 안정망 구축

목 표

◇ 자연재해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 품목확대 및 단가인상

o ('13까지) 34 → ('14) 40품목(6 추가), 현 지원품목 단가 인상

◇ 소득안정망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o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13~'14) 및 보험 확대('15년 이후)

◇ 임산물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원스톱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

가. 정책여건

o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생산시설·작물의 피해 증가

o 생산시설·작물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체계 미흡

o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복잡한 재해피해 신고·지원체계로 주민불편 증가

나. 기본방향

o 임산물 재해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 품목확대 및 단가 현실화로 임가 경영 안정 도모

o 자연재해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재해보험 등 제도도입

o 재해피해 신고체계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연재해 피해보전을 위한 복구지원 품목확대 및 단가 현실화

o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체계 정비

- 현장여건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연재해 복구지원 대상품목 및 범위 확대
  ·('13까지) 34품목(9품목 추가) → ('14추가) 6품목(복분자 비닐하우스, 꽃송이버섯, 산마늘, 참나물, 긴강남차, 마 등이 대상)

- 산림시설·작물의 재해피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추진
  · 재해보험 품목, '12년 인상·신설 등으로 '13년에 인상되지 않은 11품목 대상으로 추진(대추비가림시설 5품목, 야생화, 약용류, 머루, 다래, 산양삼, 약초류)

<2013년 재해복구 단가 조정 결과>
* 품목확대(9품목) :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표고톱밥배지, 은행, 임업시설 철거비, 농약대 5품목
* 단가인상(8품목) : 도라지, 두릅, 잔디, 조경수·분재, 호두, 더덕, 취나물(25품목 평균 26% 인상)

o 단가 현실화를 위해 정확한 시설비, 시장가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로 적극 대응
- 시·도, 산림조합버섯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임산물 및 임업시설 단가 자료조사 등 요청 및 협의·대응자료 구축(1월까지)
- 복구비용 조정 협의자료 구축 및 산정기준 조정(안) 제출(2월말까지)
- 단가 상향 및 신규 품목반영을 위한 소방방재청·기획재정부 협의(3~6월)
- '14년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 및 관계부처 합동고시(7월초)

<복구지원 기본단가 조정절차>

조정계획 수립·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품목별 복구 실소요액 파악 및 대응 자료 구축	복구비용 조정안 제출 (소관부처)	중대본·기재부 협의 (각부처)
중대본 → 16개 부처(1월초)	산림청 → 지자체 등((1월)	각 부처 → 중대본(2월말)	(3~6월)

협의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검토후 조정내역 통보 (중대본)	관계부처 단가 합동고시	단가 확정 및 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정부 → 중대본(6월)	중대본 → 각 부처(6월말)	방재청,농림부,산림청 등(7월초)	중대본 → 소관부처·지자체(7월)

2) 소득안정망 구축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도입 및 지원확대

o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임산물을 분리한 재해보험 시스템 구축·활성화
- 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추진('12. 7~'14. 3, 330백만원, 보험연구원)
  · 임목 보험 적용방안 및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방안 연구 등
- 재해보험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43억원, 산림조합중앙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DB구축, 업무분석 보험설계 등

o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보장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
- 보장비율이 70% 품목(밤, 대추, 복분자, 표고)을 선택형(70%, 80%, 85%)으로 변경 추진
  * 보장비율 : 특정위험방식(70%, 80%, 85% 중 선택), 종합위험방식(70%)
  ✓ 특정위험방식 : 주계약(태풍, 우박) + 선택(동상해, 호우, 수목)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자연재해
  · 특정위험방식(떫은감), 종합위험방식(밤, 대추, 복분자, 표고)

o 소득 담당자 교육, 생산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보험관련 교육으로 가입률 제고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구 분	가입임가	비율	가입면적	비율	'13년 보험료
떫은감(본사업)	3,113/27,188	11.4%	2,226/11,875	18.7%	3,824백만원
밤(본사업)	45/12,411	0.4%	188/42,469	0.4%	19 〃
대추(시범)	1,111/3,551	31.3%	532/1,940	27.4%	1,838 〃
복분자(시범)	317/5,026	6.3%	83/1,621	5.1%	119 〃

* 표고는 '13. 11월부터 시범사업(시범사업 : 주요생산지에서 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본 사업 전환)

3) 임산물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원스톱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

o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등 14부처가 협업하는 '원스톱서비스' 적극 추진

- 자연재해 발생시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등으로 임가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경영 복귀 유도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소방방재청,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o 지자체 등 산림분야 원스톱시스템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시군 산림부서, 산림조합의 재난지원금, 융자금 등 지원체계 현장 확인

o (종전) 피해주민이 개별법에 따라 15개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 초래

  * 건축과, 농산과, 수산과, 산림과, 경제과,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o (개선) 피해주민이 1회 신고로 재난지원금, 융자, 세제 등 7개 분야 일괄 지원

라. 추진일정

o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안) 제출 : 2014. 2월

o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 2014. 3월

o 자연재난 재해복구 복구비용 현실화 및 품목확대 : 2014. 7월

o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 2012. 7월~계속

o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원스톱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 2014. 8월

28.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목 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 o 훼손 등산로 정비 : 974km, 19,300백만원
- o 등산로 연결사업 : 4개소, 2,800백만원
- o 트레킹길 조성사업 등 : 298km, 11,749백만원

가. 정책여건

- o 쾌적한 산행문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낙후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조성 수요 증대
- o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걷기와 등산에 대한 수요 증가
- o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길이용 활성화 전망
- o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조성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및「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 o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 보전과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물 설치, 훼손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o 숲길의 노선선정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며,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o 숲길 노선의 수평적 선형을 유도하여 보행활동에 제약을 가진 이용객도 산림휴양의 공익적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o (국가숲길) 5대 트레일 및 5개 둘레길, 백두대간·정맥 및 100대 명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관리

- 국가숲길 : ('13까지) 1,840 → ('14) 150 → ('21까지) 6,785km
  * 국가트레킹길(69㎞) : 백두대간·낙동강풍경 트레일, 속리산·한라산둘레길 등
  * 국가등산로(81㎞) : 백두대간, 한북·한남금북·낙동정맥 등

o (지역숲길) 도시근교, 마을뒷산 등 생활권을 기반으로 숲길 조성·정비

- 지역숲길 : ('13까지) 6,643 → ('14) 1,092 → ('21까지) 14,334km

o (조성 및 운영·관리)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숲길의 경사도·보행편의 정도에 따른 이용등급 난이도 구분 및 안내체계 개선 시범운영

- 담당자의 업무역량 제고 및 숲길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추진
- 숲길의 이용등급 구분 연구용역에 따라 지리산·한라산 둘레길 시범적용 운영

1) 훼손 등산로 정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계	973.9	19,300		
국가등산로	81.0	2,147	직접, 보조	직접 54, 보조 27
지역등산로	892.9	17,153	보조	

< 대상지 선정 >

o 백두대간 및 정맥 등산로 구간 중 이용자 증가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과 민원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 우선 선정

o 100대 명산,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 등 이용객이 집중되어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선정
  * 지방산림청 소관 사업은 국유자연휴양림 구역과 연계된 등산로 정비 포함

< 사업 추진방향 >

o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을 고려한 설계 추진

- 동일 노선은 숲길관리청별로 설계 단계부터 협의하여 유역 완결 추진

o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 가급적 친환경 소재와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과다한 구조물과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o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재해 취약지 등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급경사로 훼손이 반복되는 구간은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 반영 및 재해 예방 시설의 집중 설치
- 산행사고 빈발 지역은 사고내용에 대한 안내판 및 간이 구급함 설치

o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등산객의 조난 대비 신고처(좌표 등) 등을 표기한 위치 표지판 설치
- 정비, 보수 등을 위하여 표지판은 위치데이터(GPS)로 유지·관리
- 안내판, 표지판 등 설치 시에는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
- 금년도 사업지는 안내판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설계반영 추진)
  * 기존 안내판은 스티커형 부착 가능하며, '15년도 설치대상 물량 파악

o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완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 관내의 등산로 현황과 관리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숲길 관리청별 노선거리 20㎞이상 등산로는 안내센터 설치·운영
-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등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만족도 제고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설계, 시공) 현장심의회 구성·운영

2) 등산로 연결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등산로 연결	4	2,800	보조	

< 대상지 선정 >

o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우선 필요한 대상지 선정

-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14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반영

< 사업 추진방향 >

o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o 보행가교형은 아치교량 형태의 케이블공법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며,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o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설계부터 반영하고 당해연도 행정절차 이행 추진

-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

o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의 네트워크 구축

-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 도입

- 주요자재는 이용객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

o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품질향상 노력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사업 명칭과 산림청 지원사업 명시

3) 트레킹길 등 조성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계	298.3(2식)	11,749		
국가트레킹길	68.9	1,395	직접, 보조, 위탁	직접 27, 보조 41.9, 위탁 9
지역트레킹길	199.2	5,128	보조	
레저스포츠길	20.0	750	보조	
휴양·치유숲길	10.2	3,426	직접, 보조	직접 0.5, 보조 9.7
탐방로 조성	2식	1,050	보조	

< 국가트레킹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o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o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및 낙동정맥 CI 개발	2011	경북
o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o 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o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경북)
o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2	강원대
o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3	숲산사 산림기술사사무소(전남)
o 속리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3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
o 팔공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4	대구(예정)

< 사업 추진방향 >

o 트레킹길 노선선정 기본원칙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고, 기 조성된 트레킹길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o 국가트레킹길의 일관된 정보제공 및 연결을 위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예정인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 선정·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 DMZ펀치볼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라산둘레길은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을 기본으로 기 조성된 숲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점지역별 안내센터 설치, 고유 CI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팔공산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수립하고, 차년도부터 해당 시·도에서 예산반영 사업 추진
- 속리산둘레길,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낙동강 풍경트레일 등은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o 고도화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길 이용자의 이용여건을 배려하여 경사도, 보행편의 정도, 난이도 등을 구분한 이용등급을 안내판에 포함 설치

⇧ < 트레킹길 안내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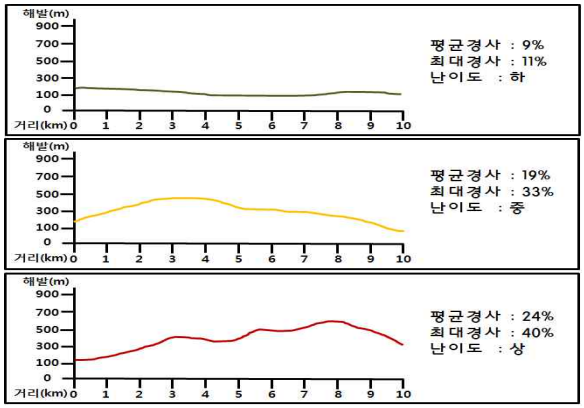

< 숲길 난이도에 대한 예시 > ⇨

o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안내시설 설치

- 안내시설에는 사업명칭과 산림청 로고를 반드시 표시

o 조성 완료된 내포문화숲길과 일부구간 완료되는 트레킹길은 개통식 및 걷기 행사를 추진하여 숲길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o 기타 휴양·치유숲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조성 등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하고 자체 유지·관리 실시

o 타 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는 길'과 중복 노선 배제

- 타 부처(지자체)에서 산림내를 통과하는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등 의견 요청 시 숲길 노선을 반드시 확인

라. 추진일정

o 숲길사업계획 수립·배부 : 2014. 1월

o 숲길 시책회의 개최 : 2014. 1월

o 숲길 실태조사 : 연중

o 숲길관리청별 특별현장책임관 지정 : 2014. 5월

o 숲길 걷기행사 : 2014. 상반기

o 숲길 현장모니터링 : 2014. 6월·11월

o 숲길 걷기행사 : 2014. 하반기

o 숲길 조성 완료 : 2014. 하반기

o 숲길 이용 만족도 조사 : 2014. 4분기

o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제출 : 2014.12.31일까지

o 2014년도 숲길사업 추진결과 제출 : 2015. 1월

29.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목 표

◇ 청소년·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행문화 보급과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 도모

o 등산·트레킹학교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o 민간단체와 클린활동 등 협력강화를 통해 산행문화 개선

◇ 숲길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서비스 증진으로 만족도 제고

o 숲길안내센터 및 산악구조대 운영, 숲길 안전대책 추진 등

o 숲길체험지도사(236명, 12,021백만원)를 통한 산행서비스 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o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체제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산행수요 발생

o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지속증가

- 산악사고 구조건수 : ('09) 7,096 → ('10) 7,718 → ('11) 7,825 → ('12) 8,602건

o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참여 기회제공 부족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악구조 활동 구축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o 올바른 산행 유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등산관련 정보 및 양질의 산행 안내서비스 제공

o 숲길훼손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의식수준 제고

o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DB 구축

o 올바른 산행방법 등 건전한 등산문화의 체계적인 보급·지원

o 산악구조 활동의 민·관 공조체계 유지 및 교육훈련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등산・트레킹 학교 운영

o 교육기간 : 2014. 3 ~ 11월(9개월)

o 교육인원 : 1,500여명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사료, 보험료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원 조정

o 교육과정 : 청소년과정, 백두대간・DMZ 생태탐방과정 등

o 사 업 비 : 280백만원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악구조대원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는 하반기에 산악구조 교육 및 훈련(20명 계획)

*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기 조정 가능

o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교육인원 : ('12) 600명 → ('13) 600명 → ('14년 계획) 600명

o 제14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과정 운영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교육과 백두대간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산림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

- 대 상 : 중·고등학생

- 기 간 : 2014. 7월 말~ 8월 초

- 장 소 : 백두대간(684㎞) 약 10개 권역

- 참가인원 : 약 300명

- 참여방법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msc.kr)를 통해 공고(6월 게시 예정)

* 지원 협조사항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 협조 및 인력, 차량, 야영장 등 협조·지원

o 교육의 성과제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별도 실시

- 전과정(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제외)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4.1.1.~12.31
- 사 업 비 : 702백만원(운영경비 175, 조사·홍보사업비 527)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산악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추진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숲길체험지도사 교육 및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실행
  * 관련단체 : 한국산악회, 한국트레킹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 (사)숲길 등

o 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2012)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및 자립기반 구축
-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 센터가 등산·트레킹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확대

o 숲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국 걷는 길 DB 구축 및 정보 공유화 추진
- 전국 걷는 길 네트워크 구축 및 숲길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연차별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o 유관 기관 및 기업, 산악단체 등을 활용한 등산로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이용도가 높고 특색 있는 등산로는 민간단체를 이용한 사후관리 도모
- 지자체별 등산단체를 활용하고, 관내 등산로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
- 숲길관리청별로 관내의 등산로를 선별하여 단체 등과 협약 체결

o 자생 산악단체에 주요 산행정보 공유 및 숲길관련 공모사업 추진
- 「숲에 On」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산행정보 공유 및 정책고객 운영 활성화 도모
  · 산악단체 사후관리를 통해 숲길정책 사업의 서포터로 활용
- 숲길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과 산사진 공모전 등 전국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숲길관련 공모사업 추진

o 청소년, 사회소외계층이 참여하거나 다수의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적 성격의 등산·트레킹문화사업 확대

o '13년도 성과를 분석한 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기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신규사업 발굴

o 산악회 등 등산·트레킹 관련 단체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 지속 수행

3) 숲길 안전대책 추진

o 숲길관리청별로 숲길 안전관리대책 마련·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5항에 근거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근거

o 숲길관리청 및 숲길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등 24시간 상황유지 유관기관 및 지역숲길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보 공유
-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강화
  -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각 숲길 관련 사이트에 '산행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 게재
  -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119상황실과 산림항공구조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악사고 구조 활동 전개
  - ·주요 숲길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o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숲길관리청은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사항 기록 유지
- 숲길체험지도사(236명) 등을 활용하여 숲길별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순찰
- 지역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산림보호협회 등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 거점 마을별 자율방범조직 구성·운영
-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 등 보수·보완 및 추가 확충

o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의 효율적인 운영

-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 산림재해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숲길의 일시적 이용 통제

o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에 설치된 안내판, 이정표 등에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번호판 설치
- 기 조성된 등산로 860개 노선 4,149km, 트레킹길 5개소, 493km 우선 설치

4) 산악구조대 운영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공중, 산림항공본부) >

o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제출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참여
  * 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산악구조대원반 교육 수행
-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가을철 및 공휴일·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 산행안전지원대 운영(지상, 숲길관리청) >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숲길관리청별로 운영
  * 숲길체험지도사, 기타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통해 편성 방안 등 구상

o 산행안전지원대 운영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관리 도모

- 세부적인 운영 관리는 별도 제공하는 운영 지침을 통해 사업추진

< 민간산악구조 활동의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

o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 구조협회 : 1본부 16개 시·도 연맹소속 민간구조대 운영(17개대 600명)
- 해외(중·일) 산악구조대와의 합동훈련에 교류 참여(산림항공구조대)
-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 대처

o 제5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10월, 500명)

o 산악구조 활동 결과자료 관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발

- 2014년 산악구조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5) 숲길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안내센터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

o 숲길관리청은 20km 이상의 숲길에 숲길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숲길 운영·관리 계획(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 포함) 수립 추진

o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 ('13까지) 13개소 → ('14) 2개소(내포문화 숲길)
-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숲길안내센터의 민간분야 투자 시범 도입

o 주요 사업내역

주요내용	세부내역
숲길의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	o 각종 재해 조사·보고 및 소규모 복구, 노면 배수로 정비, 숲길주변 풀베기, 안내판 정비, 안내판 설치, 기타 시설물 정비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o 숲길 이용정보 및 편의시설 등 제공 o 숲길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산행 및 안전교육 o 숲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추진 o 홈페이지 운영, 예약제 운영(필요시) o 각종 재해대비 숲길의 일시 이용중지 안내 o 숲길관련 협의체 운영(정기, 수시)
트레킹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연 1회 이상 숲길 걷기행사 개최 o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 도모 o 청소년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트레킹길 모니터링	o 숲길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o 숲길에 대한 이용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o 지역주민·이용자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소 등 o 숲길 노면 및 주변환경, 불필요한 샛길 등의 분기, 시설물 노후화, 위험요소 등 정기·수시 점검

6)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운영 및 전문성 강화

o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숲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치·운영

- 운영 계획 : 236명(지방청 등 45명, 지자체 191명)

o 100대 명산과 기 개통·운영 중인 트레킹길의 숲길안내센터에 우선 배치

-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의 숲길에 대한 GPS 좌표 보완조사 및 현재까지 미 조사된 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숲에 On」에 자료 제공)
- 기 개통·운영 중인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지원

o 숲길체험지도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담은 표준교재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용역 추진)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신규 용역사업으로 추진

o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

- 교육일정 : 2014. 2~4월중
- 교육인원 : 기당 40명(6회)
- 교육기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7)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숲길이용 문화 정착

o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등 지역 산악단체 참여 활성화
- '트랭글 숲길보안관', '대학생 봉사활동단체(UPP)와 클린활동·캠페인 전개

  * 과도한 산행열풍 및 과시를 위한 고가 아웃도어 열풍 자제

o 숲길 이용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해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

-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시범 운영

o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이용객과 함께 숲길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재미있게 안내하여 숲길 주변의 역사성 재조명

  * 예) 숲길별 구간명칭을 '남명 조식의 길', '화해와 상생의 길', '묵언의 길' 등

o 숲길인증을 위한 대상, 조건, 평가 및 인증방법, 사후관리 등 '13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숲길인증제도 도입 시범운영(지리산둘레길)

- 숲길의 공간요소, 운영 및 관리, 지속가능성 등 물리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세부 요소별로 평가하여 인증실시

  * 숲길인증제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15년도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반영 추진

8) 숲길 품질향상을 위한 '숲길등산정책' 연찬회 개최

o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숲길 품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숲길등산정책' 연찬회 개최('14. 11월경)

라. 추진일정

o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계약 체결 보고 : 계약체결 즉시

o 2014년도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14. 1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위탁 계약 : 2014. 2월

o 숲길체험지도사 위탁교육 : 2014.2～4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2014.3～11월

o 등산・트레킹학교 만족도 조사 : 2014. 6월

o 트레킹길 운영・관리 상반기 실적보고 : 2014.7.15일까지

o 제14회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 2014. 7～8월

o 제5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 : 2014. 10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결과 제출 : 2014. 12월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업 추진 : 연중

o 2014년도 트레킹길 운영・관리 실적보고 : 2015.1.15일까지

30.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사업

목 표

◇ 세계 산악강국으로서 위상제고 및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전시·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운영

o 건축공사(시공 3년차) 및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 7,205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세계 최고의 산악강국임에도 등산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유물 관리 미흡

o 산악단체 및 산악인들의 전시·교육·정보 제공 등 구심체 역할 필요

o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시·홍보를 위한 공간 부재

나. 기본방향

o 우리나라 산악메카로 육성하여 등산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입지 구축

o 등산·트레킹 교육·체험·정보전달 등 복합 문화시설 기능 수행

o 관련 유물·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기록·전시 등을 통해 산악강국의 면모 강화

o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완료 및 전시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개관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현황

o 예산현황 : 15,001백만원(건축 10,489, 전시물 2,870, 감리 569, 기타 1,073)

o 공사기간 : 2012.10.12.~2014.5.14(3차 공사 : '14.2.~'14.5.14)

* 연도별 예산 : ('10~'11) 452 → ('12) 2,924 → ('13) 5,119 → ('14) 6,506백만원

2) 건축공사

o 2013년도 건축공사(2년차 시공) 추진

- 시 공 사 : ㈜삼부종합건설사무소

- 공사기간 : 2013.6.19.～2014.2.28.
- 공사금액 : 6,765,390천원('12년 준공 1,499,022천원, '13계약 2,7212,260천원)
  * 관급자재 별도 : 1,879,288천원(2차 예산 1,265,116천원)
- 건축(토목, 조경 등) 외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사업 추진
  * 관급자재 별도 : 634,417천원(2차 예산 164,250천원)

o 2014년도 건축공사(3년차 시공) 추진
- 사업예산 : 2,554,108천원
- 건축(토목, 조경 등)은 2차년도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조경)시설 위주 시공 추진
-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 사업 추진(258,984천원)
  * 3년차 도급계약은 1분기에 계약체결토록 감독관(조달청)과 협의

o 사업예산에 맞추어 건축공사 3년차 시공계획 등 조치
-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포함) 및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를 상반기 완료하고 개관을 위한 시범운영 등 조치
- 3년차 도급계약을 조기 발주하여 기간에 차질 없도록 준공

o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약정기관 : 조달청(공사감독 :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
- 금　　액 : 162,690천원('11년～'14년)
  · 수수료 집행 : ('11～'12) 100,000천원 → ('13) 30,000천원 → ('14) 32,690천원
- 공사 전반에 대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이행으로 관리감독 강화
- 감리계약을 통해 시공관리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도모

3) 전시물 제작·설치

o 2013년도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 시 공 사 : ㈜시공테크
- 공사기간 : 2012.10.12.～2014.5.9.(2차년도 : 2013.6.3.～2013.12.31)
- 계약금액 : 2,870,000천원('12년 설계[준공] 208,725, '13 계약 200,000천원)
- 영상 시나리오 구성, 소장품 구성, MI개발, 영상 홍보물 제작 등

o 2014년도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추진
- 사업예산 : 2,461,275천원

-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은 건축물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 기간 내 추진

o 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소장품·유물 수집 추진

- 전시 대상 선정 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복제 추진
- 개인 소장자 대상 구입 추진 및 단체·타 박물관 대상 기증·기탁 추진

o 산악박물관 시범운영 및 개관 기념식 준비

- 하반기 개관에 맞춰 전기·기계설비, 전시·교육 등 시범 운영
- 산악문화 확산을 위한 산악박물관 역할과 국내·외 박물관의 교류기여

  * 기념식행사 : 기증자 코너 개막식, 기증 특별전시, 심포지엄 개최

4) 시공감리 추진

o 2013년 국립산악박물관 조성사업 시공감리 추진

- 감리업체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기　　간 : 2012.10.12.~2014.6.13.(2차년도 : 2013.6.30~2013.12.26)
- 계약금액 : 568,500천원('12년 준공 226,235, '13 계약 179,836천원)
- 감리수행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 전시 제작·설치사업

o 2014년도 시공감리 추진

- 사업예산 : 162,429천원
- 기　　간 : 2014년(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맞추어 사업추진)

6) 박물관 운영·관리 기반 구축

o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박물관자료 확보 및 관리

- 소장품 대상으로 유물 심의 평가 후 박물관자료 선정 및 등재
- 종합유물관리시스템에 따른 분류체계 구축 및 등록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및 조직 구성

-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제정
  - ·관람, 대관,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전시실 관리에 관한 규정
  - ·박물관운영위원회, 유물감정평가위원 규정 등 제정
-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사업 범위 및 지침 마련
  - ·위탁사업 범위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발전방안 마련

- 산악박물관과 연계하여 국립등산학교 건립 등 사업 추진(확보부지 활용)
- 속초시립박물관과의 이용 동선을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안내표지판, 시티투어 등 속초시 협력 강화를 통해 이용성 증진

o 산악박물관 시범운영 및 개관 기념식 준비

- 하반기 개관에 맞춰 전기·기계설비 등 시범 운영
- 산악문화 확산을 위한 산악박물관 역할과 국내·외 박물관의 교류기여

  * 기념식행사 : 기증자 코너 개막식, 특별 강연회 개최

라. 추진일정

o 건축공사(시공 3년차) 도급계약 체결 : 2014. 1분기

o 산악박물관 건립 준공 행사 : 2014. 5월

o 건축공사(3년차 공사) 준공 : 2014. 상반기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제정 : 2014. 상반기

o 산악박물관 개관식 행사 : 2014. 10월

31.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목 표

◇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종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최고의 품질확보 추진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o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활성화 기틀 마련

나. 기본방향

o 자연환경자원을 산림치유와 연계하면서 훼손 최소화와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치유단지를 조성

o 연구, 치유,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

o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헌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백두대간 낙후지역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롤 모델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380억원(토지매입 372, 시설공사 918, 기타 90)
o 사업기간 : 2010～2015년(6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타, 산림치유연구센터, 치유마을 등

2) 시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

o 건축·토목·기계·조경·산림·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 공종별 공사 추진

- 공정계획, 일정계획, 진도관리, 통제·조정 관리로 공사의 품질향상 제고
- 공기준수, 품질확보, 원가절감, 안전확보, 환경보전 등을 통해 공기 내 완료
- 주간공정회의(매주 1회) 개최

* 공정율 : ('12) 5% → ('13) 20% → ('14) 57% → ('15) 100%

o 지장물(과수목, 분묘 등) 철거를 통한 원만한 공사추진 도모

o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해소

- 실무협의회 지속 운영(분기별 1회)

3) 자문위원회 활성화와 견본시설(Mock-up) 설치로 시공품질 향상

o 자문위원회 정례회의 개최(반기 1회)

o 목조건축물, 황토블록 건물, 단지내 숙박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견본시설을 실치하여 품질관리 철저

4) 산림치유단지 시설홍보 및 국민적공감대 형성

o 산림치유단지 홍보 및 체험용 전시시설 콘텐츠 개발

o BI, 슬로건, 네이밍 등 단지 종합디자인 및 포지셔닝 계획 수립

라. 추진일정

o 공종별 공사 추진 : 연중

o 시설공사 공정회의 개최 : 매주 1회

o 자문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

o 실무협의회 운영 : 분기별 1회

o 분묘 이장 : 2014. 4월까지

o 건축물 견본시설(Mock-up) 실시 : 2014. 하반기

o BI등 단지종합디자인 계획 수립 : 2014. 12월

산 림 보 호 국 소 관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목 표

◇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의 체계적 추진

o 산림소생물권(biotope) 관리 및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야생화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인간의 환경 파괴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생물다양성 협약(CBD), 나고야 의정서(ABS)[16] 채택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 추진

* (ABS발효) 50개국 이상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12.10월 8개국 비준)

o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을 추진

o 산림생태계는 대부분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이용'의 핵심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예방, 현지 내·외 보전 등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제2차 산림생물 다양성기본계획('13~'17)」의 체계적 추진

o 산림 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지(분포지) 조사·관리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산림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식재매뉴얼 보급으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박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16)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승인,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 시 채택(우리나라는 '11.11.서명)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 2차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시행
- 평창 CBD 등에 대응하여 DMZ, 백두대간, 대관령초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 자생식물(야생화 등)을 포함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 기반 마련

o 특별산림보호대상종(53종)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산림사업 추진 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선정기준 및 보전방안과 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2013)」 결과를 반영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변경 지정 및 자원화 추진

o 「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의 체계적 추진
-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DMZ일원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의 체계적 시행
-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DMZ자생식물원('14개원)을 거점으로 실효적 관리 및 사업 자료의 축척(전·중·후 사진, 과거와 현재의 비교 등)

2)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4년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6.5억원)
  * ('06~'08 국유림 조사완료) → ('10)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주 → ('11) 전남, 전북, 광주 → ('12) 충남, 충북, 대전 → ('13) 경북 → ('14) 서울, 경기, 강원

o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하여 검토·지정

o 2006~2009년 조사 완료한 국유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

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실시

o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

· 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 · 분석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220백만원, 국립수목원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식물종 보전 · 적응사업 추진

o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 · 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 · 증식 · 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 · 적응사업 실행

o 식생 권역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의 보존 · 적응사업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다)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종 증식 및 복원 추진

o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부처협력 추진

- 부처간 협의를 통한 구상나무 보전·복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 등

o 구상나무 분포 실태 및 자생지 특성 조사, 지역별 우량종자채취, 삽목·접목을 통한 대량 증식 및 보존원 조성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구상나무 피난처 조성

  * 사업비 및 시행 주체 : 300백만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4) 산림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운영

o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4개소) : ('14) 1개소 → ('15) 3개소

  * 곤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2.6)으로 산림자원의 범위에 포함

o 산림교육원에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규 교육과정 운영(1회, 35시간)

- 민간인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기술 · 경영교육 실시

5)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실시

o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조사 · 분석하여 국민에게 산림의 건강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전국 1,000개소 고정표본점(매년 200개소/5년)

- 조사 항목 : 4개부문(수목건강, 식생건강 등), 12개 지표(수관, 임분, 토양

물리성, 지의류 군락 등), 27개 항목(수관활력도 등)

- 추진체계 : 산림청 총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o ’11년부터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와 통합・시행

수목건강

지표	조사항목
수관	수관활력도
	수관급
	형질급
수간	줄기피해 (피해정도)
잎	잎 피해상태 (병해충 등)
생장	수고생장
	직경생장
고사목	부패정도

식생건강

지표	조사항목
상층	수종
	종다양성
	밀도
	피도
	외래식물침입
하층	초본층
	관목층
	치수
임상층	임상층 두께
고사율	생목대비 고사목 직경생장 비율

토양건강

지표	조사항목
이화학적 상태	토양산도(pH)
	전질소 함량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양이온 치환용량
물리적 상태	유효토심
	견밀도
	건습도

대기건강

지표	조사항목
지의류 군락	수도(종수)

산림건강성 지표 및 조사항목 (▭: 조사 및 채집 후 분석항목)

6) 우리 꽃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관광자원화 추진

o 문광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우리 꽃 야생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추진

* 우리 고유의 야생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중물로 만들라는 VIP지시(’13.10.27)

o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이자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인 야생화의 성공적인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식재매뉴얼 보급 추진

o 전국의 수목원, 식물원, 휴양림,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녹색공간에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7)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

o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준비 및 참여

- 개최시기 : 2014.9.22(월)～10.3(금), 12일간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알펜시아, 용평리조트)
- 참가규묘 : 193개 당사국 대표단, 전문가, 산업계 등 20천여명
- 행사내용 : 당사국 총회, 바이오 안정성 및 나고야의정서(생물주권) 후속 조치 논의

* (국제협력과)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당사국총회 의제 개발 추진 중

라. 추진일정

o「구상나무 증식·복원 및 현지 외 보존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4. 1월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시행 : 2014. 1～12월

o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BD COP-12) 준비 : 2014. 1～9월

o 산림습원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4. 2월

o 봄철 우리 꽃 야생화 박람회 개최 : 2014. 5월

o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14. 8월

o 산림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2014. 9월

o 가을철 우리 꽃 야생화 박람회 개최 : 2014. 9월

o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BD COP-12) 참여 : 2014. 9월

o 산림습원 현장 조사완료 : 2014. 10월

o 산림습원조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2014. 12월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목 표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o 산림보호구역 : 425,769ha(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31,812ha)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 1,575백만원(생육환경개선 등)
-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6개소, 1,281백만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4개소(전남, 경북),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식물의 유전자·종 보존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 필요

o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수요 확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구 증가

나. 추진방향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기반 확립

o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의 보전·관리

o 산림습원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추진

- ('11) 127천ha → ('12) 132천ha → ('13) 145천ha → ('14) 150천ha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계획 시행

o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 선진화(산림보호법 개정) 추진

- 산림보호구역 유형 축소 및 보호구역관리위원회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
- 산림보호구역 해제 요건을 축소하고, 허가사항으로 전환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담관리를 위한 독립법인체 설립 추진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증진 및 관리

가)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현황 : 6개소 1,281백만원(북부 3, 동부 1, 남부 1, 서부 1)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기능증진 사업 계획 수립·실행

o 산림생태탐방객 관리 및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o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 거점 기관으로 활용

* 울진 소광리생태관리센터를 중심 센터로 활용

나)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o 생태관리센터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증진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 시설 정비(1,073백만원)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 실시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502백만원)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추진

o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사업 실행

- 사업대상지 : 5ha이상(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1ha 이상도 가능)

o 2014년 사업 : 4개소(나주, 장흥, 문경, 울진), 200백만원

소 재 지	지정유형	지정면적 (ha)	지원예산 (백만원)	주요 분포식물	소유자 (관리자)
합 계		2,594	200		
①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0 외2	유용식물	40	100	비자나무	사찰림(불회사)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1	유용식물	3	30	비자나무	사찰림(보림사)
③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1	희귀식물	2,290	42	고란초 등	사찰림(봉암사)
④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30-1	원시림	261	28	소나무	사찰림(불영사)

o 보호・관리협약 추진 절차

- 보호・관리협약지침 시달(산림청) → 보호・관리협약 대상지 선정(지자체) → 보호・관리협약 체결・실행(지자체) → 모니터링 및 평가(산림청・지자체) → 평가 결과 환류(산림청・지자체)

라. 추진일정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지침 시행(산림청) : 2014. 1월

o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2014. 1～12월

o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2014. 1～12월

o「산림보호법」개정안 마련 : 2014. 1월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관리기반 확충

o 국가수목원 확충 : 3개소(중앙, 새만금, 올림픽), 10억원

* 국가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복지시설사업단」으로 업무이관('14.1월말)

o 지방수목원 조성 : 26개소(조성 13, 특성 10, 보완 3), 131억원

o 산림박물관 건립 : 6개소(조성 1, 특성 4, 보완 1), 16억원

o 지역생태숲 조성 : 13개소(조성 11, 보완 2), 59억원

o 자생식물원 조성 : 10개소(조성 10), 25억원

가. 정책여건

o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이후 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 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식물분야의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o 지구온난화·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협에 놓인 고산 및 한계성 자생식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o 녹색생태 탐방·체험·교육수요가 증가되었으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나. 기본방향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증식 및 연구기반 확충

o 식물유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체험 학습 등 국민서비스 강화

o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 산업화 기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의 진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o 「제3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2014~2018)」 체계적 시행

- 수목원을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복지·문화서비스의 핵심공간으로 전환
- 수목원의 물적 기반 확충, 사립수목원 활성화 및 전문일자리 확충

2) 국가수목원 조성사업

가)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추진

o 온대중부권역 산림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교육 및 연구하여 현지 외 보전기능을 구축

- 세종시에 도심형 열린수목원 조성, 한국정원을 국가브랜드화 추진

o 한국정원, 국가별정원, 테마전문정원, 생물다양성돔, 연구동, 방문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임

- (총면적) 65ha, (총사업비) 1,374억원, (조성기간) '12～'20(9년)

총사업비 (억원)	연차별 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374	13	58	-	217	217	217	217	217	218

o 세종시 중앙녹지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국립중앙수목원 기본설계 추진 ('13.10～'14.6), 조성예정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 협의추진(1～12월)

나)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추진

o 국내·외 해안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해안식물 보존 및 체험·학습·연구를 위해 차별화된 해안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 (총면적) 200ha, (총사업비) 약 5,874억원 추정, (사업기간) '15～'24(10년간)

o 기재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13.12～'14.2), 예타심사('14.3～10월)

다)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 추진

o 국제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체 산림조성의 일환으로 국내·외 고산지역 희귀·멸종·특산식물의 피난처 제공을 위한 고산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 (총면적) 350ha, (총사업비) 약 1,000억원 추정, (사업기간) '16～'20(5년간)

o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를 대비한 기본구상(안) 용역 추진('14.2～10월)

3) 국가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

o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에 대응하여 한반도 산림 유전자원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 보전·관리 추진

o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특성검정·평가, 증식 및 보존,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

o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립·학교 수목원 운영 확대

o '14년 사업추진 : 10개 기관, 10억원

* 예산반영 4기관 4억원, 6억원 증액 요청 중

4) 공·사립수목원 지원

가) 수목원전문가(가드너) 양성교육 추진

o 수목원 관련 전문지식 및 운영 관리 노하우를 갖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수목원의 조성· 운영 전문화 도모

o 수목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초 종합 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 비용 지원

o「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전문가 인증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추진

* 인증교육기관 : 천리포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확대 추진중)

o '14년 사업추진 : 50명 교육, 6억원

나)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특성화·전문화 추진

o 기후변화·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가 강화되어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후대별 전문화된 수목원 필요

o 식물자원의 보전·증식·전시 및 연구시설(전시원, 온실, 관리·연구) 설치

o 사업규모 및 기간(총사업비 기준)

- 공립수목원 : 개소당 특성화사업비 5억원/년(10개소)
- 산림박물관 : 개소당 특성화사업비 3억원/년(4개소)

o '14년 사업추진 : 32개소(조성 14, 특성 14, 보완 4), 147억원

5)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육성 강화

가) 생태숲 조성·관리

o 산림식물의 현지 내 보존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훼손의 위협으로부터 산림생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연학습·휴양공간으로 제공

- 지정근거 :「산림보호법」제18조 생태숲 지정제도 및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o 사업대상지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숲으로 30ha 이상인 공유지
- 자연휴양림·도시숲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숲으로 20ha 이상인 공유지

o 지정 절차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지여건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타당성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이 대상지 현지조사·확인

o '14년 사업추진 : 13개소(조성 11, 보완 2), 59억원

나)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o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 등 초본류·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전·육성으로 식물종다양성·자원화 연구의 활성화 촉진

- 사업대상지 : 3ha이상의 공유지
- 사업기간 : 3년(설계 1년, 조성 2년)
- 사 업 비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 이내

o 사업내용

- 지방고유의 향토·특산식물을 보존·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시원 조성
- 자생식물의 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체험관·산림생태관찰원·탐방로 등 설치·조성

o '14년 사업추진 : 13개소(설계 3, 조성 10), 32.5억원

* 예산반영 조성 10개소 25억원, 7.5억원 증액 요청 중

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지원

o 성공적으로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사후관리 및 후방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육성

o 사후관리 및 후방산업으로 세계정원 리모델링, 정원박물관 및 정원산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 총사업비 : 258억원(국비 118, 지방비 140 * 토지보상비 23억원 포함)
  * 세계정원리모델링 100억원, 정원박물관 98억원, 정원산업지원센터 60억원

o '14년 사업추진 : 3개 사업, 18억원
  * '14년 세계정원 리모델링 15억원, 정원박물관·정원산업지원센터 설계비 3억원

라. 추진일정

o 「제3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시행 : 2014. 1~12월

o 국립중앙수목원부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 협의(건설청, LH) : 2014. 1~12월

o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추진 : 2014. 2~10월

o 수목원·생태숲·자생식물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14. 4월

o 수목원법 개정안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 2014. 1~5월

o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기본설계 수립 : 2014. 6월

o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준비 : 2014. 7~12월

o 수목원·산림박물관 조성사업지 지도·점검 : 2014. 9월

4. 불법 산림피해방지 대책 추진

목 표

◇ 불법 산림훼손 단속·계도활동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

o 특별사법경찰 : 1,271명, 청원산림보호직원 : 391명(국가 229, 지자체 162)

o 숲사랑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

가. 정책여건

o 산행인구 및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로 산림오염 및 훼손 우려 상존

o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09) 2,445건 → ('10) 2,493건 → ('11) 2,310건 → ('12) 2,337건

o 산림면적 대비 산림 보호·단속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부족

- 산림면적 637만ha, 단속인력 1,271명(평균 5,011ha/명)

나. 추진방향

o 불법산림피해 유형·시기·지역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대책 시행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보호 단속강화

o 산림보호담당구역 지정 및 책임 단속제 실시

- 직원별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월 1회 이상 담당구역 순찰 및 산림보호 활동 실시

- 시·군·구별로 지역단위의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불법행위 감시 추진

o 불법산림피해의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특별사법경찰단 운영

-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의 특별사법경찰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

- 시·도 담당 과장 및 지방청 운영과장을 단장으로 선임

- 불법산림훼손행위의 고소·고발, 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처리

  * 산림보호감시원(산림재해모니터링) 480명을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지방청)

o 산림청(지방청)-지자체간 산림훼손 예방·단속의 공조체계 확립 및 산림피해 시기별·유형별로 정기 예방 단속 실시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위주 중점 단속
-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 및 산림경영인 임지 집중 관리
-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행위 및 밀반출 중점 단속

o 민통선지역 불법 산림훼손방지를 위한 유관 기관간 합동기동단속 실시

- 군부대와의 공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감시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상시 단속 활동 추진
- 농경지 주변 등 산림훼손 우려 지역은 산림보호 감시원을 고정 배치

o 산림사고에 적극적 대처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실무 능력 배양

- 산림보호담당자 수사실무 집합교육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실시
- 퇴직자 중 산림사법 전문가를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 수사업무 지원
-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용 책자 발간 및 배부

o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과 제고

- FGIS 및 인터넷 등을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시 적극 활용

  * 산림보호감시원을 FGIS 및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 사전 차단

o 산림환경 오염 방지 대책 수립 및 추진

- 산림정화구역, 유원지, 계곡,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림보호 감시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 실시

o 산림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 산림피해 유형별 단속 계획 등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 ·시·도 및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홍보
  - ·중대한 불법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 경각심 고취
-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의 포상금 제도 안내

2)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및 제도 개선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에 부합하는 직무부여 및 지도·감독 실시
-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근무기강확립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o ’14 증원 계획 : 6명

- 과학원(1), 휴양림(3), 품종센터(2)

o ’14년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 현황 조사

- 배치 및 부여임무 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

  * 조사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원조정 등 개선 조치

o 청원산림보호직원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청원직의 배치권자, 직급제 도입 및 보수체계 정비

라. 추진일정

o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통보(산림청) : 2014. 2월

o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수립(시・도, 지방청) : 2014. 2월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2014. 2월

o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및 수사기동반’ 편성 : 2014. 3월

o 청원산림보호직원 신규 채용자 교육 : 2014. 9월

<참 고>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단속유형	단속 내용	단속지역	단속시기
불법산지전용 등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전국일원	연중 (분기별)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o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훼손		
	o 농지전용지 경계 침범 훼손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및 유통	o 산나물·산약초, 약용수목 굴·채취	전국일원	연중
	o 관상·조경수목 굴·채취, 유통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등에서의 불법행위	o 희귀수목(주목)·약용수목 굴·채취	백두대간·산림보호 구역	4~9월
	o 불법 산지전용		
	o 무속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o 쓰레기 무단투기	휴양림 관광지 주변	6~9월
	o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훼손		
	o 안내·홍보시설물 파손		
기타 사업지 등 불법행위	o 입목 벌채지 잘못베기 - 수종갱신, 솎아베기 사업지 -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사업지	연중
	o 사용허가지 경계 침범		
	o 채광·채석장 경계 침범 등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5. 산불예방대책 추진

목 표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가. 정책여건

o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차별화 된 홍보전략 필요

o 한정된 산불예방 인력의 체계적·입체적인 운영·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

o 입산객 및 농·산촌 주민의 산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동참·계도·단속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

- 봄철 산불 주원인 : ('10년 평균) 입산자 실화 39% → ('13년) 소각 45%

o 산불방지 기반시설의 적지적소 설치 및 운영·관리의 내실화가 필요

o 산림 내 보호대상물 주변의 산불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 마련이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특별대책 추진

o 시기・원인・타깃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추진

o IT 등을 활용한 감시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차단

o 입산객 관리 강화 및 농·산촌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정책 다변화

o 주요 산불 취약지에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대로 예방 효과 제고

o 지역별 산불 위험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특별대책 추진

o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사전대비 철저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 전국 310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태세 유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0천명)의 조기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로 사전 대응태세 확립

o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정부적 차원의 산불대응

- 전국 산불관계관회의(2.20), 안전정책조정회의(2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3월) 등을 통한 유관기관 임무 명확화 및 협력 강화

o 중요행사, 대형산불 위험시기 등에 대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 전국동시지방선거(6.4)에 대비하여 전국 산불·기상여건을 감안한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검토 및 예방활동 강화
- 설 연휴(1.30~2.2),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5.4~6) 등 시기별 특별대책 시행 및 총력 대응

2) 시기·원인·타깃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추진

o 송출지역·시간대·타깃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 농·산촌 주민 주 시청 시간대 광고 송출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비즈링, 온라인 이벤트,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대형마트 카트 등 매체 활용

o 기상예보(방송사·기상청), 집배원(우정사업본부)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 언론사 기상캐스터 간담회 개최, 집배원 홍보물(깃발) 제공

o 오피니언 리더 등을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 의식 고취

- 산불예방 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만화 제작·제공 등으로 관심 유도
- 산불방지 관련 언론홍보(기고·칼럼 등) 주체로 참여 유도

o 스마트폰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

- 산불신고 앱에 대국민 산불예방 및 신고 요령 등 제공

3) IT 등을 활용한 감시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

o 임상·기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근무시간 조정 및 봄철 집중 고용 등으로 감시 효율성 제고(23천명)

-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 고용 확대 및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 근무시간 : (종전) 09시~18시 → (조정) 07시~20시 중 8시간 중 선택 근무

- 대보름, 청명·한식 등 산불발생 원인·시기별 인력배치로 감시효과 제고
- 산불위험 시기에는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병해충 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관서별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o 감시인력 취약지 집중 배치 및 과학적 근무관리로 감시 효과 극대화

- 감시원은 사역과 동시에 신고 단말기(14천대) 지급 및 연락체계 현행화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GPS 이력관리를 통해 산불감시원 근무지 및 동선의 탄력적 조정·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을 통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1,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 이내 근거리 상호통신 체계로 산불신고 단말기를 Tag에 대면 감시 시간,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4) 입산객 관리 강화 및 농·산촌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정책 다변화

o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국민 웹서비스 추진(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인터넷 포털(Naver)의 지도서비스에 등산로 개방, 폐쇄지역 표시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에서 고시한 구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연 2회)
- 폐쇄구간에 대한 감시인력 집중 배치 및 포털산악회 카페 게시물 감독 강화

  * 네이버, 다음 등과 공조로 위법행위 사항 행정 제재 및 반복될 경우 폐쇄 조치 요청

o 산불위험 요인 사전제거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강화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 소각이나 집중 제거 실시(총 10만ha)
-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는 감시인력을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투입
-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은 3월 중순~4월 중순은 ‘소각 금지기간’ 운영

  ・산림 내・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금지(불 놓기 허가 원칙적 금지)

  ・소각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관리소홀로 인한 소각 산불 발생 시 담당지역 감시원 페널티 부여

o「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용역 결과를 활용한 소각 관련 제도 개선 및 설득력 있는 소통 전략 개발

- 농진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쓰레기 수거 등 공동추진
- 마을 특성별 영농소각 양상에 따른 지원・규제・처벌 등 정책 적용 다각화
- 농·산촌 주민 산불 인식 현실을 반영한 감시 및 계도활동 개선
-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정신이상자 등 특별 관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시행 검토 등

5) 주요 산불 취약지에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대로 예방 효과 제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o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야영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반복되는 산불예방을 위한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도입

- 고해상도 카메라, 파손을 대비한 듀얼 저장장치, 자동 방송 및 문구 송출 기능 등 산림 현장에 맞는 최신 기능 탑재로 예방 효과 극대화

  * '14년 시설계획 : 총 39개소, 2,178백만원(지자체 32개소, 소속기관 7개소)

  *「도로명주소법」제8조의 5에 따라 카메라 설치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함께 설치

o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신설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69개소)

- 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인접 시·군 영상 확보 및 자체 상황관리에 활용

o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무인감시카메라가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상·하반기)

<산불소화시설>

o 산불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휴양림, 요양원 등에 산불소화시설 지속 추진

- 노즐 등 기술적 성능개선 실험 결과를 반영해 타워 간격 등 재조정

  * 노즐구경 18~22mm, 살수량 400LPM, 토출압 4kg/㎠, 타워간격 50±10m, 담수량 50~80t

-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소화시설 T/F 운영을 통한 시공·관리 품질 향상 도모('15년 예산작업 종료 시 까지)

  * T/F 목표 : 지침 개정, 설명서 작성, 유지보수 예산 반영, 연구과제 발굴

- '14년 시공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실연회 및 토론회 개최(5월)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o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전통사찰 등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500ha)

- 산불방지 숲가꾸기는 관련 지침에 의거 마을주변 등으로 확대 실행

- 기 실행한 이격공간,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 유지·관리 강화

  · 이격공간 내 낙엽 및 관목류 제거, 가지치기, 꽃나무 식재 등

6) 지역별 산불위험도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

o 주요 산림 및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산불취약 정도를 등급화

  * '14년 조사 : 총 6개소, 152백만원(남부청,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중 시군구 1개소)

<조사방법 및 적용인자(안)>

- 순서 : 기본현황조사 → 현지조사 → 위험인자 반영 → 정리 → 등급화
- 인자 : 보호 우선순위, 발화원인, 임상, 경사위치, 경사도, 풍속·풍향 등

<등급기준(안)>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1~4등급으로 구분해 관리

<추진일정(안)>

- 지침 마련(~2월) → 현장 실험(~4월) → 보완 및 지침통보(5월) → 지역별 실태조사(6~9월) → 자료 정리 및 등급확정(~11월) → 익년도 사업반영

o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역을 산림지역과 인명·재산피해 우려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

- (행정적 관리) 입산통제, 화기물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거, 감시인력 보강
- (임학적 관리) 내화 수림대 조성, 산불방지 숲가꾸기, 이격공간 조성
- (공학적 관리)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산불소화시설 시공

라. 추진일정

o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2014. 2. 1.~5. 15, 11. 1.~12. 15.

o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2014. 3. 20.~4. 20.(잠정)

o 산불감시인력 배치 : 2014. 2~5월, 11~12월

o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 가능지역 웹서비스 : 2014. 2~5월, 11~12월

o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 2014. 3~4월

o 산불소화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T/F팀 운영 : 2014. 1~4월

o 산불소화시설 담당자 현장 실연회 및 토론회 개최 : 2014. 5월

o 산불예방 시설 상·하반기 현지점검 : 2014. 2월, 10월

o 산불위험지 시범조사 : 2014. 5~10월

o 산불예방 유공 기상캐스터 간담회 및 포상 : 2014. 12월

6. 산불상황관리 및 지상진화

목 표

◇ 산불발생 시 일사불란한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유지
◇ 신속한 초기대응 및 체계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따른 선제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

o 산불재난 현장에서 지휘부와 유관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확대

o 유관기관 협업에 대한 정책여건 조성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공유 확대

o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10), 기계화진화('11), 지상진화 경연대회('11) 등 지상진화 대응역량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o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산불조사·감식기술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요구

나. 기본방향

o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여건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추진

o 통합지휘본부장(지자체장, 국유림관리소장)의 산불현장 역할 강화

o 산불상황실 및 다양한 산불방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o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운영 및 지상진화 역량 강화

o 산불조사·감식 기술의 과학화 및 산불현장 대응능력 평가·분석기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기상여건 등을 반영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추진

o 산불위험성 고조,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집중도 저하 대비 산불경보 발령·해제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산불위험에 따른 역량 강화

* 산불경보 구분「산림보호법 시행령」제23조 [별표1]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o 지역산불관리기관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산불경보 발령을 능동적으로 실시

- 특히 영농준비시기, 강풍경보 발령 등 지역별 산불위험여건이 높을 때 산불경보를 상향 발령하여 대응역량을 집중
- 기상여건 완화 시는 일시적 해제도 적극 검토하여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경감 필요

o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유관기관 통보 및 위험지역 산불예방에 총력 집중

- 주변 소나무 숲 간 최대 이격거리 2km 범위 내의 30ha이상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실효습도 및 풍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령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대응조치 실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2)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임무 수행

o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진화작전도 작성 등)

o 산불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지휘,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산림보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장 지휘

현장지휘소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 : '13.8.6.개정, 시행일 '14.2.7. 제16조 ③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향후 산림보호법 개정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변경

o 산불상황의 정확한 언론 정보제공을 위한「산불상황 보도요원」지정・운영

-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언론사 협조 요청

  *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입구 등)

3)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운영 정착

o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로 신고

  (절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군(관리소), 시・도(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을 산불상황실 등으로 보고

o 산불보고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임차헬기로 자체 진화하다 늦게 보고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를 담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

4) 산불상황실 및 산불상황실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o 산불상황실 근무상황 점검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 비상연락망 정비,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 매뉴얼 보유·정비 확인

o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을 가상하여 산불상황실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발생단계 및 발생건수에 맞게 상황실 인력 배치 및 대응방안 이행
- 훈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

o 산불상황실의 다양한 시스템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진화지원 추진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 GPS단말기 운영 등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개요>
o (기 운영) : 산불정보, 근태관리, 감시카메라 영상, 급수원, 한전선로 등 정보 공유 o (시범운영) : 문화재 현황, 국립공원 구역, 등산로 개방정보, 지번 찾기 검색 기능 o (고도화 계획) : 모바일 앱 제작, 알람 기능, 지역별 기상여건 검색 및 산불통계 정보를 상황관제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5)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o 시·군 및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 1개팀 운영

- 산불발생 시 기계화 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 ·산불현장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 ·기계화지상진화대는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개소에서 반드시 통합관리
- 1개 팀은 6~14명으로 구성하며 산불 빈도가 높은 10:00~21:00 신축적으로 근무
- 장비차, 인력수송차로 편성하고, 13㎜ 호스 700m(표준호스 연결장치) 구비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20분 이상) 등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반복 훈련

o 광역적으로 지상진화를 지원하는 광역기계화산불진화대(9개대) 운영

-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권역 외까지 지원
  - ·통합지휘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국장급)의 보좌 및 지원임무 수행
  - ·펌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 선도
- 지방산림청 6개대, 항공본부 3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 ·대별 14명(공무원 등 2~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2명) 내·외로 구성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차량 지원 및 관리 철저

- 산불조심기간(5개월)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국고지원
  - ·진화대원 12명당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사적 운영 금지 등 관리에 철저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 개최(5월, 11월), 전국대회(11월)
  - ·호스 설치거리 600m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13㎜(8.5㎜)

o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를 철저히 이행

- 반드시 동력펌프・진화차, 분배기, 간이수조를 이용하여 지상진화 실시
-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등짐펌프 운반거리를 최소화
- 잔불진화 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6)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감식 전문가 양성

o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배양 및 활동 강화

- 산불발생 시 신속히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 규명 주력
  *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후 정정 보고

o 방화성 산불 등이 발생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방화성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구 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임 무 : 방화・대형 산불발생 시 전담수사
- 산림 관서별로 관할지역 경찰서「산불방화범 검거팀」에 협조요청

o 산불가해자 검거 시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o 해외 산불조사·감식전문가 초청 보수 교육 추진(캐나다, 2명 이내)

o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고급과정) 실시(13일간 20명, 국내 및 캐나다 등)

- 산불조사·감식교육 이수자 및 전문가 중 현장에서 조사·감식 활동을 우수하게 추진한 공무원
- 협회 전문가 및 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민간 전문가(2명 이내)
  * 산림보호법 산불전문조사반 지원규정에 근거로 제한적(항공료 , 교육비) 지원

7) 산불방지의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

o 대형・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발생 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발생 보고 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적극적 개선 조치

o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자치단체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14 평가부터 반영

-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행안부 협의
- 증빙자료 간소화로 자치단체 산불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o 산불통계의 과학화로 통계 품질 제고

-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정정보고 등 철저)
- 산불통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라. 추진일정

o 보고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본부장의 현장 직접 지휘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 지역(5월, 11월), 전국(11월)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4. 3월

o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o 산불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산불조사・감식 전문가 초청 교육 : 2014. 2월

o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 산불조심기간 중

o 산불조사반 전문교육 실시 : 2014. 9～10월

7. 헬기진화 및 산림항공안전대책 추진

목 표

◇ 30분이내 산불현장 출동체계 구축으로 진화역량 극대화
◇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철저한 이행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강풍, 기후변화 등으로 동시다발 산불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재선충병 방제 등 헬기 요구 증가
  - '13년 초대형헬기 1대 사고로 산불진화역량(7%) 약화

o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임차헬기 등 지원헬기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중지휘 통제 등 협력체제 필요

o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내·외 관심 및 우려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임무환경에 대한 규정 및 감독 강화 필요

o '15년 세계산불총회 개최국으로서 항공분과 국제협력 필요성 증가

나. 기본방향

o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출동체계 강화

o 재선충병 항공방제 확대에 따른 산림헬기 지원체계 확립

o 산불진화 시 지자체 임차 및 지원헬기 등의 공중지휘 협력체제 강화

o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o 산림헬기 안전운영 중·장기 정책 수립

o '15년 세계산불총회 항공분과 추진계획 수립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출동체계 강화

o 산림헬기 전국 30분 이내 산불현장 도착체계 확립
  - 야간 이동정비팀(2팀, 9명) 및 이동정비차량(1대) 운영으로 산림헬기 가동률 제고

- 전국 10개 격납고에 산림헬기(42대)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에 수시 이동 배치를 통한 공중진화 대응력 극대화
  * 1본부・10개 관리소('14년 6월 울진격납고 완공예정)
  건조일수 지속에 따라 감시・계도비행 시 곧바로 현장 진화에 투입

o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대기 및 전진배치 이행 철저
- 비상대기 헬기의 선택과 집중운영을 통한 승무원 피로관리
- 주중 기본 1대 이상, 주말 2대 이상으로 증대 운영
  *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중보다 주말 공휴일 대기 강화

o 재선충병 항공방제 지원을 위한 방제헬기 사전준비 철저
- 재선충병 방제면적 100% 증가 예상('13년 대비)

o 동절기・갈수기 대비 헬기 취수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확보
- 봄철 가문에 대비 하천 굴착 등을 통한 담수지(4,179개소) 정비
- 담수지 확보위해 북부지방 얼음깨기 및 담수훈련 추진
-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헬기 진화체계 구축

2) 임차헬기·유관기관 지원헬기 등 협력체제 강화

o 군・소방 임차헬기(101대) 공조진화 실시
- 임차헬기는 '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에 따라 인접 시·도, 시·군간 산불발생시 진화 지원
- 대형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헬기(소방 26, 군 21) 조기 지원 추진

o 산불현장 투입 임차, 군, 소방헬기의 공중지휘 통제 등 헬기 공조체계 구축
-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자원 운용을 위해 다수(5대 이상)의 헬기 투입 시 산림청 선임기장이 공중지휘기를 운항

o 군부대, 지자체 등 산불진화 헬기 공조 투입 강화
- 전국동시산불 발생시 군헬기의 신속동원 가능체계 구축
- 사격장 및 군사시설 지역 산불은 군 헬기로 책임 진화
  * 물탱크 7대, 물바켓 보급 80개(육군 62, 해군 2, 공군 16)

o 산불진화헬기(임차헬기 포함) 안전교육 실시
- 시・도소방, 국방부 헬기 승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14년 최초)
  * 산불 임차헬기 운영관련 감사원 처분에 따른 조치
- 계약서에 무단 영업활동 및 비행시간 의무제출 명문화
- 임차헬기 운영관리 애로사항 수렴 및 현장지원강화(계류장, 격납고 등)

3)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o 산림항공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의 위험감지분야, 자동보고체계 개선
-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확대로 조종사 비상 대처 능력 강화
- 영상전송시스템 활용을 통한 상황 공유 및 효과적인 진화전략 수립

o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위주의 점검 추진

-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구조, 화물운반 등 4대 임무 중점 관리
- 전진배치지역, 임시착륙장, 항공방제 이·착륙장 사전 점검
- 위험환경에 필요한 생존지원장비 관리 및 활용현황 점검

o 항공안전 50대 추진과제 이행

- 항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10과제)
- 안전운항 역량 제고(14과제)
- 임무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8과제)
- 사고대응체계 정비(7과제)
- 안전관리 지원기반 구축(11과제)

  * 위험군(고·중·저)별 50대 안전수칙 병행 추진

o 경찰청 헬기(3대) 인수에 따른 운항준비 철저

4) 산림헬기 안전운영 중·장기 정책 수립

o 야간산불진화 국제동향 분석과 항공진화분야 적용가능 신기술 확보

o 항공진화 및 분야 관련규정,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o 헬기 산불진화, 항공방제 안전기준 검토

5) '15년 세계산불총회 항공분과 추진계획 수립

o 역대 대회 항공분과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분석

- 대회별 결의과제 추진 현황 및 국가별 준비내용 조사
-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야간진화 항공기 운용 등) 논의 의제 분석 및 동향 파악

o 항공분과 행사 계획수립 및 참가국가/업체 선정 및 DB작성

o 항공진화분야 시연장소 및 시나리오 작성

라. 추진일정

o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산불조심기간

o 산불진화헬기(임차헬기/시도소방/국방부포함) 안전교육 : 2014. 1월

o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운영 평가 : 정기·수시

- 산불진화(수시), 항공방제(월별 정기), 화물운반(수시)

o 항공안전 50대 추진과제 이행 감독 : 분기별

o 세계산불총회 항공분과 추진 계획수립 : 2014. 6월

o 산림헬기 안전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 2014. 9월

8. 산불방지 기반구축

목 표

◇ 다양한 산불방지 기반 구축으로 산불대응 역량 강화

가. 정책여건

o 산불방지업무를 국가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 확대로 전환 필요

o 산불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에 상응한 보상체계 마련 절실

o 세계산불총회 차기 개최국으로서 산불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기대

나. 기본방향

o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o 산불업무 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

o 세계산불총회의 단계적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 기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방지 민간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o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준비단 구성 및 설립 준비 등

- (임무) 산불방지 교육·훈련, 산불방지 연구·조사, 산불방지 국제교류 등
- (추진계획) 협회 조직구성 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
  -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단(TF) 구성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 ·발기인 대회 및 정관 마련 등 협회 설립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
  - * 준비단 구성(1월) → 하위법령 개정(6월) → 발기인 대회 · 정관마련(7월) → 설립신청 · 등기(8월)

o 산림보호법 개정(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산림보호법 시행령(협회 정관) 및 시행규칙(교육 시간 등) 개정 추진

2) 산불방지 민간인력 교육 강화

<교육체계 마련>

o (교육대상) 공무원, 진화대 조장급 90명 ⇒ 전담・보조인력 57천명 확대

- 전담인력(22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 보조인력(35천명) : 영림단, 국립공원, 군,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민간인

o (교육기관) 산림교육원 ⇒ 산림교육원, 민간기관

* 산조중앙회 ⇒ 산조중앙회(상반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하반기)

o (교육방식) 집합교육 ⇒ 강사 방문형 위탁교육

<표준 교육교재 마련>

o 산불방지 표준 교육교재(영농·학생교육 등) 마련('14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o 산불방지 유형별 교육대상자 표준 교육교재 연차적 마련 추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15), 유관기관 지원인력('16)

3) 산불방지 전문가 양성 추진

o 산림교육원 산불방지 민간 전문가 교육과정 지속적 추진

- 자격증 소지자, 학력・경력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 '산불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민간전문가로 육성(2회, 50명)

o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사 평가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강사평가제 2회 추진(1월 산림조합중앙회, 8월 산불방지기술협회)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4) 산불업무 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

o 산불비상근무자 휴일 근무수당 관련 지침개정에 따른 기관별 수당운영 철저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임을 감안하여 지침 개정

o 산불진화출동 등에 따른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o 산불방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o 해외정책연수 참여 기회의 균등 제공으로 산불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포상 수량 및 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순차적 확대 추진

5) 세계산불총회의 단계적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 기반 마련

o 세계산불총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의제개발·대응 전문 인력 영입

o 국제회의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후원기업 및 참가자 유치

- 총회홍보대행사 선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홍보 추진

o 총회 준비기획단(상시TF) 설치 및 강원도청 준비기획단과 긴밀한 협력 유지

라. 추진일정

o 산불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2014. 1월, 8월

o 산불방지 교육·훈련 법적근거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시행규칙)

- 입안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4. 1월
- 법체처 검토 : 2014. 4월(공포 2014. 6월)

o 산불관리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2014년도 유공자 포상 추천

- 전국 산불관계관회의 및 교육 실시 : 2014. 2~3월
- '14년도 산불방지분야 유공자 포상 추진 : 2014. 6~12월

o 산불방지 담당자 국외정책연수 : 2014. 9~10월

o 세계산불총회의 단계적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 기반 마련

- 세계산불총회 준비 및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14. 1월
- 세계산불총회 준비를 위한 ILC회의 개최 및 준비상황 점검 : 2014. 6월
- 산불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세계산불총회 홍보 실시 : 연중

  * Fire Behavior and Fuels Conference, IUFRO, APEC, FAO, UN-ISDR 총회 등

- 세계산불총회 준비기획단 발족 : 2014. 10월

9. 산사태방지 기반 구축

목 표

◇ 산사태방지 기반 구축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대국민 산사태 안전의식 고취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지역간 편차 심화

o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지자체 등의 산사태 방지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전문성 발휘에 한계

o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시설의 기능·효과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미흡

o 정부의 안전정책 강화에 따른 국민의 산사태재해 안전 욕구 증대

나. 기본방향

o 산사태방지 정책·제도 및 매뉴얼 등의 개선·보완

o 산사태방지 현장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

o 산사태방지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o 기후변화 대응 및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방지 정책·제도 및 매뉴얼 등 개선·보완

o '14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기관별 지역대책 수립·시행

-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국정과제)을 위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예방에 역점을 둔 총력대응 체계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임도·산지전용지 등 포함) 인근 거주자 실태파악 관리
    - * 임시건물(콘테이너 등), 휴양림, 재배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 모두 포함
  -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산사태재해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안전대책 추진
- 지자체, 지방청 등은 전국단위 대책(산림청, 3월말까지)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지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4월말까지)

- 시・도지사, 지방청장은 지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산림청에 제출(12월말까지)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3, 영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전국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3.31일까지 수립, 시・도지사, 지방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자체, 지방청(국유림관리소)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4.30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 지방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12.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절차 개선 등을 위한「산림보호법」개정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열람공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기존)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열람공고, 이의신청 등
  ・(개선안) 실태조사 → 열람공고, 이의신청 → 지정위원회 심의
-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되면 일정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의무화
  ・(기존)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를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
  ・(개선안)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시 지형도는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산사태취약지역 공고 사항에 지형도 포함
  ・(개선안) 지형도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에 위험 안내 입간판 설치,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의 종류에 사방사업 포함 등

o 원활한 사방사업 시행・관리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개정 추진

- 사방사업 대상지의 하천법・농지법 등에 의한 협의절차 간소화
-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한 DB구축・운영 등

o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 도입 추진

-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방(산사태복구) 품질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o 산사태재해 위기대응 매뉴얼 격상 및 정비

- (기존) 풍수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운영
  ・풍수해(태풍・호우) 및 산사태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 규정

- (개선안) 산사태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운영
  ·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하여 풍수해 재난 중 산사태 분야를 분리하여 표준매뉴얼 작성대상으로 격상 추진

2) 산사태방지 현장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

o 산사태예방·대응 및 복구 단계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위주 교육
-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산림교육원)
  ·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및 국정·협업과제의 이해도 증진과 취약지역 관리, 산사태예방·복구사업, 기상전문가를 통한 기상정보 활용능력 배양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사방기술원)
  ·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교육
  · 산림재해 조사·복구 실무매뉴얼 및 재해대장 작성요령 등 실무교육
- 산림공학기술자 보수(시범) 교육
  · 사방(산사태복구)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산림공학기술자의 역량 강화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
  · 산사태예방·복구 등 사방기술(설계·시공·감리 등) 전문가 양성

o 산사태방지 워크숍·연찬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 정보·기술 공유
- 산사태방지 담당자 워크숍
  · 산사태 예방·대응 등 시책교육, 현장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토론
    * 시·군·구, 지방산림청 담당과장, 팀장 및 담당자 등(4개 권역)
  · 지자체 등 정기인사 이후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보수) 교육(7월)
- 산사태방지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관회의
  · 산사태방지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립공원 등
- 제37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 산사태방지대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o 산사태방지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산사태방지 교육·홍보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3) 산사태방지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o 산사태방지 및 사방시설의 기능·효과 홍보 동영상 제작 보급(2~6월)

o 산사태취약지역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보급(2~5월)

o 언론을 통한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4~9월)

- (방법) TV, 신문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 시기별 기고, 브리핑 등
- (내용) 산사태재해의 위험성 및 사방시설의 중요성 등

o 현장캠페인 등을 통한 산사태 예방·대응 홍보(5~6월)

- 산사태방지 포스터·리플릿 등 배부 및 주민센터 등 홍보물 비치

o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광고·자막방송 등 추진(5~10월)

*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어도 사전예방·대비를 통해 피해 최소화 등

4) 기후변화 대응 및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강화

o 기후변화 대응 및 산사태방지 정책연수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빈발화 추세인 산사태 패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기술 연수

o 한·일 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개최

- 산사태방지정책, 자연친화적인 사방공법 등 정보·기술교류 국제회의

* '02년부터 격년 단위로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정기회의 개최('14년 : 한국)

o 국제 산사태 심포지엄 추진(국립산림과학원 협의)

- 선진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한 산사태 정책 벤치마킹 등에 활용

라. 추진일정

o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 : 2014. 2월

o 산사태 방지 홍보물 제작·보급 : 2014. 2~5월

o '14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 2014. 3월

o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 2014. 4~9월

o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 2014. 5월

o 산사태예방 현장캠페인 전개 : 2014. 5~6월

o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광고·자막방송 : 2014. 5~10월

o 산사태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 2014. 6월

o 제37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 2014. 12월

10.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의 현장 확산

목 표

◇ 산사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정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 및 위험요소 사전차단
◇ 산사태정보체계의 활용성 제고 및 예측 신기술 개발
◇ 현장 중심의 산사태 대응능력 및 전문성 강화

가. 정책여건

o 국지성 집중호우 및 기후변화 등에 따라 산사태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추세

o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생활권지역의 산사태 발생빈도 증가

o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집중적인 현장 대응역량 제고 필요

o 산사태 피해저감 활동을 위한 산사태대응팀 등 현장 대응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o 산사태재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통합 지휘체계 구축

o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o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성 제고 및 예방·대응 컨텐츠 개발

o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인력 확충 및 자발적 참여 유도

o 국정과제, 협업과제 및 정부 3.0을 통한 산사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안전중심의 통합적인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o 산림재해대책기간에 앞서 사전 예방을 위한 산림재해 대비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4. 3. 15 ~ 5. 14(2개월)

- 산사태 예방대책수립, 현장 대응체계 및 취약지역 등 현장 점검·정비

* '14. 3월「여름철 산림재해 사전대비 추진지침」시달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4. 5. 15 ~ 10. 15(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개월)
  * 본부장(산림청장), 산사태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지자체 및 소속기관 상황실장)
-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휴양림관리소 등) 및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지휘
- 재난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산사태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2회)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초기대응 능력 강화

※ 단계별 중점추진 사항 · (예방단계) 연중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재해예방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및 역량 강화 등 · (대응단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 준비단계(관심),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로 구분대응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현장점검, 피해 예방조치 및 대응 등 · (복구단계)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발생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피해조사, 발생지 복구계획 마련 및 복구 추진 등

2)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신규 실태조사>

o 생활권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중심의 정밀 실태조사 실시(산사태 전문가)

- 토석류위험예측지도에 분석된 지역 중 건물 수가 많은 곳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지역을 최우선으로 실시
- ’14사업량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 10천 개소
  └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을 위한 토질 분석 : 3천 개소

  * ’14사업비 : 2,000백만원(1개소 200천원×10천 개소)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단위 : 개소) · (’12) 4천 → (’13) 14천 → (’14) 24천 → (’17까지) 36천

<지정 및 해제>

o ’12~’13년 조사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는 ’14. 6월까지 지정·고시 완료

- 실태조사 된 취약지역에 대해서 ’12~’13년도에 사방사업을 실시했더라도 반드시 지정위원회 심의에 부하여 지정고시 여부 결정(근거 마련)
  * ’13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는 별도 통보할 계획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할 시 산사태·사방·재난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여 사전 민원차단
  *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시 참석 제한 등
- 지정·고시 완료된 지역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산사태정보시스템) 및 홍보 확대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 달성 시 해제 추진(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
- '13사방사업 : 산지사방 340개소(222ha), 계류보전 724개소(584km), 사방댐 785개소
  * 산사태취약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방지 지정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방지 해제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4. 2.14 시행)

<취약지역 관리>

o '14년도 사방사업은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우선 시행
- 미지정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전 반드시 지정·고시 완료

o 연차별 관리계획에 따른 후순위 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후 현장 점검 및 관리 강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연2회 이상) 및 응급조치
- 지역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행동요령 및 대피체계 등에 대한 교육
  * 미 지정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점검·정비 및 피난 대피체계 구축

o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및 점검사항 등 이력관리 지속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지침개정)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시기 조정(지정 및 해제 시)
  * 실태조사 → 대상지 공고 → 이의신청 → 심의회 → 지정(심의회) → 해제(심의회)

3)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 활용도 증진 및 예측정확도 향상

<산사태정보시스템 현장 활용>

o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13.6월 도입)의 적극적인 활용
- 산사태 재해 발생시 실시간 현장영상을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o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위주의 대응 추진
- 산사태 위험예측정보 수신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파악 및 주민대피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o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체 실정에 맞는 산사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 주의보·경보 발령 시 주민 위험전파시스템 등 마련

o 기관별 현지 실정에 맞게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시나리오를 재정비 추진

- 표준 시나리오(안)을 마련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별 현장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수립·활용 할 수 있도록 보급(4월중)

  * 단계별 담당자 행동요령, 취약지역 주민대피요령 및 대피장소 등

o '스마트폰 웹' 및 '스마트폰 앱'의 활용

- 산사태 발생 시 '스마트폰 앱'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정보 공유 및 대응에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관리자만 신고가능)

o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예측정보 권역 세분화

- 7~9월 평균강수량과 지질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권역 분리

  * (현행) 10개 권역 → (개선) 11개 권역

o 토석류 피해 시뮬레이션에 따른 사방댐 효과분석 기능 지원

- 토석류에 의한 피해범위를 예측하고 사방댐 설치 시 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방댐의 위치 및 규모 등 결정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사방댐 등 사업예정지 선정시 적극적인 활용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3차)>

o 단시간 강우예측 정확도가 높은 MAPLE 자료 도입

- 국지적·단기 강우예측에 적합한 레이더 기반 1km 해상도의 기상청 MAPLE 자료 도입(분석 강우정보 = 누적강우량 + 1시간 예측강우량)

  * <당초> KLAPS(5km×5km, 12시간 정보 1시간 단위) 장기 예측정확도 높음 → <변경> MAPLE(1km×1km, 6시간 정보 10분 단위) 단기 예측정확도 높음

o GIS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도 등 3차원 서비스 기능개발

- 브이월드 3차원 지도 기반을 활용하여 산사태위험지도 등 공간정보의 지도제어 컨트롤 기능 개발

o 땅밀림 산사태 DB관리 기능 개발

- 산사태에 비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의 관리체계 구축

o 산림연접 도로변 산사태 DB관리 기능 개발

- 산림연접 주요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관리체계 구축

o 산사태 복구지 DB관리 기능 개발

-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복구설계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의 DB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o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H/W 및 S/W 도입

- WEB/WAS를 분리를 통한 시스템 성능향상 및 속도개선을 도모하고, 매년 증가하는 산사태 관련 데이터(500~1,000GB)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스토리지 서버 도입

  * WEB서버 및 S/W 도입 : 웹서버S/W iPlanet, OS백업솔루션 및 보안솔루션

  * 스토리지서버 및 S/W 도입 : 저장공간 10TB 이상, 데이터백업솔루션

o 물리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산사태 예측기술 개발(기획과제, 3년)

- 산림지반특성지도 인자 값을 반영한 전국단위 실시간 산사태위험 예측기술 개발(실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반영한 모델은 전무한 상태)

  * 전국단위 적용이 가능한 물리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4)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인력 확충

o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대응팀' 구성・운영

- 지자체 등의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산사태대응팀' 설치 추진

- 최근 들어 산사태 규모의 대형화 추세 및 산지개발로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은 매년 증가 추세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산림보호법」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에 의거 설치·운영

※ 산사태대응팀 신설 사례
· 서울시 산지방재과 : 1과 3팀 15명('12. 1. 1)
· 지방청 산사태대응팀 : 동부('12), 북부·남부·서부('13)

- 지자체 등 조직관련 부서에 조직 개편 및 신설·확대 지속 건의·유도

  *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추진

o 산사태 방지 등 상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6개월(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재해대책기간 포함)

- 운영규모 : 1개단을 4명 규모로 전국적으로 50개단 운영(1,952백만원)

  * 서울·부산 각 3, 5개 광역시 각 2, 8개 도 각 4, 제주·세종 각 1개단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합)직무교육 실시(5월초)

- 산사태취약지역의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홍보 지원

> ※ 산사태현장예방단 인력의 확충 방안
> · 지자체는 부족한 산사태현장예방인력 보강을 위해 기동력을 갖춘 산림병해충 예찰단 및 사회적일자리(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 병행 추진
> *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확보 등 대책강구
> · 지방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활용

5) 도로연접 산사태에 대한 협업부처 간 공동 예방·대응

o 고속도로변 시급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전 우선적으로 예방사업 실시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시급지역(44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한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타당성평가 완료('13.11월)

  * 정밀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협업부처간 사업 추진주체를 결정('13.11월)

o 영동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변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위한 타당성 등 현지 실태조사 실시(예방사업 : '15년)

- 국토부에서 시설물 시공현황 등 현장 점검 후(63개소) 제출 계획('13.12월)
- 한국도로공사에서 영동고속도로 구간 조사 결과 제출 계획('13.12월)

o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 등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실시

- 신규 실태조사는 소관부처에서 실시하고, 산림청에 자료제공 후 협업부처 간 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지 확정

  * 고속도로(도로공사), 일반국도(국토부), 지방도(산림청), 지방도 중 급경사지(방재청)

o 상호협력을 통한 산사태 재해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산사태 피해상황 발생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원인조사 등 공동 대응

  * 한발 빠른 언론보도 및 대응, 산사태 발생 상황 전파 등

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산사태정보 공동 활용

o 국토부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토석류위험예측지도 및 방재청의 풍수해위험지구 자료를 연계

  * 도시방재 DB구축 협약('13.7.24)에 의한 협의회 운영 : 산림청, 국토부, 방재청

o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유(지원)함으로써 자연재난분야 협업체계 효과성 제고

  *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등 27개 기관 200명에 MMS 제공

o OPEN API를 활용한 산사태 예측 및 예보발령 정보 제공

  * 산사태 위험에 대해 누구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방재청, YTN, KBS 등)

라. 추진일정

o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 2014. 3～12월

o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3차) 추진 : 2014. 3～12월

o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2014. 4월, 6월

  * 훈련대비 산사태정보시스템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4월)

o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2014. 5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예방단 집합교육 실시(5월)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2014. 5～10월

o 도로연접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추진 : 2014. 1～12월

11.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목 표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토석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보전

o 사업량
- 산지사방 222ha
- 계류보전사업 584km
- 사방댐 899개소
- 사방댐관리 447개소
- 해안방재림 40ha
- 해안침식지복구 11.5km
- 산림유역관리 5개소 등

o 사업비 : 385,194백만원(국고 295,018, 지방비 90,176)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증가 추세

o 사방시설의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가 입증됨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증가

o 생활권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필요성 증대

o 토지소유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방사업효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시점

나. 기본방향

o 사방사업은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

o 현지지형과 재해예방 기능에 적합한 타당성평가·설계·시공

o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로 재해예방기능 강화

o 사방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

o 사업대상지는 생활권의 재해방지가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최우선 선정
- 생활권 인접지역으로서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 도로 등 공공시설에 토석류(산사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국토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도로변 토석류피해 우려 지역 우선 반영(고속도로 44개소, 국도 63개소 등)

o 사업대상지 선정 시 토지소유자·지역주민 등에게 사방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중 대상지가 변경되는 사례 예방

>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의 효과**
> · 산사태(토석류) 발생시 사방댐 2,550㎥/1개소(계류보전 1,770㎥/km)의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여 생활권 인명·재산피해 방지 효과
> · 일본은 사방사업 시행 후 안전성 증가로 토지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음

o 산지에서부터 황폐계류, 피해발생 우려지역까지를 아우르는 계통적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유역단위로 재해발생(우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

- 사방댐·계류보전사업은 주계류(主溪流) 뿐만 아니라 소계류(小溪流)까지 사방공작물을 계통적으로 반영하여 유역단위의 완결사업으로 추진
- 사방댐의 형식과 규격은 현지여건과 기능 및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중력식, 버팀식 등) 적용하고, 가급적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하여 시공

> · 중력식사방댐 : 토석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방댐
> · 버팀식사방댐 : 유목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방댐
> · 복합식사방댐 : 토석+유목의 동시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사방댐

o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조기·견실시공 완료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세부사업별(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대상지 선정 → 토지사용 협의 → 타당성평가 → 실시설계 → 시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현장관리 및 지도점검

> **※ 사방사업 시행내역 관리계획**
> · (대상지 선정) 토지소유자·지역주민 등 사전설명·협의절차 이행
> · (토지사용협의 및 타당성평가) 사업 전년도에 최대한 실시하되, 당년도 1월말까지 완료
> · (실 시 설 계) 자체 설계심의회 등을 거쳐 2월말까지 완료
> · (시 공 추 진) 공백기간 최소화로 6월말까지 완공(설계 완료된 개소부터 추진)

- 사업완료 한 개소는 우기 피해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및 보수 실시
  * 사방사업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행하기 위해, 사전설계 확대['15 계류보전·사방댐설치 예정량의 70% : 부족예산은 계약잔액(지자체)으로 실행] 추진

o 산지사방 대상지 중 인명피해 및 피해재발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땅밀림 지역 등은 현지여건에 따라 사면보강공법(소일네일링 등)을 설계에 반영
  * 하천 등 임야 이외의 지목이 사방지에 편입될 경우 사업착수 이전에 관련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 필요한 협의 후 공사 착공

2) 해안방재림 조성 및 해안침식방지 사업의 체계적 추진

o 해안방재림 신규조성은 피해우려가 큰 지역부터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 해안사방 조성·관리계획(산사태방지과-4442(2013. 11. 18호)에 따라 추진

- 신규조성은 재해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 조성량(년) : ('12까지) 39ha → ('13) 40ha → ('14계획) 40ha

- '14년도 신규조성 하는 해안방재림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단비부족)

  · (1년차) 객토 시행 → (2년차) 대묘식재 · 울타리 설치 등

- 기 조성된 해안방재림('06~'12까지 : 39ha)은 주요 기능별 관리방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토양비옥도 증진(시비·객토),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울타리 보수 등

o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

-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연속성 있는 경관유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

  · 조성량(년) : ('12) 4.0ha → ('13) 11.5ha → ('14계획) 11.5ha

o 새만금 간척지 재해방지를 위한 해안방재림 조성방안 검토

- 산림청~새만금개발청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3)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내실화

o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해서 사방사업의 필요성 · 적합성 ·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

- (평가방법) : 사방협회 위탁사업으로 추진(사방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 (평가내용) : 산사태발생 원인과 토석류 발생량을 분석하여 사업의 내용 및 공작물의 종류·형식·규모·배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방사업 추진방향 제시

  * 사방협회에서는 개정된「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처리 규정('13.10.31)」에 따른 평가매뉴얼 마련 및 타당성평가위원 자체 직무교육 실시

o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1 참조)

o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업종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사업(사방공작물) 시공 등의 대안제시

  * 산림청에서 타당성평가 사전모니터링 실시(타당성평가 현장참여, 자문단 운영, 성과물 사전검토 등)

4) 산사태 재해예방에 부합되는 설계 및 시공 추진

o 사방사업 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설계심의회 등 운영

- 설계도·서 검수(납품) 이전 자체기술진, 전문가(산림기술사, 교수 등)가 참여하는 심의회 등을 통해 설계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 사전보완 조치

  * 산림청 사전 모니터링 실시(설계심의회 참석, 자문단 운영, 샘플 확인 등)

o 사방사업의 설계는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토석류) 재해저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현지 환경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설계

- 공작물의 형식·규모·수량은 최근의 강우통계와 유역면적, 계류의 형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과거 획일적인 사방구조물 형태에서 벗어나, 사방공작물의 안전성과 자연친화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사방구조물로 설계

  * '14년 사방댐 구조안전 설계기준 및 토석류 발생량 산정방법 연구를 통해 사방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 강화 추진

o 사방시설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공법과 자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자연경관을 저해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응급복구용 자재 등의 과도한 사용을 지양하고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견실자재를 사용

- 인공 구조물은 가급적 획일적·정형화된 것을 지양하고 인근지역 식생을 이용하여 차폐 실시

- 단비부족을 원인으로 필요한 구조물이 누락·축소되거나 과다설계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단위 면적·개소·km당 기준단비는 개소별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차등적용

o 야계사방 사업은 산지 ↔ 계류 ↔ 생활권을 잊는 계통적 사방사업으로 추진

- 주 공작물 상류지역(지류 포함)의 산각 고정과 토석류 발생을 억제하고, 계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횡 공작물이 계통적으로 설치되도록 설계

- 사방댐의 형식과 구조·규격은 시설목적과 기능(토석류차단, 유목차단, 저사 등) 및 안정성·경제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계통적 사방시설 조성

· (광의의 의미) 상류지역의 산지사방, 소계류부터 하류지역의 생활권까지 사방구조물이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다단계로 조성

· (협의의 의미) 사방구조물이 기능에 맞도록 조화롭게 배치되어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산지사방(토사고정, 사면유수처리, 녹화공 등), 야계사방(토석류 차단 1차· 2차, 유속감속, 침식방지공 등)

o 신규설치 사방댐은「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5)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시설 점검은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 안전조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방댐관리 및 사방사업 집행 잔액 활용

  * 점검대상 : 시공 후 4년이 경과한 야계사방 시설 또는 관리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관련규정 개정 : 시행일 2014. 2. 14)

o 노후 및 파손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점검·응급보수는 물론 사방댐 상·하류 지역에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 추가조성 검토

o 사방댐관리(사방댐준설)는 사방댐준설 필요성 판정기준에 의거 판단하여 실행

- 점검결과 준설이 필요한 사방댐은 우기이전(6월말)에 실행완료하고, 준설이 불필요한 사방댐은 미실행 사유를 명기하여 현장에 표지판 설치(민원예방)

- 사방댐 기능보강을 위한 보완조치 및 안전시설・입간판 등 보수

o「사방댐 관리대장 사용자 지침」에 따른 사방댐 설치·관리자료 현행화 조치

- 사방댐 이외 사방시설은 실행 연도별 사업이력관리(별도 지침마련 통보)

6) 사방사업 현장 실무역량 강화

o 사방 전문교육장인 '사방기술원' 운영

- 사방사업실무, 시공관리, 산사태예방・대응 등 실무위주 교육운영

※ 사방기술원 현황
・(위　　치)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오도리 66번지(사방기념공원 내)
・(규　　모) 연건평 1,766㎡(약 534평)
・(개　　원) '13년 개원 및 시범운영(2과정, 134명)
・(주요시설) 강의실, 실습실, 사무실, 강당, 구내식당 등

o 현장 자문단을 구성(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하여 사방사업 현장자문 및 순회교육 실시(2~6월/월1회)

- 사방사업 실무공무원 및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현지 지도

- 사방사업의 설계·타당성평가서 검토, 주요 공작물의 기능 및 위치선정, 시공방법, 공사감독요령 등에 대한 현장자문 실시

o 당해연도 사방사업지를 대상으로 사방사업 품질 경진대회 개최

- 대상지 선정, 설계, 계통적 사방구조물의 적정배치, 자연친화적 시공 등
- 주최 : 산림청, 주관 : 사방협회(세부내역 별도 통보)

7) 기타사항

o '사방사업 시범지역' 보완조성 및 활용

- 시·도, 지방청별 접근성이 양호한 1개 지역을 선정, 세부사업별(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등) 공법·자재 등 다양화를 통해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 기 조성한 시·도, 지방청은 조성된 시범단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활용

o 사방사업지(예정지)에 하천 등 임야 이외의 지목이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철저

o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사방사업 실행을 위한 현장진입로 설치 시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o 사방사업 계약체결 시 공개경쟁비율 확대 시행('14년 30% 이상)

- '14년 예산조기집행 실행 시에는 25%이상
  * 산림토목사업분야 제도개선방안('08. 4. 8) 참조
- 공개경쟁 입찰 확대로 인한 사방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적극 활용

o 사방사업의 현지여건을 반영한 사방품셈 적용('14. 2.14 시행)

o 사방사업법 개정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 법적근거 마련('14. 2.14 시행)

> **o 사방사업법 제10조 제2항**
>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
> **o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o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해제사항에 대한 적기 행정절차 추진(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 5년 이상 경과지에 대한 적기 현지조사로 해제여부 검토 후 신속조치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7조 개정 : 시행일 2014. 2. 14

o 개발제한구역 내 사방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2.11.12)

o 사방댐(부댐 포함) 안에 저수(貯水)가 되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하절기에 수문(水門)을 열어 배수 조치하고, 안전휀스・경고판 등을 점검・정비

라. 추진일정

o 사방기술원 운영계획 수립 : 2014. 1월

o 사방사업 품질 경연대회 : 2014. 1월

o 사방분야 실무공무원 위탁교육(사방기술원) : 2014. 2월

o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14. 3월

o 사방사업 현장자문 및 순회교육 : 2014. 3~6월

o 사방사업 시행지 현장모니터링 : 2014. 7~9월

o '1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설계 지도·점검 : 2014. 9~12월

12. 산사태의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실현

목 표

◇ 신속·정확한 산사태 원인·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실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기가 장기화 되고 매년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되면서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o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신속·정확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적 분석·복구체계 확립 필요

o 산사태복구의 정형화된 공법 위주에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복구공법 개발 보급 필요

나. 기본방향

o '14년 우기 전까지 산사태 피해지 항구복구 추진

o 현장중심의 신속한 피해지 조사・복구지원체계 확립

o 산사태 피해 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피해지 우기 이전까지 복구사업 적기 완료

o 복구시급성에 따라 시기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 실행

- 생활권 및 공공시설 주변('14년 4월까지), 일반산지(5월까지)

  * 산사태 총 212건(생활권 29, 일반산지+생활권 118, 일반산지 65)

- 산사태 312ha, 복구비 544억원(국비 317, 지방비 등 227)

o 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지원

- 학계, 산림기술사, 전직 사방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

- 설계 타당성 및 복구사업 기술자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등

o 복구 물량이 많은 시·군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등 수시 지도·점검 강화

- 공사의 적기 실행, 고품질의 복구 실행 등을 위해 중앙·지방합동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경기도(이천 97ha, 여주 31ha), 강원(춘천 43ha, 홍천 29ha)

2) 전국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의 사방복구 추진

o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의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와 사방복구 시행(전국 28개소)

- 땅밀림 기복구지 21개소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복구 추진
- 미복구지 7개소는 정밀지질조사 등 단계별(연차별)로 복구사업 추진

o 땅밀림 산사태지역에 대한 표준화된 설계기준, 적용공법 및 기준단비 마련

3) 산사태 복구지의 사후관리 강화

o 산사태 복구완료지역에 대한 사방구조물, 녹화공사 등 상태 및 효과분석

- 생활권 중심의 복구공사금액 5억원 이상 지역
- 사전설계에서 복구완료 이후까지 단계별 모니터링

4) 산사태 복구기술의 선진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o 산림분야 복구·설계기술의 표준화·선진화를 위한 기술적 근거 마련

- 산사태복구지의 지반조사 및 안정성 검토, 수리·수문분석 기법 등 산림분야에 맞는 설계기준 정립

o 산사태 피해원인 및 피해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대책 마련

- 생활권 주변, 일반산지, 자연복구 대상지 등 복구방향 차별화하여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복구공법 적용

  * 산사태피해지의 지역성, 경제성, 피해의 경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구 실행

o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예산승인시기 단축으로 조기발주

- 예산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실시로 복구기간 단축
-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계약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서류 등 사전 행정준비 철저

o 산림재해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규 지원품목 확대 추진

- 해안방재림 및 해안침식사업, 산림작물, 산림시설 등

5) 산사태 등 산지피해 조사 및 설계의 전문성 제고

o 산사태 전문가의 '피해 원인조사 및 복구컨설팅' 지속 추진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대규모 피해지(복구액 5억원 이상) 등 조사대상 확대
  * 수리수문 및 토질 등 각계 전문가 협조를 통한 원인조사 및 분석
- 피해지역의 환경·지형·지질별 합리적 복구공법 컨설팅
  * 도시생활권, 일반산지 등 현장여건 맞는 복구방안 제시
  * 복구 공종, 물량, 개략적인 견취도 등 제안

o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설계심의단' 운영

- 1건의 복구금액이 5억원 이상은 자체 사전설계심의 의무화
- 산사태복구 실시설계 사전심의 항목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보급

o 재해복구사업 중앙 사전설계 심의대상지 사전파악 및 관리

- 심의대상 : 시·도 발주공사 10억원 이상, 시·군·구 발주공사 30억원 이상
- 준비사항 : 수리·수문 분석, 지반조사, 사면안정성 검토 등
- 사전설계 심의 대상사업은 개선복구 반영 시 추가 소요액 계상

라. 추진일정

o 산사태 복구지역 '현장기술자문단' 운영 : 2014. 2~5월

o 땅밀림 산사태 설계기준 마련 등 연구용역 추진 : 2014. 3월

o 산사태 재해복구단가 산정 및 조정 협의 : 2014. 3~4월

o 산사태피해지 복구 추진상황 점검 : 2014. 3~5월

o 산사태 피해지 복구효과 분석·평가 : 2014. 5월

o 산사태 피해원인 '전문조사단' 운영 : 2014. 5~11월

1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목 표

◇ 예찰 강화, 집중 방제, 사후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

o 피해고사목 집중방제로 4월말까지 제거 완료(62만본, 340억원)

o 매개충 제거를 위한 지상·항공방제(62천ha, 40억원)

o 서식처 제거(2천ha, 60억원), 예방 나무주사 실행(4천ha, 88억원)

가. 정책여건

o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범 정부적 노력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확산 추세임

- 피해고사목 : ('09) 267 → ('10) 133 → ('11) 477 → ('12) 506 → ('13) 1,231천본

o 우화기 이전에 피해고사목 전량방제 미실행과 여름철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개체수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가 확산

o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전담인력 부재로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소나무류 인위적 이동에 따른 신규발생 지역이 증가

- '13 신규발생 :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재발), 경기 양평군·하남시·연천군·가평군·양주시·안성시, 강원 춘천시(재발),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재발)

  * 울산 동구 및 경기 하남시, 경북 상주시는 자연적 확산, 기타지역은 인위적 확산

나. 기본방향

o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지역별 피해유형에 적합한 세부방제전략 수립

- 수시 항공예찰 및 GPS를 활용한 지상 정밀예찰로 피해고사목 100% 조사
- 시·군·구별 피해유형에 맞는 압축·반복방제, 단목방제 또는 수종갱신 추진

o 피해고사목의 집중방제와 사전 예방조치 실시로 피해 최소화

- 정확한 설계·감리 실시와 집중방제 실시로 '14.4월말까지 고사목 전량제거
- 매개충 항공·지상방제 실행 확대(3→6회) 및 주요지역에 예방나무주사 실행
- 피해극심지 방제 전문인력 지원(1,000명) 및 지방산림청 책임방제 확대 추진
- 산림청의 5급이상 지역 책임전담제 실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술지원 강화

o 피해지역 소나무류 관리강화와 홍보를 통한 인위적 확산 사전 차단

- 재선충병 피해지 주변 2km이내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관리 강화
- 소나무류 이동단속 확대 실시 및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 언론, 기관 홈페이지와 지역 반상회 및 캠페인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o 지자체 책임관리 강화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피해고사목의 완전제거 실적(4월말 기준) 및 재 발생률 평가(11월) 및 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산림사업의 지원 시 반영

다. 세부추진계획

1)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예찰조사 모니터링 실시

o 주기적인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 실시(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환경연구소)

- 항공정밀예찰 : 전국적으로 연 3회 실시(2~3월, 9~10월, 12월)
  * 피해고사목 확인 및 방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항공예찰 실시
- 지상정밀예찰조사를 피해발생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실시
  · 신규 발생지 : 피해고사목 발생지 반경 5km까지 정밀조사
  · 피해 전지역 : 피해소사목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2~3월, 10~11월)
  · 선단지 및 외곽지 :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월1회 이상 전수조사
    * 피해 발생지역은 피해고사목 발생량 확인을 위해 매월 표준지조사 실시 후 보고

o 피해고사목 전수조사(피해 발생 및 연접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조사시기 : (상반기) 2~3월, (하반기) 10~11월
- 조사범위 : 항공예찰 후 피해고사목 외곽지역에서 2km까지 전수조사
- 조사방법 : GPS를 활용한 전수조사 후 발생분포 도면(1/5,000) 작성
  * 피해고사목이 30%이상 발생하여 개벌이 필요한 지역은 표준지조사(10%)
  * 피해외곽지는 예찰방제단, 피해집중지는 전문업체에 위탁 조사·설계

o 예찰조사 적정성 모니터링 실시(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 국립산림과학원)

-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 : 시·군·구별 피해고사목 예찰·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성 모니터링 및 「발생분포 도면(1/5,000)」 작성여부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 매월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의 예찰조사 적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3·6·10·12월말 기준으로 분석·평가 후 산림청에 제출

o 지역별 피해고사목에 대한 재선충병 감염률 조사(국립산림과학원)

- 피해가 극심한 경기, 경남·북, 제주 등의 피해고사목에 대한 재선충병 감염률을 표본조사 후 산림청에 제출(3월, 10월)

o 정확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채취 방법 개선 및 검경 확대

- 시료는 벌도 시 상·중·하단에서 채취, 미벌도 시 최대한 윗부분에서 채취

  * 신규발생지 및 피해 선단지에서는 필요한 경우 벌도 후 시료채취

- 시료채취·검경실명제(대장관리 : Excel)로 책임의식과 오류 사전방지

- 기존 피해지와 5km 이상 떨어진 피해고사목 및 신규발생 지역은 연구기관의 최종 역학조사(발생원인, 피해목조사) 후 발생여부를 최종 결정

- 피해 선단지·외곽지 및 신규발생지는 전량 시료채취, 피해 집중지역은 표준지 조사

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및 압축·반복 방제 실시

o 지역별 피해유형에 따라 시·군·구별 맞춤형 세부방제 전략 수립

- 피해고사목의 발생본수, 방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5단계(1~5급) 구분

- 피해극심지역(피해고사목 30%이상)은 모두베기 후 수종갱신 유도

- 심~중 지역은 연차적으로 피해 완화, 경~경미 지역은 재선충병 방제 완료

o 피해고사목 제거는 압축・반복 실행하여 피해면적 감소 및 방제효과 제고

- 앞축방제 전략에 따라 피해 외곽부터 중심부로 반복(연 2~3회) 실행

  ・피해 극심지역 : 1차 전량제거 완료(3월말), 추가 발생목 보완작업(4월말)

  ・기타 피해지역 : 1차 전량제거(2월말), 2차 추가제거(3월말), 보완작업(4월말)

- 피해 집중지는 외부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 감리 실행

o 피해고사목 제거는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방법을 원칙으로 실행

- 도로변, 주거지역 등 피해고사목 이동이 용이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한 후 파쇄·소각하여 피해고사목의 인위적 이동 요인을 사전 차단

- 파쇄 후에는 자원 활용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등에 지원

  * 소각할 경우에는 산불 등 화재위험에 유의하여 안전조치 후 처리

- 훈증처리는 피해고사목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

  * 훈증 후 2년이 경과한 방제목은 수집·파쇄하거나 낮게 깔아 부패 촉진

o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방제를 피해발생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 선단지 및 신규발생지 : 완전한 방제를 위해 그루터기 훈증
- 기타지역 : 지면높이(5cm이내) 낮게 베기 후 수피제거 및 흙덮기
  * 급경사지나 장애물 등으로 낮게 베기가 곤란한 지역은 훈증 실시
  * 지면에서 높이 5cm이내는 매개충이 없으므로 별도 훈증을 실시하지 않고, 추후 매개충의 산란이 불가능하도록 수피제거나 흙덮기를 실시

o 매개충 서식처 제거사업은 피해가 경미한 지역(1~2년에 방제완료 가능)에만 실시
- 피해고사목을 100% 제거한 후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를 실행
- 발생된 산물은 현장파쇄를 원칙으로 처리(낮게 깔아두는 것은 지양)

o 피해지 및 연접지의 매개충 살충을 위해 지상·항공방제 확대 실시
- 지역별 매개충 우화시기에 맞춰 10일~15일 간격으로 6회 이상 실시(5월~9월)
-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은 지상방제를 최대한 실시하여 피해확산 억제
- 꿀벌피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고지
  * 항공방제는 헬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조치

o 피해 선단지,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 등은 예방나무주사 확대 실시
- 피해 선단지, 보호수, 천연기념물 등 보호해야 할 소나무 우량목에 실행
- 문화유적지, 사찰, 공원지역 등 주요지역과 주택지 우량 소나무림에 추진
  * 피해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은 산림병해충 공동협력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과 공동 방제 추진

3)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통제 강화

o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피해고사목 이동의 철저한 통제로 인위적인 확산저지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봄·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136개, 577명) 운영 내실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 확보
- 피해고사목의 화목용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 피해 확산을 차단
  · 산불감시원 및 이장단 등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
- 신규발견 및 소나무류 불법이동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 활성화

o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50개단, 1,000명)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예찰방제단별 예찰·방제 추진실적, 기술교육 실시 및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5년도에 배치인원 조정
- 예찰·방제단은 주로 피해발생 선단지·외곽지에 투입하여 방제
  * 예찰방제단의 규모 확대 및 축소 운영은 지자체의 피해특성과 예산에 따라 조정

o 인위적인 확산 예방과 신규발생지의 조기발견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피해현황 설명 및 확산방지 홍보 확대
  · 부처 간 공동대응, 기관 홈페이지와 지역 반상회 및 캠페인을 활용한 홍보 실시
- 기관장, 전문가 등의 언론기고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 홍보
  · 산림청은 중앙단위 홍보 전담, 지자체는 지역단위의 홍보 강화

4) 피해원인분석 및 방제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o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 및 신규발생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재선충병 피해 "심"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 원인분석(국립산림과학원)
- 신규발생지의 발생 시기·경로 등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위법사항 처벌 강화
- 방제성과, 약효분석 및 신규 방제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실시

o 재선충병 발생 지자체에 대해 방제성과 평가 및 포상(패널티) 부여
- 피해고사목 제거 실적(4월 기준) 및 재발생률 평가(11월) 후 결과 공개
  * 사업지 점검·관리시 생명의 숲, 환경단체 및 산림기술사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활용
- 방제사업 결과를 안전행정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 '14년도 지자체 방제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및 패널티 부여

라. 추진일정

o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방제 집중 실행(1차) : 2014. 1~3월

o 현장 특임관 선발, 교육 및 현장지도 실시 : 2014. 1월

o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 및 예찰방제단 시책교육 실시 : 2014. 1월

o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실행 : 2014. 1~2월, 12월

o 광역권 재선충병 방제대책 점검회의 개최 : 2014. 3월, 6월, 9월, 12월

o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방제 집중 실행(2~3차) : 2014. 3~4월

o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사업 완료(춘기) : 2014. 4. 30일까지

o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종합 평가 실시 : 2014. 5월 15일까지

o 재선충병 지상·항공정밀예찰(전국 단위) : 2014. 2~3월, 5월, 10월, 12월

o 매개충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실시 : 2014. 5~8월

o 소나무류 이동 전국일제 특별단속 실시 : 2014. 3~4월, 10월

o 하반기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방제전략 수립 : 2014. 10~11월

o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재 발생률 평가 실시 : 2014. 11월

14.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목 표

◇ 임업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1만ha이하로 피해 안정화 유지

o 사업량 : 임업적방제(재해저감)·나무주사 4,730ha, 해송림 종합방제 14개소

o 사업비 : 10,292백만원(국비 5,682, 지방비 4,610)

가. 정책여건

o 솔껍질깍지벌레는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동·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

- 남방계 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는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역 확산

o '07년까지 확산되었으나, '08년부터 적극적인 방제로 연평균 14%가 감소

- 발생 추이(ha) : ('07) 47,207 → ('09) 32,497 → ('11) 12,524 → ('12) 8,945 → ('13) 7,051

* '13년 발생면적은 '07년 대비 85% 감소

o 농·어촌 생활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가 우량 해송림이 관리 소홀, 태풍 등 기상피해와 인위적 피해가 계속되는 실정

- 해안방재림 1,229개소(1,479ha), 개장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351개소

나. 기본 방향

o 선단지역은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을 통해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o 피해도 "중" 이상 지역 및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은 임업적 방제 후 나무주사 실시

o 동·서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

o 해안가 우량 해송림 보전을 위한 종합방제 확대 추진

o 피해 병징이 뚜렷한 5월중 전국 실태조사 및 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 계획

1)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을 통해 해송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

o 발생 선단지,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부터 임업적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깍지벌레의 밀도저하 및 서식처를 사전에 제거

- 소나무(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깍지벌레 북상(확산) 차단
- 국립공원 지역은 사전 지역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공문으로 협의)

o 재해저감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산주에게는 산물수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지급

- 대상지선정 등 실행방법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매뉴얼」에 따름

2) 나무주사는 사전에 임업적 방제 실행, 방제시기 확대 등으로 방제 효과 및 효율성 제고

o 사전에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 등)를 실행하여 적정 본수를 남긴 후에 나무주사 실행

o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우량 소나무림에 적기방제를 통해 방제효과 제고

- 실행시기 확대 : 6~7월(정착약충기), 11~12월(후약충기)

3) '해안가 우량 해송림 종합방제' 사업 확대 추진

o 농·어촌 생활권 경관보전, 재해방지 등에 핵심 지역인 해안가 우량 해송림을 보전하기 위해 확대 추진 : ('11) 5 → ('12) 11 → ('13) 14 → ('14) 14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지 선정·기본설계 완료 개소에 대해 심사를 통해 사업 반영
-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국립공원 지역(변산, 한려해상 등)은 공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행
- 토양개량, 가지치기, 솎아베기, 나무주사, 인위적 피해 방지, 비료주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방제 추진(실시설계 반영)

o 2015년 우량소나무림 종합방제 대상지역은 사전 심의하여 대상지 확정

- 시·도, 지방청에서 2015년 대상지를 기본설계 후, 산림청에 신청(9월말)
- 현장 확인 등 사전심의를 통해 대상지 확정(10월까지)

4) 리·동별(권역별) 발생 및 방제계획 등 특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제 전략 마련

o 서해안 선단지(충남 태안·당진) 솔껍질깍지벌레 특별방제대책 수립

- 국립산림과학원·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동조사를 통해 동해안 선단지 특별방제대책 수립(기본계획수립)
- 강도의 솎아베기 위주의 임업적 방제(9~10월), 나무주사 등 종합방제 실행

o 2013년 5월 조사·작성한 리·동별 발생조서에 2014년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실적 이력관리 지속 추진

- 2014년 솔껍질깍지벌레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리·동별(권역별) 깍지벌레 발생·방제·효과 모니터링 체계구축

o 임분 특성을 고려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특성, 피해유형 등에 따른 방제 전략 마련

- 피해선단형, 피해초기형, 피해극심형, 피해회복형 등으로 구분·방제

라. 추진 일정

o 시·구·군의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2014. 1월

o 소나무림재해저감 대상지선정·실시설계·계약 추진 : 2014. 2월

o 서해안 선단지 특별대책 수립 : 2014. 2월

o 2014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실태조사 : 2014. 5월

o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 : 2014. 6~11월 집중

o 2014 해안가 종합방제 대상지 선정 및 기본설계 추진 : 2014. 8~9월

o 나무주사 대상지 사전 임업적 방제 실행 : 2014. 9월~11월

o 나무주사 실행 : 2014. 6~7월, 11~12월

15.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목 표

◇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복합 방제 추진

o 사업량 : 432,942본(끈끈이 353,300, 피해목제거 61,582, 선택베기 18,060)

o 사업비 : 6,586백만원(국비 3,919, 지방비 2,667)

가. 정책여건

o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의 노령화로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의 서식 환경이 좋아져서 수도권에서 경기・충청 지역으로 확산 위험이 증가

- 발생지(시・군・구) : ('10) 70개 → ('11) 82개 → ('12) 87개 → ('13) 94개
- 피해목(천본) : ('10) 181 → ('11) 331 → ('12) 268 → ('13) 309(15%↑)

나. 기본방향

o 리· 동 단위 특별관리 체계 지속 추진으로 피해확산 저지

o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한 맞춤형 복합 방제 방법을 현지에 적용

o 유관부서와의 공동협력 방제를 강화하여 방제 효과 제고

o GPS로 측정한 피해구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피해 최소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리·동 단위 특별관리체계 지속 추진

o 병해충에 대한 발생, 방제 계획수립, 방제 완료, 사후관리 등 세부 이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자료를 지속관리하고 분석하여 특별관리

o 피해구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임상도 분석을 통한 집중 관리

2)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한 맞춤형 복합방제 실시

o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이듬해 4월)

-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소구역선택베기를 우선 적용하고,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은 신속히 벌채 처리

o 매개충 우화시기(5~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대량 포획 장치법, 약제 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등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추진

3) 유관 부서와의 공동협력 방제를 내실화하여 방제 강화

o 국립공원 지역 피해지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 방제 지속 실행

o 국방부 소관 국유지(현충원, 군부대) 방제 기술 지원

o 고궁, 왕릉 피해지에 대한 선제적 방제 실행

4) GPS를 활용하여 피해구역을 관리하고 중점관리지역 방제 강화

o 피해구역의 확산을 전략적으로 줄이기 위해 GPS를 활용하여 측정 관리

- GPS를 활용하여 측정한 피해구역을 분석하고 그 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 관리

o 이미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집중방제를 강화

라. 추진일정

o 2014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3. 12월

o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실무교육 : 2014. 3월

o 2014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2014. 1~12월

o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2014. 4월, 8월, 10월

o 2014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2014. 7~9월

o 2013년도 벌채·훈증목 처리상황 조사 : 2014. 10월

16.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목 표

◇ 임업적방제와 나무주사를 적절히 실행하여 솔잎혹파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안정화

o 사업량 : 12,461ha(사유림 10,694, 국유림 1,767)

o 사업비 : 13,160백만원(국비 9,154, 지방비 4,006)

가. 정책여건

o 소나무림이 장령림화, 밀생화되어 산림병해충에 취약해지고 있고, 최근 고온, 이상 기후로 도서 지역 등에서 돌발적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발생면적(천ha) : ('04) 73 → ('06) 196 → ('08) 183 → ('12) 68 → ('13) 59

나. 기본방향

o 솔잎혹파리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관리 강화

o 소나무 숲의 건강성을 높이는 재해저감사업 지속 추진

o 적기 나무주사 실행 및 고독성 약제 방제 최소화, 농약 안전관리 강화

o 나무주사 실행지 표준지 조사 세밀화 설계 지속 실행

다. 세부추진계획

1) 솔잎혹파리 발생지역 특별관리체계 지속관리 및 책임방제 실시

o 발생지역 특별관리를 통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리·동별 세부 방제계획을 연속적으로 수립하여 발생상황, 발생임지의 평균경급, ha당 본수 등에 대한 이력을 작성하고 종합관리

- 방제 실적 및 신규발생 및 확산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o 리·동별 발생면적이 50ha이상 되는 지역은 반드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발생 예찰 및 책임방제 실시

2)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솔잎혹파리 방제를 통한 산림경관 보호

o 경기장 주변 및 가시권역 솔잎혹파리 집중방제 실시

- 고속도로(영동·중앙) 및 국도 주변 가시권 유역완결 방제 추진
- 산림청·강원도 공동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솔잎혹파리 능동적 방제

o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및 저독성 농약사용을 통한 친환경방제 추진

- FSC 인증림 등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저독성 나무주사 확대

3) 적정한 시기에 나무주사를 실행하고 농약 안전관리 강화

o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25년간 솔잎혹파리 우화 최성기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우화상을 설치하지 않고 나무주사 실시

- 25년 조사자료를 근거로 우화 최성기는 6월 초·중순임

  * 우화 최성기에 지역별 고도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실시

o 고독성 약제 방제를 전면 저독성 약제 방제로 전환

o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에 맞는 안전복 등 반드시 착용, 안전교육 실시

4) 나무주사 표준지의 세밀한 작성 지속 추진 및 관리

o 나무주사 설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조사를 세밀히 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나무주사 방제 기술 향상과 신뢰성 확보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3. 12월

o 방제용 농약 조달을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청 : 2013. 12월

o 소나무 숲의 활력을 높이는 재해저감사업 실행 : 2014. 1~12월

o 솔잎혹파리 담당공무원 실무(안전관리) 교육 : 2014. 5월

o 2014년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 : 2014. 6~7월

o 솔잎혹파리 발생 상황 및 효과조사 : 2014. 8~9월

17.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목 표

◇ 돌발·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o 사업량 : 34,877ha(사유림 34,520, 국유림 357)

o 사업비 : 6,382백만원(국비 3,354, 지방비 3,028)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과 농경지에 공통으로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발생되고 있으며, 돌발적 대량 발생이 늘어남

-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황다리독나방, 갈색여치 등의 피해 증가

나. 기본방향

o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o 돌발 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o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방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o 타 부처와 연관된 병해충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 대처

다. 세부추진계획

1) 돌발·외래·일반병해충의 적기방제

o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o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을 저해하는 해충은 정확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발생초기 적극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o 돌발·외래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 초동 차단

2)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공동 협력 방제 강화

o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동절기 기주나무의 알 덩어리 제거작업을 농업관련 부서와 공동협력방제 실시로 효과 제고

- 농작물 재배지역 및 주변 산림 등을 같은 시기에 지역공동방제

o 성충 시기는 지상 약제 방제를 적극적 실시

3)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공동협력 방제

o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찰·방제 철저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 마산, 당진, 온산, 영일만, 대산, 당진화력, 영흥화력, 하동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21개항)

o 항만주변(1km이내)의 녹지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예찰·방제 실시

4) 산림병해충 발생 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o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 하여 신속한 방제로 피해 확산 초동 차단 및 적기 방제

5) 주민 생활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적극 지원

o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 공동협력 방제

o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 항공방제 적극 지원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3. 12월

o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2013. 12~2014. 4월

o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2014. 5~6월

o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4. 6~8월

o '15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 개최 : 2014. 11월

18.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목 표

◇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체계 구축
- o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 5,000건, 640백만원
- o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 19개소, 1,65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도시 생활권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수목방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고독성농약 사용 등의 문제 발생

o 수목진료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나, 이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전문 인력양성이 어려움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수목진단 및 진료를 통한 건전한 수목관리

o 민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o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o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산・학・관・연 협의체 구축·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

o 민간컨설팅은 민간(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해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단·치료 체계구축

o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숲, 도시공원,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민간 컨설팅 실시

- 민간컨설팅 : 5,000건, 1,280백만원(국비 640, 지방비 640), 건당 256천원

* ('13) 4,052건, 892백만원(국비 446, 지방비 446), 건당 220천원

o 컨설팅 대상 선정 후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 나무병원, 산림조합,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 : 컨설팅을 실시하고 처방전 발급
-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분석 실시

<민간컨설팅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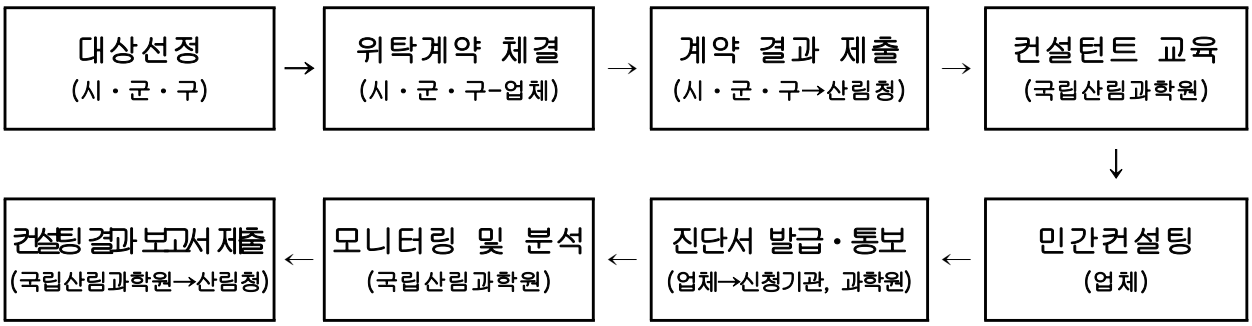

2) 국립나무병원의 내실화 및 지역거점 수목진료 체계 구축

o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촉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 등 수목진료체계를 구축

o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수목진단센터는 관련 대학을 지정·운영하며, 공립나무병원은 각 시・도에서 운영(20개소, 국비 1,700, 지방비 600)

- 국립나무병원 : ('13) 1개소, 250백만원 → ('14) 1개소, 500백만원
- 수목진단센터 : ('13) 5개소, 350백만원 → ('14) 7개소, 600백만원
- 공립나무병원 : ('13) 9개소, 450백만원 → ('14) 12개소, 1,200백만원

o 생활권 수목진료 관련 실연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자 교육, 병충해 진단·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홍보 및 제도정착 유도

-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 실연연구 사업을 1과제 이상 수행
- 민원발생 병해충 진단 및 분석, 방제관계자・수목관리자 교육
-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수목진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o 수목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나무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는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실시

- 민간 나무병원 운영자 교육 : 4월
-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11월말까지

<수목진료 관련 단체별 역할·업무>

구 분	연구실연과제	주된 역할	세부 업무
국립나무병원 (산림과학원)	방제농약 직권등록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등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 생활권 병해충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턴트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 공립나무병원 운영 총괄, 보고서 작성
수목진단센터 (관련대학)	실태조사 등 기초과제 수행	방제관계자 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 수목진료 및 수목의술의 조사연구	◦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최 ◦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개발
공립나무병원 (시·도)	시범사업 등 현안과제 수행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분석 공공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진단 ◦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보급
나무병원 (사업법인)	-	민간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생활권 민간컨설팅)	◦ 아파트 녹지 등의 수목진단서비스 제공 ◦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

3)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o 산림교육원에 개설된 수목보호기술 전문가과정 운영(5회, 150명) 및 국가공인 수목보호기술자 지속 양성(3회)

o 대학 등과 수목진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교육 추진

- 대학, 단체 등 산·학·연과 연계한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실시

4) 제도개선 및 수목진료 발전 협의체 운영 등 발전방안 모색

o 수목진료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매뉴얼 등 개발·보급

o 수목진료발전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구성 : 업계, 학계, 지자체, 산림청, 연구기관, 협회 등

라. 추진일정

o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2014. 2월(시·군·구)

o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2014. 3월(시·도)

o 수목진료 매뉴얼 개발 : 2014. 3~4월

o 민간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 2014. 4월

o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2014. 3월, 6월, 9월, 12월

o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2014. 11월(국립산림과학원)

o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2014. 11월

19. 훼손·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목 표

◇ 백두대간 등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o 사업량

- 산림생태복원 50ha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1개소(설계)
- 독도 산림생태계복원(4차년)
- 대규모 산림복원 4개소(시공2, 설계2)
-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보전·관리사업(2차년)

o 사업비 : 6,554백만원(국비 6,554, 지방비 1,519)

가. 정책여건

o 자연재해 빈발, 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복원대상 훼손지가 확대되는 추세

* 자연적·인위적 훼손규모 : ('80년대) 8,221ha/연 → ('00년대) 13,717ha/연

o 생태축으로서의 백두대간 인식과 훼손지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최우선과제는 '훼손지 복원'('13. 한국갤럽)

o 최근 기후변화협약[17], 생물다양성협약[18] 등 국제회의에서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산림복원이 이슈화

나. 기본방향

o 산림생태복원의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고, 중·장기적 추진기반을 마련

-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정맥, 도서지역 등 복원 영역을 확대
- 산림생태복원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o 산림생태복원 환류시스템 정착으로 지속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 복원사업지에 대한 식생변화 등 생태계 회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o 산림생태복원 기술 확산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복원사례 발굴·전파, 세미나 등 학술교류 확대
- 현장중심의 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과정 신설 추진

17) 훼손된 산림복구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주요이슈 중 하나(REDD+)
18) 훼손 생태계 면적의 15% 복원 권고(제10차 당사국총회, '10.10월)

다. 세부추진계획

1)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등의 산림훼손지 복원

o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정맥지역까지 확대하여 훼손지 복원

- 핵심구역 내 방치된 폐채석장 주변 등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4.0ha)
- 과도한 이용, 침식 등으로 인해 훼손된 낙동정맥 훼손지 복원(7.0ha)

o DMZ 일원 전술도로 주변 산사태, 폐군사시설 등 복원(25.0ha)

- 사업대상지 발굴, 출입문제 개선 등을 위해 일선 군부대와 적극 협조
-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

o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지역 산림생태계복원

-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 고유종 증식을 통한 독도 산림생태계복원으로 국토의 실효적 영유권 강화(4년차)

  * 산림청-문화재청 양 기관장이 참여한 합동 식수행사 개최 추진(5월)

- 울릉도(2.0ha), 거제도('14년 설계) 등 주요 도서지역 우선 복원

o 산림습원, 종(種) 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 복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관령 산림습원 내 황폐지 복원(5.0ha)
- 백두대간 생태계교란 외래종 제거 및 자생종 복원(생태보전·관리사업)
- 생활권 주변 등 대규모 훼손지에 대한 연차별 산림복원 추진

  * ┌ 2차년 시공(2개소) : 포항 산불피해지, 익산 미륵산
    └ 1차년 설계(2개소) : 울산 영남알프스 억새군락지, 거제도 폐채석장

2) 산림생태복원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 확산 및 환류시스템 강화

o 사업성과 평가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복원 후 식생 생존율, 주변식생 이입 등 산림생태계 안정화 과정 및 하자발생 여부 등 지속 점검(5~10월 중점추진, 10.31까지 결과 제출)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의 경우, 사업지 내 CCTV를 활용하여 야생동물 이동까지 포함하여 지속 관찰(결과를 익월 5일까지 제출)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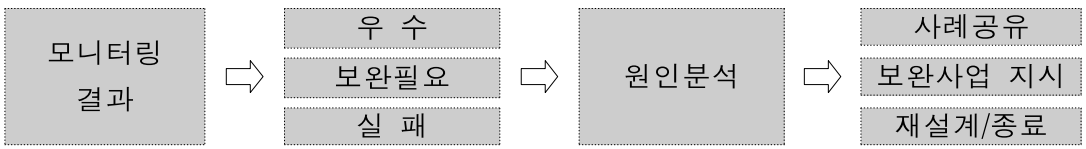

o 산림생태복원 기술·우수사례 등 공유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 개최(3월) 및 전문가 세미나 확대 추진(반기별)

o 생태복원대회를 통한 전국 우수 산림복원 사례지 발굴·확산(5～10월)

3) 산림생태복원 정착을 위한 정책기반 및 담당자 역량 강화

o 산림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재정집행관리 및 중장기 추진기반 강화

- 단년도 완료가 어려운 단위사업(2개)에 대하여 연차별 방식으로 개선 (1차년도에 실시설계 및 협의 등 제반사항 이행 후, 2차년도 시공)
  * 대상 단위사업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 산림생태복원 정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검토(장기)

o 관계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관리 성과 제고

- 백두대간 등 복원사업을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와 협력하여 추진
  * 정부부처 합동「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13.8월)」에 포함
- 육군본부와 민북지역 산림복원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논의(3월)
- 사찰림의 생태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조계종과 워크숍 개최(5월)

o 담당자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및 교육과정 등 마련

- 유형별 복원기술, 모니터링 등을 구체화한 '산림생태복원 매뉴얼' 발간
- 산림교육원에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관리 과정' 신설(3월)
- 복원분야에 대한 산림기술자제도 도입 검토(가칭 '산림생태복원기술자')

o CBD 총회('14) 등 국제회의에서 국내 복원사례 전파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라. 추진일정

o 산림생태복원 매뉴얼 배부 : 2014. 2월

o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워크숍 : 2014. 3월

o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계기관 협의회 : 2014. 3월

o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관리과정 교육 : 2014. 3월

o 사찰림의 생태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 2014. 5월

o 산림생태복원 사업지 모니터링 실시 : 2014. 5～10월

o 전국 우수 산림생태복원대회 개최 : 2014. 5～10월

o 산림생태복원 사업지 지도·점검 : 2014. 5월(상반기), 10월(하반기)

o 산림생태복원 세미나 : 2014. 상·하반기

20.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목 표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기반 강화 및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의 등재 추진

o 사업비 : 1,191백만원(국비)

가. 정책여건

o 백두대간의 생태적인 보호·관리에 대한 정책 추진을 요구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우선적 추진정책은 '생태적 관리'(13. 한국갤럽)

o 국제적으로 연계 보호·관리(connectivity conserv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

o 「제2차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16~'25)」 수립을 위한 준비 시점

나. 기본방향

o 백두대간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생태축으로 보호·관리

o 백두대간을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의 등재 추진

o 1차 백두대간 기본계획 성과평가 등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철저

o 백두대간에 대한 대내외 홍보·교육 강화 및 다양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도출

o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 연구용역 추진 및 전문가·NGO·지자체 공동 세미나 등 개최

o 생태축으로서의 백두대간 관리를 위한 산림시업 개선안 등 마련

- 백두대간 내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및 종주·탐방 관리안 마련

2)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 등 보호·관리

o 백두대간 덕유산 권역(2차기 4년차)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 산림자원실태 변화상 모니터링
- 백두대간의 토지이용 및 훼손현황, 산림문화·경관 등 실태조사

o 한북정맥(파주～화천, 6년차)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 남한지역 정맥의 산림자원, 이용, 훼손 등 실태조사 및 구간 설정
- 정맥 실태조사 1차기 완료에 따른 정맥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o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 실시

- 2013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014년 시행계획 수립
- 백두대간 연접 사유지 매수를 통해 보호지역 확대지정 기반 마련

3) 백두대간을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 마련

o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등재 추진

- '14년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구역설정 등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로드맵('14) >

o **(1～2월)**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전이구역 설정
o **(3～4월)** 주민지원계획 수립
o **(5～6월)** 주민의견 수렴
o **(7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제출(MAB 한국위원회)
o **(7～8월)** MAB 한국위원회 심사
o **(9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MAB 사무국)

o 세계유산 등재('17년 목표)를 위한 문화적 자산 자료 수집·정리

- '14년은 백두대간의 문화자산과 자연과의 연계에 관하여 연구 추진
  * '13년에는 유산 등재 요건중 하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연구함

o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교류 확대

- 생태계와 문화의 연결축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보호구역 연계 추진
  * 세계자연보전총회('12. 제주) 의제 채택에 따른 심포지움 개최 등 후속사업 추진

4) 백두대간에 대한 홍보활동 확대 및 다양화

o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홍보사업 추진

- 외래종 제거, 산림정화 등 민·관·지역주민 합동 '백두대간 사랑운동' 실시

- 대국민 '백두대간의 四季' 사진공모전(문화·경관·생태 분야) 실시
- 백두대간 동영상(한영), 브로슈어, 영문 리플렛 등 제작

o 백두대간 안내표지판 설치 표준안 마련에 따른 일제 정비 추진
- 무분별한 설치 및 훼손·방치된 안내표지판 정비로 백두대간 이미지 제고
- 지역적 상징성, 탐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연차적으로 실시

o 국제회의('14 CBD 총회 등) 참여, 보고서 제출 등으로 국제적 홍보 확대

라. 추진일정

o '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2014. 1월

o '13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014. 1~5월

o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 : 2014. 1~12월

o 백두대간보호지역 국제적 보호지역 등재연구 추진 : 2014. 1~12월

o 백두대간 보호 담당자 워크숍 : 2014. 3월

o 백두대간 리플릿 제작 등 백두대간 홍보 : 2014. 3~11월

o 백두대간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추진 : 2014. 5~10월

o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 관련 간담회 : 2014. 6월

o 백두대간 사진공모전 : 2014. 8~9월

o 백두대간 사랑운동 전개 : 연중(1회 이상)

21.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목 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보호 주체로 육성

o 사업비 : 16,602백만원(국비 9,522, 지방비 7,080)
- 주민소득지원사업 : 5,934백만원(국비 4,154, 지방비 1,780)
- 소득감소분 지원 : 68백만원(국비)
- 생태교육장(구례·거창) : 10,600백만원(국비 5,300, 지방비 5,300)

o 사업대상지 : 백두대간 지역 32개 시·군

가. 정책여건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경제발전 저해나 공동체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05~) 및 성과 제고

* 지역주민 만족도 : 3.91점, 지원사업으로 소득수준 향상 : 51.5%('13. 한국갤럽)

o 웰빙추세로 인해 백두대간 임산물, 자연·휴양자원은 지역경제에 오히려 긍정적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13, 6개도 합동)에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자연유산·문화와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등의 내용 반영

o 백두대간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지속되는 한편, 최근들어 귀농·귀촌인 증가

* 인구비율 : ('90) 5.1%→ ('10) 3.0%, 고령화율 : 25.3%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나. 기본방향

o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지속 추진

o 기존의 시설위주 지원에서 가치창출형 마을 지원사업으로 확대

o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로 자발적 보호 주체로 육성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지역별 생태체험·홍보·교육 인프라 확충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 지역 활성화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o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

- 기존의 시설위주의 지원사업에서 가치 창출형 지원사업으로 확대
  * 임산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포장비 등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추진
- 지원대상 확대 등「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변경

< 주요 변경사항 >

o **(지원대상)** 표고, 밤, 송이 등 특정 품목 → 전체 임산물로 확대
o **(사업종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를 추가로 지원
o **(지원한도)** 공동사업의 경우 300백만원, 개인의 경우 7.5백만원 한도로 상향

o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해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소유자의 벌채 예상수익금 상당액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
  * 보호지역 지정당시('05.9월) 공익용 산지, 벌채 제한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자발적 보호참여 등을 위한 역량 강화

o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의 육성

-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련 우수마을, 작목반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백두대간 사랑운동, 지침 개정시 주민 의견수렴 등 참여 기회를 확대

o 지역공동체의 보호관리 우수사례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역량 강화 지원

- 마을리더, 지역 담당자의 생물권보전지역, 우수 보호지역 등 방문 지원
-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교류 확대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o 백두대간이 지나는 각 도별(6개) 생태체험·홍보·교육 인프라 구축

- '14년 조성 대상지 : 구례, 거창('13～'15), 남원('10～'14)
  * 조성 중 : 3개소(남원, 구례, 거창), 완료 : 3개소(괴산, 상주, 양양)
- 남원 등 조성지 현장의 사업 진도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 철저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특색있는 운용 및 활용도 제고

- 백두대간 권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의 운영참여, 숲길 안내센터로의 활용 등 운영방식 다양화

라. 추진일정

o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 시・군별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사업 선정・확정 : 2014. 1~3월
- 주민소득지원 사업지 지도・점검 : 2014. 10월
-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지자체 → 산림청) : 2014. 12~2015. 2월

o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평균입목가액과 예금금리 확정 통보(산림청→지자체) : 2014. 3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시・군) : 2014. 12월

o 해외 보호지역 선진사례 견학 : 2014. 3월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추진상황 점검 : 매분기

2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목 표

◇ 백두대간 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산림생물자원화로 지역 및 국토의 균형성장 기여

◇ Seed Vault 등 차별성 있는 아시아 최고의 고산수목원 조성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산림생태계 감소에 따라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및 식물자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o 2016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수목원이 봉화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민의 기대가 크고 공사에 적극 협조

나. 기본방향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완공을 위한 4년차 공사 차질 없이 추진

o 2016년 개원에 대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프로그램개발 등 사전준비

o Seed Vault 등 완공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옥석산·문수산 일원)

o 면　　적 : 5,179ha(중점시설지구 206ha)

o 총사업비 : 2,515억원

o 사업기간 : 2009년~2015년(7년간)

o 주요시설 : Seed Valut 등 연구시설, 테마별 전시원 등 전시공간

o 연차별 추진사항

'09~'11	'12~'14	'15
《계획·설계단계》	《주요시설 공사 단계》	《운영 및 개원 준비단계》
◦ 예비타당성 조사 ◦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시굴 조사 ◦ 토지보상 ◦ 식물 수급계획 수립 ◦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 ◦ 조성공사 계약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단 신설('11.1)	◦ 주요 시설공사 시행 - 건축,토목,전기,기계,조경, 전시원, 특수시설(Seed Vault, 고산식물원 등) ◦ 전시식물 및 자료 본격 수집 -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 ◦ Seed Vault 완공시설 운영 ◦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추진 ◦ 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 사후환경영향조사(계속) ◦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 시설공사 및 공사감리 마무리 - 시설·연구 기자재 설치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 ◦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 ◦ 연구·전시 및 교육·홍보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운영프로그램 개발·운영 ◦ 조직·인력·규정 등 운영체계 완비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4년차)를 차질 없이 추진

o 공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4년차 공사 차질 없이 추진

- 산림청,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 및 협력업체 관계자 정기적 협의회의 개최
- 인건비, 장비대 등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로 공사 현장 자금운용 활성화
- 지역주민 민원 예방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상시 교류협력 체계 구축·운영

o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감독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사 품질 제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실행을 위하여 현장 상주 감독체제 유지

o 건축·토목·전시원 등 조성공사 추진('14년도 : 376억원)

-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정 공사물량 확정 추진
- 2013년도 3차 공사 이월공사(32억원) 병행하여 추진

o 주요 공정 추진에 따른 주요시설 설계변경 실시

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 및 현지 외 보전 식물자원 확보

o 원산지 정보 및 관리이력 추적이 가능한 식물 종 위주로 확보

- 주제원 전시식물과 현지 외 보전을 위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을 구분
- 이력관리가 잘된 식물(수목)을 우선 확보

o 구입, 교류, 기증, 자체수집 등 도입경로 다양화로 식물자원 확보 효율성 제고
- 국내 공·사립 수목원 및 국유양묘장 보유식물 조사 및 이식
- 국외 특수식물확보를 위해 국립수목원 MOU 기관 활용을 통한 협력
- 백두대간 지역 자생식물 우선 확보로 현지 외 보전 목적 조기 달성
  * 국가산림자원조사 DB 활용(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 한국임업진흥원 협의)

o 국가 표준 식물종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식물정보입력(111만여 건)

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리·운영 세부 프로그램 개발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요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개발
- 주요전시원 연구・교육・방문시설 등 분야별 세부 매뉴얼 개발
- Seed Vault & Bank 관리・운용 매뉴얼 개발
- Seed Vault 표준 운영절차(SOP)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계획수립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산림청, 국립수목원 관계 직원 등 참여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리·운영 자문단 구성・운영
- 관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관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5) 백두산 호랑이 숲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시공

o 국내 호랑이 전문가(학계, 동물원)로 구성된 설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o 실시설계를 위한 사육시설 선진지 견학(중국, 러시아 등) 및 공사 본격추진

o 백두산 호랑이 종보전 문제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MOU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o 백두산 호랑이 종 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러시아 전문가 초청)

o 위탁사육 중인 백두산호랑이(3마리) 관리를 위해 대전동물원과 긴밀히 협력

6) Seed Vault 시험 가동・운영 및 종자 저장 기반 구축

o Seed Vault 시험 가동 및 운영(본 전기 이입시 까지)
- 시험 가동 및 운영을 위해 Seed Vault 전문가 현장 배치(파견)

o 국내 수목원 및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종자 중복저장 및 교환)
- 지자체, 민간 수목원, 국가 연구기관간의 MOU 체결 등

o 산학연과 연계한 종자 수집, 종자의 저장법 개발 등 연구사업 활성화
- 고려대학교와 MOU 체결, 기획과제로 공동연구 실시

o 해외종자 위탁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아포코 등) 협의

- 저장시설의 안정성, 신뢰성을 강조하고 자국의 종자를 무료 위탁저장

o 본격적인 Seed Vault 가동에 앞서 국내·외 홍보 적극적으로 추진

- 영문판 신문 또는 해외 일간지에 기사화, 팜플릿 제작 등

- Seed Vault 시설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7) 백두대간수목원내 산림사업 등 기타 사업추진

o 지방청(남부・영주관리소)의 협조를 통해 수목원 특성에 맞는 산림사업 추진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지사방 0.5ha, 계류보전 0.8km, 숲가꾸기 936ha 실시예정

o 관사증축 등 직원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 의원(강석호) 현장 방문시 지적 내용 이행 방안 검토

o 백두대간수목원 보전지역(4,973ha) 산림생물자원(식물) 총 조사 시범 실시

- 보전지역 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o 수목원 주위 915번 지방도로 선형개량 사업 추진(경상북도 협조)

- 2014년도 실시설계, 주요 위험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지 우선 보완

라. 추진일정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 연중

o 수목원 조성 전시물 및 유용식물 확보 : 연중

o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준비를 위한 T/F 운영 : 연중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 : 2014. 2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4년차) 계약 : 2014. 4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 및 수목 이식사업(2년차) 완료 : 2014. 6월

o Seed Vault 시설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2014. 9월

o 백두산 호랑이 종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14. 10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위 산림사업 추진 : 2014. 4~11월

o 수목원 보전지역 산림생물자원 총 조사 시범실시 : 2014. 4~11